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2026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 **기획재정부 소관 ····· 1**
1.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 3
2. 기획재정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48
3.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 251
1) 공공자금관리기금 ····· 251
2) 국유재산관리기금 ····· 263
3) 대외경제협력기금 ····· 274
4) 복권기금 ····· 290
5)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306
6) 외국환평형기금 ····· 316
7) 기후대응기금 ····· 325

○ **국가데이터처 소관 ····· 379**
○ **국세청 소관 ····· 417**
○ **관세청 소관 ····· 459**
○ **조달청 소관 ····· 493**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 문 위 원 정지은

목 차

기획재정부 소관

1.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 3

가. 개요 ····· 3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3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4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 5

나. 세입예산안 검토의견 ····· 7

(1) 국세 세입예산안 개요(국세수입, 세제실) ····· 7

(2) 세입예산안 편성 시 활용된 거시경제변수 전망의 적정성 검토 (국세수입, 세제실) ····· 19

(3)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곤란 항목의 세수 영향 보완적 검토 필요 (국세수입, 세제실) ····· 24

(4) 세목 별 추계모형에 활용된 변수 및 개선사항의 적절성 검토 (국세수입, 세제실) ····· 27

(5)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규제방식 개선 필요(국세수입, 세제실) ····· 38

(6) 조세지출의 역진성 개선 대책 마련 필요(국세수입, 세제실) ····· 44

(7) 조세지출 정비 내실화 필요 등(국세수입, 세제실) ····· 51

(8) 정부의 탄력적 세율 운영에 따른 국세 수입 변동에 대한 면밀한 관리 필요 (국세수입, 세제실) ····· 59

(9) 물납주식 매각 경과를 고려하여 국세물납주식매각대 예산 조정 필요 (국세물납주식매각대, 국고국) ····· 66

다. 세출예산안 검토의견 ····· 72

(1) 과다산출된 지출구조조정 내역 부적절(총괄) ····· 72

(2) 계속비 미계상 부적절(총괄) ····· 80

(3) 공공청사 위탁개발계약의 국고채무부담행위 포함 필요(총괄) ····· 86

(4)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 구분 부적절(총괄) ····· 90

(5) 공공기관 사채발행한도의 명확한 기준 설정 필요(총괄) ····· 94

(6) 「국가재정법」상 절차에 위배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예산안 편성 부적절 (총괄) ····· 101

(7)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준수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총괄) ····· 112
(8) 과다 편성 특근매식비 예산 감액 필요(총괄) ····· 116
(9) 국유재산 명세서의 국회 제출 시 「국가재정법」 규정을 준수하여 제출할 필요(총괄, 국고국) ····· 123
(10) 국고금 운용수익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고금 관리법」 개정 필요 (총괄, 국고국) ····· 127
(11) 청년정책 대응기반 강화 사업의 소관 정책과의 연계 강화 필요 등 (경제구조개혁전략 기획 및 이행기반 구축, 경제구조개혁국) ····· 132
(12)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의 통합 검토 필요 등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운영,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 136
(13) 환율 상승에 따른 국제기구 분담금 부족 문제와 안정적 예산 편성 필요 (국제조세기구 등 분담금·관세협력기구출연(ODA), 세제실) ····· 142
(14) 연구용역 비목 재분류 필요(국채시장관리 및 국제화, 국고국) ····· 149
(15)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정원을 고려하여 참석 수당 감액 필요 (혁신조달지원, 국고국) ····· 151
(16) 국유재산 소송 현황을 감안하여 배상금 및 반환금 예산 감액 필요 (국유재산관리, 국고국) ····· 155
(17) 법적 근거가 미비한 출연금 감액 필요(국유재산관리, 국고국) ····· 158
(18) R&D 사업의 평가 부담 과중 및 재평가 실시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신규 출연금 편성 여부 재검토 필요 (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편성에 관한 연구(R&D), 예산실) ····· 161
(19) 실제 업무수행기간을 고려하여 출연금 감액 필요 (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편성에 관한 연구(R&D), 예산실) ····· 166
(20) 공운위 자문료, 정책워크숍 용역비 감액 필요 등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공공정책국) ····· 169
(21) 예산낭비신고 제도 활성화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재정집행관리, 재정관리국) ····· 176
(22)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 관련 정보공개 및 관리 강화 필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재정관리국) ····· 182
(23) 소규모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절차 준수 필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정보화), 재정정책국) ····· 188
(24) 부정수급 현장점검 예산의 적정 비목 편성 및 기획재정부 관여도 강화 필요(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정보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 191

(25) 예비비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예비비, 예산실) ····· 196
(26) 국부펀드 투자협력 행사를 위한 일반용역비 감액 필요
(금융협력사업, 국제금융국) ····· 200
(27) 보조대상 업무의 구체화와 이에 근거한 예산안 편성 필요
(국제금융센터 보조, 국제금융국) ····· 203
(28) 경협사업의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 필요
(통상연계형 경협사업, 대외경제국) ····· 209
(29) 집행잔액을 고려하여 기여금 조정에 대해 OECD와 협의 필요(OECD
동남아시아 데스크2 운영을 위한 자발적 기여금(ODA), 대외경제국) ···· 214
(30) 한국수출입은행이 직접 투자하는 방안 고려 필요(공급망안정화 프로그램
지원, 경제공급망기획관) ····· 217
(31) 한-미 관세협상 타결 결과를 고려 필요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대외경제국) ····· 220
(32) 민간위탁사업비 초과지출의 사후적인 보전을 위한 예산안 편성 부적절
(지식협력단지운영, 대외경제국) ····· 222
(33) 신규 출연 또는 출연 확대 시 국회에 대한 사전보고 필요
(기후행동강화 지원(ODA), 개발금융국) ····· 225
(34) 최근 집행실적을 고려한 전문가 참석수당 등 일반수용비 예산 감액 필요
(녹색기후기획사업, 개발금융국) ····· 228
(3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준수 및 법정 의무 미이행에 대한
페널티 부과 필요(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기관운영), 인사과) ····· 231
(36) 연례적 불용을 고려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 감액 필요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기관운영), 운영지원과) ····· 234
(37) 온북 도입 관련 예산안 감액 필요
(기획재정정보화(정보화), 기획조정실) ····· 237
(38) 유사·중복 사업 통합조정 필요 및 과다계상된 교육인원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의 감액 조정 필요(미래융복합경제교육, 기획조정실) ····· 241

2. 기획재정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48
가. 개요 ····· 248
3.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 251
1) 공공자금관리기금 ····· 251
가. 개요 ····· 251
나. 검토의견 ····· 254

(1) 과다계상된 한국은행 일시차입 이자지급 계획안 감액 필요
(기타민간차입 이자상환, 국고국) ····· 254
(2) 부진한 수요에 비해 과다편성된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수수료 감액 필요
등(기타경비(총괄계정), 국고국) ····· 258

2) 국유재산관리기금 ····· 263
가. 개요 ····· 263
나. 검토의견 ····· 266
(1) 수납률 제고를 위한 실효적 방안 마련 필요(총괄, 국고국) ····· 266
(2) 세목조정을 통한 집행률 제고 및 2026년 계획액 감액 필요
(서울법원 제2청사 신축, 국고국) ····· 270

3) 대외경제협력기금 ····· 274
가. 개요 ····· 274
나. 검토의견 ····· 276
(1) 여유자금 운용수입 규모 및 예치금 회수 계획의 적정성 검토 필요
(기타재산이자수입·정부예금회수, 개발금융국) ····· 276
(2) 사업추진 지연 차관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
(대개도국차관, 개발금융국) ····· 280
(3) 사후관리지원 내역사업 및 비대면 온라인서비스 유지보수비 감액 필요
(사업진행컨설팅(ODA), 개발금융국) ····· 286

4) 복권기금 ····· 290
가. 개요 ····· 290
나. 검토의견 ····· 292
(1)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 검토 필요(총괄, 복권위원회) ····· 292
(2) 신규로 출시하는 햇살론 특례보증 상품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복권위원회) ····· 298

5)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306
가. 개요 ····· 306
나. 검토의견 ····· 308
(1) BTL 특별인프라펀드 사업 실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필요
(BTL 특별인프라펀드, 재정관리국) ····· 308

6) 외국환평형기금 ····· 316
가. 개요 ····· 316

나. 검토의견 ····· 318
(1) 자산운용 위탁수수료 지급 예산 이관 및 수수료율의 국회 보고 필요
(기타이자상환, 국제금융국) ····· 318

7) 기후대응기금 ····· 325
가. 개요 ····· 325
나. 검토의견 ····· 327
(1)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금 추계 적정성 검토 및 수입금 확대 노력 필요(기타재산이자외수입, 미래전략국) ····· 327
(2) 실집행 이월액 및 유치국과의 협의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안 감액 필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산업부), 산업통상부) ····· 336
(3) 레디니스 사업의 실효성 강화 방안 마련 필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 339
(4) 신규 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과의 연계 필요
(탄소중립·그린 국제개발협력(ODA), 기후에너지환경부) ····· 343
(5) 바이오가스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기후에너지환경부) ····· 348
(6) 실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집행률 제고 필요 등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 산업통상부) ····· 353
(7) 기금 운용배수를 고려하여 심사 필요
(녹색전환보증, 기후에너지환경부) ····· 358
(8) 대기업에 대한 지원 집중을 고려하여 예산안 규모를 조정할 필요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 362
(9)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예산 감액 필요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 산업통상부) ····· 366
(10) 인센티브 구조 개선을 통한 지속적 운영 체계 마련 필요
(친환경소비생활 및 저탄소 생산기반 구축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370
(11)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간 확보를 위한 조속한 협약체결 필요
(총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375

국가데이터처 소관

가. 개요 ····· 381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381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382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 383

나. 검토의견 ····· 384
(1) 장애인 의무고용율 제고 노력 필요(총괄) ····· 384
(2) 해외자료 번역 관련 예산 감액 필요(총괄) ····· 389
(3) 통계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의 이러닝 콘텐츠 개발 필요
(통계교육지원, 통계인재개발원) ····· 394
(4) 기획간행물 발간사업의 체계적 기준 마련 필요
(통계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 통계서비스정책관) ····· 400
(5) 조사요원 채용업무를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하고 조사요원 인건비를
자치단체 경상보조 비목으로 편성할 필요(경제총조사, 경제통계국) ····· 405
(6) ILO 파견에 편성된 예산 감액 필요 ····· 413

국세청 소관

가. 개요 ····· 419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419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419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 420

나. 검토의견 ····· 421
(1) 구체적인 요건이나 금액 기준 등이 정해지지 않은 포상금 예산안 편성 부적절 (총괄) ····· 421
(2) 2025년도 예상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감액 필요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고시, 자산과세국) ····· 425
(3) 2025년 대리납부 실적을 고려하여 예산안 감액 필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개인납세국) ····· 427
(4) 과다편성된 금융거래정보 전산조회 이용수수료 감액 필요 (조사활동지원, 조사국) ····· 429
(5)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된 DB 예산의 관리 강화 필요 (국제거래 세원관리 지원, 국제조세관리관실) ····· 431
(6) 법률 개정을 전제로 편성된 점을 고려하여 심사 필요 (압류재산 공매, 징세법무국) ····· 435
(7) 업무조정에 따른 할인율 및 업무개선에 따른 예산 절감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 감액 필요(납부고지서 등 발송, 정보화관리관실) ····· 439
(8) 모범납세자 제도 개선 및 운영 검토 필요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납세자보호관실) ····· 443
(9)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관련 적정 예산 편성 필요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복지세정관리단실) ····· 449
(10) 적정 단가 책정을 통한 자산취득비 감액 필요 (기관운영 기본경비, 운영지원과) ····· 455

관세청 소관

가. 개요 ····· 461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461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462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 463

나. 검토의견 ····· 464

(1)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 필요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통관국) ····· 464

(2) 내용연수 경과 감시정의 적기 교체를 위한 예산 확보 필요
(공항만감시지원, 통관국) ····· 467

(3) 적정 수준의 임차 요율을 적용하여 장비도입 예산 재산정 필요
(불법위해물품 안전관리(심사국)) ····· 471

(4) 마약범죄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수사 등의 강화 필요 (공통) ····· 477

(5) 사업 진행 경과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 2.0(R&D), 정보데이터정책관) ····· 482

(6) 사업 추진 일정 지연을 감안한 적정규모 예산 편성 필요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ODA), 정보데이터정책관) ····· 487

조달청 소관

가. 개요 ····· 495

(1) 조달특별회계 일반 ····· 495

(2) 조달특별회계 세입예산안 ····· 496

(3) 조달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497

(4)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 498

나. 검토의견 ····· 499

(1) 회전자금 예치이자 수입의 적정 규모 편성 필요 등
(기타영업외잡수익(회전자금 예치이자), 기획조정관) ····· 499

(2)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 기업) 제도 개선 필요
(정부조달 국제협력체계 구축, 기획조정관) ····· 507

(3) 안전관리물자 품질점검 관련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
(조달물자 품질검사 및 관리, 조달품질원) ····· 513

(4) 혁신제품 시범구매 확대에 따른 사업추진 점검·평가 필요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신성장조달기획관) ····· 516

(5) 교육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편성 부적절
(조달전문교육운영, 공공조달역량개발원) ····· 520

(6) 회전자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국회 통제 강화 필요
(회전자금, 공공물자국) ····· 522

(7) 마스크 시재액의 일반회계 반납 및 연간 구매계획에 따른 적정 자금의 회전자금 전출 필요(회전자금, 공공물자국) ····· 527

(8) 민관 공동 비축사업 운영 수입의 현실화 필요(회전자금, 공공물자국) ····· 530

기획재정부 소관

1.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가. 개요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26년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97조 6,228억원으로 전년 대비 7.3%(33조 8,080억원) 증가하였음.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378조 6,01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9.4% 증가한 119조 212억원으로 편성됨.

[2026년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1. 국세수입	3,718,050	3,786,015	67,965	1.8
내국세계	3,381,292	3,439,013	57,721	1.7
소 득 세	1,268,192	1,321,175	52,983	4.2
법 인 세	882,544	865,474	△17,069	△1.9
상속증여세	145,059	170,163	25,104	17.3
부가가치세	876,388	865,750	△10,638	△1.2
개별소비세	96,663	93,786	△2,877	△3.0
증권거래세	38,454	53,753	15,299	39.8
인 지 세	8,836	7,734	△1,103	△12.5
과년도수입	65,156	61,178	△3,979	△6.1
교통·에너지·환경세	151,048	164,122	13,074	8.7
관세	84,093	72,214	△11,879	△14.1
교육세	60,402	64,433	4,031	6.7
종합부동산세	41,215	46,233	5,018	12.2
2. 세외수입	920,098	1,190,212	270,115	29.4
재산수입*	52,473	78,751	26,278	50.1
경상이전수입	127	197	70	54.9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0	0	-	-
관유물매각대**	37,441	10,638	△26,804	△71.6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830,056	1,100,627	270,571	32.6
총 계	4,638,148	4,976,228	338,080	7.3

* 정부출자기관 배당수입, 국세물납주식 매각 이자수입,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등
** 국세물납주식매각수입('19년까지 차입금 및 여유자금 회수로 편성했으나 '20년부터 관유물매각대로 편성)
*** 특별회계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자료: 기획재정부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26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5조 7,207억원으로 전년 대비 71.4%(2조 3,840억원) 증가하였음. 주요사업비는 전년 대비 74.3% 증가한 5조 5,823억원이며 이 중 예비비는 전년 대비 75.0%(1조 8,000억원) 증가한 4조 2,000억원이 편성됨. 출자·출연사업은 국제금융기구 출연,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등으로 전년보다 154.8% 증가한 9,818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 사업은 전년 대비 4.1% 감소한 4,005억원이 편성됨.

[2026년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총지출]	33,367	57,207	23,840	71.4
- 인건비	1,078	1,119	41	3.8
- 기본경비	262	265	4	1.5
- 주요사업비	32,028	55,823	23,796	74.3
▪ 출자·출연사업	3,853	9,818	5,965	154.8
▪ 경상사업	4,175	4,005	△170	△4.1
▪ 예비비	24,000	42,000	18,000	75.0
[내부거래]	375,943	404,693	28,750	7.6
- 법정성격사업*	289,924	255,872	△34,053	△11.7
- 기타전출**	86,019	148,821	62,803	73.0
총 계	409,310	461,900	52,590	12.8

* 법정성격사업: 공자기금예수 이자상환
** 기타 전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 대외경제협력기금 전출, 기후대응기금 전출
자료: 기획재정부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가) 신규사업

2026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에 신규 반영된 세부사업은 총 3개 사업, 금액은 총 7,121억 2,900만원 규모임.

[2026년 신규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6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
< 예산 (3개 사업) >		
【일반회계(3개)】	712,129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운영	2,129	▪ 국가바이오위원회(전체회의, 운영위, 분과위, 특별위, 협의체 등) 운영을 통해 국가바이오 정책·규제·R&D 등 컨트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 경비
공급망안정화 프로그램 지원	10,000	▪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운영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직·간접 투자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은에 특별투자재원 출자 추진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700,000	▪ 한국수출입은행 출자를 통한 대미 투자패키지 금융지원 관련 재정 보강

나) 주요 증액사업

2025년 예산 대비 20%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 증가(단, 내부거래는 제외)한 주요 증액사업은 총 16개 세부사업임.

기후행동강화 지원(ODA), 국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기획재정정보화(정보화) 등 총 16개 사업이 2025년 본예산 대비 20%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26년 주요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		증감	
		요구	조정(B)	(B-A)	(B-A)/A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개발금융국)	169	205	205	36	21.3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경제공급망기획관)	375	680	680	305	81.3
기획재정 해외네트워크 구축	874	1,084	1,084	210	24.0
기후행동강화 지원(ODA)	11,340	21,417	21,417	10,077	88.9
협동조합활성화사업	1,580	3,130	3,130	1,550	98.1
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편성에 관한 연구(R&D)	750	1,200	1,200	450	60.0
국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592	1,130	1,130	538	90.9
기획재정정보화(정보화)	5,589	9,942	9,942	4,353	77.9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운영(정보화)	2,911	3,886	3,886	975	33.5
미래융복합경제교육	1,928	4,157	4,157	2,229	115.6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연	10,000	50,000	50,000	40,000	400.0
예비비	2,400,000	4,200,000	4,200,000	1,800,000	75.0
인건비	107,790	111,868	111,868	4,078	3.8
일시차입금이자상환	99,209	110,000	110,000	10,791	10.9
경제협력기획(ODA)	31,271	34,222	34,222	2,951	9.4
한국재정정보원운영	37,050	40,530	40,530	3,480	9.4

나. 세입예산안 검토의견

(1) 국세 세입예산안 개요(국세수입, 세제실)

2026년 국세 세입예산안은 390조 2,454억원으로서 이 중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78조 6,015억원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주세) 3조 1,451억원이고, 이외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농어촌특별세)으로 8조 4,988억원이 편성되었음.[1] 이는 2025년 본예산 382조 4,296억원 대비 7조 8,158억원이 증가(2.0%)한 것이고, 금년 9월 정부의 2025년 국세수입 재추계 전망[2] 369조 9,292억원에 비하여는 20조 3,162억원 증가(5.5%)한 규모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378조 6,015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371조 8,050억원 대비 6조 7,965억원 증가(1.8%)한 규모이며, 2025년 국세수입 재추계치 358조 2,302억원에 비하여는 20조 3,713억원이 증가(5.7%)한 규모임.

특별회계 국세수입은 11조 6,439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10조 6,246억원 대비 1조 193억원 증가(9.6%)한 규모이며, 2025년 국세수입 재추계치 11조 6,989억원에 비하여는 △550억원이 감소(△0.5%)한 규모임.

세목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14개 세목 중 ①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증권거래세, 교통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특세 등 7개 세목은 2025년 본예산 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②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과년도수입, 관세, 주세 등 7개 세목이 감액편성 되었음.

---

1) 2026년 국세 세입예산안 390.2조원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78.6조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주세) 3.1조원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농어촌특별세) 8.5조원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임.

2)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수실적 및 진도율 등을 반영하여 2025년 국세수입을 재추계하였음.

[2026년도 국세 세입예산안 개요]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대비	
	예산	재추계	실적	예산	재추계		증감액	증감율
총 국 세	3,673,140	3,377,039	3,365,324	3,824,296	3,699,292	3,902,454	78,158	2.0
[일반회계]	3,561,182	3,272,308	3,261,793	3,718,050	3,582,302	3,786,015	67,965	1.8
◇ 내 국 세	3,216,136	2,995,142	2,982,593	3,381,292	3,273,936	3,439,013	57,721	1.7
○ 소 득 세	1,257,605	1,174,033	1,174,179	1,268,192	1,283,584	1,321,175	52,983	4.2
신 고 분	454,717	356,021	362,116	414,698	405,084	431,515	16,817	4.1
원 천 분	802,888	818,012	812,063	853,494	878,501	889,660	36,166	4.2
○ 법 인 세	776,649	631,987	625,113	882,544	836,355	865,474	△17,069	△1.9
신 고 분	568,333	400,096	394,162	658,570	603,666	633,653	△24,916	△3.8
원 천 분	208,316	231,891	230,951	223,974	232,689	231,821	7,847	3.5
○ 상 증 세	146,566	141,202	152,981	145,059	161,582	170,163	25,104	17.3
상 속 세	85,947	88,064	96,440	84,637	103,066	109,468	24,831	29.3
증 여 세	60,619	53,138	56,541	60,422	58,516	60,695	273	0.5
○ 부 가 가 치 세	814,068	836,955	822,358	876,388	809,381	865,750	△10,638	△1.2
○ 개 별 소 비 세	101,945	90,088	86,566	96,663	82,702	93,786	△2,877	△3.0
○ 증 권 거 래 세	53,829	49,711	47,602	38,454	31,371	53,753	15,299	39.8
○ 인 지 세	8,505	8,527	8,460	8,836	7,758	7,734	△1,103	△12.5
○ 과 년 도 수 입	56,969	62,639	65,334	65,156	61,201	61,178	△3,979	△6.1
◇ 교통·에너지·환경세	153,258	111,900	113,891	151,048	130,824	164,122	13,074	8.7
◇ 관 세	89,065	69,656	69,723	84,093	73,970	72,214	△11,879	△14.1
◇ 교 육 세	61,625	54,160	53,738	60,402	57,768	64,433	4,031	6.7
◇ 종합부동산세	41,098	41,450	41,847	41,215	45,805	46,233	5,018	12.2
[특별회계]	111,958	104,731	103,531	106,246	116,989	116,439	10,193	9.6
◇ 주 세	35,759	32,605	33,282	32,093	32,025	31,451	△642	△2.0
◇ 농어촌특별세	76,199	72,126	70,249	74,153	84,965	84,988	10,835	14.6

자료: 기획재정부

2026년 국세 세입예산안의 주요 세목별 증감내역 및 사유는 다음과 같음.

소득세는 132조 1,175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2025년 예산 대비 5조 2,983억원 증가(4.2%)한 규모임. 내수경기 회복에 따른 종합소득세, 고용·임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주식시장 호조세 전망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① 종합소득세 세수는 22조 6,270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2025년 본예산 대비 5,688억원 증가(2.6%)한 규모임. 이는 25년 경상성장률 증가, 과거 세법개정(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효과 등을 반영한 것임.

② 양도소득세 세수는 20조 5,245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2025년 본예산 대비 1조 1,129억원 증가(5.7%)한 규모임. 이는 주택·토지 시장 및 주식시장 전망 등을 반영한 것임.

③ 이자소득세 세수는 6조 118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2025년 본예산 대비 3,003억원 감소(△4.8%)한 규모임. 이는 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한 것임.

④ 배당소득세 세수는 4조 6,423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2025년 본예산 대비 334억원 감소(△0.7%)한 규모임. 이는 2025년 상장사 기업실적 전망 등을 반영한 것임

⑤ 근로소득세 세수는 68조 4,511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2025년 본예산 대비 3조 7,201억원 증가(5.7%)한 규모임. 이는 2026년 근로자 수 및 임금 증가율의 증가 전망 등을 반영한 것임.

⑥ 사업소득세 세수는 5조 2,665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2025년 본예산 대비 1,605억원 증가(3.1%)한 규모임. ⑦ 연금소득세 세수는 8,775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2025년 본예산 대비 1,861억원 증가(26.9%)한 규모임. ⑧ 기타소득세 세수는 2조 4,679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2025년 본예산 대비 1,968억원 감소(△7.4%)한 규모임. ⑨ 퇴직소득세 세수는 1조 2,490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2025년 본예산 대비 805억원 증가(6.9%)한 규모임. 이는 2025년 7월 세수누계실적 및 최근 증가율 추세 등을 반영한 것임.

[2026년 세목별 예산안: 소득세]

(단위: 억원, %)

세 목	24년 실적	25년 본예산	26년 예산안	24년 실적대비		25년 본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소 득 세	1,174,180	1,268,192	1,321,175	1,469,951	12.5	52,983	4.2
신 고 분	362,116	414,698	431,515	69,399	19.2	16,817	4.1
종합소득	195,264	220,582	226,270	31,006	15.9	5,688	2.6
양도소득	166,852	194,116	205,245	38,393	23.0	11,129	5.7
원 천 분	812,063	853,494	889,660	77,597	9.6	36,166	4.2
이자소득	71,958	63,121	60,118	△11,840	△16.5	△3,003	△4.8
배당소득	42,680	46,757	46,423	3,743	8.8	△334	△0.7
근로소득	610,491	647,310	684,511	74,020	12.1	37,201	5.7
사업소득	46,828	51,060	52,665	5,837	12.5	1,605	3.1
연금소득	5,591	6,914	8,775	3,184	56.9	1,861	26.9
기타소득	23,533	26,647	24,679	1,146	4.9	△1,968	△7.4
퇴직소득	10,982	11,685	12,490	1,508	13.7	805	6.9

자료: 기획재정부

법인세는 86조 5,474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5년 본예산 88조 2,544억원 대비 1조 7,069억원 감소(△1.9%)한 규모임.

① 법인세 신고분 63조 3,653억원은 2025년 본예산 65조 8,570억원 대비 2조 4,916억원 감소(△3.8%)한 규모인데, 이는 2025년 본예산 대비로는 감소하나, 재추계 대비로는 증가하는 수준으로 LLM 기반 코스피 기업 영업이익 전망, 영업이익 및 과세표준 최근 추세 등을 반영한 것임.

② 법인세 원천분 23조 1,821억원은 2025년 본예산 22조 3,974억원 대비 7,847억원 증가(3.5%)한 규모인데, 이는 2025년 본예산 대비로는 증가하나, 정부의 재추계 대비로는 감소하는 수준으로 예금 금리 하락 등을 반영한 것임.

[2026년 세목별 예산안: 법인세]

(단위: 억원, %)

세 목	24년 실적	25년 본예산	26년 예산안	24년 실적대비		25년 본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법 인 세	625,113	882,544	865,474	240,361	38.5	△17,069	△1.9
신 고 분	394,161	658,570	633,653	239,492	60.8	△24,916	△3.8
원 천 분	230,951	223,974	231,821	870	0.4	7,847	3.5

자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는 86조 5,750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5년 본예산 87조 6,388억원 대비 1조 638억원 감소(△1.2%)한 규모임. 이는 2025년 본예산 대비로는 감소하나, 재추계 대비로는 증가하는 수준으로 최근 내수 회복 흐름 등을 반영한 것임.

[2026년 세목별 예산안: 부가가치세]

(단위: 억원, %)

세 목	24년 실적	25년 본예산	26년 예산안	24년 실적대비		25년 본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부가가치세	822,358	876,388	865,750	43,392	5.3	△10,638	△1.2

자료: 기획재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는 17조 163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5년 본예산 14조 5,059억원 대비 2조 5,104억원 증가(17.3%)한 규모임.

① 상속세 세수는 10조 9,468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2025년 본예산 8조 4,637억원 대비 2조 4,831억원 증가(29.3%)한 규모임. ② 증여세 세수는 6조 695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2025년 본예산 대비 273억원 증가(0.5%)한 규모임. 이는 70세 이상 사망자수 및 자산가격 상승 추세 등을 반영한 것임

[2026년 세목별 예산안: 상속세 및 증여세]

(단위: 억원, %)

세 목	24년 실적	25년 본예산	26년 예산안	24년 실적대비		25년 본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상 증 세	152,981	145,059	170,163	17,182	11.2	25,104	17.3
상 속 세	96,440	84,637	109,468	13,028	13.5	24,831	29.3
증 여 세	56,541	60,422	60,695	4,154	7.3	273	0.5

자료: 기획재정부

개별소비세는 9조 3,786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5년 본예산 9조 6,663억원 대비 2,877억원 감소(△3.0%)한 규모임.

증권거래세는 5조 3,753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5년 본예산 3조 8,454억원 대비 1조 5,299억원 증가(39.8%)한 규모로서 증권거래세율 인상[3]을 반영한 것임.

인지세는 7,734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5년 본예산 8,836억원 대비 1,103억원 감소(△12.5%)한 규모임.

과년도수입은 6조 1,178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5년 본예산 6조 5,156억원 대비 3,979억원 감소(△6.1%)한 규모임.

[2026년 세목별 예산안: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수입]

(단위: 억원, %)

세 목	24년 실적	25년 본예산	26년 예산안	24년 실적대비		25년 본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개별소비세	86,566	96,663	93,786	7,220	8.3	△2,877	△3.0
증권거래세	47,602	38,454	53,753	6,151	12.9	15,299	39.8
인 지 세	8,460	8,836	7,734	△726	△8.6	△1,103	△12.5
과년도수입	65,334	65,156	61,178	△4,156	△6.4	△3,979	△6.1

자료: 기획재정부

3)'25년 세법개정안: 증권거래세율 조정 - 코스피 0.00% → 0.05%, 코스닥 0.15% → 0.20%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6조 4,122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5년 본예산 15조 1,048억원 대비 1조 3,074억원 증가(8.7%)한 규모로서 2026년 유류 수요전망 등을 반영한 결과임.

관세는 7조 2,214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5년 본예산 8조 4,093억원 대비 1조 1,879억원 감소(△14.1%)한 규모로서 수입[4] 및 환율 전망[5], 실효세율 추이 등을 반영한 것임.

교육세는 6조 4,433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5년 본예산 6조 402억원 대비 4,031억원 증가(6.7%)한 규모로서 본세의 부가세(surtax)인 교육세의 특성상 본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전망을 반영한 것임.

종합부동산세는 4조 6,233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5년 예산 4조 1,215억원 대비 5,018억원 증가(12.2%)한 규모로서 2026년 주택·토지 가격 소폭 증가 예상 등을 반영한 것임.

[2026년 세목별 예산안: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단위: 억원, %)

세 목	24년 실적	25년 본예산	26년 예산안	24년 실적대비		25년 본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교통에너지환경세	113,891	151,048	164,122	50,231	44.1	13,074	8.7
관 세	69,723	84,093	72,214	2,491	3.6	△11,879	△14.1
교 육 세	53,738	60,402	64,433	10,695	19.9	4,031	6.7
종합부동산세	41,847	41,215	46,233	4,386	10.5	5,018	12.2

자료: 기획재정부

주세는 3조 1,451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5년 본예산 3조 2,093억원 대비 642억원 감소(△2.0%)한 규모로서 최근 추세 등을 반영한 것임.

농어촌특별세는 8조 4,988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5년 예산 7조 4,153억원

4) 수입액 전망 6,311억불
5) 예산안 기준환율 1,380원/달러

대비 1조 835억원 증가(14.6%)한 규모로서 농어촌특별세의 본세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세수 전망을 반영한 것임.

[2026년 세목별 예산안: 주세, 농어촌특별세]

(단위: 억원, %)

세 목	24년 실적	25년 본예산	26년 예산안	24년 실적대비		25년 본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주 세	33,282	32,093	31,451	△1,831	△5.5	△642	△2.0
농어촌특별세	70,249	74,153	84,988	14,739	21.0	10,835	14.6

자료: 기획재정부

2026년 국세 세입예산안은 각 세목별 세수추계식에 경상GDP 등의 경제변수를 대입하여 산출된 세목별 세입추계치, 세정 효율화 효과, 2025년 정부 세법개정안 및 旣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전망치를 합하여 산출하였음.

구체적으로, 2026년 국세 세입예산안 390조 2,454억원은 ① (세법개정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2025년 세목별 세입추계치 합계액 388조 5,937억원, ② 2025년 세법개정안 및 旣 세법개정에 따른 세목별 세법개정 세수효과 전망치 등 합계액 1조 6,517억원을 합한 금액임.

[2026년 국세 세입예산안 세목별·항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억원)

세 목	세목별 세입추계치	세법개정 세수효과	합 계
총 국 세	3,885,937	16,517	3,902,454
[일반회계]	3,770,901	15,114	3,786,015
◇ 내 국 세	3,423,134	15,879	3,439,013
○ 소 득 세	1,325,742	△4,567	1,321,175
종합소득세	232,402	△6,132	226,270
양도소득세	204,279	966	205,245
이자소득세	60,121	△3	60,118
배당소득세	45,693	730	46,423
사업소득세	52,665		52,665
근로소득세	684,405	106	684,511
연금소득세	8,921	△146	8,775
기타소득세	24,767	△88	24,679
퇴직소득세	12,490		12,490
○ 법 인 세	867,967	△2,493	865,474
○ 상 증 세	170,365	△202	170,163
상 속 세	109,436	32	109,468
증 여 세	60,929	△234	60,695
○ 부가가치세	864,492	1,258	865,750
○ 개별소비세	93,323	463	93,786
○ 증권거래세	32,353	21,400	53,753
○ 인 지 세	7,714	20	7,734
○ 과년도수입	61,178		61,178
◇ 교통·에너지·환경세	164,122		164,122
◇ 관 세	73,285	△1,071	72,214
◇ 교 육 세	64,128	305	64,433
◇ 종합부동산세	46,232	1	46,233
[특별회계]	115,036	1,403	116,439
◇ 주 세	31,451		31,451
◇ 농어촌특별세	83,585	1,403	84,988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2026년도 세목별 세법개정 세수효과 전망치 합계액 1조 6,517억원 중 ① 금년 정기회에서 논의될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에 따른 2026년 세수효과는 2조 6,268억원이고, ② 금년 旣세법개정으로 인한 세수효과는 총 2,129억원이며, ③ 2024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6,498억원이고, ④ 202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59억원이며, ⑤ 2022년 이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5,323억원임.

[연도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목별 세법개정 세수효과 전망치]

(단위: 억원)

세 목	2025년 세법개정안	2025년 旣세법개정	2024년 세법개정	2023년 세법개정	2022년 이전 세법개정	합 계
총 국 세	26,268	2,129	△6,498	△59	△5,323	16,517
[일반회계]	26,133	2,129	△7,290	△99	△5,759	15,114
◇ 내 국 세	25,881		△7,336	△98	△3,606	15,879
ㅇ 소 득 세	546		△4,708	633	△1,038	△4,567
종합소득세	△2		△5,281	△3	△846	△6,132
양도소득세	967			△1		966
이자소득세				△3		△3
배당소득세			730			730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185		△157	640	△192	106
연금소득세	△146					△146
기타소득세	△88					△88
퇴직소득세						
ㅇ 법 인 세	2,228		△2,900	△291	△1,530	△2,493
ㅇ 상 증 세	33			△235		△202
상 속 세	32					32
증 여 세	1			△235		△234
ㅇ 부가가치세	1,251		232	△225		1,258
ㅇ 개별소비세	423		40			463
ㅇ 증권거래세	21,400					21,400
ㅇ 인 지 세				20		20
ㅇ 과년도수입						
◇교통에너지환경세						
◇ 관 세	△9	2,129			△3,191	△1,071
◇ 교 육 세	259		46			305
◇ 종합부동산세	2			△1		1
[특별회계]	135		792	40	436	1,403
◇ 주 세						
◇ 농어촌특별세	135		792	40	436	1,403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가 제출한 2025년 세법개정안 중 2026년도 국세 세입예산안에 반영된 세법개정 세수효과(2조 8,397억원)를 자세히 살펴보면, 주요 세수 변동요인으로는, ‘증권거래세율 조정’(증권거래세) 2조 1,400억원, 법인세율 환원’(법인세) 3,336억원 등이 있음.

[2025년 정부 세법개정안 내용별 2026년 세수효과 추계액]

세 목	개 정 내 용	세수효과
소득세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완화[종소]	△22
	가상자산 직접 매각 위탁 근거 마련[종소]	△1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개편[종소]	1
	독촉장 송달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종소]	4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소득공제 폐지[종소]	16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양도]	967
	자녀수 기준으로 보육수당 비과세[근로]	△130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범위 및 한도 확대[근로]	△55
	노란우산공제 해지시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영악화 요건 완화[기타]	△88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연금]	△146
	소계	**546**
법인세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확대	△1,414
	신성장원천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확대	△32
	지역사랑상품권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
	독촉장 송달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	2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합리화	337
	법인세율 환원	3,336
	소계	**2,228**
상속세 및 증여세	영리법인이 수유자 등인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자 확대[상속]	32
	독촉장 송달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증여]	1
	소계	**33**
부가가치세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완화	△30
	독촉장 송달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	2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	18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폐지	41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기한 종료	1,220
	소계	**1,251**

세 목	개 정 내 용	세수효과
개별소비세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폐지	**423**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율 조정	**21,400**
관세	보세공장 생산제품의 혼용비율 원료과세 신청기한 합리화	△8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사유 확대	△1
	소계	**△9**
교육세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126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체계 개편	133
	소계	**259**
종합부동산세	신탁재산의 종부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	2
농어촌특별세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확대	1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확대	134
	소계	**135**
합 계		**26,268**

자료: 기획재정부

(2) 세입예산안 편성 시 활용된 거시경제변수 전망의 적정성 검토 (국세수입, 세제실)

< 검토의견 >

연례적인 세수전망 오차의 주요 원인이 예산안 편성(7~8월) 이후 국회 제출(9월)·의결(12월) 시점까지의 대내외적 경제여건 변동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2026년도 세입예산안 편성 시 활용된 거시경제변수 전망의 적절성을 의결 시점에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2025년 국세수입은 369.9조원으로 전년(336.5조원) 대비 33.4조원 증가하고, 6월 세입경정예산(372.1조원) 대비 2.2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6] 이는 본예산(382.4조원) 기준 12.5조원 부족한 수준으로, 2023년 본 예산 대비 56.4조원, 2024년 본 예산 대비 30.8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에 이어 3년째 세수 결손이 전망됨.

정부는 2026년 세입예산안 편성 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및 KDI 경제 전망 등을 반영하여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변수를 전망하고 이를 각 세목의 국세 수입 추계에 활용하였음.

[2026년 세입예산안 편성 시 활용된 거시경제변수 전망치]

구분	추계 시 전망치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세목	전망치	
		2025년도	2026년도
경상성장률	종합소득세	3.2%	3.8%
실질성장률		0.9%	1.7%
GDP 디플레이터		2.3%	2.1%
민간소비증가율	법인세, 부각가치세	1.3%	1.6%
소비자물가상승률	법인세, 부가가치세, 주세	2.0%	1.9%
취업자 증감 (만명)	근로소득세	19.7	17.3
명목임금 상승률	근로소득세	3.2%	2.5%
수출 증가율	-	0.2%	('26) △0.5%
수입 증가율	관세	△0.6%	0.5%
환율(원/$)	관세	1,428	1,380

자료: 2026년도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 재작성

6) 금년 국세수입은 추경 대비 △2.2조원 예상, 기획재정부. 2025.9.24.

정부의 2026년 주요 거시경제변수 전망의 내용 및 적정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경상성장률[7]은 국세 수입 규모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종합소득세수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거시경제변수로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정부는 경상성장률을 3.8%(실질성장률 1.7% + GDP def 2.1%) 수준으로 전망함.

이 중 정부가 세수 추계시 활용한 실질성장률 전망 1.7%는 KDI(1.6%)와 정부 전망치(1.8%)의 평균치이고, 한국은행 전망치, ADB 전망치(1.6%)[8]보다는 높은 수준이며, IMF(1.8%) 및 OECD(2.2%)의 전망치보다는 낮은 수준임. 최근 2년간 정부가 예산안 편성 당시 활용한 경상성장률[9]은 실제 전망률보다 과다 전망되었다는 점, 2025년 3/4분기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2%로 2024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는 점,[10]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된 일부 품목(반도체, 철강)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잔존하며, 반도체, 경기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상·하방 모두 확대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시점에서 세입예산안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주요기관의 2026년 실질성장률 전망치]

(단위: %)

정부	한국은행	OECD	ADB	국회예산정책처	KDI	IMF	현대경제연구원
1.8 (2025. 8.)	1.6 (2025. 8.)	2.2 (2025. 6)	1.6 (2025. 7.)	1.9 (2025.9.)	1.6 (2025. 8.)	1.8 (2025.7)	1.9 (2025.9)

주: 괄호 안은 전망 시점

둘째, 민간소비증가율은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세목의 추계 시 활용되는 거시경제변수이며 2026년 예산안에서 1.6% 수준으로 전망됨.

[주요기관의 2026년 민간소비증가율 전망치]

(단위: %)

정부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KDI	현대경제연구원
1.6 (2025. 8.)	1.6 (2025.8)	1.4 (2025.9.)	1.5 (2025. 8.)	1.7 (202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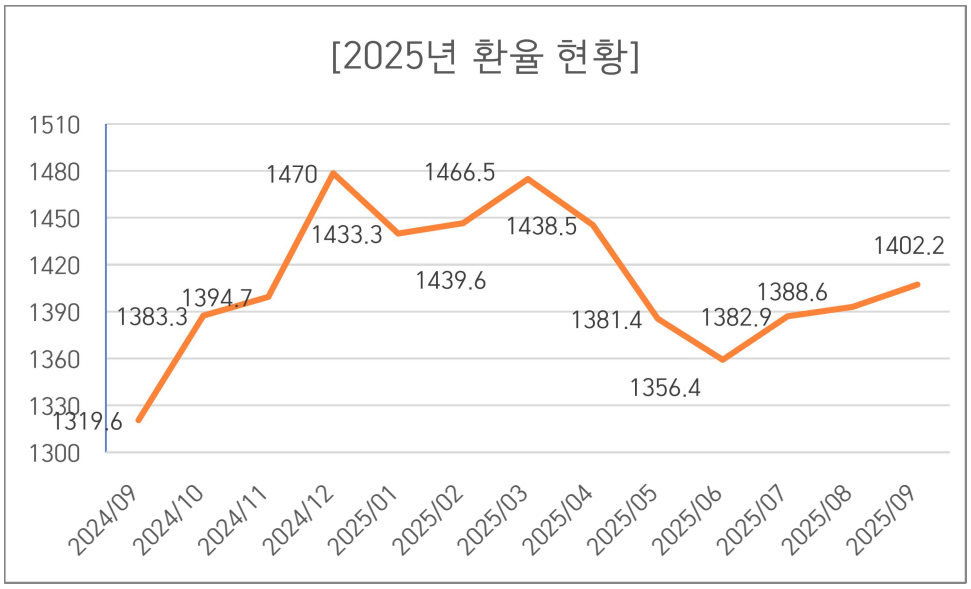
주: 괄호 안은 전망 시점

이는 한국은행 전망치(1.6%)과 같은 수준이나,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1.4%) 및 KDI

7) 경상성장률은 가격으로 표시되는 성장률로서 GDP 디플레이터와 실질성장률의 합계
8) 아시아개발은행, 2026 아시아경제전망
9) 2024년 예산안, 2023년 예산안
10) 2025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전망치(1.5%) 보다는 높고, 현대경제연구원의 전망치(1.7%)보다는 낮은 수준임.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난 7월 소매판매의 경우 29개월만의 최대폭인 전월 대비 2.5%의 증가율[11]을 보였고, 한국은행의 "2025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2025.10.28.)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재화(승용차, 통신기기 등)와 서비스(음식점, 의료 등) 소비가 모두 늘어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예상치를 상회하는 민간소비 증가는 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의 세목에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세입예산안의 민간소비율 전망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환율은 법인세 및 관세 추계 시 활용되는 거시경제변수이며 2026년 예산안에서는 환율을 1,380(원/달러)의 수준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2025년 예산안에서 적용된 1,428(원/달러)에 비하여 달러당 48원 낮은 수준임. 2026년 환율은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변동 추세 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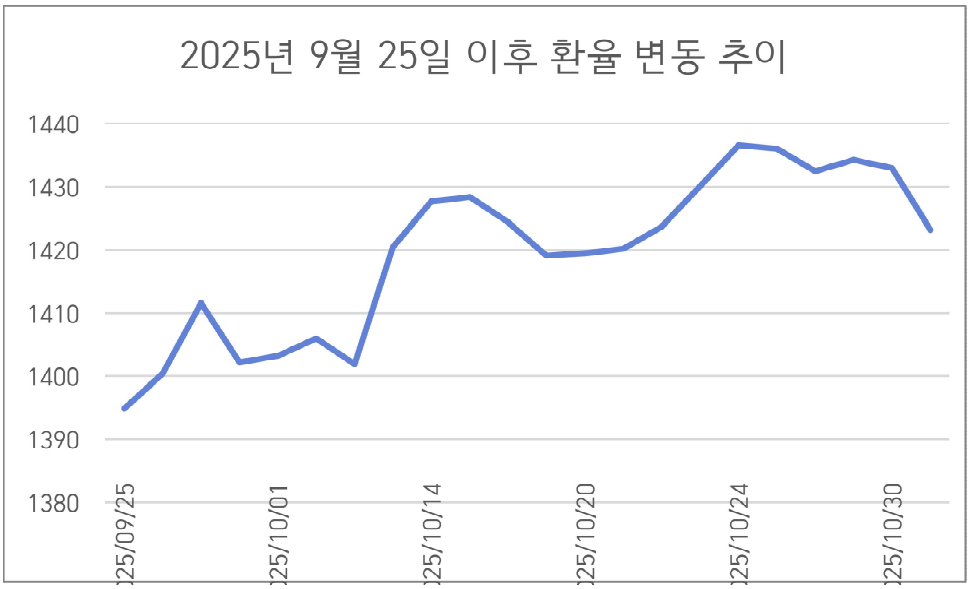
주: 원-달러환율의 말일 자료 값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2025년 환율은 2025년 2월을 전후로 1,466.5원까지 상승한 이후 2025년 6월까지 하락하였으나, 현재(2025.10.)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하였고, 2025년 9월 25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어섰음.

이러한 상황 속, 예산안 편성 이후의 환율 변동 추이를 고려하여 세입예산안에 반영

11) '7월 산업활동 동향', 통계청, 2025.8.

된 환율 수준의 조정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5년 9월 25일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수준을 넘어선 이후, 현재 시점(2025.11.7.)까지 환율은 1,400원을 상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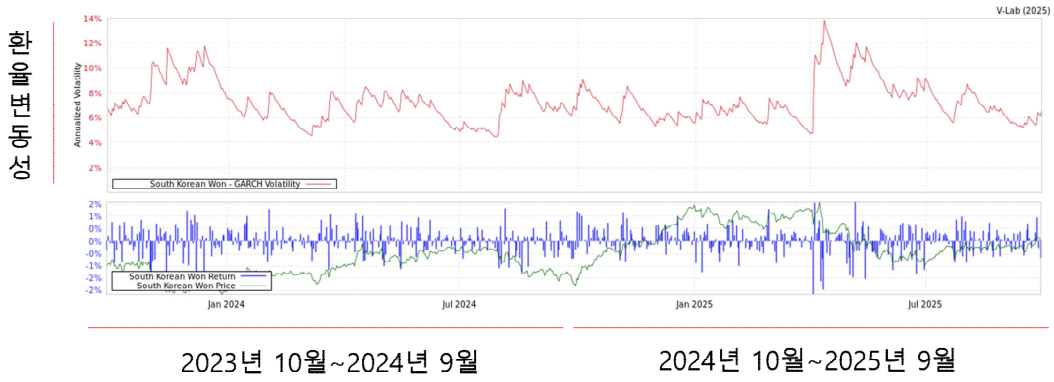
주: 원/미국달러(매매 기준율)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주요 증권사들은 내년 연간 전망 보고서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부근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음.[12)13)] 또한, 환율의 주요 하락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한-미관세협상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2025.10.31.)의 환율은 1,420원대 임을 고려할 때, 시장은 환율이 과거의 평균 수준으로 빠르게 회귀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미국과의 관세협상으로 우리나라의 대미 현금 투자 규모가 연간 200억달러씩 2,000억 달러로 정해진 가운데, 정부는 이를 한국은행 외화보유액 운용수익, 수출입은행·산업은행 정책금융 조달 등으로 충당할 것이라는 입장임.[14)] 그러나, 상기된 자금조달 방식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려가 존재하는 등[15)] 협상 결과로 인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음.[16)]

12) '1,400원대 고공행진' 달러-원…내년 연간 전망 속 흐름은, 연합인포맥스, 2025. 10. 22. , "1,400원이 뉴노멀" 증권가 환율 전망 줄상향…원화 약세 고착 우려, 조선비즈, 2025.10.20
13) 국내 외환부문에서는 미국의 경기·물가 향방 및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글로벌무역 갈등 재심화 등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5.9.
14) 2025.10.30.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5) 한국은행의 외화운용수익의 본래 목적은 외환시장 안정, 대외지급불균형 대응, 통화가치 유지 등이며, 동 재원을 활용하여 대미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달러 유동성 자체가 부족한 시장환경이 왔을 때의 대응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되었음.
16) [달러-원 POLL], 커진 변동성에 고점 상향 …10월 평균 1,426원, 연합인포맥스, 2025.9.30.
조선일보, "외환 4,000억 달러 미 국채 넣으면 매년 이자 4%로 160억 달러 충당", 2025. 10. 31.

또한, GJR-GARCH 모형[17]을 활용한 V-Lab의 원화 변동성에 관한 통계에 따를 경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의 환율 변동성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의 환율 변동성에 비해 상승하였으며,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개방도가 높은 비기축통화국과 금융·외환시장의 심도가 얕은 국가일수록 달러 유동성 축소 등의 대외충격 발생 시 금융외환시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음을 분석하였음.[18]



자료: V-lab 자료 재가공

이와 같이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심화, 미·중 관세협상의 불확실성 지속, 외화 유출 압력 등의 사유로 원/달러 환율이 고환율 구간에 진입한 이후 해당 수준이 상당 기간 유지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세입예산안 의결 시점까지의 환율 변동 추이를 고려하여 세입예산안에 반영된 환율 수준의 조정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세수오차 원인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방안」(2022.2.11.)에서 세입예산안 편성 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경제지표 변화 등 세수변동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세수를 재추계하여 최신 경제여건을 반영하고 세수추계 오차 발생을 방지하겠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었음.

17) 부정적인 충격이 양의 충격보다 더 큰 변동성을 유발하는 금융시장의 비대칭성을 고려하여, 음의 충격에 대해서 그 변동성을 더 크게 반영하는 회귀 모형
18) 금융·외환시장 심도를 고려한 정책대응 분석, 김지현, 김민, 2025.9.22. BOK 이슈노트

(3)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곤란 항목의 세수 영향 보완적 검토 필요
(국세수입, 세제실)

< 검토의견 >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 및 법률안 중 비용 추계가 곤란하다고 제시된 일부 항목은 장기적인 세수 기반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해당 제도의 도입 취지와 적용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입예산안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부가 제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액 중 2026년 세입예산안에 효과가 반영된 상위 10개의 세수효과 추계액과 그 개정내용[19]은 다음과 같음.

[2026년 세수효과 추계액 상위 10개 항목의 2025년 정부 세법개정안 내용]

(단위: 억원)

세 목	개 정 내 용	세수효과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율 조정	21,400
법인세	법인세율 환원	3,336
법인세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 시설 확대	△1,414
부가가치세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기한 종료	1,220
소득세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양도)	967
개별소비세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폐지	423
법인세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합리화	337
소득세	연금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	△146
농특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확대	134
교육세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체계 개편	133

자료: 기획재정부

이 중 증권거래세 및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와 관련된 개정 내용은 시행령상에 규정된 증권거래세율을 상향하는 것으로부터 부수된 세수효과이며, 나머지 개정 내용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의 의결을 전제로 그 세수효과를 추계한 것임.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2025년 세제개편안 혹은 이전에 제출한 법률안 중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밝힌 법률안의 내용 중 다수는 제도의 신설 및 관련 기준의 개

19) 세수의 증감을 불문하고, 세수 변화의 절대값을 고려함

정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세수 기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항목들에 대한 장기적인 세수 구조 변화 분석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입예산안에 미칠 영향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2025년 정부 세법개정안 등 내용 중 세수효과 추계 곤란 항목]

세 목	개 정 내 용	추정 곤란 근거
상증세	유산취득세의 도입 (의안번호 2210618)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납세자들의 상속재산 분할 행태변화를 예상하기 어려워 세수효과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법인세	투자·배당 및 상생 협력 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의 범위 상향 및 환류대상에 배당 추가에 따른 미환류소득의 증가 또는 감소 규모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법인세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현재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추징 세액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
법인세	연결납세 취소·배제 시 사후관리 합리화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 후 5년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이 취소되어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결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때, 결손금에 대하여 이미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익금 또는 손금 산입 제외되는 규모 추정하기 곤란

자료: 기획재정부

특히 각 개정 내용에 대한 세수효과의 정량적 산출이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제도 시행 시 예상되는 세수 영향의 방향성 등을 제시함으로써 중장기적 세입기반 변화에 따른 예산심의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중 세수추계가 곤란할 것으로 밝힌 일부 항목에 대해 5년간 누적 세수효과를 다음과 같이 추계하였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주요 세법개정안 세수 효과]

세 목	개 정 내 용	세수효과
법인세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20]	8,313
부가가치세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5,398

주1: 정부 세법개정안의 누적 세수효과 2026~2030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 국회예산정책처는 적용기한 연장 외에 환류대상에 배당포함, 소득범위 확대 등은 향후 배당 및 소득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추계에서 제외하였다는 입장임

(4) 세목 별 추계모형에 활용된 변수 및 개선사항의 적절성 검토 (국세수입, 세제실)

< 검토의견 >

정부의 세입예산안은 정책 기조의 변동 가능성과 세정효율화에 따르는 세수 증가전망의 불확실성으로 세입 규모의 변동 가능성이 존재함. 따라서, 정부는 정책 기조 변동에 따르는 세수 변화분을 반영하고, 세정효율화에 따르는 세수 증가분의 세목별 추정방식 및 가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등 그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올해 변경된 세수추계 모형(증가율 방식의 양도소득세 회귀분석, AI 활용 법인세 추계)에 대해서는 결산 시점에 실적 대비 오차와 그 원인을 검증하여 모형 변경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주요 세목별 추계모형의 정합성을 점검하되 지역·시기별 이질성과 최신 지표를 반영하는 등 보완이 필요함.

첫째, 예산안 편성 시점과 국회 제출 및 의결 시점 사이의 정부 정책 기조 변화로 세수의 변동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과 세정효율화를 근거로 한 세수 증대 규모의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세수 추계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의 목표 중 하나로 경제성장과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세입기반 확충을 제시하고, ①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② 과세체계 합리화 ③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음.[21] 세입예산안은 정부 제출 세제개편안의 의결을 전제로 세법 개정에 따른 세입 변화분을 추계하여 이를 반영하였고, 그 결과 2026년 국세수입은 2025년 추경예산(372조 850억원) 대비 18조 1,605억원 증가한 390조 2,454억원으로 전망하였음.

해당 국세 수입 증가 전망분은 ① 내수 중심 경기회복 전망, ② 2025년 기업실적 호조등에 따르는 부가세·법인세등의 증가 및 ③ 세제개편안 내용 중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법률 및 시행령상의 개정 내용등이 반영된 것임. 일례로 정부는 증권거래세에 대해 현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상 규정된 0.15%의 증권거래세율[22]을 0.2%로 상향하는

21) 「2025년 세제개편안」
22)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편안을 제출하였고, 2026년도 2조 1,400억원의 세수 증가를 예상하였음.

그러나, 세제개편안 제출 이후 정부의 정책기조가 변화하여 세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요소들의 차이가 발생하였음. 통상적으로 정부의 예산안은 매년 9월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회 동안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고, 2026년 예산안의 경우 2025.9.3.에 국회에 제출되었음. 그러나, 예산안 제출 이후 정부의 정책기조가 변경되는 경우, 예산 편성 당시의 전제와 실제 정책 방향의 차이로 인해 세수의 변동이 확대되어 세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일례로, 세제개편안 및 세입예산안 편성 당시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할 것이라는 입장이었음.[1] 그러나 2025. 9. 15.을 기점[23]으로 정부는 현행대로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하였음. 당초 정부는 대주주 기준 하향에 따라 내년도 양도소득세가 약 967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정책 기조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세입 증가분의 감액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한편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4]은 종전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였을 당시 고려하지 못한 정책변수로서, 해당 정책 기조 변동에 따르는 주택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세수 변화분 역시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세정효율화로 인한 세수 증가는 그 세수 증가분의 전제가 되는 요소들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정부는 세정효율화를 근거로 2026년 2.4조원

제5조(탄력세율) 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영(령).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8로 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5로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3으로 한다.
2.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1만분의 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만분의 15.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3으로 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0으로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18로 한다.

가.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

23)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종목당 50억원 이상' 유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5. 9.15.

의 세수 증가를 전망하였음. 구체적인 세부 세목별로 종합소득세 3,200억원, 근로소득세 1,600억원, 법인세 9,600억원, 상증세 2,000억원, 부가가치세 8,000억원의 세수 증가를 예상하였음.

[정부의 세정 효율화를 통한 세수 증가 예상분]

(단위: 억원)

구분	성실신고 지원	신고사후관리 +체납관리	기타
종합소득세	1,200	2,000	
근로소득세			1,600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과다공제 원천 차단)
법인세	3,600	6,000	
부가가치세	3,000	5,000	
상증세			2,000 (상증세 감정평가 확대)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는 성실신고 지원 및 신고 사후 검증 강화를 통해 세수의 추가적인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임. 성실신고의 경우 납세자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신고 지원, 과다공제의 원천 차단, 양도·상증세 등 전자신고 시 AI 상담 등 전자신고 편의 제공, 상증세 감정평가 대상 확대를 통한 자발적 시가 신고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며, 신고 사후검증 강화는 신고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공제 및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임.

그러나, 정부에서 세정효율화를 통해 제시된 세수 증대 규모의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세수 효율화를 통한 세수 증대효과는 2026년 2.4조원으로 세목별로 구체적인 추정 방식이나 산정 가정이 공개되지 않아, 해당 수치가 일회성 징세 강화 효과인지, 구조적 세입 기반 강화 효과인지를 명확히 구별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세수 추계분의 적정 증가 규모에 대한 검토가 어려운 상황임.

둘째, 정부가 2026년도 세입예산안 편성 시 변경한 세수추계모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세수추계모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26년 세입예산안 편성 시 주요 세수 추계 개선사항으로서 ①(양도소득세) 종전 변수의 절대값으로 회귀분석한 양도소득세 추계모형을 개선하여, 변수의 증가율 간 회귀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형을 개선하고, ②(법인세) 법인세 추계시 AI를

활용하여, 영업이익을 예측하는 모형에 반영하였다고 밝힘.[24]

우선 양도소득세의 경우, 당초(~2025년도 세입예산안) 거래량·가격·양도소득세 등 '변수의 절대값'을 활용하여 전망하는 회귀모형 추계방식이 활용되었는데, 세수변동성이 크게 증가하게 되어[25] 모형의 정합성이 저하되었고, 2023년 12조 1,637억원(54.0%), 2024년 5조 7,313억원(25.6%)의 대규모 세수오차(세수결손)가 발생하게 되었음.

[최근 양도소득세 오차 현황]

(단위: 억원)

연도	본예산 (A)	징수실적 (B)	오차 (B-A)	오차율 (B-A)/B
2021년	168,857	367,072	198,215	54.0
2022년	224,380	322,333	97,953	30.4
2023년	297,197	175,560	△121,637	△40.9
2024년	224,165	166,852	△57,313	△25.6
2025년	206,011	195,628*	△10,383	5.3
2026년(예산안)	205,245	-	-	-

* 2025년 징수실적, 오차, 오차율은 정부 세입 재추계치(재전망시점 2025.9.)을 기반으로 한 예상치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재작성

이와 관련하여 IMF는 변수 간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증가율 간 관계(growth on growth) 분석 등으로의 양도소득세의 추계 모형 개선을 권고하였음. 이는 일반적으로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변수들이 자연증가하는 효과가 변수 간 관계로 파악되어 절대값 간 회귀분석 시 그 정확도를 저해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거래량 가격 등 '변수의 증가율' 및 양도소득세의 '증가율' 간 관계를 회귀분석하는 방식으로 모형을 개선하였음.

이에 2026년도 예산안에 새롭게 도입한 세수추계모형이 최근 경제환경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하여 정부가 새로운 추계모형에 과거 5년간 세수를 재추계해본 결과, 실적 및 전망 간 평균 오차가 축소되었고 기존모형에 비해 오차율 변동폭이 축소되어 전반적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력이 개선된 것으로 보임.

24) 「2026년도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2025. 9. 3.)
25) 2023년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 영향에 따른 부동산 침체로 인해 양도세등이 감소하였고, 2024년 건설투자 부진, 토지 거래량 감소 등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어 양도소득세가 부진하였음. 기획재정부 「2026년도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 및 「2025년도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

[세수추계 개선 전후 추계결과 비교]

(단위: 억원, %)

구 분	세수실적	기존 추계모형	오차		개선 추계모형	오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20년	236,558	243,108	△6,550	△2.8	254,185	△17,627	△7.5
2021년	367,072	367,785	△713	△0.2	364,198	2,874	0.8
2022년	314,276	264,417	49,859	15.9	297,359	16,918	5.4
2023년	175,564	159,901	15,663	8.9	189,754	△14,190	△8.1
2024년	166,852	193,198	△26,346	△15.8	172,787	△5,935	△3.6

자료: 기획재정부

다만, 변수의 증가율 간 관계를 도출하는 회귀분석 모형은 외생변수 및 경제 급변동기에 오차를 과다 추정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26] 증가율 회귀모형은 규모증가에 따르는 내생적 상승효과를 제거하여 변수 간의 관계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통상적으로 단기 변동이나 일시적 외생 충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토지, 주택, 건물분, 주식 등으로 구분하여 추계되는데, 토지 및 주택등은 관련 정책에 따라 그 가치 변동성이 큰 자산들로 정책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음. 따라서, 2026년 예산안 편성 당시 활용된 '증가율 간 회귀분석' 방법의 추계방식의 적절성을 결산 시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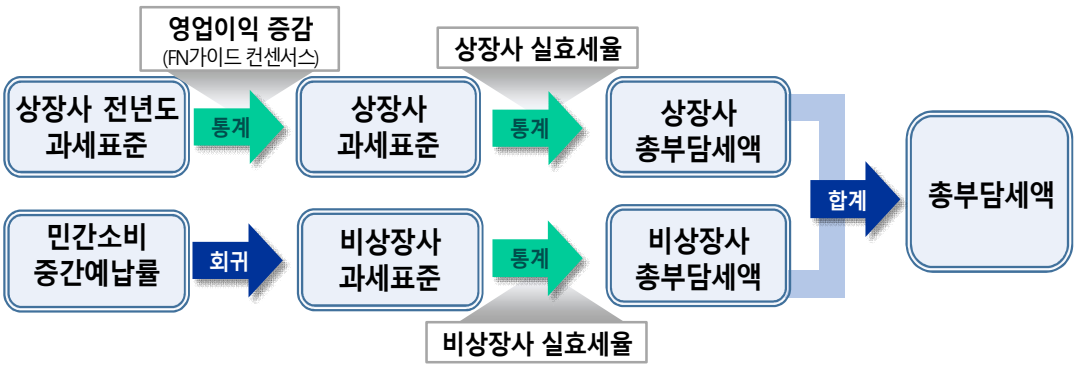
다음으로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2023, 2024년도 세입예산안 편성 당시 회귀모형으로 전체기업의 매출액을 구한 뒤 이익률을 추정해 실적을 도출하고, 소득공제 이월결손금 등의 국세통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택하였으나, 2023년 24.5조원, 2024년 15.1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법인세수 오차가 발생하였음.

이에 정부는 단계적으로 국세통계를 적용하는 방식을 대신하여 2025년도 세입예산 추계분석 시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과세표준을 각각 도출하고 기업 유형별로 실효세율을 활용해 총 부담세액을 전망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였음. 특히 상장사의 과세표준을 추정하기 위해 상장사의 전년도 과세표준에 민간 컨센서스(FN 가이드)를 반영하고, 비상장사는 회귀모형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전망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음.

---

26) Pischke, "Lecture Notes on Measurement Error"
"In this case, differencing doubles the variance of the measurement error while it might reduce the variance of the signal.", LSE

■ <예시> 법인세 신고분 추계모형('25년 예산안)



[최근 법인세 오차 현황]

(단위: 억원)

연도	본예산 (A)	징수실적 (B)	오차 (B-A)	오차율 (B-A)/B
2021년	533,054	703,963	170,909	24.3
2022년	749,380	1,035,704	286,324	27.6
2023년	1,049,969	804,195	△245,774	△23.4
2024년	776,649	625,113	△151,536	△19.5
2025년	835,671	836,335*	664	7.9
2026년(예산안)	865,474	-	-	-

* 2025년 징수실적, 오차, 오차율은 정부 세입 재추계치(재전망시점 2025.9.)을 기반으로 한 예상치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재작성

그러나, 민간 컨센선스는 최신 전망이 있는 일부 기업만을 포함하고 있고, 1개 증권사만 전망한 경우에는 컨센서스에 대한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음. 이에 정부는 2026년 법인세 추계 시 컨센서스·뉴스·주가·재무제표 등 데이터를 토대로 AI를 활용하여 영업이익을 예측하였음. 정부는 이를 통해 영엉입익에 대한 전망 정확도가 제고되고 민간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에 대해서도 전망이 가능해졌다는 입장임.

<법인세 추계모형 개선>



자료: 기획재정부

이와 관련하여, 결산 시점에서 정부가 2026년도 세입예산안 편성 시 추계한 법인세수에 상당 규모의 오차가 발생한 경우, AI를 활용한 영업이익 전망의 오차 개선 가능성뿐만 아니라 추계모형 자체의 개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 「국가재정법」[27]은 예산안 첨부서류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명시하고, 해당 보고서에는 세입추계의 방법과 근거, 그리고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와 원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정부가 제출한 2026년 예산안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따르면, AI를 활용해 추정한 '영업이익 전망'은 전년도 상장사 과세표준을 기초로 해당 연도 상장사 과세표준을 추정하는 핵심 변수이며, 상장사의 총부담법인세액은 이 과세표준에 통계적으로 산출된 실효세율을 적용해 산정됨. 이러한 구조에서 법인세 세수에 대규모 오차가 발생할 경우, AI를 통해 추정한 영업이익 전망치의 오차 개선 가능성과 함께, 상장사·비상장사로 구분하여 추계하는 현행 추계모형의 구조적 개선을 통한 오차의 축소 가능성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AI 모형의 알고리즘 구조·가중치 산정 방식 등 AI의 모형적 요인이 오차에 기

27)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세입추계 개선사항을 포함한다)

여했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기획재정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개선방안을 연구 중임.

따라서, 2026년도 세입예산안 편성 시 활용된 AI 기반 법인세 세수추계모형에 대해 결산 시점에서 실제 세수실적과의 오차 및 오차의 원인 발생이유를 분석하고, 세수추계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기타 세목으로 AI 활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임. 반면, 예측오차가 큰 경우 AI의 내재적인 모형의 문제점 및 그 개선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추계모형 자체에 대한 개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주요 세목별 회귀모형을 활용한 세수 추계 시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시기별 특성과 최신 지표를 반영하는 등 추계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① 소득세

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세(22조 6,270억원), 양도소득세(20조 5,245억원), 이자소득세(4조 6,423억원), 사업소득세(5조 2,665억원), 근로소득세(68조 4,511억원), 연금소득세(8,775억원), 기타소득세(2조 4,679억원), 퇴직소득세(1조 2,490억원)으로 구분하여 추계됨. 그 중 양도소득세는 토지분, 주택분, 건물분, 주식 등 및 세법개정효과로 나누어 추계됨.

이 중, 양도소득세 중 토지분 및 주택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데이터를 분리하는 패널데이터 회귀모형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주택시장안 안정화 대책」은 ①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② 수도권·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하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는 지역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부동산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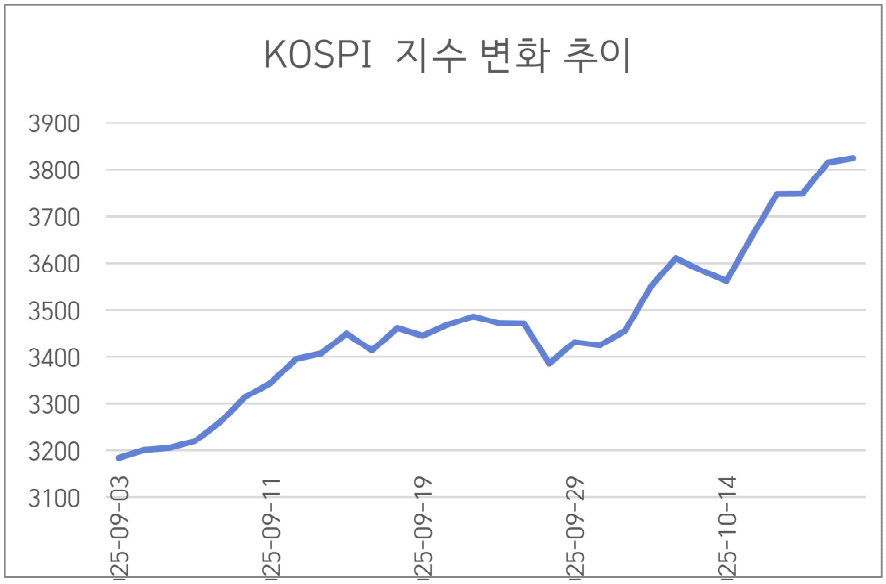
한국은행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25년 7월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지수[28]는 수도권이 152.0, 지방이 105.2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17년만에 수도권 대비 지방 아파트 값이 가장 크게 확대된 값임. 또한 통계청 제11순환기[29] 경기 수축기간[30]에

28) 2017년 11월의 매매가격을 기준값 100으로 하는 가격지수
29) 2013년 3월 경기 저점이후 시작되어 2017년 9월 경기 정점을 거쳐 2020년 5월에 마무리된 경기 순환주기
30) 2017.9~2020.5.

는 수도권의 주택경기는 확장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지방의 주택경기는 수축국면에 접어들어 주택 가격의 움직임이 지역별로 상이한 패턴을 보였음.

이를 고려하였을 때, 현재와 같이 지가 및 주택매매 가격을 전국 단위로 회귀분석하는 방식 외에도, 정책효과 및 시장 특성의 차이를 반영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지역을 구분하는 방식의 회귀분석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양도소득세 중 주식분 관련하여, 예산안 제출 이후(2025.9.3.) 국내 주식시장의 거래대금 및 코스피지수가 급증하였고 이는 양도소득세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내주식시장은 2025년 10월 22일 기준 3883.68로 마감해 6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9월 평균 증시거래대금은 19조원을 초과하여 8월 평균 거래대금 15조 4,000억원을 웃돌고 있음.[31] 국내 주식시장의 활성화는 증권거래세 뿐만 아니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확정신고납부기간이 차년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자료: 한국은행 통계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소득세는 136.7조원으로, 2025년(129.5조원) 대비 7.2조원(5.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이는 정부의 세입예산안 대비 4.6조(3.5%) 더 높은 수치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임금상승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의 증가, 경제성장 및 민간소비 증가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증가, 부동산 및 주식시장 회복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31)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

증가로부터 기인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② 법인세

법인세는 총 86조 5,474억원으로 추계되며, 법인세 신고분은 자납분, 중간예납분, 고지분, 세정효율화 및 세법개정 세수효과분으로 구분하여 추계됨.

[2026년 예산안 법인세 신고분 산출근거]

633,653(억원)	=	자납분	+	중간예납분	+ 고지분	+세정효율화	+세수효과

자료: 기획재정부

[2026년 법인세 신고분 중 중간예납분 산출근거]

$$\text{'26년 중간예납분} = \left(\frac{\text{'25년 총부담세액} - \text{'25년 원천징수}}{\text{'26년 중간예납분 추정}} \right) \times 50\% \times \text{최근 납부비율}$$

주」 최근 납부비율: '24년 귀속 납부비율 반영
자료: 기획재정부

2026년 법인세의 중간예납분은 2025년 총부담세액에서 2025년 원천징수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최근의 납부비율을 곱하여 추계되었음. 이때 최근 납부비율은 2024년 귀속 납부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음. 이는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이 직전연도 기준과 가결산 기준 중 택일하여 중간예납을 산출하는 방식에서 가결산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산출하도록 의무화되어, 관련 통계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정부가 제출한 2025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는 법인세율 인상으로 중간예납분에 대한 납부비율이 변동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될 경우,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법인세율이 1% 인상됨에 따라,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법인들의 중간예납할 경제적 유인이 감소할 수 있음.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으로 인한 세수효과를 3,336억으로 예상하였는데, 법인세율 인상으로 중간예납분에 대한 납부비율이 변동할 수 있고 이는 법인세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법인세는 87.5조원을 2025년(83.9조원) 대비

3.6조원(4.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이는 정부 예산안(865.조원)을 0.9조원(1.1%) 상회하는 수준임.

(5)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규제방식 개선 필요(국세수입, 세제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규정 방식이 국세감면증가를 통제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해당 규정이 권고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세감면 규모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규범력을 제고함으로써 국세감면규모 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세감면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세법 등에 따른 조세지출[32]의 합을 의미하고, 국세감면율은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국세감면액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24년 국세감면액은 70조 5,171억원으로 2023년 대비 6조 2,180억원(9.8%) 증가하였고, 국세감면율은 16.1%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음[33].

[2026년 국세감면액 증감 전망]

(단위: 억원, %, %p)

구 분	2025년(전망)	2026년(전망)	증 감
국세감면액 (A)	764,719	805,277	40,558
국세수입총액(B)주)	4,003,076	4,195,673	192,597
국세감면율 [A/(A+B)]	16.0	16.1	0.1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5.5	16.5	1.0

자료: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주: 세입예산액(2025년의 경우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6년도 분야별 국세감면 전망액을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전년 대비 2조 417억원 증가한 41조 2,343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전년 대비 1조 1,241억원 증가한 17조 9,342억원,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전년 대비 2,702억원 증가한 6조 32억원,

32) 조세지출이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함(「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33) ('14.) 14.3% → ('15.) 14.1% → ('16.) 13.4% → ('17.) 13.0% → ('18.) 13.0% → ('19.) 13.9% → ('20.) 14.8% → ('21.) 13.5% → ('22.) 13.0% → ('23.) 15.8%

R&D 분야는 전년 대비 2,484억원 증가한 4조 4,152억원 등으로 상위 4대 분야 조세지출이 모두 증가하여 역대 최대규모인 총 80조 5,27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세감면율 또한 16.1%로 역대 최고로 전망됨.

[분야별 조세지출 전망치]

(단위: 억원)

12대 분야 분류기준		2025년(A)	2026년(B)	(B-A)
1	일반·지방행정	97,453	102,344	4,891
2	공공질서·안전	0	0	0
3	외교·통일	11	11	0
4	국방	181	187	6
5	교육	10,276	10,808	532
6	문화·체육·관광	3,704	3,823	119
7	환경	24,549	25,152	603
8	보건·복지·고용	391,926	412,343	20,417
9	농림·수산·식품	57,330	60,032	2,702
10	SOC	11,032	11,075	43
1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8,101	179,342	11,241
12	R&D	41,668	44,152	2,484

* R&D 항목은 다른 분야와 중복계상

자료: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한편, 「국가재정법」 은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국세감면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의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국세감면율을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의 평균값에 0.5%를 더한 비율 이하로 관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34].

---

34) **「국가재정법」**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① 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이란 법 제61조에 따라 정부가 작성한 결산 중 국세수납액(결산을 작성하기 전 회계연도의 경우에는 법 제33조의 예

조세지출은 엄격한 사전·사후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일반적인 재정지출과 달리 예산관리체계 외부에서 집행되고, 별도의 결산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출내역에 대한 적시성 있는 환류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조세지출규모 및 내역의 가시성이 낮아 세입 감소가 누적되기 쉬운 구조임. 또한 세부담이 차별화되는 과정에서 자원배분 왜곡, 형평성 저하 가능성이 재정지출보다 높으며, 세법 개정의 형태로 반영됨에 따라 정책변경의 유연성도 떨어짐. 따라서 국가의 지출은 원칙적으로 재정지출형태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세지출은 예외적·한시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가재정법」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감면율을 한도 이하로 관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여 조세지출의 확대로 인한 과도한 국세감면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35].

그런데 최근 5년간 매년 국세감면액이 평균 4조원 이상 증가하고 있고, 최근 3년간 국세감면율이 지속적으로 법정한도를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2026년도에도 국세감면규모가 별다른 제한 없이 상당 규모 증가하고 있음. 이는「국가재정법」상 조세지출 규모 확대에 대한 통제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으며, 현행 국세감면율 제한규정에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의미함.

먼저 조세지출 감면한도 규정방식이 적정한지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최근 3년(2022~2024)간 조세지출 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초과하였음. 또한 2026년도 국세감면예상규모(80조 5,277억원)는 전년 대비 5.3% 증가함. 그런데 해당 연도의 조세지출 감면한도는 16.5%이고 국세감면율은 16.1%로서 국세 감면규모가 법정한도를 준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즉 전년 대비 국세 감면규모가 5% 이상 대폭 증가하였고 별다른 개선조치가 이루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못했던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2026년도에는 준수하는 결과가 발생함.

산안 중 국세 세입예산액)과 「부가가치세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88조제1항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의 국세감면액을 말한다.

③ 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것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1천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35)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검토보고 pp. 109~111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 및 전망(2019~2025)]

(단위: 억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국세감면액(A)	529,357	570,248	635,484	697,664	705,171	764,719	805,277
국세수입총액(B)	3,036,717	3,639,730	4,229,237	3,703,803	3,656,829	4,003,076	4,195,673
국세감면율 [A/(A+B)]	14.8	13.5	13.0	15.8	16.1	16.0	16.1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3.6	14.3	14.6	14.3	14.6	15.5	16.5

* 국세수입총액: 국세수납액에 지방소비세액을 포함한 금액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산술평균 + 0.5%p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이와 같이 국세 감면규모 축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수년간 준수하지 못하고 있던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준수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원인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에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규정한 방식에서 찾을 수 있음. 「국가재정법」은 조세지출 통제를 위해 "국세감면율 한도"를 규정하는 방식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그 한도를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 + 0.5%p"로 규정하고 있음. 즉 기획재정부는 국세감면한도를 "절대적 상한"이 아니라, "이전 수준 대비 증가하는 폭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즉 기획재정부가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정한 방식은 법정한도가 과거 수치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방식임. 그런데 이 경우 최근 몇 년간 국세감면율이 높은 수준이었다면 차년도의 감면한도 자체가 같이 상승하게 됨. 감면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더라도 법정한도가 과거의 감면율을 반영하여 함께 상승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감면규모가 상승하더라도 '형식상'으로는 법정한도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와 같은 시행령상 규제방식은 "총량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증가속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세감면율 규모 자체를 제한하려는 법률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실례로 2023년도 국세감면율은 15.8%로 국세감면한도(14.6%)를 1.2%p 초과했고, 2024년 국세감면율은 16.1%로, 국세감면한도(14.3%)를 1.8%p 초과하였으며, 2025년도 예상 국세감면율은 16.0%로 국세감면한도(15.5%)를 0.5%p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시행령의 국세감면율 한도 규정방식에 따르면 2026년도의 국세감면율은 16.5%로 2025년 대비 1.0%p 증가하게 됨[36]. 즉 3년간 연속하여 국세감면한도를 준수하지 못하고 한

도를 초과할 경우, 차년도에는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국세감면한도가 자동으로 상승하게 되므로, 국세감면규모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없더라도 감면한도를 준수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규정방식으로는 국세감면규모의 증가를 통제하기 어려움.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①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세감면율 한도를 GDP 대비 일정 기준, 평균기준 등 국세감면 규모를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산정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②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기술적·세부적 사항으로 보기 어렵고, 단기적·탄력적인 조정이 필요하지도 않으며,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사항도 아니어서 대통령령에서 결정해야 할 실익이 높지 않으며 오히려 국가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보다는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조세지출 감면규정의 규범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현재 국가재정법상 조세지출 감면한도 규정은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권고 형식의 선언적 규정 임에 따라 조세지출의 확대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 준수를 의무화할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런 대규모 조세지출 수요가 발생하거나 경기 부양, 민생 회복 등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탄력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입장임.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우려하는 문제들에 대한 대응은 원칙적으로 조세지출보다는 추가경정예산안, 예비비 등 재정지출을 활용하여 대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감면율을 통제하고자 하는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 최근 세입기반이 약화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세수입의 감소와 조세형평성 저해를 초래하는 조세지출의 증가에 대해서는 통제장치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따라서 ① 현재 한도 준수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거나, ②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초과 사유, 개선 방안, 일몰기한 도래항목의 종료계획 등 조세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해당 규정의 규범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36) 3개년도 국세감면율의 평균+0.5%p = (15.8+16.1+16.0)/3+0.5(%) = 16.5%

이와 관련하여 국세감면한도 준수를 의무화하고 국세감면율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내역 및 사유를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37]」이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38].

37) 안도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05), 차규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0)
38) 2025.11.10.기준

(6) 조세지출의 역진성 개선 대책 마련 필요(국세수입, 세제실)

저소득자 및 중소기업보다 고소득자 및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에 귀착되는 조세지출 수혜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조세지출의 역진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지출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부가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에 따르면, ① 개인별 귀착의 경우 최근 3년(2022~2024년)간 중·저소득자에 대한 비중은 68.3%에서 67.5%로 하향하고 있는 반면,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지출 비중은 31.7%에서 32.5%로 상향하고 있음. 또한 향후 전망도 중·저소득자의 비중은 2026년 64.9%까지 감소하는 반면, 고소득자에 대한 지출비중은 35.1%로 증가함.

또한 ②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전망은 2024년 75.1%에서 2026년 71.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의 경우 2024년 9.8%에서 2026년 16.5%로 증가하고 있음.

[최근 3년(2022~2024)간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 실적 및 향후 전망]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개인	① 중·저소득자	269,883	68.3	291,472	67.7	310,396	67.5	318,590	65.2	333,560	64.9
	② 고소득자	125,080	31.7	139,076	32.3	149,625	32.5	170,003	34.8	180,369	35.1
	계 (총계 대비)	394,963	100.0 (62.2)	430,547	100.0 (61.7)	460,022	100.0 (65.2)	488,593	100.0 (63.9)	513,929	100.0 (63.8)
기업	① 중소기업	160,895	68.1	180,546	68.8	180,614	75.1	194,015	71.9	202,456	71.1
	② 중견기업	9,378	4.0	10,194	3.9	9,852	4.1	10,698	4.0	11,315	4.0
	③ 상호출자제한기업	38,878	16.5	43,804	16.7	23,476	9.8	42,387	15.7	47,073	16.5
	④ 기타기업	27,159	11.5	27,872	10.6	26,649	11.1	22,650	8.4	23,870	8.4
	계 (총계 대비)	236,311	100.0 (37.2)	262,417	100.0 (37.6)	240,591	100.0 (34.1)	269,751	100.0 (35.3)	284,713	100.0 (35.4)
(3) 구분곤란		4,210		4,700		4,558		6,375		6,634	
총 계		635,484		697,664		705,171		764,719		805,277	

자료: 기획재정부
주: 수혜자 구분 기준
⑴ 개인 - 근로소득자, 농어민·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① 중·저소득자 : 근로소득이 8,700만원(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 이하인 근로자 및 농어민·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② 고소득자 : 중·저소득자를 제외한 개인
⑵ 기업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①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③ 상호출자제한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
④ 기타기업 : 중소기업,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기업
⑶ 구분곤란 - 비거주자 수혜 대상 항목, 귀착이 불분명한 양도소득세 등

먼저 고소득자 감면 비중의 증가는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등 고소득자에 대한 귀착비율이 높은 소득공제의 조세지출규모가 상당 규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며, 저소득층 귀착비율 감소는 저소득자에 대한 수혜가 높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의 항목들은 증가율이 낮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수혜자 귀착 특성에 따른 주요 항목의 실적 전망치(개인)]

(단위: 억원, %)

구분	항목	2024년 기준 수혜자 귀착(개인)		2024년 (실적) (A)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B)	증가율 ((B-A)/A)
		중·저소득자	고소득자				
고소득자 수혜높은 항목주)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34,379	34,641	69,020	73,711	77,560	12.4
		(49.8)	(50.2)				
	연금보험료공제	26,592	17,784	44,377	48,169	50,650	14.1
		(59.9)	(40.1)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13,555	16,640	30,195	32,833	33,015	9.3
		(44.9)	(55.1)				
	연금계좌세액공제	8,925	9,355	18,280	23,768	25,064	37.1
		(48.8)	(51.2)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6,374	7,168	13,542	13,727	13,806	1.9
		(47.1)	(52.9)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5,669	4,689	10,359	10,680	11,481	10.8
		(54.7)	(45.3)				
저소득자 수혜높은 항목	근로장려금	47,122	0	47,122	46,581	45,760	△2.9
		(100)	(0)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22,266	0	22,266	21,917	22,602	1.5
		(100)	(0)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0,246	1,138	11,384	11,638	12,260	7.7
		(90)	(10)				
	자녀장려금	9,855	0	9,855	8,754	7,987	△19.0
		(100)	(0)				

자료: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기초로 재구성

주: 조세지출 규모 기준 상위 20대 항목 중 고소득자 귀착 비율이 평균(32.5%)이상인 항목

다음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대한 수혜비중의 증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에 높은 수혜가 집중되는 조세지출항목의 증가 규모(2024~2026년 증가율 48.6~70.0%)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주로 중소기업에 수혜가 귀착되는 항목(동 기간 2.1~21.6%)의 증가 규모에 비해 크기 때문으로 보임.

[수혜자 귀착 특성에 따른 주요 항목의 실적 전망치(법인)]

(단위: 억원, %)

구분	항목	2024년 기준 수혜자 귀착(법인)				2024년 (실적) (A)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B)	증가율 ((B-A)/A)
		중소	중견	상호출자제한기업	기타				
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높은 항목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4,412	2,763	10,787	1,611	29,574	41,474	43,954	48.6
		(48.7)	(9.3)	(36.5)	(5.4)				
	통합투자세액공제	6,033	2,183	5,867	3,610	17,694	25,680	30,075	70.0
		(34.1)	(12.3)	(33.2)	(20.4)				
중소기업 수혜높은 항목	통합고용세액공제	34,254	2,389	562	901	38,106	43,087	46,340	21.6
		(89.9)	(6.3)	(1.5)	(2.4)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31,039	882	1,589	1,753	35,264	36,293	37,429	6.1
		(88)	(2.5)	(4.5)	(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3,636	0	0	0	23,636	23,378	24,127	2.1
		(100)	(0)	(0)	(0)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12,544	323	602	1,902	15,370	17,680	18,233	18.6
		(81.6)	(2.1)	(3.9)	(12.4)				

자료: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기초로 재구성

주: 조세지출 규모 기준 상위 20대 항목 중 상호출자제한기업 귀착 비율이 평균(16.5%) 이상인 항목

조세지출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항목의 전망치를 살펴보더라도, 고소득층·대기업 위주 수혜 항목들의 경우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등을 제외하면 2026년도까지 순위가 급등하거나 유지되는 반면, 저소득층·중소기업 위주 수혜 항목의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제외하면 대부분 순위가 하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세지출의 역진성 문제는 향후 수년간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조세감면액 기준 연도별 상위 20개 항목의 전망치]

(단위: 억원)

	2024년 (실적)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1	보험료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69,020	보험료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73,711	보험료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77,560
2	근로장려금	47,122	연금보험료공제	48,169	연금보험료공제	50,650
3	연금보험료공제	44,377	근로장려금	46,581	통합고용세액공제	46,340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40,88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43,85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46,298
5	통합고용세액공제	38,106	통합고용세액공제	43,087	근로장려금	45,760
6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35,26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41,47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43,954
7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등	31,111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36,293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37,429
8	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30,195	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32,833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등	33,775
9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9,574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등	32,751	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33,015
10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3,636	통합투자세액공제	25,680	통합투자세액공제	30,075
11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22,266	연금계좌세액공제	23,768	연금계좌세액공제	25,064
12	연금계좌세액공제	18,280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3,378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4,127
13	통합투자세액공제	17,694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21,917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22,602
14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15,370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17,680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18,233
15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15,118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15,919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16,762
16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13,542	무주택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14,611	무주택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15,391
17	무주택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12,279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13,727	자녀세액공제	14,951
18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1,38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1,638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13,806
19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등	10,359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등	10,680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2,260
20	자녀장려금	9,855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9,845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등	11,481

자료: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기초로 재구성

주: 고소득층·대기업 위주 수혜 귀착항목 저소득층·중소기업 위주 수혜 귀착항목

기획재정부는 조세감면 수혜 귀착의 역진성이 심화되는 현상에 대해 ① 고소득자 감면비중의 증가는 사회보험 관련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 사

회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구조적 지출 성격의 항목에서 감면규모가 확대됨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② 대기업 비중의 증가는 경기회복, 첨단전략산업 지원 등에 따라 투자 여력이 높은 대기업의 투자·R&D 관련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조세지출 역시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 조세 제도에 일정부분 구조화된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중장기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성격의 조세지출은 제도의 변경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경기회복·정책적 지원에 따른 R&D 규모의 증대과정에서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혜를 얻는 것도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다만 조세지출 역시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준수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으므로, 최근 심화되고 있는 역진성을 완화함으로써 고소득자·대기업 위주의 수혜 증가 경향을 저소득자·중소기업 위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먼저 개인 측면에서 볼 때, ① 연금보험료공제 등의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절감 세액이 크고, ② 특별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기부금 세액공제등은 납부세액이 적은 저소득자들은 전액 적용되지 못하거나 공제한도의 일부만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 고소득자들은 전액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③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 공제, 조합 출자특례 등은 한도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 한도를 전액 충족시킬 자금 여력은 주로 고소득자에게 있는 반면, 저소득자들은 생활비의 활용, 현금 유동성의 제약 등으로 한도를 충족시키기 어려움. 또한 ④ 연금·기부·출자 같은 선택형 지출은 재정 여력 및 정보 접근성이 높은 고소득층의 참여율이 높은 특성이 있음.

따라서 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의 전환 등 공제방식의 구조를 전환하고, ②연금계좌·보험·기부·출자 등의 한도 및 적용율을 소득구간별로 보다 세분화하여 지원을 소득하위구간에 집중하며, ③ 저소득층에 대한 제도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제도 자체가 내재하고 있는 고소득자 귀착 특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④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등 환급형 조세지출 또는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저소득자 귀착특성이 높은 조세지출의 수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다음으로 법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기업이 주로 수혜를 얻게 되는 항목인R&D 세

제지원,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은 구조적으로 과세표준이 큰 기업일수록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크고, 투자 및 R&D의 절대적 규모가 큰 기업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요건구비·사후검증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있는 기업일수록 수혜를 극대화할 수 있음. 반면 중소기업 및 창업 기업등은 결손상태이거나 영업이익이 저조한 경우가 많아 '세액공제제도 자체'를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전담조직 설치비용이 행정·준수비용에 따른 순손실(행정적 비효율)로 작용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해당 제도 자체가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① 결손기업이나 이익이 낮아 과세표준이 크지 않은 기업도 수혜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② 창업,중소기업의 R&D 투자 증가분에 대해 공제율을 상향하거나, 매출 대비 R&D 비중이 높은 소규모 기업에 가산공제를 적용하는 등 공제구조를 재설정하며, ③ 연구자산, 대규모 설비 중심의 투자보다는 중소기업이 주로 활용하는 비용 항목 위주로 공제제도를 설계하는 등 중소기업·신규 창업 기업에게 보다 친화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또한, ④ 통합고용세액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중소기업 귀착 특성이 높은 조세지출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도 강화함으로써 현행 조세특례제도에 내재된 역진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7) 조세지출 정비 내실화 필요 등(국세수입, 세제실)

조세지출항목을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원 대상 및 규모를 최적화하고,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를 정부 세법개정안에 적극적으로 환류하는 충실히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지출제도 정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조세지출의 확대는 국가 재정수입의 감소 및 세입기반의 약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조세지출제도의 신설 및 폐지는 효과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특히 조세지출은 재정지출과 달리 매년 국회의 예결산 심사 등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일몰조항이 형식화되기 쉬워 '한시적 감면'이 고착화되기 쉬우며, 평가 및 환류가 재정사업에 비해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조세지출의 무분별한 확대는 예산을 활용한 재정지출에 투자할 기회와 여력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음. 따라서 조세지출 제도의 효과적인 정비는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자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따라서 조세지출항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의성, 효용성, 소득재분배 기능, 세수 감소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불필요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6년 조세지출예산서 및 관련 문서 등을 확인해 보면 효과적인 조세지출 정비를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일부 확인됨.

첫째,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제도 정비를 보다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조세지출제도 정비 항목은 제도 신설, 제도 폐지, 제도 재설계 등으로 구분됨. 먼저 ① 제도 신설의 경우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등 총 5건이고, ② 폐지되는 제도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등 7건이며, ③ 조세지출제도 재설계항목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33건임.

[조세지출 제도 신설 내역]

(단위 : 억원)

번호	조 항	내 용	'26년 세수효과
1	조특법 §25의8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27년 이후)
2	조특법 §28의5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추정곤란
3	조특법 §38의3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추정곤란
4	조특법 §97의10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추정곤란
5	조특법 §104의27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27년 이후)

자료: 2026년 조세지출예산서

[조세지출 제도 폐지 내역]

(단위 : 억원)

번호	조 항	내용	조세지출 실적		
			'24실적	'25전망	'26전망
1	조특법 §13의4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0	0	0
2	조특법 §24	통합투자세액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3	조특법 §91의20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종료	13	26	27
4	조특법 §91의22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5	조특법 §104의2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10	10	10
6	조특법 §107의3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778	2,177	2,246
7	조특법 §109의2	노후자동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	160	-

자료: 2026년 조세지출예산서

2025년 세법개정안을 기준으로 할 때, 제도의 폐지가 신설보다 2건 많아 전체 조세지출항목 건수는 2건 순감함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조세지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연도별 조세지출 정비 내역]

(단위 : 건)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안)
신설 (A)	7	8	10	14	4	4	4	5	5
폐지 (B)	6	8	4	22	7	9	6	7	7
순증 (A-B)	1	-	6	△8	△3	△5	△2	△2	△2

자료: 2026년 조세지출예산서

그런데 조세지출 재설계항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세지출 정비 측면에서 보완할 여지가 있음. 재설계항목 33건 중 66.7%인 22건이 조세지출 규모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즉 조세지출 정비제도가 실질적으로 조세지출 확대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조세지출 정비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조세지출 재설계항목의 조세감면 확대/축소 여부]

번호	조특법 조 항	내용	조세감면 확대/축소
1	§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2	§10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3	§13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축소
4	§13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5	§13의3	내국법인의 소·부·장 기업 등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
6	§14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7	§21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확대
8	§24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9	§25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10	§25의7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확대
11	§29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
12	§58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13	§63	수도권 밖 공장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14	§63의2	수도권 밖 본사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확대
15	§66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
16	§68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17	§72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축소
18	§86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확대
19	§88의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축소
20	§88의5, §89의3	조합 등 출자금,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
21	§95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22	§99의9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축소
23	§104의16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확대
24	§104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25	§104의30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26	§105①,②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27	§108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축소
28	§117①	금융시장 효율화, 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확대
29	§117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확대
30	§121의26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31	§126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32	§136	기업업무추진비 중 문화비, 전통시장 지출분 손금산입 특례	확대
33	소득세법 §58의4③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확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기초로 재구성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 정비제도의 취지 및 정비 필요성을 감안하여 조세지출 정비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특히 조세지출항목을 재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조세지출을 단순히 확대하기보다는 지원 대상 및 규모를 최적화함으로써 조

세지출의 투입 대비 효용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조세지출 재설계가 실질적으로 조세지출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세지출예산서에 해당 항목의 재설계에 따른 조세지출의 증가·감소 여부에 대해서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임.

둘째,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를 정부 세법개정안에 적극적으로 환류함으로써 동 제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조세지출평가제도는 조세지출 항목의 일몰이 도래한 경우 실시하는 사후적 평가로서, 해당 조세지출이 도입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조세지출의 경제적·소득 재분배적 효과는 어떠한지, 연장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세지출 정비에 활용하려는 것임.

2025년의 경우 총 27건의 항목에 대해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기획재정부는 그 중 축소의견 6건, 폐지의견 1건을 모두 반영하였으므로 심층평가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조세지출 정비를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임.

[조세특례심층평가 결과 반영 통한 제도폐지 항목]

평가대상	주요내용	평가의견	반영 여부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조특§107의3)	특례 적용 의료기관에서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일몰 종료 필요	일몰종료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기초로 재구성

[조세특례심층평가 결과 반영 통한 제도축소 항목]

평가대상	주요내용	평가의견	반영 여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특§72)	개별법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등의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일부 항목만 세무조정 후 저세율(9%, 12%)로 법인세 과세	- 실제 조합원의 실익 증가나 공익 기여로의 연결이 미흡하고, 조세특례 혜택을 줄이더라도 조합법인의 매출지표는 악화되지 않음 - 일몰연장하되, 일반법인과 유사한 과세표준 산정방식 도입, 이익 규모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일정비율 이상의 조합원 환원·사회공헌 의무화, 일반세율로 과세하되 공익목적사업의 경우 회계 분리하는 등 개선 필요	제도축소 및 일몰연장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조	비과세종합저축(5천만원 이하) 이자소득, 배당소득	- 소득 및 자산요건 없이 고령층 전체를 포괄하는 현행 운용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	제도축소 및 일몰연장

평가대상	주요내용	평가의견	반영 여부
특§88의2)	비과세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조특§88의5, 89의3)	조합원, 회원 등 출자금(2천만원)·예탁금(3천만원)에 대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	- 수혜자 구성과 세제혜택의 적용방식이 당초 정책취지와 상이하므로 일정소득 이하를 대상으로 하거나, 비과세를 분리과세로 변경하는 등 제도 축소 고려 필요	제도축소 및 일몰연장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99의9)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제도의 효과성이 미흡하고, 수평적 형평성 관점에서 문제 있음 - 중소기업에도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비용효과성을 높이고, 감면대상 업종을 재설계하며, 추가 감면요건을 설정하는 등 조세지출 누수방지 위한 제도개선 필요	제도축소 및 일몰연장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기초로 재구성

그런데 총 27건의 조세특례심층평가 중 37%인 10건의 항목에서는 조세특례심층평가의 결과 일몰 연장의 전제로 제시된 제도 정비 등에 관한 권고 사항이 충실히 반영되지 않는 등 환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즉 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7건의 경우, 폐지가 타당하나 조세충격·일부 효용성 등을 감안하여 제도를 축소하거나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심층평가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기획재정부는 해당 의견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지 않고 단순 연장하고 있고, 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3건의 경우 제도축소 또는 재설계 의견이 제시되었음에도 오히려 조세지출 규모를 확대하고 있음.

[조세특례심층평가 결과 반영되지 않고 단순연장·조세지출 확대된 항목]

평가대상	주요내용	평가의견	반영여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7)	본점 소재지·업종·기업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5~30% 세액감면	- 제도 일몰연장 필요성 불성립 - 다만 중소기업 지원방안으로 활용되는 점 감안, 연장하되 단일 감면한도 적용, 10년 이상 동일업종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감면 폐지 등 제도개선 필요	단순 연장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8의3)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등에 출연시 출연금의 10% 세액공제	- 중복되는 세액공제 존재하고, 유사성격의 재정사업 운용되므로 세액공제와 기부금 손금산입 중복 제한, 미환류소득 차감비율 축소 등 조정 필요	단순 연장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 시 지분	- 일몰을 단기적으로 연장하되, 개별 벤처기업이 유치할 수 있는	제도확대 및

평가대상	주요내용	평가의견	반영여부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13의2)	취득금액의 5% 법인세 세액공제	투자금액에 한도 설정하고, 적격투자 대상업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 필요	일몰 연장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특§16)	벤처기업 등에 투자·출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일몰을 단기적으로 연장하되, 개별 벤처기업이 유치할 수 있는 투자금액에 한도 설정하고, 적격투자 대상업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 필요	단순 연장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조특§13)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또는 지분 양도차익 비과세, 벤처투자회사 등의 출자로 지급받은 배당소득 비과세	- 일몰을 단기적으로 연장하되, 개별 벤처기업이 유치할 수 있는 투자금액에 한도 설정하고, 적격투자 대상업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 필요	제도확대 및 일몰연장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조특§74①,④)	특수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을 100%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	- 공공성 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수익규모가 클수록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적 형평성 개선 필요, 직접보조 등 지원방식 다변화 등 제도개선 필요	단순연장
주택청약종합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조특§74①,④)	청약저축 납입금액(연3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 주관적 가치측면에서 소득공제가 주택청약저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 효과성 낮으므로, 유사제도와의 통합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	단순연장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96의3)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차소상공인의 상가임대료 인하 시 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 임대료 인하의 효과가 분명하지 않고, 제도의 본래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임대인들의 세부담 완화 수단으로 활용될수 있음 - 단기적으로는 제도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제도 축소필요하며, '소상공인 직접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업종 기반, 상시근로자수, 평균매출 기준 등으로 지원대상 조정하는 제도 전환 필요	단순 연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특§126의2)	근로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분 중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	-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대규모 사중손실 발생하므로 축소 폐지 타당함 -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폐지보다는 점진적 축소 필요	제도 확대 및 일몰연장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96)	임대주택 호수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감면	- 제도가 의도했던 목표 달성 - 시간 경과에 따라 제도의 효율성하락 - 제도를 통해 불평등 심화	단순연장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기초로 재구성

기획재정부가 조세특례심층평가의 제도 축소·재설계 권고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평가제도의 효용성이 저하됨.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반복적인 미반영이 지속될 경우 평가자의 평가 참여유인을 왜곡시켜 평가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평가제도를 형식화시킬 우려도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 심층평가제도의 취지 및 도입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해당 평가 결과를 제도설계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조세특례심층평가의 제도축소·재설계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제도를 단순연장하거나 확대 연장하는 경우 그 이유를 국회와 공유하여 논의하도록 함으로써 심층평가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도 있을 것임.

(8) 정부의 탄력적 세율 운영에 따른 국세 수입 변동에 대한 면밀한 관리 필요
(국세수입, 세제실)

< 검토의견 >

유류세의 탄력세율과 긴급할당관세는 세입예산안 확정 이후 정부 재량에 따라 운영되어 그 운영 방식에 따라 세입에 유의미한 감소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만, 제도 시행으로 인한 세수 변동폭에 대한 분석 등은 미흡함. 특히 탄력세율·할당관세 조정은 부가가치세 등 연동 세목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세수 추계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정부는 할당관세제도의 운용계획과 두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세수 효과를 정량적으로 산정해 국회에 보고하는 등 통제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첫째, 정부는 탄력세율 운영으로 인한 세수 변화분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등 정부의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운영에 따른 국세 수입 변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994년 교통세로 신설되었는데, 당시 부족했던 도로 및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하여 도입되었음. 1994년 교통세 신설 당시 법률의 유효기간을 10년 후인 2003년 12월 31일로 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이후 2003년과 2006년에 각각 교통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였고, 2007년부터는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목적세로 운영되어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한다는 이유[39]로 2008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동 폐지법률안은 2009년 1월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으나 이후 법률의 유효기간은 매 3년마다 계속 연장되었고, 2024년 유효기간 연장안이 통과되어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상태임.

39) 휘발유, 경유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대상이며, 등유, 중유, 석유가스 등 다른 유류제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점진적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감소하였으며, 2022년부터 유류비 부담 완화 및 물가 안정을 위해 탄력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는 2022년 11.1조원, 2023년 108조원으로 감소하였음. 이는 현행법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 등의 사유로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40] 정부는 물가 안정 및 민생회복 지원 등을 사유로 그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입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1년 결산	22년 결산	23년 결산	24년 결산	25년 전망[41]	26년 예산
국세 총 수입	344.1	395.8	344.1	336.5	370	390.2
교통·에너지·환경세	16.6	11.1	10.8	11.4	13.1	16.4
비중	4.8	2.8	3.1	3.4	3.5	4.2

자료: 예산정책처 및 기획재정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수준은 현행법상 정부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나 탄력세의 시행 유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의 효과가 큰 편임을 고려할 때, 국회와의 정보공유 및 협의 절차의 강화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특히 최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의 예산 편성 수준에 비해 낮은 세수 실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대내외적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탄력적인 저세율을 운용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임. 또한 2021년 말부터 국제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가격 변동폭이 가속화됨에 따라, 2022년 8월 세법개정을 통해 탄력세율의 조정범위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0%로 변경되었음.

---

4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③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41) 2025년 9월 정부의 2025년 전망 재추계에 따른 실적

[교통·에너지·환경세 예산 편성 대비 세수 결손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세입 예산안 편성 당시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 추계 금액	16.8	11.1	15.3	13.1
실적	11.1	10.8	13.1	8.6[42]
세수 결손 금액	5.7	0.3	2.2	-

자료: 예산정책처 및 기획재정부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율 변동 추이]

(단위: 원)

구분		21.11	22.5	23.1	24.7	24.11	25.5
휘발유	기본	475	475	475	475	475	475
	탄력	423	370	332.5	396.7	423	476
경유	기본	340	340	340	340	340	340
	탄력	300	263	238	238	263	319

자료: 예산정책처 및 기획재정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추계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6년 유류세의 탄력세율의 완전 환원을 가정하여 2025년 세수 재추계의 결과값인 13조 824억원 대비 3조 3,298억원 증가한 16조 4,122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나, 해당 결과값 또한 현재 유지되고 있는 탄력세율의 유지 여부 및 대외환경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교육세법」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표준에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분의 15를 가산하여 징수하고 있고, 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역시 재화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어,[43]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변동은 기타 세목에서의 세수 변동을 유발할 수 있음.

---

42) 2025년 8월까지의 진도분임

43)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한편, 2023년부터 이어진 연속적인 세수 결손으로 세원에 대한 조밀한 관리 및 세수 예측 규모에 대한 국회의 심의 필요성이 제고되는 상황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뿐만 아니라 기타 세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운용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사후적 결과 보고 필요성이 제기되는 측면이 있음.

특히,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조정에 따라 감소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휘발유 및 경유의 가격 하락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함. 일부 연구는 탄력세율이 정유사나 유통과정의 마진으로 흡수되었고 인하된 세금의 26~49%만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고, 경유는 12~27%만이 가격 인하분에 반영되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나,[44] 일부 연구는 유류세 인하기간 동안 그 정책효과가 유의한 값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였음.[45]

이와 같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설정으로 인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반면, 탄력세율 인하 조치로 인한 휘발유 및 경유의 소비자의 체감 가격 하락효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수 감소와 소비자 체감 가격 하락 효과를 감안한 적정 탄력세율 수준 등에 대해서는 국회와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과세당국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제도 시행으로 인한 세수 지원액의 규모를 기타 세목(부가가치세 및 교육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추계하고, 정부는 저율 탄력세율 운용으로 인한 휘발유 및 경유의 소비자 체감 가격 하락분과 정유사 및 유통과정에서의 귀착분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내용에 대해 국회와 논의하는 등 균형적인 시각에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정부는 할당관세 시행으로 인한 세수 지원액을 정확하게 추계하는 등 할당관세 부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관세법」 제71조는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할당관세를 규정하고 있고, ① 원활한 물자 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 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유사 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

44) 유류세 인하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장희선,최봉석, 에너지경제연구원 (2023년 3월)
45) 수송용 유류세 한시적 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정책 개선방안 연구, 김태환·정준환, 2023.10.31.

관세율의 ±40%p 범위에서 세율을 낮추거나 높여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46]

그러나 할당관세는 관세수입의 직접적인 감소와 더불어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여러 내국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가산세 효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등의 사전적 통제를 거치지 않고 정부 재량에 의해 시행이 결정되고 있음.

「2024년도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효과분석 결과 보고」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총 125개의 품목을 대상으로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 제도가 적용되었으며, 산업경쟁력 강화(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철강 등)를 위한 소재·원료 품목, 취약 산업(농어업, 섬유 등) 지원 및 물가·수급 안정(LNG, LPG 등)을 위한 품목 및 서민 생활물가 안정 위한 품목 등에 할당관세 제도가 운용되었음. 2024년 할당관세 지원 추정액은 1조 4,301억원으로 2023년 1조 753억원 대비 3,548억원 증가한 값임. 정부는 2023년 대비 LNG 및 원유(나프타·LPG 제조용) 할당관세 세율 인하 및 적용기간 확대[47] 등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2020년~2024년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수 및 세수지원(추정)액]

(단위: 억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관세 수입액(결산, A)		70,585억원	82,270억원	103,241억원	72,882억원	69,723억원
할당관세	품목 수	79개	92개	119개	117개	125개
	세수지원액(B)	3,742억원	6,758억원	19,694억원	10,753억원	14,301억원
	전년대비 증가율	(△20.5%)	(80.6%)	(191.4%)	(△45.4%)	(33.0%)
관세 수입액 대비 세수지원액 비중(B/A)		(5.3%)	(8.2%)	(19.1%)	(14.7%)	(20.5%)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연도별「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결과 보고」에서 발췌

---

46)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7) LNG 및 원유 할당관세 세율 인하 및 적용기간 확대로 할당관세 지원 추정액은 전년 대비 3,605억원 증가

상기된 바와 같이, 할당관세의 적용 품목 수와 세수지원(추정)액의 규모가 최근 3년간 각각 100개·1조원 이상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할당관세와 관련한 「관세법」상 통제는 미비한 상황임. 특히, 국회 등에 제출하는 해당 회계연도 예·결산 관련 자료에 할당관세 관련 사항이 첨부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할당관세에 대한 국회 등의 평가 및 환류작업도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관세의 예산 편성 대비 세수 결손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세입 예산안 편성 당시 관세 세수 추계 금액	8.4	10.7	8.9	7.4
실적	10.3	7.3	7.0	5[48]
세수 결손 금액	△1.9	3.4	1.9	-

자료: 예산정책처 및 기획재정부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따를 경우, 2024년 세입 실적은 예산 편성액 대비 1.9조원 감소한 6조 9,723억원 수준으로, 이는 수입감소 및 긴급 할당관세 실시로 인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이와 같이 긴급 할당관세의 시행은 관세의 실효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세입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였을 때 국회와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 및 협의가 요구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할당관세 중 긴급할당관세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 또한 제기됨. 「관세법」제71조제1항을 근거로 운영되는 정기 할당관세의 경우 정부는 매년 말 정기 탄력관세의 운영계획을 입법화하고, 국내시장 교란 방지 및 산업기반 보호등을 위한 조정관세와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에 대한 운영계획안을 발표하여 과세대상자 및 세입 측면에서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음.[49] 그러나 긴급할당관세의 경우 검토보고가 차년도에 사후적으로 이루어져 긴급할당관세 도입으로 인한 세수변화분에 대한 적확한 추계가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정부는 긴급할당관세 시행으로 인한 세수 지원액 및 이로 인한 실효세율 변

48) 2025년 8월까지의 진도분임

49) 2025년도의 정기할당관세 등에 대한 보도자료는 2024년 12월 2일에 발표되었고, 민생 및 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할당관세를 통한 지원을 지속할 것임을 밝힌바 있음. “민생 및 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할당관세 지속지원”, 기획재정부, 2024.12.2.

화분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세입예산안을 작성하는 당시 이를 변수로서 반영할 필요가 있음.

(9) 물납주식 매각 경과를 고려하여 국세물납주식매각대 예산 조정 필요

(국세물납주식매각대, 국고국)

< 현 황 >

「국세물납주식매각대」는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국세물납증권의 매각대금임.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2조 6,803억원이 감소한 1조 637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국세물납주식매각대 예산안]

(단위: 백만원, %)

목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국세물납주식매각대 (73-733)	3,744,140	3,744,140	1,063,783	△2,680,357	△71.6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는 NXC의 연내 매각이 어려워 2025년 예산 3.7조원이 불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2026년도 「국세물납주식매각대」 예산을 NXC 물납주식 현재가치의 80% 수준인 3.7조원으로 계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세물납이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국세채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현금 조달이 불가능하여 금전 납부가 곤란한 경우 물납 방식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물납제도는 1950년 「상속세법」에 처음 도입된 이후, 법인세(1979년), 양도소득세(1995년), 종합부동산세(2005년)로 적용이 확대되었음. 그러나 물납제도에 대하여 금전납부자와의 형평성, 세금회피 수단으로의 악용가능성 등의 지적이 제기되어 물납적용 세

목을 제한하였고,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제도가 순차적으로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상속세에 관한 물납만 허용되고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50]은 상속세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전 이외의 증권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납부된 증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처분하고 있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물납증권을 수탁받아 관리하며, 물납증권에 대한 가치평가 후 경쟁입찰을 통하여 시장에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은 「국세물납주식매각대」 목으로 징수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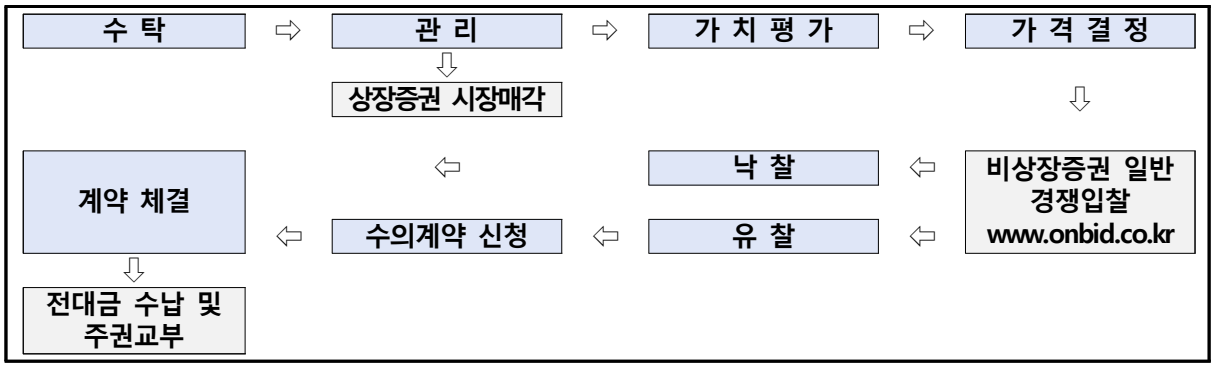
[물납증권 관리체계]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가. 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물납증권 관리·처분 흐름도]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국세물납주식매각대」의 2023년 징수결정액이 1,049억 4,000만원, 2024년 징수결정액이 535억 3,900만원에 불과함에도, 2025년 세입예산으로 3조 7,441억 4,000만원, 2026년 세입예산으로 1조 637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음. 기획재정부가 평년보다 「국세물납주식매각대」를 증액 편성한 사유는 고액 물납주식인 넥슨 지주사(NXC) 지분 매각을 감안한 것임[51].

[국세물납주식 매각 내역]

(단위: 원)

구분	증권명	물납일	매각일	물납금액	매각금액	매각방식	법적근거
2023년	성***(주)	2010-08-06	2023-12-12	1,283,893,190	560,649,000	수의	국유재산법 제43조제1항
	거***(주)	2019-08-02	2023-12-11	866,280,000	2,093,261,000	매수청구	
	(주)우**	2015-10-15	2023-10-06	108,012,986	34,200,000	입찰계약	
	(주)맥**	2023-08-17	2023-11-27	10,190,316,610	1,886,946,270	시장	
	(주)맥**	2021-11-30	2023-09-13	11,948,617,932	6,893,162,000	입찰계약	
	녹****(주)	2015-08-28	2023-10-26	260,644,080	396,624,000	매수청구	
	(주)리*****	2020-01-30	2023-06-21	1,893,333,600	28,252,000	수의	국유재산법 제43조제1항
	(주)성*******	2018-08-13	2023-06-20	1,597,788,970	1,230,309,000	수의	국유재산법 제43조제1항
	우***(주)	2019-07-12	2023-07-19	7,818,935,760	3,519,076,000	매수청구	
	(주)에******	2013-02-01	2023-02-17	24,604,696	29,133,000	입찰계약	
	공*******(주)	2018-02-07	2023-02-21	1,014,501,600	262,492,000	입찰계약	
	(주)삼***	2020-07-24	2023-02-20	567,308,160	104,384,000	입찰계약	
	덕*****(주)	2017-05-08	2023-02-08	72,476,380	18,100,000	입찰계약	
	(주)지**	2020-03-23	2023-01-25	7,511,468,960	1,085,853,000	수의	국유재산법 제43조제1항
	동***(주)	2020-06-26	2023-04-28	22,533,870	23,010,000	매수청구	
	티*****(주)	2021-09-15	2023-04-11	88,847,482,500	89,580,638,763	매수청구	
2024년	(주)전******	2018-12-20	2024-12-23	195,252,220	362,911,500	매수청구	
	(주)비*****	2016-09-01	2024-11-26	1,769,318,120	1,373,142,000	수의	국유재산법

51) 기획재정부는 NXC 평가가치(4조 7,149억원)의 80%는 2025년도 예산안(3조 7,000억원), 20%는 2026년도 예산안(1조원)에 반영하였다는 입장임.

							제43조제1항
	코*****(주)	2014-03-28	2024-12-02	3,167,870,710	3,098,264,202	매수청구	
	티*****(주)	2021-09-15	2024-12-02	29,547,585,000	30,174,431,544	매수청구	
	대*****(주)	2019-04-19	2024-09-06	4,135,000	116,000	입찰계약	
	(주)동***	2014-01-21	2024-08-19	248,615,640	545,615,000	수의	국유재산법 제43조제1항
	(주)국*****	2006-07-25	2024-07-31	1,560,097,632	1,549,944,000	매수청구	
	세***(주)	2021-03-12	2024-05-03	1,593,905,040	2,121,286,000	수의	국유재산법 제43조제1항
	한***(주)	2010-07-29	2024-05-29	5,980,828,420	10,167,783,000	매수청구	
	(주)드***	2015-11-06	2024-03-26	289,164,090	167,032,000	수의	국유재산법 제43조제1항
	(주)테***	2012-08-24	2024-01-31	5,447,160,754	661,813,000	수의	국유재산법 제43조제1항
	(주)신***	2010-01-08	2024-03-15	2,740,331,266	3,607,609,000	매수청구	
	세****(주)	2009-02-06	2024-02-08	231,134,650	60,110,000	입찰계약	
	(주)우***	2015-12-04	2024-01-26	560,611,500	322,077,000	수의	국유재산법 제43조제1항
	(주)바*****	2012-02-23	2024-01-26	49,039,800	149,000	입찰계약	
	대***(주)	2013-02-13	2024-01-29	15,565,680	22,500,000	입찰계약	
	(주)태*****	2021-10-13	2023-12-27	1,683,281,658	115,000,000	입찰계약	
2025년	제*****(주)	2008-02-28	2024-12-23	3,768,044,000	427,200	입찰계약	
	청***(주)	2010-10-12	2025-02-25	90,857,010	68,216,000	수의	국유재산법 제43조제1항
	지****(주)	2016-08-08	2025-04-08	21,357,542,400	23,617,383,000	수의	국유재산법 제43조제1항
	(주)오*	2013-11-19	2025-05-19	2,998,007,160	376,100,000	입찰계약	
	(주)엘*****	2022-11-11	2025-08-04	4,283,163,549	2,925,904,850	시장	

주: 2025년 국세물납주식 매각 내역은 7월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그러나, NXC 지분 매각은 2023년 12월부터 2025년 8월까지 3차례 모두 유찰되었음. 특히, NXC 지분 매각을 위하여 2024년 12월 IBK 투자증권을 매각 주간사로 선정 후 2025년에 매각을 진행하였으나 유찰은 지속되는 상황임.

이와 같이 NXC 지분 매각이 유찰되는 사유는 NXC는 비상장사로 시장성이 낮고, 유족 지분이 69.36%이므로 제3자가 지분을 인수하더라도 경영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며, 비상장 주식 및 경영권 부재 대비 매각가가 높게 설정된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NXC 물납주식 현황]

물납주식 수	지분율	평가가치
85만 1,968주	30.64%	4조 7,149억원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및 경영권 프리미엄 20% 합산)[52]

자료: 기획재정부

[NXC 물납주식 매각 경과]

NXC 매각 경과	기 간	비 고
NXC 지분 매각(1차)	2023.12.18.~12.19.	유찰
NXC 지분 매각(2차)	2023.12.25.~12.26.	
매각주간사 선정	2024.12.11.	단독입찰에 따른 재공고 후 선정
NXC 지분 매각(3차)	2025.6.30.~8.25.(본공고) 2025.8.27.~9.8.(재공고)	유찰

자료: 기획재정부

비상장증권 매각 입찰은 매각예정가의 100%를 기준으로 진행되며 2회차까지 유찰된 경우 3회차부터 최초 매각예정가의 10%씩 단계적으로 감액하여 입찰을 진행할 수 있음[53]. NXC 지분 매각이 지속적으로 유찰되고 있고, 유찰이 지속되는 경우 최초 매각예정가로부터 10%씩 단계적으로 감액하여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편성한 2025년 및 2026년 「국세물납주식매각대」 예산의 수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NXC의 연내 매각이 어렵고 수납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NXC 평가가치 80%인 3조 7,000억원을 2026년도 예산안에 이월하여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기획재정부는 2026년도 「국세물납주식매각대」 예산을 2조 7,000억원(=3조 7,000억원-1조원)[54] 증액하고, 동일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따라 경영권 프리미엄 20% 가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3) 한국자산관리공사 보도자료, 「캠코, 국유 비상장증권 74개 기업 7,074억원 규모 공매」, 2025.8.11.

54) 기획재정부는 NXC 평가가치(4조 7,149억원)의 80%는 2025년도 예산안(3조 7,000억원), 20%는 2026년도

금액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 부족분을 보전하는 ‘기금 예수금(94-943)’에서 감액하여 공자기금의 국채 발행 규모를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예산안(1조원)에 반영하였다는 입장임.

다. 세출예산안 검토의견

(1) 과다산출된 지출구조조정 내역 부적절 (총괄)

< 현 황 >

기획재정부는 2026년 예산안 편성 시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7조원 수준의 지출구조조정을 실행하였다고 발표하였음.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예산안 편성시 발표한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23.9조원으로, 2026년 예산안 편성 시에는 전년에 비해 지출구조조정 규모를 약 3.1조원 증가시킨 27.0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였음.

[최근 5년간 지출구조조정 규모]

(단위: 조원)

구분	2022년 예산안	2023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안	2025년 예산안	2026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규모	12.8	24.1	22.7	23.9	27.0

자료: 기획재정부

2026년 예산안에서의 지출구조조정 내역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지출구조조정 규모가 가장 큰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지출구조조정 규모가 6조 7,341억원이며, 교육부(2조 4,917억원), 중소벤처기업부(1조 8,809억원), 농림축산식품부(1조 3,219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1조 2,620억원) 순으로 지출구조조정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획재정부는 1조 1,965억원의 지출구조조정을 실행하였음.

[2026년도 예산안 편성시 부처별 지출구조조정 규모]

(단위: 백만원)

부처명	국토교통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모	△6,734,116	△2,491,661	△1,880,871	△1,321,900	△1,262,036
부처명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규모	△1,196,460	△1,179,376	△1,090,047	△1,078,773	△955,190
부처명	외교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규모	△666,569	△655,323	△552,263	△443,909	△211,059
부처명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우주항공청	질병관리청	법무부
규모	△147,054	△137,473	△129,122	△125,466	△121,714
부처명	경찰청	국가유산청	국가보훈부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규모	△120,472	△106,493	△89,125	△72,772	△56,185
부처명	해양경찰청	대법원	여성가족부	특허청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규모	△51,836	△48,880	△37,836	△35,371	△27,036
부처명	기상청	국세청	국회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소방청
규모	△26,086	△24,564	△21,348	△18,454	△17,561
부처명	통일부	관세청	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규모	△16,130	△14,787	△12,011	△11,893	△11,068
부처명	재외동포청	병무청	조달청	통계청	공정거래위원회
규모	△10,169	△6,507	△5,572	△5,151	△3,659
부처명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처
규모	△3,349	△2,300	△2,076	△1,651	△1,555
부처명	방송통신위원회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규모	△1,377	△1,174	△1,160	△500	△242
합계					△23,246,732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지출구조조정 내역에는 지출구조조정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지출구조조정 규모가 과다산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추후 지출구조조정 내역 산출시 지출구조조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판단하여 과다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지출구조조정이란 예산액 중에 낭비성 예산을 줄이거나 사업의 대상이나 구조를 재편하여 예산액을 절약하는 것을 의미함. 전술한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는 2026년 예산안 편성시 지출구조조정 규모를 27.0조원으로 발표하였음.

그러나 정부가 공개한 각 부처의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내역에 따르면 각 부처별 지출구조조정 내역의 총 합은 23조 2,467억원으로, 국방부나 방위사업청 등은 지출구조조정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지출구조조정 규모 27.0조원과 다른 상황임.

또한, 정부가 제시한 지출구조조정 내역 중에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지출구조조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그 규모가 과다산출된 문제가 있음.

우선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기획재정부 예산안의 지출구조조정 규모 1조 1,965억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① 기후대응기금 사업 중 2025년에 연구용역의 완료로 사업이 완료되는 26개의 R&D 사업(총 662억원)이 지출구조조정으로 포함되었음. 그러나 해당 사업들은 사업기간이 완료되어 예산안 편성이 종료되는 것으로 처음부터 2026년 예산안에는 반영될 예정이 아니었으며, 기획재정부 예산 절감 노력에 따른 것이 아님에도 이를 지출구조조정으로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한 문제가 있음.

[기획재정부 지출구조조정 내역 중 부적절 사업-①]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 본예산	2026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규모	부적절 사유
가스발전/스팀생산설비연소 중CO2포집·활용기술개발사업(R&D) (매체순환연소포집기술규모 격상)	410	-	△410	사업 완료에 따른 종료
가스발전/스팀생산설비연소중CO2포집 ·활용기술개발사업(R&D) (포집연계 수익창출형CO2전환	90	-	△90	사업 완료에 따른 종료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 본예산	2026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규모	부적절 사유
케미컬생산 기술개발)				
그린뉴딜 유망기업100(R&D)	1,875	-	△1,875	사업 완료에 따른 종료
그린수소기반 농업시설 에너지 공급시스템 개발및실증(R&D) (재생에너지연계농업부산물이용수소 생산그린화기술연구)	704	-	△704	사업 완료에 따른 종료
그린수소기반 농업시설 에너지 공급시스템 개발및실증(R&D) (수소연료전지3중열병합기술농업적용 연구)	334	-	△334	사업 완료에 따른 종료
그린수소기반 농업시설 에너지 공급시스템 개발및실증(R&D) (수소에너지농업현장활용실증및적용확대)	389	-	△389	사업 완료에 따른 종료
도시철도회생전력유휴에너지활용방안 기술실증(R&D)	2,270	-	△2,270	사업 완료에 따른 종료
바이오매스기반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제품기술개발(R&D) (바이오매스 기반 차세대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기술 개발)	960	-	△960	사업 완료에 따른 종료
바이오매스기반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제품기술개발(R&D) (석유계 플라스틱 대체 바이오매스기반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기술 개발)	1,876	-	△1,876	사업 완료에 따른 종료
반도체디스플레이온실가스 감축공정기술개발(R&D)	2,864	-	△2,864	사업 완료에 따른 종료
비이산화탄소온실가스저감사업화연계 기술개발사업(R&D) (CH4 온실가스 저감기술)	2,333	-	△2,333	사업 완료에 따른 종료
비이산화탄소온실가스저감사업화연계 기술개발사업(R&D) (F-gas 온실가스 저감기술)	600	-	△600	사업 완료에 따른 종료
산업연계형저탄소공정 전환핵심기술개발(R&D)	3,123	-	△3,123	사업 완료에 따른 종료
순환자원이용희소금속회수 공통활용기술개발(R&D)	6,345	-	△6,345	사업 완료에 따른 종료
에너지저감공정촉매재 자원화기술개발(R&D)	6,321	-	△6,321	사업 완료에 따른 종료
전기로제강공정디지털화를통한 고효율조업기술개발(R&D)	2,584	-	△2,584	사업 완료에 따른 종료
전주기적산업혁신지원(R&D)	1,485	-	△1,485	사업 완료에 따른 종료
제조분야온실가스미세먼지 동시저감기술개발(R&D)	720	-	△720	사업 완료에 따른 종료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 본예산	2026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규모	부적절 사유
중소기업 Net-Zero 기술혁신개발사업(R&D)	2,562	-	△2,562	사업 완료에 따른 종료
철강분야탄소중립을위한무탄소연료 전환및에너지효율향상기술개발(R&D)	5,178	-	△5,178	사업 완료에 따른 종료
친환경선박 혼합연료기술개발및실증(R&D) (2,100마력급LNG암모니아혼소엔진개발)	850	-	△850	사업 완료에 따른 종료
친환경선박 혼합연료기술개발및실증(R&D) (친환경대체연료실증기술개발)	4,260	-	△4,260	사업 완료에 따른 종료
탄소순환형정유제품생산을위한 CCU통합공정기술개발(R&D)	6,133	-	△6,133	사업 완료에 따른 종료
탄소저감형중대형이차전지 혁신제조기술개발(R&D)	6,100	-	△6,100	사업 완료에 따른 종료
탄소혁신스타즈프로젝트(R&D)	2,500	-	△2,500	사업 완료에 따른 종료
화학재생그린섬유개발(R&D)	3,325	-	△3,325	사업 완료에 따른 종료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② 기후대응기금 사업 중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025년 예산이 1,145억원이었으나 2026년 계획안에는 미편성되어 1,145억원이 지출구조조정 내역으로 포함되었음. 그러나 해당 사업은 2026년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2.0'이라는 사업으로 재편되었으며, 2026년 계획안은 2025년 계획액보다 큰 2,012억원이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해당 내역 역시 지출구조조정으로 보기 어려움

[기획재정부 지출구조조정 내역 중 부적절 사업-②]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 계획	2026 계획안	지출구조조정 규모	부적절 사유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	114,538	-	△114,538	타 사업으로 재편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③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융시장안정화) 사업의 2025년 예산액은 본예산 기준 1,000억원이며 2026년 예산안에는 해당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1,000억원이 지출구조조정 내역으로 포함되었음. 그러나 동 사업은 당초부터 금융시장안정화를 위하여 2025년 한 해만 출자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일회성 예산이자 단년도 사업에 해당하므로 이 역시

도 2026년 지출구조조정 내역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임.

[기획재정부 지출구조조정 내역 중 부적절 사업-③]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 본예산	2026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규모	부적절 사유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금융시장안정화)	100,000	-	△100,000	일회성 사업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④ 기획재정부 내 ODA 사업 중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ODA) 사업은 2025년 예산이 483억원이었으나 2026년 예산안에는 154억 4,300만원이 편성되어 감액분 328억 5,700만원이 지출구조조정 내역으로 포함되었음. 또한 국제금융기구 출연(ODA) 사업 중 '한-WB협력기금', '녹색성장기금' 9개 사업은 2025년 예산은 총 1,956억 7,000만원이었으나 2026년 예산안에는 총 1,327억 5,600만원이 편성되어 감액분 629억 1,400만원이 지출구조조정 내역으로 포함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녹색기후기금(GCF)이나 국제금융기구에 공여하기로 한 출연금 총액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출연 시기를 2026년이 아닌 차차년도로 예산의 집행 시기가 미뤄지는 것으로, 단순 출연금의 집행 시기가 지연된 것뿐이라는 점에서 이를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음.

⑤ 뿐만 아니라 지출구조조정 내역에는 국유기금 110개 사업(총 826억 1,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해당 사업들 역시 총사업비가 줄어든 것이 아닌 단순한 집행 시기의 조정이며 차차년도로 예산의 집행 시기가 지연된 것이므로 이 역시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보기에는 적절치 않음.

[기획재정부 지출구조조정 내역 중 부적절 사업-④,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 본예산	2026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규모	부적절 사유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ODA) (녹색기후기금운영지원(ODA))	48,300	15,443	△32,857	집행시기 단순 조정
국제금융기구 출연(ODA) (한-WB협력기금)	80,040	73,140	△6,900	집행시기 단순 조정
국제금융기구 출연(ODA) (녹색성장기금)	46,920	31,740	△15,180	집행시기 단순 조정
국제금융기구 출연(ODA)	33,785	17,940	△15,845	집행시기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 본예산	2026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규모	부적절 사유
(e-아시아지식협력기금)				단순 조정
국제금융기구 출연(ODA) (빈곤감축기금)	5,520	2,760	△2,760	집행시기 단순 조정
국제금융기구 출연(ODA) (재정혁신협력기금)	5,520	2,760	△2,760	집행시기 단순 조정
국제금융기구 출연(ODA) (기술자문협력기금)	4,140	2,760	△1,380	집행시기 단순 조정
국제금융기구 출연(ODA) (JPO 및 인턴파견 기금)	1,805	1,656	△149	집행시기 단순 조정
국제금융기구 출연(ODA) (한-아프리카경제협력기금)	16,560	-	△16,560	집행시기 단순 조정
국제금융기구 출연(ODA) (EBRD지속가능인프라기금)	1,380	-	△1,380	집행시기 단순 조정
국유기금 사업 총 110개	188,155	105,543	△82,612	집행시기 단순 조정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은 지출구조조정 내역의 과다계상 문제는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에서도 발생하고 있음.

일례로 지출구조조정 규모가 가장 큰 국토교통부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같이 ① 연구용역의 완료로 사업이 완료되는 17개 R&D 사업(총 887억원)이 지출구조조정 내역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② 국민임대출자·영구임대출자·행복주택출자 사업 중 사업취소로 인한 반납분(각 △417억원, △284억원, △1,084억원)이 지출구조조정 내역으로 포함되어 적절치 않은 문제가 있음. 또한, ③ 분양주택융자는 전술한 국유기금 사업과 마찬가지로 총사업비 조정 없이 예산 교부액 시기를 조정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예산안 감액분 총 1조 445억원을 모두 지출구조조정에 포함한 문제가 있음. 또한, ④ 가덕도신공항건설(△2,750억원), 도로병목지점 개선(△537억원), 위험도로개선(△322억원), 경주외동녹동-문산국도건설(△219억원) 등 총 37개 건설사업에 해당하는 총 9,847억원의 감액분 역시 집행 부진으로 예산액의 집행 시기를 늦춘 것일 뿐 총사업비 조정 등을 통하여 지출 효율화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출구조조정 내역으로 포함하기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금융위원회의 경우 산업은행 출자 예산안 중 혁신성장펀드(△1,762억원), 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2,500억원), 반도체생태계펀드(△300억원)이 지출구조조정 내역으로 포함되었으나, 이들 펀드는 국민성장펀드로 통합되었으며 2026년 예산안에 산

업은행 출자(국민성장펀드) 1조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 금액들을 지출구조조정 내역으로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임.

이처럼 기획재정부가 2026년 예산안 편성시 지출구조조정 실적으로 제시한 27.0조원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사업기간의 종료, 다른 사업으로 통합되거나 명칭 변경, 집행 기간의 지연 등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지출구조조정으로 보기 어려운 내역들이 다수 존재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2026년 예산안 편성시 과다산출된 지출구조조정 내역을 재산출하여 그 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지출구조조정 내역 산출시 그 포함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

(2) 계속비 미계상 부적절 (총괄)

< 현 황 >

‘계속비’란 「대한민국 헌법」 제55조[55]에 따라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연한을 정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는 제도를 의미함.

「국가재정법」 제23조[56]은 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계속비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계속비는 그 연한을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사업규모나 국가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 이러한 지출연한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음.

또한, 「국가재정법」 제39조[57]는 국가기간 교통망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나 재해복구 사업, 공사가 지연될 경우 추가 재정부담이 큰 사업 등의 경우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된 경우에는 계속비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가재정법」 제19조 및 제20조[58]는 계속비를 예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

55) **「대한민국 헌법」 제55조**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56) **「국가재정법」 제23조(계속비)** ① 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의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57) **「국가재정법」 제39조(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편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보상비(댐수몰지역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와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완공 후 사용이 가능한 경우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단계 이상의 예산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항에 따른 요구에 따라 단계별로 해당 연도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체공정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계속비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1. 국가기간 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업
2. 재해복구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3. 공사가 지연될 경우 추가 재정부담이 큰 사업
4. 그 밖에 국민편익, 사업성격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사업성격, 사업기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계속비로 예산안을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8) **「국가재정법」 제19조(예산의 구성)**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

예산총칙에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속비는 예산에 포함되어 국회의 의결을 받고 있음.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2025년 예산 및 2026년 예산안에 계속비는 편성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계속비는 2021년에 교통시설특별회계 3개 사업이 마지막으로 편성된 후 2022년부터는 별도로 편성되지 않고 있음.

[2026년 예산안 중 계속비]

□ 해당사항 없음

회계 및 소관	사항	증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증감
-	-	-	-	-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부담행위를 총칭한다.

제20조(예산총칙) ①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계속비로 편성하여 그 총액 및 연부액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총사업비관리제도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총사업비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계속비로 편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최근 10년간 예산에 계속비가 편성된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의 경우 14개 사업(계속비 총액 24조 6,190억원)에 대하여 계속비가 편성되었으나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계속비가 별도로 편성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최근 10년간 계속비 편성 현황]

(단위: 개,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수	14	11	5	4	3	-	-	-	-	-
총액	246,190	179,229	48,361	26,739	24,833	-	-	-	-	-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그러나 2013년이나 2017년 등 과거 계속비로 편성된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나 국립생태원건립 등 건립사업이나 고속도로, 전철, 철도, 배후단지 등의 건설사업이 계속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2026년 예산안 기준으로도 이와 유사한 고속도로, 전철, 철도 등의 건설사업이 다수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계속비로 편성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2013년 예산 기준 계속비 편성 사업 현황]

회계명	사업명
일반회계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교통시설특별회계	지역간선국도1차건설, 지역간선국도2차건설, 지역간선국도3차건설, 지역간선국도4차건설, 지역간선국도5차건설, 지역간선국도6차건설, 지역간선국도7차건설, 지역간선국도8차건설, 물류간선1차건설, 동순천~광양복선전철, 경춘선복선전철, 삼랑진~진주복선전철, 덕소~원주복선전철, 성남~여주복선전철, 진주~광양복선전철, 부산신항웅동배후단지, 광양항서측배후단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망우~금곡복선전철, 용산~문산복선전철, 오리~수원복선전철, 수원~인천복선전철,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
환경개선특별회계	국립생태원건립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2017년 예산 기준 계속비 편성 사업 현황]

회계명	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지역간선국도3차건설, 지역간선국도4차건설, 지역간선국도5차건설, 지역간선국도6차건설, 지역간선국도7차건설, 지역간선국도8차건설, 물류간선1차건설, 동홍천~양양고속도로, 익산~대야복선전철, 군장산단인입철도건설, 울산신항인입철도, 포항영일만신항인입철도, 원주~강릉복선전철
지역발전특별회계	수원~인천복선전철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정부는 기존에 계속비로 편성해왔던 고속도로, 전철, 철도 등 건설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계속비로 편성하지 않고 장기계속계약 및 총사업비관리제도를 통해 동 사업들을 관리하고 있음. 장기계속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59]에 따라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에 대하여 총계약금액을 부기하되 각 회계연도별로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총사업비관리제도란 「국가재정법」에 따라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임.[60]

5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60)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정부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 계속비가 아닌 장기계속계약·총사업비관리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첫째, 계속비는 총액에 대하여 국회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국회의 의결 없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만으로 총사업비 변경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음.

계속비 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총액과 연부액에 대하여 국회가 심사하여 의결하는 권한을 가지므로 동 사업의 전체적인 규모나 연부액을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이와 달리 매년 당해연도 예산에 대해서만 국회의 심의를 받으며, 사업의 총 규모나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만 거치면 될 뿐, 이에 대해 국회가 심의·의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사업의 전반적인 규모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리가 어렵고 투명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특히, 계속비 제도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재정법」에서 원칙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하도록 규정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대규모 개발사업의 예산안 편성시 계속비로 편성하지 않고 장기계속계약·총사업비관리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음.

둘째, 계속비는 총사업비관리제도에 비하여 계약 체결이나 예산 확보를 위한 비용이나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하며,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대규모 개발사업이 계속비로 편성될 경우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총사업비 및 연부액을 의결하므로 총액이 확보되어 있고 한번만 계약을 체결하면 되므로 예산 확보 및 계약 체결 등과 관련된 행정적 부담이나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반면, 장기계속계약을 활용할 경우 매년 해당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 따라 매년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그 비용 및 시간이 보다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계속비 사업의 경우 총 사업기간이 5년 또는 10년 이내로 정해져 있고, 이를 연장하려는 경우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사업기간의 연장이 용이하지 않음. 그러나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경우 사업기간 제한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인건비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총사업비 자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예산이 보다 소요될 가능성이 큼. 실제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건설사업 중에는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사업기간 지연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 자체가 인상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함.

이처럼 정부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예산안 편성시 「대한민국 헌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편성하지 않고 총사업비 관리제도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및 「국가재정법」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계속비로 편성하도록 하여 해당 사업들의 총액과 연부액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공공청사 위탁개발계약의 국고채무부담행위 포함 필요 (총괄)

< 현 황 >

‘국고채무부담행위’란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 범위 안의 것 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함. 「국가재정법」 제19조 및 제20조[61]는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예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예산총칙에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예산에 포함되어 국회의 의결을 받고 있음.

또한, 「국가재정법」 제25조[62]는 국가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경우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시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 금액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2025년 예산 및 2026년 예산안에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최근 5년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2023년 예산에 반영된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ODA)’(1,496억 4,000만원) 1개 사업에 불과함.

[최근 5년간 국고채무부담행위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세부사업명 (예산액)	-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ODA) (149,640)	-	-	-

자료: 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61) **「국가재정법」 제19조(예산의 구성)**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제20조(예산총칙) ①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62) **「국가재정법」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① 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위는 일반회계 예비비의 사용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③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공공청사 위탁개발계약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공청사 공사를 대신하고 정부는 추후에 임차료의 형식으로 이를 상환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국고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함에도 정부는 이를 포함하지 않아 국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공공청사 위탁개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국고채무부담행위로 포함하여 계약 체결에 관한 국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있음.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공공청사 위탁개발이란 「국유재산법」 제59조[63]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체 예산으로 공공청사를 신축 또는 개발하고, 이후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을 통하여 임차료의 형식으로 총 공사비용 및 이자비용 등을 지급하여 상환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는 사업을 의미함.

국유재산관리기금의 2026년 계획안에는 이러한 공공청사 위탁개발 사업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법원 수원법원청사신축' 및 '법무부 수원고등지검 신축' 총 2개 사업의 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을 위한 계획안이 각각 300억원 및 385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들은 청사신축비용의 원리금과 위탁수수료,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총사용료가 각각 2,724억 5,100만원, 2,246억 7,000만원이며, 이를 2019년부터 2027년까지 총 9년간 상환하게 됨.

---

63) **「국유재산법」 제59조(위탁 개발)** ① 제42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개발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 개발로 발생한 수익의 국가귀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재산의 대부·분양·관리의 방법은 제43조·제44조·제46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026년 국유재산관리기금 계획안에 편성된 위탁개발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총사용료			위탁운영기간	2024 결산	2025 계획액	2026 계획안
	원리금	위탁수수료등	합계				
대법원 수원법원청사신축 (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218,970	53,481	272,451	2019~2027 (9년)	33,121	12,800	30,000
법무부 수원고지검 신축 (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179,269	45,401	224,670	2019~2027 (9년)	22,555	12,000	38,574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2025년 기준으로 공공청사 위탁개발계약이 체결되어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추후 위탁개발 임차료가 지급될 예정인 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위탁운영기간은 준공 후 약 30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30년 이상 동 개발비용에 상응하는 임차료가 지급될 예정임.

[2025년 기준 위탁개발 중인 공공청사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약체결일	총사업비	공사기간	위탁운영기간
종로복합청사	2019.12.16.	54,633	2021.10.~2028.04.	준공 후 31년
관악복합관사	2020.12.21.	15,898	2024.11.~2026.09.	준공 후 38년
성남선관위 복합청사	2021.12.15.	22,655	2025.08.~2027.03.	준공 후 32년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2021.12.15.	48,676	2027.07.~2030.06.	준공 후 별도협의
세종국책연구단지 제2연구청사	2022.08.22.	115,934	2026.03.~2029.02.	준공 후 30년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위탁개발방식은 민간투자사업(BTL)과 같이 민간의 자본이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청사를 신축·개발할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부 재원이 투입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음. 그러나 준공 이후 총사업비 및 이자비용을 임차료의 형식으로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을 통해 장기간 동안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고정적인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행위로,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재 이러한 공공청사 위탁개발계약은 계약 당시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으며, 국가가 추후에 일정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실질적인 국고채무부담행위임에도 정부는 이를 국고채무부담행위로 포함시키고 있지 않아 국회 차원의 실질적인 통제 수단이 없다는 문제가 있음.

특히 이러한 개발방식은 전술한 바와 같이 민간투자사업(BTL)과 유사하나, 민간투자사업(BTL)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총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반면, 위탁개발계약은 이러한 의결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위탁개발로 신축하는 청사의 개발 필요성이나 개발 규모의 적정성, 재원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청사 위탁개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국고채무부담행위로 포함시켜 이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

(4)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 구분 부적절 (총괄)

< 현 황 >

「국가재정법」 제91조[64]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제7조[65]는 이러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규정하여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6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는 총 1,415.2조원으로 전망되며 이 중 적자성 채무가 1,029.5조원, 금융성 채무가 385.7조원일 것으로,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72.7%일 것으로 전망됨. 또한, 정부는 2024년 금융성 채무에 해당하는 회계·기금별 채무 대비 금융자산 부족분은 33.8조원, 채무 대비 금융자산 초과 보유분은 140.0조원인 것으로 기재하였음.

[2025~2029년 적자성 채무 및 금융성 채무 현황 및 전망]

(단위: 조원, %)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추경	전망				
국가채무	1,175.0	1,301.9	1,303.6	1,415.2	1,532.5	1,664.3	1,788.9
- 적자성 채무	815.4	924.8	926.5	1,029.5	1,133.0	1,248.1	1,362.5
(비중)	(69.4)	(71.0)	(71.1)	(72.7)	(73.9)	(75.0)	(76.2)
- 금융성 채무	359.8	377.1	377.1	385.7	399.5	416.2	426.4
(비중)	(30.6)	(29.0)	(28.9)	(27.3)	(26.1)	(25.0)	(23.8)

주: '24년 금융성 채무에 해당하는 회계·기금별 채무 대비 금융자산 부족분은 33.8조원, 채무 대비 금융자산 초과 보유분은 140.0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

64) **「국가재정법」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5)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 검토의견 >

2024회계연도 결산 당시 금융성 채무가 보유하고 있는 대응자산이 과다계상된 문제가 있어 국가채무 성질별 분류 체계의 부적절성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금융성 채무의 정의를 적자성 채무가 아닌 회계·기금으로 변경하였으나, 정의 변경에 따른 적자성·금융성 채무 분류의 실익이 없어졌으며, 여전히 국가채무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줄 우려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2024~2028년 국가채무관리계획」 및 「2024회계연도 국가채무관리보고서」에서 국가채무를 대응자산 보유 여부에 따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하였음.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는 '적자성 채무'를 대응자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향후 조세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 '금융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있어 추가적 재원조성 없이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로 구분하여 2024년 결산 기준 국가채무 총 1,175.2조원 중 적자성 채무를 815.4조원, 금융성 채무를 359.8조원으로 분류한 바 있음.

이에 대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① 금융성 채무의 대응자산이 채무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하며, ② 금융성 채무의 대응자산에 청약저축 납입액이 포함되어 과다계상된 문제가 있고, ③ 대응자산에 외환보유고 등도 포함되어 있어 대응자산을 실제 상환재원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그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부는 금융성 채무의 상당 부분이 대응자산이 부족하거나 과다계상, 실제 상환재원으로 활용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어 국가 채무 상태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성 채무를 재구성하거나 국가채무 성질별 분류 체계 자체를 재검토하고 금융성 채무에 대한 분류기준, 구성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것(제도개선)"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한 바 있음.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결산 시정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제출하면서 국가채무를 또다시 적자성 채무 및 금융성 채무로 분류하면서 금융성 채무를 재구성하지 않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특히 기획재정부는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제출하면서 국가채무 성질

별 분류에 있어서 기존과 달리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의 정의를 변경하였음.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는 '적자성 채무'를 '일반회계 채무, 지방정부 순채무, 국고채무 부담행위, 부채의 정리·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기금의 채무'로 규정하였으며, '금융성 채무'를 '그 외 금융자산(현금 및 예금, 주식 이외 유가증권, 융자)을 보유할 수 있는 회계·기금의 채무'로 정의하였음.

[적자성 채무 및 금융성 채무 변경 비교]

구분	2024~2028년 국가채무관리계획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
적자성 채무	국가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향후 조세 등을 재원으로 하여 상환해야 하는 채무	일반회계 채무, 지방정부 순채무, 국고채무 부담행위, 부채의 정리·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기금의 채무
금융성 채무	외환·융자금 등 **대응자산이 있어** 채무상환을 위한 **추가적 재원조성 없이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	그 외 금융자산(현금 및 예금, 주식 이외 유가증권, 융자)을 보유할 수 있는 회계·기금의 채무

주: '24년 금융성 채무에 해당하는 회계·기금별 채무 대비 금융자산 부족분은 33.8조원, 채무 대비 금융자산 초과 보유분은 140.0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

그러나 이러한 정의 변경은 자체상환이 가능한 대응자산 유무를 기준으로 국가채무를 질적으로 분류한 기존의 분류 체계와 달리 금융성 채무를 적자성 채무 외의 채무로 정의하여 분류의 실익이 없어진 문제가 있음. 특히, 기획재정부는 우리 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따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의 정의를 이와 같이 변경하였다는 입장이나,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 구분에 따른 국가채무의 구성이나 금액에 있어서는 이전과 다를 바 없어 그 취지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는 적자성 채무의 경우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노력을 강화하는 반면, 금융성 채무의 경우 채무 상환이 가능하도록 '대응자산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하여 채무별 관리 방안을 다르게 수립하였음.

[2024~2028년 국가채무관리계획 일부]

□ **(적자성 채무)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 관리** 등을 통해 적정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노력 강화 □ **(금융성 채무)** 재정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하며 채무 상환이 가능하도록 **대응자산 관리 노력** 강화

자료: 「2024~2028년 국가채무관리계획」, 기획재정부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는 이러한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별 관리 방안을 삭제하여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를 상이하게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진 바, 관리방안에 있어서도 국가채무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분류하는 실익이 없어진 것으로 보임.

한편, 기획재정부는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2024년 금융성 채무에 해당하는 회계·기금별 채무 대비 금융자산 부족분은 33.8조원, 금융자산 초과 보유분은 140.0조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러한 금융자산에는 결산 당시 지적되었던 청약저축 납입액(2024년 결산 기준 97.5조원) 등이 포함되어 금융자산 자체가 과다계상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함.**

또한,「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같이 금융자산 부족분과 초과분을 병기하고 부족분에 비해 초과분이 많다고 적시하는 것은 자칫 금융자산 부족분과 초과분을 상계할 수 있으며 금융성 채무의 대응자산이 충분하다고 오해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음.

실제 다수 언론에서는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국가채무 성질별 분류에 근거하여 2026년 예산안에 대한 국가채무에 대하여 적자성 채무가 증가하여 질적 악화가 일어났다고 보도하면서, 금융성 채무는 자체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자성 채무에 비해 질적으로 양호한 채무로 인식하는 등 여전히 국가채무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인식하고 있어 국가채무에 대한 착시 효과가 잔존하는 상황임.

이처럼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를 적자성 채무 및 금융성 채무로 분류하면서 금융성 채무의 정의를 적자성 채무 외의 채무로 변경하였으나, 정의 변경에 따른 적자성·금융성 채무의 구분 실익이 없어졌으며, 여전히 국가채무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음.

(5) 공공기관 사채발행한도의 명확한 기준 설정 필요 (총괄)

< 현 황 >

2025년 지정된 331개 공공기관 중 개별 법률이나 정관에서 사채발행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기관은 총 29개 기관으로, 공기업 12개, 준정부기관 7개, 기타공공기관 10개인 것으로 나타남.

[공공기관 중 사채발행한도 규정 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공기업 (12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주), 한국전력공사
준정부기관 (7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기타공공기관 (10개)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벤처투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29개 공공기관의 2024년 말 기준 사채발행잔액은 총 786조 2,180억원으로, 중소기업은행(189조 2,622억원), 한국산업은행(187조 400억원), 한국수출입은행(100조 489억원) 등 은행형 공공기관의 사채발행한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공공기관별 구체적인 사채발행잔액 및 한도, 근거 법률 또는 정관 현황은 다음과 같음.

[공공기관별 사채발행한도 및 잔액 등 현황]

(단위: 억원)

유형	기관명	사채발행잔액 (2024년 말)	사채발행한도	근거 법률·정관
공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	62,110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가스공사	287,413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	한국가스공사법
	한국공항공사	10,700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	한국공항공사법
	한국광해광업공단	47,404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한국광해광업공단법
	한국도로공사	385,345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	한국도로공사법
	한국석유공사	156,655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	한국석유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	81,462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	한국수자원공사법

유형	기관명	사채발행잔액 (2024년 말)	사채발행한도	근거 법률·정관
준정부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29,157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	정관
	한국철도공사	159,612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	한국철도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	481,892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전KPS(주)	-	이사회의 결의	정관
	한국전력공사	755,953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	한국전력공사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43,647	적립된 기금의 20배	중소기업진흥법
	한국관광공사	-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	한국관광공사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768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한국농어촌공사	5,500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 이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자산관리공사	78,150	납입자본금과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배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정관
	한국주택금융공사	221,339	자기자본의 10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주택도시보증공사	7,000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	정관
기타공공기관	대한석탄공사	-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대한석탄공사법
	부산항만공사	37,900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	항만공사법
	여수광양항만공사	2,800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	항만공사법
	울산항만공사	750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	정관
	한국벤처투자	-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20배의 범위 안	정관
	한국수출입은행	1,000,489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30배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해외인프라도시자원개발공사	4,700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해외건설촉진법
	한국해양진흥공사	35,412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	정관
	중소기업은행	1,892,622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	1,870,400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30배	한국산업은행법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검토의견 >

공공기관별 사채발행한도 산정의 기준이 기관별로 달라 법률이나 정관에서 그 한도를 규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경우 현행 기준으로도 사채발행한도에 비해 사채발행잔액이 큰 것으로 나타나 법률에 위반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의 개별 법률이나 정관 등에서 사채발행한도를 정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 사채가 자본금이나 적립금 수준에 비해 과다하게 발행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임.

2024년 기준으로, 사채발행한도가 규정된 29개 공공기관 중 사채발행잔액이 있는 공공기관은 25개 기관임. 그러나 이들 기관 중 한국석유공사나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경우 자본 총계가 음(-)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법정 사채발행한도는 각각 약 22조원, 약 5조원으로 산출되며, 이에 따라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2024년 말 기준 발행할 수 있는 사채가 약 6조원 이상 남아있는 상황임.

이처럼 한국석유공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임에도 추가적인 사채발행이 가능한 것은 사채발행한도의 기준인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에 미처리결손금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사채발행기준이 되는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에 미처리결손금 약 14조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사채발행한도는 약 22조원으로 산출되는 상황임.

[한국석유공사 자본 구성 현황 및 사채발행한도 등(2024년 말 기준)]

(단위: 억원)

자본금 (a)	주식발행 초과금(a')	각종 적립금(b)	미처분이익잉여금 (미처리결손금) (c)	기타자본 구성요소(d)	자본 총계
109,089	-	-	△143,365	3,638	△30,638

자본 중 포함 요소	금액(A)	사채발행한도 배수(B)	사채발행한도 (A×B)	사채발행잔액
a+b	109,089	2배	218,178	156,655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실제 사채발행한도가 정해져있는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자본금과 적립금'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별로 기준 산정에 있어서 미처분결손금을 포함하는지 여부 등이 달라 명확한 기준이 없는 문제가 있음.

일반적으로 자본은 자본금(a), 주식발행초과금(a'), 각종 적립금(b), 미처리결손금(c), 기타자본구성요소(d)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채발행한도의 기준인 '자본금과 적립금'의 산정에 있어서 공공기관별로 자본 중 포함 요소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일례로, 2024년 말 기준으로 사채발행한도가 정해진 29개 공공기관 중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은 미처리결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들 기관 중 한국철도공사와 한국관광공사는 사채발행한도 산정시 이러한 미처리결손금을 포함하여 사채발행한도를 산출하는 반면, 한국석유공사 등 6개 기관은 미처리결손금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사채발행 공공기관 중 미처리결손금 발생 기관 현황]

(단위: 억원)

유형	기관명	자본금 (a)	주식발행 초과금 (a')	각종 적립금 (b)	미처분이익 잉여금 (미처리결손금) (c)	기타자본 구성요소 (d)	자본 총계
공기업	한국공항공사	23,578	-	3,000	△1,653	8,408	33,333
	한국광해광업공단	23,378	△104	-	△55,216	△106	△32,048
	한국석유공사	109,089	-	-	△143,365	3,638	△30,638
	한국철도공사	109,975	△46	-	△125,107	94,533	79,355
준정부기관	한국관광공사	324	-	4,052	△49	62	4,389
	주택도시보증공사	84,151	3,383	8,520	△47,925	△5,706	6,987
기타공공기관	대한석탄공사	1,511	-	-	△21,907	△9	△20,405
	여수광양항만공사	15,523	-	-	△801	4,025	18,747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미처리결손금 발생 공공기관의 사채발행한도 산정 기준]

유형	기관명	자본 중 포함 요소	금액(A)	사채발행한도 배수(B)	사채발행한도 (A×B)
공기업	한국공항공사	a+d	24,925억원	4배	99,700억원
	한국광해광업공단	a+b	23,377.5억원	2배	46,755억원
	한국석유공사	a+b	109,089억원	2배	218,178억원
	한국철도공사	a+a'+b+c+d	79,356억원	5배	396,780억원
준정부기관	한국관광공사	a+b+c	4,327억원	2배	8,654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	a+a'+b+d중자기주식	90,479억원	4배	361,915억원
기타	대한석탄공사	a	1,511억원	1배	1,511억원
	여수광양항만공사	a+b	15,523억원	4배	62,093억원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한국철도공사는 기타자본구성요소를 사채발행한도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함으로써 사채발행한도가 보다 높게 산출되는 상황이며,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1개 공공기관 역시 사채발행한도 산정시 기타자본구성요소를 그 기준인 '자본금과 적립금'에 포함하여 산출하는 등 그 기준이 공공기관별로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공공기관별 사채발행한도 산정시 자본 중 포함요소]

(단위: 억원)

유형	기관명	자본 중 포함 요소	금액(a)	사채발행한도 배수(b)	사채발행한도 (a×b)
공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	a+b	75,589	4배	302,354
	한국가스공사	a+a'+b+c+d	77,176	5배	385,880
	한국공항공사	a+d	24,925	4배	99,700
	한국광해광업공단	a+b	23,376	2배	46,755
	한국도로공사	a+b	457,154	4배	1,828,616
	한국석유공사	a+b	109,089	2배	218,178
	한국수자원공사	a+a'+b+c+d	119,652	2배	239,305
	한국지역난방공사	a+a'+b+c	17,714	4배	70,857
	한국철도공사	a+a'+b+c+d	79,356	5배	396,780
	한국토지주택공사	a+a'+c+b+d	729,154	5배	3,645,770
	한국전력공사	a+b+c+d	180,909	5배	904,545
준정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a+a'+b+c+d	46,917	20배	938,349

유형	기관명	자본 중 포함 요소	금액(a)	사채발행한도 배수(b)	사채발행한도 (a×b)
부기관	한국관광공사	a+b+c	4,327	2배	8,65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b	1,884	2배	3,768
	한국농어촌공사	a+b+d	22,150	2배	44,300
	한국자산관리공사	a+b	45,615	10배	456,150
	한국주택금융공사	a+b+c+d	48,004	10배	480,040
	주택도시보증공사	a+a'+b+d중자기주식	90,479	4배	361,915
기타공공기관	대한석탄공사	a	1,511	1배	1,511
	부산항만공사	a+b	39,829	4배	159,316
	여수광양항만공사	a+b	15,523	4배	62,093
	울산항만공사	a+a'+b	5,024	4배	20,096
	한국벤처투자	a+b+d	1,223	20	24,460
	한국수출입은행	a+d	192,590	30배	5,777,701
	한국해외인프라도시자원개발공사	a+b	4,986	5배	24,930
	한국해양진흥공사	a+b	58,404	4배	23조 3,616
	중소기업은행	a+b	228,436	20배	4,568,720
	한국산업은행	a+b	301,196	30배	9,035,88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의 개별 법령이나 정관에서 사채발행한도를 규정한 것은 자본에 비해 과다한 규모의 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취지임. 이러한 점에서 자본의 감소 요소인 미처리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제외하고 사채발행한도를 산출하고, 이에 따라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한국석유공사 등도 사채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채발행한도를 규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또한, 사채발행한도의 산정 기준이 기관별로 상이한 것 역시 사채발행한도를 법률 또는 정관으로 규정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개별 기관별로 상이한 사채발행한도 기준을 '자본 총계' 등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법」[66]에서는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말 기준으로 산정한 사채발행한도는 4조 6,755억원임. 그러나 2024년 기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사채발행잔액은 4

66)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1조(사채의 발행)** ①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소멸시효는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④ 그 밖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 7,404억원으로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 및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동 기관의 사채발행한도를 넘어서는 사채발행에 대해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추후 해당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6) 「국가재정법」상 절차에 위배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예산안 편성 부적절 (총괄)

< 현 황 >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은 예산안 사업 26개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 11개 등 총 37개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은 전년대비 예산안 사업이 4개 감소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이 3개 증가하여 총 1개 감소하였음.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현황]

연번	구분	소관 부처	사업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유
1	예산안	환경부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제8호 법령에 따라 추진
2			군산시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투자사업(BTL)	제8호 법령에 따라 추진
3			당진시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투자사업(BTL)	제8호 법령에 따라 추진
4			대구광역시 달서천(5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제8호 법령에 따라 추진
5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친환경종합타운) 설치사업	제8호 법령에 따라 추진
6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제8호 법령에 따라 추진
7			화성오산 물재이용 민간투자사업	제8호 법령에 따라 추진 제10호 국가 정책적 추진
8			시흥스마트 허브 하수관로 정비(2권역) 임대형민간 투자사업(BTL)	제8호 법령에 따라 추진
9			용인 그린 에코파크 민간투자사업	제8호 법령에 따라 추진
10			천안시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8호 법령에 따라 추진
11			무공해차 생태계 조성 금융 지원사업	제9호 예타 실익이 없는 사업
12		농식품부	국가 농업 AX 플랫폼	제9호 예타 실익이 없는 사업
13		교육부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제10호 국가 정책적 추진
14		산업부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	제10호 국가 정책적 추진
15			유통기업 해외진출지원	제10호 국가 정책적 추진
16		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제10호 국가 정책적 추진
17		산업부 복지부 농식품부 환경부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제10호 국가 정책적 추진

연번	구분	소관 부처	사업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유
18		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10호 국가 정책적 추진
19		우주 항공청	다목적실용위성8호개발(R&D)	제3호 국방 관련 사업
20		과기부 산업부	AX 실증 밸리 조성 (R&D)	제10호 국가 정책적 추진
21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지역거점AX혁신 기술개발 (R&D)	제10호 국가 정책적 추진
22		과기부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글로벌 실증 (R&D)	제10호 국가 정책적 추진
23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R&D)	제10호 국가 정책적 추진
24		산업부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제10호 국가 정책적 추진
25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제10호 국가 정책적 추진
26		해수부	해양연구선 (온누리호) 대체 건조사업	제10호 국가 정책적 추진
27	기금 운용 계획안	기재부	광주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제8호 법령에 따라 추진
28			순천·구례 광역 바이오에너지 설치사업	제8호 법령에 따라 추진
29			인천광역시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제8호 법령에 따라 추진
30		외교부	주뉴욕총영사관 통합청사 매입	제1호 공공청사
31		경찰청	대구 수성경찰서 신축	제1호 공공청사
32			경기남부 부천원미경찰서 신축	제1호 공공청사
33		환경부	이천시 통합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제8호 법령에 따라 추진
34		기재부	주멕시코(대)통합청사 신축	제1호 공공청사
35			부천통합청사 신축	제1호 공공청사
36		문체부	청년 문화예술패스	제10호 국가 정책적 추진
37		산업부	A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사업	제10호 국가 정책적 추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의 경제성·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분석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대안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제도임. 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제8호),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제10호) 등을 예비타당성조사로부터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67]

67)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

202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중 ‘제1호 공공청사’에 해당되어 면제된 사업이 5개(13.5%), ‘제3호 국방 관련 사업’에 해당되어 면제된 사업이 1개(2.7%), ‘제8호 법령에 따라 추진’에 해당되어 면제된 사업이 14개(37.8%), ‘제9호 예타 실익이 없는 사업’에 해당되어 면제된 사업이 2개(5.4%), ‘제10호 국가정책적 추진’에 해당되어 면제된 사업이 16개(43.2%)임.[68]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유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현황]

(단위: 개)

사유	제1호 공공청사	제3호 국방 관련 사업	제8호 법령에 따라 추진	제9호 예타 실익이 없는 사업	제10호 국가정책적 추진
사업수	5	1	14	2	16
비중	13.5%	2.7%	37.8%	5.4%	43.2%

주) 환경부의 ‘화성오산 물재이용 민간투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유에 ‘제8호 법령에 따라 추진’과 ‘제10호 국가정책적 추진’이 모두 해당되어 중복 집계되었음

자료: 기획재정부

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복원사업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68) 환경부의 ‘화성오산 물재이용 민간투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유에 ‘제8호 법령에 따라 추진’과 ‘제10호 국가정책적 추진’이 모두 해당되어 중복 집계되었음

< 검토의견 >

첫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중 '제10호 국가정책적 추진'으로 면제된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하지만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15개 사업이 전부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 「국가재정법」을 위배한 문제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국가정책적 추진)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함.[69]

그런데 '제10호 국가정책적 추진'으로 면제된 사업 16개 중 15개 사업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해당 사업들을 전부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였음.[70]

이와 같이 기획재정부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들을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이유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국무회의 및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의결이 예산안 편성 직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71]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지 못한 사업 15개는 모두 2025년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2025년 8월 20일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음. 그런데 예산안은 2025년 9월 3일에 국회에 제출되어 예산안 편성 전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기획재정부는 실무적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배정함.[72] 그리고 2년차 사업비 예산안을 편성할 때부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

---

69)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70) 2025년 10월 16일 기준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계속 진행 중임.

71) '제10호 국가정책적 추진'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함(「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나목). 그리고 모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1조제2항).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과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됨.

하여 편성한다는 계획임.

그런데 예산의 배정은 집행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정부의 내부 통제에 해당하고,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예산 확정 전 이루어지는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외부 통제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또한, 교육부의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사업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복지사업은 사업이 개시된 이후 혜택을 축소하는 등 사업 구조를 유연하게 조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2년차 사업비를 편성할 때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제10호 국가정책적 추진'으로 면제된 사업은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의 규정과 달리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인한 국가 재정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향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점에 임박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관행을 시정하여 상반기까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완료함으로써 적정성 검토를 완료한 후에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는 '특정연도' 예산규모 조정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전 기간'의 예산규모 조정을 의미한다는 입장임.

그러나 단년도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체계 하에서 1차년도 예산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편성되고 집행된다면, 2차년도 이후의 예산에

---

72) 수시배정 제도란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해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함.

「국가재정법」

제43조(예산의 배정)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더라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부적정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었다는 구조적 한계는 해소되지 않음.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10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현황]

연번	소관 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여부
1	환경부	화성오산 물재이용 민간투자 사업	□ (사업목적)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 (기대효과) 방류수역 수질 개선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	○ (민자적격성 판단 수행)
2	교육부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 (사업목적) 3~5세까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추진 □ (기대효과) 0세부터 고교졸업까지의 무상교육 완성 및 국가책임형 영유아 교육·보육 실현	×
3	산업부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	□ (사업목적)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內 전력직접거래 특례를 적용한 신산업을 발굴·지원 □ (기대효과) 전력 자급율 편차 완화,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 신산업 육성 유도 등	×
4	산업부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	□ (사업목적) 유통기업의 해외진출 및 한류 역직구 활성화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 □ (기대효과) 글로벌 K-유통 플랫폼을 육성하여 글로벌 고객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선순환 구조 확립	×
5	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 (사업목적) 소멸위기지역 농어촌 주민의 기본생활 유지를 위해 농어촌 시범사업 도입 □ (기대효과) 농어촌 정주인구 유입, 농어촌 주민 삶의 질 제고, 지역사회 유지 및 지역 균형발전 등에 기여	×
6	산업부 복지부 농식품부 환경부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 (사업목적) AI 융합산업 중 단기 내 성과창출이 가능한 제품·서비스 상용화 지원 □ (기대효과) AI 응용제품 시장 선점, AI 응용제품의 활용을 통한 산업 생산성 증대 및 사회 전반의 편의성 향상	×

연번	소관 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여부
7	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 (사업목적)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요양·돌봄 등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인건비 한시 지원 □ (기대효과)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연계 제공함으로써 국가돌봄책임을 강화하고, 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
8	과기부 산업부	AX 실증 밸리 조성 (R&D)	□ (사업목적) AX기술개발을 지원하고 AI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여 광주를 'AX R&D·실증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 □ (기대효과) 차세대 AI 관련 기술시장 선점, AI 기술 실증을 통한 전국 단위의 기술융합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	×
9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지역거점AX 혁신 기술개발 (R&D)	□ (사업목적) 대구 지역특화 산업(바이오·로봇 등)의 생산성 고도화를 위한 지역특화 AX 모델 및 제품 개발 □ (기대효과) 글로벌 AX연구개발 허브 조성으로 국가 AI 경쟁력 강화 및 영남권 제조벨트 등 지역경제의 산업구조 혁신 및 재도약	×
10	과기부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글로벌 실증 (R&D)	□ (사업목적) 초정밀 제어가 필요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물리지능행동모델 원천기술 개발 및 글로벌 실증 □ (기대효과) 시계열 제어·환경 데이터를 자국 중심으로 수집 정제하여 정밀 제어 등 산업 AI 정확도와 범용성의 강화	×
11	과기부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R&D)	□ (사업목적) 한국 강점산업에 특화된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AI모델, 시뮬레이션 등)·솔루션 개발로 글로벌 기술표준 선점 □ (기대효과) 제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피지컬 AI 플랫폼 실증 기반 확보 및 협업 지능 피지컬AI 기반의 연구생태계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기술혁신 견인	×
12	산업부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 (사업목적) 국산 AI반도체 기반 첨단제품 출시 위해 주력업종 수요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팹리스와 AI반도체 풀스택 공동개발 □ (기대효과) 온디바이스 AI반도체의 수요기업 제품 맞춤형 설계 및 개발 지원을 통해 주력 산업 및 팹리스 AI 역량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선점 기반 마련	×

연번	소관 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여부
13	산업부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	□ (사업목적) SMR 기자재 제작기간을 단축하고 제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혁신제조장비 국산화 기술개발 □ (기대효과) 혁신제조 기술 확보로 SMR 핵심기술 자립 가속, 공급망 재편 및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 고부가가치 원전 수출 산업 창출	×
14	해수부	해양연구선(온누리호) 대체 건조사업	□ (사업목적) 온누리호 노후화에 따른 친환경 종합해양연구선 대체 건조 □ (기대효과) 기후변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연구수요 적기 대응 및 중국 서해 구조물 등의 과학적 조사를 통한 해양 권익 수호	×
15	문체부	청년 문화예술 패스	□ (사업목적) 청년 대상 문화예술관람료 지원을 통한 문화 소비 확대, 예술인 간접적 지원 □ (기대효과) 예술 콘텐츠 창작 및 한류확산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
16	산업부	A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사업	□ (사업목적) 배전망 ESS 설치 지원을 통해 전력계통 안전성 제고 및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 (기대효과) 지역별 전력 편차 및 계통 불완전성 완화 및 신산업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스타트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등	×

주) 2025년 10월 16일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둘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중 '제10호 국가정책적 추진'으로 면제된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① 보고가 되지 않거나 ② 오히려 면제 사업의 내역 등이 포함된 예산안 첨부서류의 제출시점보다 보고가 늦어져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회 보고가 적절하게 이행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에 따르면 '제10호 국가정책적 추진'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이는 ‘제8호 법령에 따라 추진’ 등 다른 이유로 면제된 사업과 달리 ‘제10호 국가정책적 추진’으로 면제된 사업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커 재정낭비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보고 받고 해당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에 대해 사후적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한, 이를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에서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제10호 국가정책적 추진’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16개의 사업중 1개의 사업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대한 보고가 누락되었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가 2025년 8월 20일에 완료된 15개 사업 중 9개 사업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9월 3일 이후에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가 이루어져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한 「국가재정법」이 준수되지 못하였음.

국회에 예산안 첨부서류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내역 및 사유가 제출된 이후에 소관 상임위에 이를 사후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면제사업 등을 지체없이 보고받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10호 국가정책적 추진’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의 적절성을 신속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10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현황]

연번	소관 부처	사업명	국무회의 일자	재정사업평가 위원회 심의일자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일자	문제점
1	환경부	화성오산 물재이용 민간투자사업	2024. 9. 30.	2025. 4. 30.	-	**보고 누락**
2	교육부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2025. 8. 18.	2025. 8. 20.	**2025. 08. 27.**	
3	산업부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	2025. 8. 18.	2025. 8. 20.	**2025. 08. 22.**	
4	산업부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	2025. 8. 18.	2025. 8. 20.	**2025. 08. 22.**	

연번	소관 부처	사업명	국무회의 일자	재정사업평가 위원회 심의일자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일자	문제점
5	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2025. 8. 18.	2025. 8. 20.	2025. 09. 15.	보고 지연
6	산업부 복지부 농식품부 환경부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2025. 8. 18.	2025. 8. 20.	(산업부) 2025. 08. 22. (복지부) 2025. 09. 5. (농식품부) 2025. 09. 15. (환경부) 2025. 09. 24.	보고 지연
7	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2025. 8. 18.	2025. 8. 20.	2025. 09. 05.	보고 지연
8	과기부 산업부	AX 실증 밸리 조성 (R&D)	2025. 8. 18.	2025. 8. 20.	(과기부) 2025. 9. 10. (산업부) 2025. 08. 22.	보고 지연
9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지역거점AX혁신 기술개발 (R&D)	2025. 8. 18.	2025. 8. 20.	(과기부) 2025. 09. 10. (산업부) 2025. 08. 22. (복지부) 2025. 09. 12.	보고 지연
10	과기부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글로벌 실증 (R&D)	2025. 8. 18.	2025. 8. 20.	2025. 09. 10.	보고 지연
11	과기부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R&D)	2025. 8. 18.	2025. 8. 20.	2025. 09. 10.	보고 지연
12	산업부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2025. 8. 18.	2025. 8. 20.	2025. 08. 22.	
13	산업부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	2025. 8. 18.	2025. 8. 20.	2025. 08. 22.	
14	해수부	해양연구선 (온누리호) 대체 건조사업	2025. 8. 18.	2025. 8. 20.	2025. 09. 05.	보고 지연

연번	소관 부처	사업명	국무회의 일자	재정사업평가 위원회 심의일자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일자	문제점
15	문체부	청년 문화예술 패스	2025. 8. 18.	2025. 8. 20.	2025. 10. 14.	보고 지연
16	산업부	A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사업	2025. 8. 18.	2025. 8. 20.	2025. 08. 22.	

자료: 기획재정부

(7)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준수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총괄)

< 현 황 >

「공공기관 우선구매」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이 생산·공급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공공조달 과정에서 우선구매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공공기관 우선구매」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73]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되며 기획재정부 또한 적용 대상임.

「공공기관 우선구매」는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우선구매 비율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은 보건복지부 소관인 중증장애인생산품, 고용노동부 소관인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창업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으로 7가지임.

7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국가재정법」 제6조의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를 말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를 말한다)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교육기관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의무 구매 비율]

중앙행정기관	우선구매 제품	소관 법률	우선구매 비율[74]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75]	1%
고용노동부	장애인표준 사업장생산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76]	0.8%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77]	50%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78]	중소기업물품 중 15%
	여성기업제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79]	물품, 용역 5% 공사 3%
	창업기업제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80]	8%
	장애인기업제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81]	1%

자료: 기획재정부

---

74) 2024년도 기준

7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구매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구매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목 및 수량
2.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구매목표 비율)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100분의 1.1로 한다.

7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②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Ⅰ.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은 1000분의 8로 한다.

7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③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 대비 5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50퍼센트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7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③ 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사업목적상 또는 물품구매의 특성상 그 비율을 15퍼센트 이상으로 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79)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③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는 매년 법령이 정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목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바, 향후 관계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실효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비롯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집단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공공조달 과정에서 일정 비율 이상 해당 집단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82]은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 관련 각종 경비 집행시 중소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장애인생산품 구매 등 법적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최근 3개년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제품을 제외하고는 법정 목표를 미달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여성기업제품(물품), 창업기업제품의 경우 매년 목표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의 경우 매년 실적이 목표치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여성기업제품의 구매증대) ① 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5퍼센트, 공사의 경우는 공사 구매총액의 3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본문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③ 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①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을 말한다.

8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비율) 법 제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구매비율을 100분의 1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82)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5p

구체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경우 목표 비율이 1%인데 실적은 2022년: 0.2%, 2023년: 0.19%, 2024년: 0.23%로 목표치의 30%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또한 목표 비율은 0.8%인데 실적은 2022년: 0.32%, 2023년: 0.2%, 2024년: 0.37%로 매년 목표치의 50%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재정집행을 관리·감독하는 기획재정부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통보[83]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스스로 위반하는 행위는 법 집행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목표 및 실적]

구분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창업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물품	용역	공사		
목표	1%	0.8%	50%	15%	5%	5%	3%	8%	1%
2022년	0.20%	0.32%	62.84%	74.2%	1.99%	4.25%	0.23%	1.21%	0.30%
2023년	0.19%	0.20%	73.61%	12.8%	1.99%	3.99%	3.51%	2.50%	3.26%
2024년	0.23%	0.37%	73.06%	13.2%	2.02%	10.20%	0.03%	5.40%	3.60%

자료: 기획재정부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준수하기 위하여 연간 구매계획을 점검하고 우선구매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실효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필요가 있음.

83)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과다 편성 특근매식비 예산 감액 필요(총괄)

< 현 황 >

기획재정부는 2026년도에 특근매식비(210-05목) 예산안을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기관운영)(7111-201) 등 일반회계 31개 세부사업과 복권기금 기금관리비(3578-201) 등 기금 3개 세부사업에 편성하였으며, 2026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1억 1,400만원이 감액된 8억 7,100만원임.

[2026년도 기획재정부 특근매식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1331-305)	3	3	-	-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운영(1331-306)	3	3	-	-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1431-301)	4	3	△1	△25.0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운영(1432-301)	-	10	10	순증
국제조세협력(2131-301)	15	15	-	-
조세개혁추진단 운영(2131-310)	3	3	-	-
국고업무관리(2233-302)	4	-	△4	△100
금융협력사업(3131-304)	-	1	1	순증
국제금융외교 및 G20협력(3131-311)	3	3	-	-
국제투자협력단 운영(3135-309)	-	-	△0.3	△100
대외경제협력강화(3231-301)	21	-	△21	△100
녹색기후기획사업(3333-333)	5	5	-	-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기관운영)(7011-201)	31	24	△7	△22.6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기획조정실)(7011-202)	94	87	△7	△7.4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대변인)(7011-205)	25	18	△7	△28.0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세제실)(7011-208)	105	97	△8	△7.6

세부사업명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경제정책국)(7011-209)	45	42	△3	△6.7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국고국)(7011-210)	61	41	△20	△32.8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국제금융국)(7011-212)	25	23	△2	△8.0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대외경제국)(7011-213)	23	21	△2	△8.7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정책조정국)(7011-214)	30	24	△6	△20.0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예산실)(7011-216)	197	183	△14	△7.1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공공정책국)(7011-218)	44	40	△4	△9.1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재정관리국)(7011-219)	40	37	△3	△7.5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미래전략국)(7011-220)	20	20	-	△100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개발금융국)(7011-221)	22	17	△5	△22.7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재정정책국)(7011-222)	26	25	△1	△3.8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경제구조개혁국)(7011-224)	33	31	△2	△6.1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7011-227)	4	4	-	-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경제공급망기획관)(7011-228)	14	14	-	-
정책품질관리(7135-301)	11	11	-	-
경제교육지원(7135-302)	7	7	-	-
정책홍보사업(7135-306)	10	10	-	-
복권기금 기금관리비(3578-201)	17	10	△7	△41.2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맞춤형컨설팅(2032-304)	8	8	-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기본경비 (2176-201)	19	19	-	-
- 특근매식비(210-05)	985	871	△114	△11.2

<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의 특근매식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매년 불용액이 상당 규모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정 규모로 감액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 2024년 특근매식비 예산은 11억 9,700만원으로 이 중 4억 8,000만원만 집행하고 7억 1,100만원은 불용되어 집행률은 40.1%에 불과함.

[2024년도 기획재정부 특근매식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A)	이·전용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A/C)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 (1331-305)	12	-	12	1	11	10.6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운영 (1331-306)	13	-	13	2	11	14.6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1431-301)	6	-	6	2	4	32.0
국제조세협력(2131-301)	17	-	17	15	2	85.7
조세개혁추진단 운영(2131-310)	11	-	11	3	8	28.6
국고업무관리(2233-302)	4	-	4	4	-	95.6
국제금융외교 및 G20협력 (3131-311)	3	-	3	3	-	100.0
녹색기후기획사업(3333-333)	5	-	5	1	4	16.6
금융투자지원단 운영 (3231-309)	1	-	1	0	1	12.8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운영 (3240-301)	10	△2	8	7	1	71.1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기관운영)(7011-201)	31	-	31	19	12	60.9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기획조정실)(7011-202)	114	-	114	51	63	44.6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대변인)(7011-205)	26	-	26	14	12	52.9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세제실)(7011-208)	118	-	118	24	94	20.0

세부사업명	예산액 (A)	이·전용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A/C)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경제정책국)(7011-209)	51	-	51	39	11	77.3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국고국)(7011-210)	81	-	81	22	59	27.1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국제금융국)(7011-212)	34	-	34	18	16	52.0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대외경제국)(7011-213)	23	-	23	17	6	72.5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정책조정국)(7011-214)	38	-	38	17	21	44.5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예산실)(7011-216)	297	△4	293	85	207	28.8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공공정책국)(7011-218)	64	-	64	24	40	37.5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재정관리국)(7011-219)	48	-	48	24	24	49.5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미래전략국)(7011-220)	20	-	20	15	5	72.7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개발금융국)(7011-221)	26	-	26	10	16	39.1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재정정책국)(7011-222)	31	-	31	13	18	40.8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경제구조개혁국)(7011-224)	38	-	38	17	22	43.3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7011-227)	11	-	11	2	9	21.5
정책품질관리(7135-301)	11	-	11	2	10	13.6
경제교육지원(7135-302)	7	-	7	1	6	15.5
정책홍보사업(7135-306)	10	-	10	6	4	64.1
복권기금 기금관리비(3578-201)	17	-	17	7	10	39.7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기본경비 (2176-201)	17	-	17	17	-	100.0
- 특근매식비(210-05)	**1,197**	**△6**	**1,191**	**480**	**711**	**40.1**

자료 :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최근 5년간 특근매식비 집행현황을 보면, 2020년 78.8%, 2021년 77.0%, 2022년 68.5%, 2023년 47.3%, 2024년 40.1%로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급감하는 추세임.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 특근매식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이·전용등	예산현액(B)	집행액(C)	불용액	집행률(A/C)
2020년	1,275	△23	1,252	1,005	247	78.8
2021년	1,271	△10	1,281	979	303	77.0
2022년	1,298	△19	1,279	889	390	68.5
2023년	1,239	△27	1,212	586	626	47.3
2024년	1,197	△6	1,191	480	711	40.1

자료 :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각 중앙관서별 기본경비를 조직·인력 등의 변동요인 및 예산절감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시 조정하고,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기본경비 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껴서 제대로 집행하도록 규정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84)]

더불어, 해당 지침에서는 어려운 경제·재정 여건을 고려해 공무원과 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경상경비 등 운영경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최근 수년간의 이·전용 및 불용 등 집행실적을 반영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 배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특근매식비 예산은 보다 적정한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을 것임.

감액안 일례로, 2024년 집행률이 60% 미만인 세부사업의 경우 2026년 예산안과의 차액 50%를 감액할 경우 다음과 같이 1억 4,300만원을 감액할 수 있음.

84) 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5.5, p.14.

[2026년도 기획재정부 특근매식비 감액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6년 예산안(A)	2024년 집행액(B)	감액안 (B-A)×50%	예산안 대비 집행율 (B/A)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 (1331-305)	3	1	△1	33.3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운영 (1331-306)	3	2	-	66.6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1431-301)	3	2	-	66.6
국제조세협력(2131-301)	15	15	-	100.0
조세개혁추진단 운영(2131-310)	3	3	-	100.0
국제금융외교 및 G20협력 (3131-311)	3	3	-	100.0
녹색기후기획사업(3333-333)	5	1	△2	20.0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기관운영)(7011-201)	24	19	-	79.2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기획조정실)(7011-202)	87	51	△18	58.6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대변인)(7011-205)	18	14	-	77.8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세제실)(7011-208)	97	24	△37	24.7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경제정책국)(7011-209)	42	39	-	92.9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국고국)(7011-210)	41	22	△10	53.7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국제금융국)(7011-212)	23	18	-	78.3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대외경제국)(7011-213)	21	17	-	80.9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정책조정국)(7011-214)	24	17	-	70.8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예산실)(7011-216)	183	85	△49	46.4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공공정책국)(7011-218)	40	24	-	60.0

세부사업명	2026년 예산안(A)	2024년 집행액(B)	감액안 (B-A)×50%	예산안 대비 집행율 (B/A)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재정관리국)(7011-219)	37	24	-	64.9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미래전략국)(7011-220)	20	15	-	75.0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개발금융국)(7011-221)	17	10	△4	58.8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재정정책국)(7011-222)	25	13	△6	52.0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경제구조개혁국)(7011-224)	31	17	△7	54.8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7011-227)	4	2	△1	50.0
정책품질관리(7135-301)	11	2	△5	18.2
경제교육지원(7135-302)	7	1	△3	14.3
정책홍보사업(7135-306)	10	6	-	60.0
복권기금 기금관리비(3578-201)	10	7	-	70.0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기본경비 (2176-201)	19	17	-	89.5
- 특근매식비(210-05)	**826**	**471**	**△143**	

(9) 국유재산 명세서의 국회 제출 시 「국가재정법」 규정을 준수하여 제출할 필요
(총괄, 국고국)

< 현 황 >

「국가재정법」 제34조[85]는 정부가 국회에 예산을 제출할 때 재정 활동의 투명성과 재산 관리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 심의 권한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국유재산 명세서 등이 첨부되어 국회에 제출되고 있음.

85) **「국가재정법」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2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세입추계 개선사항을 포함한다)
3.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3의2.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4. 국고채무부담행위설명서
5.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인 경우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5의2.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
6.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7. 국유재산의 전전년도 말 기준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해당 연도 말 기준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8.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9. 성인지 예산서
9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11.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
12. 삭제<2010.5.17.>
13.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16.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 명세서를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해당 연도 말' 기준이 아닌 '해당 연도 상반기 말 기준(6월 기준)'으로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것은 예산안 첨부서류 작성 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국가재정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 향후,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의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안 첨부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34조는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유재산 명세서를 규정하며, 그 기준을 '국유재산의 전전년도 말 기준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해당 연도 말 기준 현재액 추정'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첨부 서류를 살펴보면 국유재산 명세서를 '해당 연도 말 기준 현재액 추정(2025년 말 기준 추정)'이 아닌 '해당 연도 상반기 말 기준(2025년 6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국가재정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제출 시점에 국유재산 가격평가 관련 기초자료가 확정되지 않고 이로 인한 국유재산 현재액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6월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최근 수년간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하였다는 입장임.

[국유재산 명세서(2026년도 예산안)]

(단위: 억원)

구분		'23년말		연중 증감				증감차액		'24년말		'25년 (6월말)
종류	단위	수량	금액	증가		감소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금 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토지	㎢	25,455	6,289,957	287	240,871	222	252,811	65	△11,941	25,521	6,278,016	6,288,053
건물	㎢	94	727,292	6	75,989	5	63,625	1	12,364	94	739,655	752,158
공작물	-	-	3,373,711	-	190,993	-	168,722	-	22,271	-	3,395,981	3,400,305
입목죽	-	-	80,058	-	2,276	-	581	-	1,695	-	81,754	81,781
선박 및 항공기	-	-	29,954	-	10,189	-	6,829	-	3,360	-	33,314	36,482
기계기구	-	-	7,385	-	1,756	-	3,126	-	△1,371	-	6,014	7,447
유가증권	-	-	3,160,520	-	1,377,778	-	1,649,136	-	△271,358	-	2,889,162	2,911,565
무체재산	건	8,324,675	22,164	120,581	7,515	51,048	8,584	69,533	△1,069	8,394,208	21,095	21,898
합계	-	-	13,691,041	-	1,907,366	-	2,153,415	-	△246,049	-	13,444,991	13,499,689

자료: 202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그러나, 과거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첨부서류를 살펴보면 「국가재정법」 제정(2007.1.1. 시행) 후 2012년도 예산안까지 국유재산 증감현황을 '해당 연도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국가재정법」을 준수하였음.

다만, 2013년도 예산안부터 국유재산 증감현황을 '해당 연도 9월' 기준으로 작성하여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였고, 2016년도 예산안은 국유재산 증감현황을 '해당 연도 7월' 기준으로, 2017년 예산안부터 국유재산 증감현황을 '해당 연도 6월' 기준으로 작성하여 현재까지 '해당 연도 6월'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음.

[국유재산 명세서(2012년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분		'09년말 현재		연중 증감				증감차액		'10년말 현재		'11년말 현재(추정)
				증		감						
종류	단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금액
토지 소계	백만㎡	16,554	108,991,986	613	9,377,548	507	9,822,020	105	△444,472	16,660	108,547,464	131,525,107
건물	십만㎡	606	37,836,402	2,117	6,986,746	2,042	2,367,354	75	4,619,391	680	42,455,793	44,679,889
공작물	-	-	26,459,251	-	4,334,218	-	1,796,236	-	2,537,982	-	28,997,233	38,165,246
입목죽	-	-	6,533,900	-	592,644	-	238,523	-	354,121	-	6,888,021	6,891,476
선박	척	595	1,217,619	3,553	368,395	3,565	96,613	△12	271,782	583	1,489,402	1,596,875
항공기	대	100	375,382	15	101,411	3	45,179	12	56,232	112	431,614	431,614
기계 기구	-	-	426,408	-	4,213	-	6,738	-	△2,525	-	423,883	429,989
유가 증권	-	-	114,219,864	-	22,390,589	-	9,185,041	-	13,205,548	-	127,425,413	125,959,115
무체 재산	건	75,732	759,214	30,015,351	487,785	30,016,100	423,029	△749	64,757	74,983	823,970	2,502,749
합계	-	-	296,819,976	-	44,643,550	-	23,980,733	-	20,662,817	-	317,482,793	352,182,059

자료: 2012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국유재산 명세서(2016년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분		'13년말 현재		연중 증감				증감차액		'14년말 현재		'15년 현재 (7월) (추정)
종류	단위	수량	금액	증		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금 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토지 소계	백만㎡	24,236	4,346,113	900	440,790	616	412,210	285	28,579	24,521	4,374,692	4,391,185
건물	십만㎡	-	525,113	-	166,398	-	111,300	-	55,098	-	580,211	588,716
공작물	-	-	2,561,822	-	123,991	-	70,225	-	53,766	-	2,615,588	2,625,865
입목죽	-	-	105,138	-	5,935	-	3,024	-	2,911	-	108,049	108,283
선박 및 항공기	대	790	22,281	562	22,932	573	23,438	△11	△506	779	21,755	22,688
기계 기구	-	-	2,901	-	2,021	-	797	-	1,224	-	4,124	4,131
유가 증권	-	-	1,546,465	-	697,246	-	573,680	-	123,566	-	1,670,031	1,688,558
무체 재산	건	668,268	10,866	2,472,645	4,060	53,131	4,494	2,419,514	△434	3,087,782	10,432	10,336
합계	-	-	9,120,698	-	1,463,373	-	1,199,169	-	264,204	-	9,384,902	9,439,762

자료: 201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바와 달리 국유재산 명세서 작성 시점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각 연도별 동일 시점을 기준으로 국유재산 증감 파악이 어려워 국유재산 변동 규모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어려움.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명세서 작성 시 기준 시점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해당 연도 말 기준 현재액을 추정하여 국유재산 명세서를 작성함으로써 「국가재정법」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10) 국고금 운용수익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고금 관리법」 개정 필요

(총괄, 국고국)

< 현 황 >

「국고금 운용수익」은 국가의 현금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투자 수익을 의미하며, 2022년은 2,857억원, 2023년은 2,762억원, 2024년은 1,310억원, 2025년 상반기는 733억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음.

[국고금 운용수익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국고금 운용수익	1,115	1,742	918	1,844	701	609	733	-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는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 규모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고금 운용수익이 세입세출 예산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17조[86]는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재정활동 전반을 투명하게 운용하도록 예산총계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는 예산총계

86)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④ 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초과한 범위 안에서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⑥ 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의 원칙의 예외를 수입대체경비, 국가의 현물 출자 및 전대차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예외 사유가 엄격히 제한됨.

한편, 「국고금 관리법」 제32조 및 제34조[87]는 국고금 운용수익의 경우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재정증권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이자에 지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운용 방식은 본질적으로 「국가재정법」 제17조에 따른 예산총계주의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국고금 운용수익금 7,662억원을 세입세출예산 계상 없이 재정증권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이자로 지출하였음. 국고금 운용수익 지출 내역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22년은 668억원, 2023년은 4,245억원, 2024년은 2,758억원을 재정증권 이자 상환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이자 상환에 지출하였는데, 2023년 및 2024년의 지출액이 국고금 운용수익(2023년: 2,762억원, 2024년: 1,310억원)을 초과한 것은 전년도 국고금 운용수익 잔액을 이월하여 집행하였기 때문임.

---

87) **「국고금 관리법」 제32조(자금의 조달)** ①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달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금조달의 최고액은 자금조달이 필요한 각 회계·계정(통합계정에 포함되는 회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통합계정 및 기금별로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금은 자금이 필요한 각 회계·계정, 통합계정 및 기금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조달한다. 다만,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그 부족분은 일반회계가 부담한다.
제34조(국고금의 운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합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공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발행되는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단기 대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무증서의 매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의 지급
2. 그 밖에 국고금의 운용에 관련되는 경비의 지급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77조(운용계정의 회계 구분)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용계정을 국고금예탁계정(이하 "예탁계정"이라 한다), 국고금세부운용계정(이하 "세부운용계정"이라 한다) 및 국고금운용수익계정(이하 "수익계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국고금 운용수익 지출 내역]

(단위: 억원)

구분	지출일시	지출금액	지출 사유
2022년 국고금 운용수익 ('21년 이월액 +'22년 운용수익금)	2022-04-13	20.7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2-04-20	31.1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2-04-27	33.7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2-05-04	22.4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2-05-11	21.6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2-05-18	22.4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2-05-25	22.4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2-05-31	19.7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2-06-08	20.2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2-06-15	19.1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2-06-22	21.8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2-06-22	25.9	한국은행 일시차입 이자상환
	2022-06-28	18.0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2-08-03	24.2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2-08-10	23.9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2-08-17	23.5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2-08-24	23.5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2-08-31	26.2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2-09-27	79.7	한국은행 일시차입 이자상환
	2022-12-30	167.7	한국은행 일시차입 이자상환
2023년 국고금 운용수익 ('22년 이월액 +'23년 운용수익금)	2023-04-05	58.9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3-04-12	59.6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3-04-19	60.4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3-04-26	61.3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3-05-03	61.3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3-05-10	60.4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3-05-17	60.8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3-05-24	58.5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3-05-31	56.3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3-06-07	58.5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3-06-14	57.8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3-06-21	57.3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3-06-28	57.1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3-06-30	641.6	한국은행 일시차입 이자상환
	2023-07-05	90.6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3-07-12	90.6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3-07-19	93.2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3-07-26	93.2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3-08-02	93.5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3-08-09	93.2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3-08-16	92.4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3-08-23	92.2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3-08-30	95.3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3-09-06	94.0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3-09-13	97.1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3-09-20	94.5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3-09-27	100.5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3-09-27	499.2	한국은행 일시차입 이자상환
	2023-10-04	93.2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3-10-11	93.2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3-10-18	93.2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3-10-25	94.5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3-11-01	93.2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3-11-08	96.6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3-11-15	96.6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3-11-22	98.4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3-12-29	356.4	한국은행 일시차입 이자상환
2024년 국고금 운용수익 ('23년 이월액 +'24년 운용수익금)	2024-03-29	9.2	한국은행 일시차입 이자상환
	2024-04-03	93.2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4-04-09	93.0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4-04-17	93.2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4-04-24	93.7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4-04-30	93.2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4-05-08	123.9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4-05-14	123.2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4-05-22	123.6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4-05-29	122.2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4-06-05	121.5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4-06-12	121.9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4-06-19	119.1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4-06-26	121.2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4-06-28	600.5	한국은행 일시차입 이자상환
	2024-07-03	122.9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4-07-10	123.2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4-07-17	123.2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4-07-24	84.5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4-09-11	59.6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4-09-12	25.7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4-09-13	36.0	재정증권 이자상환
	2024-12-31	129.9	한국은행 일시차입 이자상환

주: 기획재정부는 1953년에 한국은행과 체결한 「정부대상금 약정서」에 따라 차입일이 속한 다음 분기에 이자를 상환 중

자료: 기획재정부

세입세출예산은 그 규모와 사용처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침으로써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는 반면, 국고금 운용수익은 국회의 심의 권한이 제한되어 그 발생 규모 및 예측 적정성에 대한 국회의 감독이 어렵고 재정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특히, 국고금 운용수익은 국가의 재정 수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외로 처리되어 국가 재정의 총괄 규모를 왜곡하고 재정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국고금 운용수익을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목으로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모든 국가 수입이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사용처를 세출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국가 재정 규모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다만, 국고금 운용수익의 세입세출예산 편입은 「국고금 관리법」 제34조(국고금의 운용) 개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11) 청년정책 대응기반 강화 사업의 소관 정책과의 연계 강화 필요 등 (경제구조개혁전략 기획 및 이행기반 구축, 경제구조개혁국)

< 현 황 >

「경제구조개혁전략 기획 및 이행기반 구축」 사업은 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장 구조 개선, 새로운 복지시스템 정립, 청년에 대한 정책 마련 등 경제·사회 현안 대응 및 경제 구조 이슈에 대한 주요 대책을 추진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대비 8,100만원 감소한 5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경제구조개혁전략 기획 및 이행기반 구축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경제구조개혁전략 기획 및 이행기반 구축(1141-301)	602	602	521	△81	△13.5
- 경제구조개혁 및 사회이동성 개선 과제 대응	410	410	329	△81	△19.8
- 2030자문단 운영	68	68	68	-	-
- 청년정책 대응기반 강화	**124**	**124**	**124**	**-**	**-**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는 청년정책 대응기반 강화 사업을 소관 정책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국무조정실 사업과 차별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경제구조개혁전략 기획 및 이행기반 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인 「청년정책 대응기반 강화 사업」은 청년 일자리·자산형성·주거대책 등 국정과제를 기획재정부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청년정책 관련 회의·행사, 청년정책 관련 연구용역 등을 통해 청년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임.

「청년정책 대응기반 강화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기획재정부 소관 정책과 청년정책 간의 실질적 연계·협력 강화 등 청년정책 대응기반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동 내역사업의 예산안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안 총액 1억 2,400만원 중 6,500만원을 청년정책 관련 행사 개최 비용 등을 위한 일반용역비로 편성하고 있음.

[2026년도 청년정책 대응기반 강화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목명	예산안	예산안 산출내역
청년정책 관련 회의 등	사업추진비	6	청년정책과제 구체화 등을 위한 업무협의 등 - 경제구조개혁 관련 관계기관 업무협의 등 (30,000원×6명×17회=3백만) - 경제구조개혁 관련 전문가 간담회 등 (30,000원×6명×17회=3백만)
	일반용역비	**65**	**청년정책 관련 행사 개최 비용 등** **- 청년정책 수립 관련 정책방향 토론회 등 개최 위탁 (5백만×13회=65백만)**
	임차료	13	청년정책 관련 전문가 토론회 등 장소 임차 (임차료) : 13백만
청년정책 관련 연구용역	정책연구비	40	
합 계		124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외부 용역을 통해 청년정책 관련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청년세대 의견수렴이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획재정부 소관 정책·계획 등과 청년세대의 연계 및 협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소관 정책과 청년정책 간의 실질적 연계·협력 강화 등 청년정책 대응기반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과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은 청년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청년정책의 분석 및 이행상황의 점검·평가, 청년과의 소통 활성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를 살펴보면 청년참여 토론회, 청년정책 컨퍼런스 및 청년참여 간담회 등을 위한 청년참여 확대 관련 사업과, 청년정책 현안과제 연구(정책연구비) 등을 위한 사업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② 청년참여 확대 등: ('25) 1,205 → ('26) 1,460백만원, +21.1%
- ○ 청년참여 거버넌스 : ('25) 670 → ('26) 640백만원, △4.4%
  - (요구)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 부여 및 정책 반영·환류 시스템 구축하여 지속적인 성과 창출 필요
  - (산출) ▲청년참여 토론회(560백만원), ▲청년정책 컨퍼런스(80백만원)
- ○ 청년인재DB 운영 : ('25) 255 → ('26) 255백만원, +0.0%
  - (요구) 청년인재DB가 정식으로 서비스를 개시('23년~)함에 따라 운영·관리(안정적 시스템 운영, 홈페이지 리뉴얼 등) 및 유지 보수 필요
  - (산출) ▲청년인재DB 운영 및 유지보수(205백만원), ▲청년인재DB 홍보 및 참여 확대(50백만원)
- ○ 청년참여 간담회 등 : ('25) 280 → ('26) 270백만원, △3.5%
  - (요구) 청년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 및 정책 추진상황 점검 등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유도 필요
  - (산출) ▲시·도별 간담회(110백만원), ▲청년보좌역 회의(47백만원), ▲분야별 간담회(56백만원) ▲정책 자문회의(57백만원)
- ○ 청년플랫폼회의 운영 : ('25) 0 → ('26) 296백만원, +100%
  - (요구) 청년정책의 당사자성을 강화하고 청년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 주도적 청년플랫폼회의 운영
  - (산출) ▲청년플랫폼회의 개최(269백만원), ▲청년플랫폼회의 간담회 지원(27백만원)

④ 청년정책 연구사업 : ('25) 300 → ('26) 200백만원, △33.3%
- ○ 청년정책 현안연구 : ('25) 250 → ('26) 150백만원, △40.0%
  - (요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청년정책 현안과제 연구
  - (산출) 청년정책 현안과제 연구 100백만원×1식, 50백만원×1식
- ○ 청년정책 성과자료 발간 : ('25) 50 → ('26) 50백만원, +0.0%

- (요구) 중앙부처 성과자료(청년정책 연차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성과자료(주요 통계집, 우수사례집) 발간 필요 - (산출) 50백만원×1식

자료: 국무조정실 사업설명자료

「청년기본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청년정책 결정 과정의 자문·심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88]하고 있어, 기획재정부가 경제정책의 수립 등 소관 정책과 관련된 청년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함.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청년정책 대응기반 강화」 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청년 의견수렴·정책 간담회 및 청년정책 관련 연구가 국무조정실 사업과 목적 및 추진 방식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특히, 「청년정책 대응기반 강화」 사업으로 편성한 청년정책 관련 정책연구비의 경우 청년정책의 종합적 수립 및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 내 청년정책 현안연구와 차별화를 둘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가 부처의 고유기능인 경제 관련 청년정책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수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청년정책 대응기반 사업으로 수행하는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에 청년세대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연구에 대해서는 청년의 경제활동 촉진 등 경제정책 중심의 연구로 차별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88) **「청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⑥ 국무총리는 청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점검을 위하여 청년정책 전문가와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의 통합 검토 필요 등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운영,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 현 황 >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운영」은 대통령 소속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지원단 운영 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임. 2026년도 예산안에는 21억 2,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026년도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운영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세목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국가바이오위원회 지원단 운영 (1432-301)	-	-	2,129	2,129	순증
- 기타운영비 (210-16)	-	-	20	20	순증
- 국외여비 (220-02)	-	-	50	50	순증
- 정책연구비 (260-02)	-	-	400	400	순증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대통령 소속의 국가바이오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의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이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양자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가바이오위원회는 국가 바이오 정책·규제·R&D 등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2024년 11월 신설, 2025년 1월 출범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임. 동 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부처의 장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 및 제도의 수립·개선, 바이오 분야 규제 검토 및 개선,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 전략 및 주요사업 투자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89].

89)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바이오 분야 전반에 관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책, 규제, 투자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바이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25년 8월까지 동 위원회는 총 2차례의 전체회의와 4차례의 분과위를 개최하였으며, 바이오 기술 혁신 및 규제 개혁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음.

[2025년 국가바이오위원회 개최실적]

구분	개최일시	참석인원	회의안건
전체회의	1.23	24	바이오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전략(바이오대전환 전략)
	5.20	24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바이오 기술 혁신 및 규제개혁 추진방향 제언
바이오과학·의료분과위	4.29	8	국가바이오위원회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바이오자원·혁신분과위	5.2	6	국가바이오위원회 2차회의 준비계획 및 안건현황
바이오제조·전환분과위	5.12	7	바이오 규제지원 및 규제혁신 체계 구축방향(안)
합동분과위	5.15	7	정부바이오 R&D 중점분야 및 추진방향 제안관련 사전의견수렴

자료: 기획재정부

그런데 현재 바이오 정책과 관련해서는 2023년 10월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가 별도로 설치·운영 중임. 동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의 장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바이오헬스혁신정책의 수립·홍보, 관련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함[90].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제도의 수립 및 개선
2. 바이오 분야의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검토 및 개선
3.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 전략 및 주요사업 투자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생물학적 위협 대응, 공급망 안정화, 전략기술 확보 등 바이오 안보 역량 강화
5.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베이스 구축·활용, 클러스터 조성·연계, 첨단 연구장비·시설 구축 등 바이오 연구개발·산업 기반의 확충
6. 바이오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공공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지원
7.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바이오 관련 사업 간 연계 및 기획
8. 바이오 관련 대규모 사업(「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 및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를 충족하는 사업을 말한다)의 사업계획 조정
9.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허청장, 질병관리청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2.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3. 국가안보실 제3차장
4. 바이오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90)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바이오헬스(의약품, 의료기기 및 보건의료기술 등과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육성과 정보통

동 위원회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7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방안, 인재양성방안, 바이오헬스 R&D 다부처 협업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음[91].

[2023~2025년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실적]

구분	개최일시	회의안건
제1차	’23.12.22.	▪ (의결)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계획 ▪ (보고) ‘24년 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 혁신 R&D 투자계획 ▪ (보고)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방안 ▪ (보고) 의사과학자 양성 전략
제2차	’24.4.4.	▪ (보고) 바이오헬스 R&D ’24년 추진계획 및 ‘25년 중점 지원전략 ▪ (보고) 바이오헬스 인재양성방안 이행점검 ▪ (보고)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 ▪ (보고)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자문단 구성·운영계획 ▪ (보고) 제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결과보고
제3차	’24.6.19.	▪ (의결) ‘25년도 바이오헬스 R&D 다부처 협업 추진방안 ▪ (보고)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결과보고
제4차	’24.9.13.	▪ (보고)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 ▪ (보고)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 ▪ (보고)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정비 ▪ (보고) 제3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결과보고

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과 바이오헬스와의 융·복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하 "바이오헬스혁신정책"이라 한다) 및 추진과제를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바이오헬스혁신정책의 수립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바이오헬스혁신정책 관련 부처별 추진과제의 수립 및 추진성과의 점검에 관한 사항
3. 바이오헬스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기술개발 및 생산·수급에 관한 사항
4. 바이오헬스혁신정책 관련 국내 기업, 행정기관·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바이오헬스혁신정책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바이오헬스혁신정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허청장 및 질병관리청장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3. 바이오헬스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91) 참고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실무지원을 위한 사업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는 않으나, 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에서 지원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기본경비로 위원 및 자문수당 2,980만원이 지급되었음.

제5차	’24.12.24.	▪(보고) 세포·유전자치료제 및 mRNA 백신 기술개발 현황 ▪(보고)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정비 ▪(보고) 제4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결과보고
제6차	’25.3.25.	▪(보고)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정비 ▪(보고)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 이행점검 ▪(보고) 2024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보고) 제5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결과보고
제7차	’25.8.5.	▪(보고) 제6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결과보고 ▪(보고)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경과 보고 ▪(보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방안 ▪(보고)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추진경과 ▪(보고)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정비

자료: 보건복지부

이를 고려할 때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바이오 분야의 정책 수립, 규제 개선 등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의 장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와 구성 및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중복 운영에 따른 비효율 방지 및 바이오 정책 추진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별 부처 업무와의 중복을 방지하고 국외여비와 정책연구비가 연중 분산 집행될 수 있도록 국외출장 및 정책연구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운영을 위한 예산은 2025년 예산에서는 예비비 20억 6,100만원이 배정되었고, 2026년 예산안에는 동 사업 예산 21억 2,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이 중 국외여비(220-02)는 2025년과 2026년에 동일하게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바이오정책 국제컨퍼런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등 각각 3차례의 출장을 계획하였음. 정책연구비(260-02)의 경우 2025년에는 5,000만원이 배정되어 1개 정책연구과제 수행을, 2026년에는 4억원이 편성되어 8개 정책연구과제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25~2026년 국외여비 및 정책연구비 예산(안) 산출 근거]

구분	2025 예산(예비비)	2026 예산안
국외여비 (220-02)	- 50,000천원 1. 바이오정책 국제컨퍼런스(미국, 국장급 1명, 4급이하 4명) (30,773천원) 2. CES(미국, 4급이하 2명) (11,838천원) 3. 바이오클러스터 사례조사 및 벤치마킹(유럽, 4급이하 2명) (11,838천원)	- 50,000천원 1. 바이오정책 국제컨퍼런스(미국, 국장급 1명, 4급이하 4명) (30,773천원) 2. CES(미국, 4급이하 2명) (11,838천원) 3. 바이오클러스터 사례조사 및 벤치마킹(유럽, 4급이하 2명) (11,838천원)
정책연구비 (260-02)	- 50,000천원 1. 바이오 관련 연구과제(50,000천원) · 50,000천원x1식	- 400,000천원 1. 바이오 분야별 정책연구(150,000천원) · 50,000천원x3식 2. 바이오 현안 정책연구(250,000천원) · 50,000천원x5식

자료: 기획재정부

그런데 2025년도 정책연구의 경우 10월에서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국외출장도 상반기 국외여비가 집행되지 않는 등 국외출장 및 정책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사전계획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바이오 분야 국외출장 및 정책연구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개별 부처의 업무 영역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사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외여비 및 정책연구비에 대한 수요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별 부처 업무와의 중복을 방지하고 국외여비와 정책연구비가 연중 분산 집행될 수 있도록 국외출장 및 정책연구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브라운백 미팅 비용을 기타운영비(210-16)로 편성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감액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운영 예산안 중 기타운영비(210-16)는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 해당 예산안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과운영비 864만원, 국장실 운영비 720만원, 경조사비 및 격려금 240만원, 브라운백 미팅 비용 240만원으로 구성됨.

[2025~2026년 기타운영비 예산(안) 산출 근거]

구분	2025 예산(예비비)	2026 예산안
기타운영비 (210-16)	- 20,000천원 1. 과운영비(8,640천원) · 180,000원x2팀x10개월 · 90,000원x4팀x10개월 2. 국장실 운영비(7,200천원) · 200,000원x3국x10월 3. 경조사비 및 격려금(2,400천원) · 200,000원x10개월 4. 브라운백 미팅 비용(1,800천원) · 600,000원x3분기	- 20,000천원 1. 과운영비(8,640천원) · 180,000원x2팀x12개월 · 90,000원x4팀x12개월 2. 국장실 운영비(7,200천원) · 200,000원x3국x12월 3. 경조사비 및 격려금(2,400천원) · 200,000원x12개월 4. 브라운백 미팅 비용(2,400천원) · 600,000원x4분기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기타운영비(210-16)'에는 과운영비, 비서실운영비, 시험관리비, 축·조의금 및 격려금이 포함되며,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와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경비, 공식 회의 및 행사 경비 등은 '사업추진비(240-01)'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국가바이오위원회 지원단 브라운백 미팅 비용을 기타운영비로 편성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해당 예산 240만원은 감액할 필요가 있음.

(13) 환율 상승에 따른 국제기구 분담금 부족 문제와 안정적 예산 편성 필요
(국제조세기구 등 분담금·관세협력기구출연(ODA), 세제실)

< 현 황 >

「국제조세기구 등 분담금」은 관세협력이사회 설립에 관한 협약, '09년 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 가입국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하는 사업임. 2026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7억 1,400만원임.

「관세협력기구출연(ODA)」은 WCO 기금출연에 관한 약정, UN ESCAP과 한국정부 간 기금출연 양해각서 등을 근거로 하는 분담금을 납부하는 사업임. 2026년 예산안은 2025년과 동일한 10억 2,300만원임.

[2026년도 국제조세기구 등 분담금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국제조세기구 등 분담금 (2031-303)	604	714	110	18.2
- 국제조세기구 등 분담금	**604**	**714**	**110**	**18.2**

[2026년도 관세협력기구출연(ODA)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관세협력기구출연(ODA) (2031-304)	1,023	1,023	-	-
- 관세협력기구출연(ODA)	**1,023**	**1,023**	**-**	**-**

<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는 세계관세기구(WCO) 분담금 등 국제기구 분담금을 매년 납부하고 있으나, 환율 상승에 따른 예산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국제적 신뢰 유지와 정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구 분담금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세계관세기구(WCO)의 회원국으로서 각종 국제협약, 약정 및 양해각서(MOU)에 근거하여 매년 정기적인 국제기구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주요 납부 대상은 세계관세기구(WCO) 분담금, 개발도상국 협력기금, UN ESCAP 협력기금 등이며,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외교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정 지출 항목임.

[국제기구 분담금 개요]

구분	가입일	부담금 내용	분담금 부담 방식
세계관세기구(WCO) 분담금	'68.7.	관세당국간 협력을 통해 합법적 무역을 권장하고 세입 및 사회 안전을 확보하며 세관 공무원의 능력배양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의무 분담금	WCO 회원국별 분담금 납부 등급(A~D등급*)에 따른 분담금 규모 결정 및 납부 * A : 미국(최대 분담률 회원국 B : OECD 회원국('96 이전) C : OECD 회원국('96 이후, 우리나라 해당) D : 개도국(최소 분담률 회원국)
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 분담금	'09.9.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교환 글로벌포럼 회원국으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의무분담금	정보교환 글로벌포럼 회원국간 균등부담 및 GDP 규모 비례 부담
OECD 조세행정 공조협약 분담금	'10.5.	조세 관련 정보교환 및 징수협조 등 세정 협력을 위한 다자협약(142개국 가입)의 운영에 소요되는 행사비, 자료 제작비등 등 각종 비용 부담을 위한 의무 분담금	전년도 소요 경비를 다음 연도에 협약 가입국들이 균등 부담
개발도상국 협력기금	'11.12. (약정서 체결)	WCO 정책위원회에서 WCO 사무총장과 기금출연에 관한 약정서 체결('11.12.6), WCO 펠로우쉽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중견 관세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관세제도 및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관세행정분야 국가 간 협력 기반 구축하기 위해 협력기금 출연	WCO-기재부간 지급약정서 체결에 따라 분담금 납부

구분	가입일	부담금 내용	분담금 부담 방식
UN ESCAP 협력기금	'13년부터 (협력기금 출연)	'12.5월 UN ESCAP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역내 무역원활화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 채택, 지역 내 협력 강화를 위한 무역원활화 관련 역량강화 및 APTA진흥사업을 통해 아·태 지역 국가의 역내협력을 강화 지원을 위해 협력기금 출연	ESCAP과의 협약서 체결(3년마다)에 따라 분담금 납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러나, 최근 5년간의 국제기구 분담금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이후 매년 실제 납부액이 예산에 책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구조적인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2024년도 기준으로는 WCO 분담금에서 1,700만원, 개발도상국 협력기금에서 5,600만원, UN ESCAP 협력기금에서 3,000만원이 각각 초과되어 편성된 예산만으로는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

[최근 5년간 국제기구 분담금 결산 현황('25.9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	납부액	예산	납부액	예산	납부액	예산	납부액	예산	납부액
WCO 분담금	외화(€)	277,000	268,939	280,000	309,243	312,000	325,031	345,510	330,591	345,510	311,891
	원화	380	374	381	428	418	465	490	507	514	-
글로벌 포럼 분담금	외화(€)	65,600	60,599	65,600	58,154	66,000	61,814	66,000	63,173	66,000	66,000
	원화	89	83	89	78	88	86	94	91	98	-
공조 협약 분담금	외화(€)	4,437	2,938	4,400	2,226	4,500	2,350	4,500	2,350	4,500	3,100
	원화	6	4	6	3	6	3	6	4	7	5
개도국 협력 기금	외화(€)	50만	50만	48.8만	48.8만	50만	50만	50만	50만	50만	50만
	원화	685	676	663	674	670	716	710	766	745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	납부액	예산	납부액	예산	납부액	예산	납부액	예산	납부액
ESCAP 협력 기금	외화($)	22만	22만	22만	22만	22만	22만	22만	22만	22만	22만
	원화	266	250	249	293	284	279	286	316	304	312

자료: 기획재정부

이러한 국제기구 분담금 부족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은 최근 수년간 지속된 유로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적정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분석되며, 실제로 유로 환율은 2021년 약 1,320원 수준에서 2025년 10월 기준 약 1,670원으로 급등하였으나, 2026년 예산안에서는 국제기구 분담금 산정 시 기준 환율을 1,590원/EUR로 설정하여 편성하였음.

국제기구 분담금은 협정에 따라 달러화 또는 유로화 등 외화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납부 시점에 환율이 상승하면 환차손이 발생하게 되며, 원화로 환산 시 환율 인상분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실질적인 납부 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율 인상분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획재정부는 국제조세협력(2131-301) 및 국내조세협력(2131-308) 세부사업 예산에서 부족분을 전용하여 충당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음.

[최근 5년간 국제기구 분담금 부족분 이전용 등 현황(국제조세기구 등 분담금)]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세목	금액	이전용 등 사유
2022년	국제 조세협력 (2131-301)	공공요금및제세 (210-02)	3	WCO 분담금 결정액이 당초 예산액 대비 증가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한 소요 증가 * 예산 : 280,000EUR 분담금 결정액 309,243EUR * 예산 기준 환율 1,360원/EUR 전용 당시 환율 1,425원/EUR
		특근매식비 (210-05)	4	
		임차료 (210-07)	10	
		국내여비 (220-01)	30	
	소계		47	

구분	세부사업	세목	금액	이전용 등 사유
2023년	국내 조세협력 (2131-308)	정책연구비 (260-02)	41	WCO 분담금 결정액이 당초 예산액 대비 증가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한 소요 증가 * 예산 : 312,000EUR 분담금 결정액 325,031EUR * 예산 기준 환율 1,340원/EUR 전용 당시 환율 1,431원/EUR
2024년	국제 조세협력 (2131-301)	일반수용비 (210-01)	18	환율 상승으로 인한 소요 증가 * 예산 기준 환율 1,420원/EUR 전용 당시 환율 1,538원/EUR

자료: 기획재정부

[최근 5년간 국제기구 분담금 부족분 이전용 등 현황(관세협력기구 출연(ODA))]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세목	금액	이전용 등 사유
2022년	국제 조세협력 (2131-301)	일반수용비 (210-01)	95	환율 상승으로 인한 소요 증가 * 예산 기준 환율 1,360원/EUR 전용 당시 환율 1,420원/EUR * 예산 기준 환율 1,130원/USD 전용 당시 환율 1,430원/USD
2023년	국내 조세협력 (2131-308)	정책연구비 (260-02)	34	환율 상승으로 인한 소요 증가 * 예산 기준 환율 1,340원/EUR 전용 당시 환율 1,431원/EUR
2024년	국제 조세협력 (2131-301)	정책연구비 (260-02)	50	환율 상승으로 인한 소요 증가 * 예산 기준 환율 1,420원/EUR 전용 당시 환율 1,538원/EUR
	국내 조세협력 (2131-308)	일반수용비 (210-01)	40	
	소계		90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예산 편성 시 적용된 환율(1유로=1,490원) 대비 실제 납부 시점의 환율이 상승(2025년 10월 23일 기준 1유로=1,669.65원)함에 따라, 2025년도에도 세계관세기구(WCO) 분담금을 비롯한 국제기구 분담금의 납부를 위해서는 예산의 전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국제기구 분담금은 국제조세협력의 일환으로서 법적 의무를 수반하며, 동시에 국제기

구와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는 단순한 재정 지출이 아닌,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제적 위상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만약, 국제기구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납부가 지연될 경우, 국제기구 내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국가 신인도 하락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우리나라의 국제협상력 약화와 글로벌 영향력 저하로도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예상되는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국제기구 분담금 미납 또는 지연납부 시 예상 문제점]

구분	주요 내용
세계관세기구(WCO) 분담금	관세협력이사회 설립협약에 따른 의무 분담금으로서, 분담금 체납 시 의결권, 투표권, 재정 관련 다양한 사업 참여 제한 등으로 이어져 WCO 내 위상 및 신뢰도 하락 가능
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 분담금	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 분담금은 의무분담금으로 체납국가는 각 회원국에 공개되며, 이를 통해 외교적 신뢰도 및 국제관계 위상 약화 우려
OECD 조세행정 공조협약 분담금	OECD 조세행정 공조협약 분담금은 의무분담금으로 체납국가는 각 회원국에 공개되며, 이를 통해 외교적 신뢰도 및 국제관계 위상 약화 우려
개발도상국 협력기금	협력기금 미납으로 인해 개발도상국 대상 관세행정 현대화, 디지털화, 원산지 검증훈련 등 핵심 프로그램의 차질 발생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국제적 위상·리더십 손상 가능
UN ESCAP 협력기금	아·태지역 영내 국가간 서류없는 통관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우리나라가 '12.5월 '서류없는 무역원활화 협정'을 제안·채택하여, '13년부터 현재까지 협력기금 명목으로 지급 중이며, 분담금 체납 시 사업이행 지연 및 축소, 기여국 신뢰도 및 협상력 저하로 이어져 신규 협력사업 추진에 부정적 영향 가능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실제로, OECD 글로벌포럼의 2025년도 분담금 청구액(총 81,090.61유로)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인해 납부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에 따라 OECD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초과분은 2026년 예산안에 반영하여 납부할 예정에 있음.

이 사례는 국제기구와의 신뢰 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향후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매년 국제기구 부담금 부족분을 타 세부사업 예산에서 전용해 충당하게 되면, 당초 계획된 세부사업 예산이 축소되거나 사업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정책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현재의 국제기구 분담금 부족 문제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환율 변동이라는 외부 요인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데서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로 보이고, 특히 국제기구 분담금은 외화 기준으로 산정되는 특성상 향후에도 환율 등 대외 경제 여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예산안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4) 연구용역 비목 재분류 필요 (국채시장관리 및 국제화, 국고국)

< 현 황 >

「국채시장관리 및 국제화」는 원활한 국채발행 및 국채시장의 양적·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운영경비 및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1억 4,700만원이 감소한 3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국채시장관리 및 국제화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국채시장관리 및 국제화 (2233-304)	480	480	333	△147	△30.6
- 전략적 국채관리 기반 구축	281	281	134	△147	△109.7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는 전략적 국채관리 기반 구축 사업의 경우 예산 비목의 부적정성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 비목을 일반연구비(260-01)에서 정책연구비(260-02)로 재분류하여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전략적 국채관리 기반 구축 사업'은 효율적 국채 발행 및 국채시장 활성화 등 전략적 국채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 일반연구비(260-01) 1억 3,400만원을 편성함.

그런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략적 국채관리 기반 구축 사업에서 진행한 연구용역의 주요 주제는 '국채시장 중장기 발전', '효율적 국채 발행 및 발전', '국채시장 활성화 및 리스크 관리' 등으로, 이는 모두 정책 개발을 위한 성격이 강하여 정책연구비(260-02) 성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일반연구비(260-01)를 “국가로부터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 비용”으로, 정책연구비(260-02)를 “각 부처에서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학술연구 포함) 관련 비용”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동 사업에서 진행하는 연구용역은 정책 개발 성격에 부합하므로 이를 일반연구비로 편성·집행하는 것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전략적 국채관리 기반 구축 사업 연구용역 현황]

(단위: 백만원)

계약명	계약액	계약방법	계약일	계약자
국채시장 중장기 발전을 위한 운영전략	268	수의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3항)[92]	’22.5.24. ~’22.12.31.	한국개발연구원
효율적인 국채 발행 및 국채시장 발전을 위한 운영전략	270	수의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23.6.26~ ‘23.12.29.	한국개발연구원
국채시장 활성화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운영 전략	253	수의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24.6.17.~ ’24.12.24.	한국개발연구원
국채시장 발전을 위한 중장기 운영 전략	281	수의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25.7.14.~ ’25.10.31.	한국개발연구원

자료: 기획재정부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예산 비목의 부적정성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연구비(260-01)로 편성된 예산을 정책연구비(260-02)로 재분류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9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5)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정원을 고려하여 참석 수당 감액 필요
(혁신조달지원, 국고국)

< 현 황 >

「혁신조달지원」은 공공조달 범정부 거버넌스(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 운영 및 혁신제품 지정·평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8,400만원 감소한 2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그 중 일반수용비는 2025년 대비 500만원 감소한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혁신조달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세목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혁신조달지원 (2233-305)	371	371	287	△84	△22.6
- 일반수용비 (210-01)	55	55	50	△5	△9.1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혁신조달지원 사업의 일반수용비는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예산을 산출하였으므로, 기획재정부는 참석 수당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93]은 공공조달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 및 제도 마련, 공

9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 ① 조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달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 및 제도의 마련
2.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수요 발굴 및 구매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조달과 관련된 성과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27조의2에 따른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달정책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공공조달, 경제·과

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수요 발굴 및 구매 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같은 법 시행령[94]은 분과위원회로 공공수요발굴위원회,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및 공공조달성과위원회를 두고 있음.

학, 기술혁신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공공수요발굴위원회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중 1명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행정안전부차관
4.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5. 중소벤처기업부차관
6. 조달청장
7.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으로 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공공수요발굴위원회,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및 공공조달성과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수요발굴위원회: 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공수요 발굴 체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나. 혁신제품 지정에 관한 사항
다.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공공구매 목표 설정 및 그 평가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공공수요 발굴, 혁신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공조달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 및 제도 마련에 관한 사항
나. 삭제<2024.7.2.>
다. 주요 정책 현안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조달정책과 관련하여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공공조달성과위원회: 법 제5조제1항제3호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공조달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공공조달의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공공조달성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각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중복하여 임명할 수 있다.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현황]

구분	사항
설치 목적	・조달정책에 관한 심사·결정
기능	・공공조달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 및 제도 마련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수요 발굴 및 구매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공공조달과 관련된 성과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명: 공공수요발굴위, 공공조달제도개선위, 공공조달성과분과위 (총 3개, 서면 1회 개최)
위원	・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당연직: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조달청장 ・위촉직: 10명(교육인 4명, 경제・기업・금융인 5명, 변호사 1명)

주: 2025년 7월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6년도 예산안에 공공조달정책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600만원(=20만원×20명×4회), 분야별 분과위원회 등 참석 수당으로 1,000만원(=20만원×10명×5회) 등 2025년 대비 800만원 증가한 2,600만원을 편성함.

[2025년도 및 2026년도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수당 및 임차료 산출 내역]

2025년도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비목	산출내역	비목	산출내역
일반수용비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 **200만원** ・ 200천원×**10명**×1회=2,000천원	일반수용비	공공조달정책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 **1,600만원** ・ 200천원×**20명**×4회=16,000천원
	공공조달수요발굴위원회 참석 수당 : **400만원** ・ 200천원×**5명**×4회=4,000천원		분야별 분과위원회 등 참석 수당 : **1,000만원** ・ 200천원×**10명**×5회=10,000천원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참석 수당 : **200만원** ・ 200천원×**5명**×2회=2,000천원		

자료: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위촉된 차관급 위원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현재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수당은 민간위원에게만 지급되고 있음.

[2025년도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관련 참석수당 지급 내역]

일시	건명	집행액
3.6.	2025년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안건 간담회	600,000원(=150,000원×**4명**)
3.12.	2025년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1,350,000원(=150,000원×**9명**)
5.27.	2025년 제1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서면의결)	500,000원(=100,000원×**5명**)
6.23.~6.27.	2025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서면의결)	1,000,000원(=100,000원×**10명**)
8.14.	2025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사전 간담회	1,200,000원(=150,000원×**8명**)
8.20.	2025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900,000원(=150,000원×**6명**)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 재구성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 정원(조달정책심의위원회: 10명, 분야별 분과위원회: 5명 내외)이 아닌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전체 정원(조달정책심의위원회: 20명, 분과위원회: 10명) 등을 고려하여 회의 참석 수당을 산출하였으나, 정부 당연직 위원은 회의 참석 수당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관련 참석 수당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2026년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① 전체회의 1,400만원(20만원×10명×7회), ② 분과위원회 600만원(20만원×5명×2회×3개 분과위원회), ③ 사전 간담회[95] 300만원 등 참석 수당으로 2,300만원 지출이 예상된다는 입장임.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참석 수당이 지급가능한 민간위원 정원 및 회의 개최 증가 소요를 고려하여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을 300만원 감액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95) 기획재정부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전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안건을 사전에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간담회를 진행 중

(16) 국유재산 소송 현황을 감안하여 배상금 및 반환금 예산 감액 필요

(국유재산관리, 국고국)

< 현 황 >

「국유재산관리」는 국유재산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운영경비, 국유재산 관련 소송패소에 따른 국가 배상금·반환금,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등을 시행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과 동일한 6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국유재산관리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국유재산관리 (2234-302)	621	621	621	-	-
- 국유재산관리	292	292	292	-	-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는 배상금 및 반환금의 연례적 불용 및 현재 진행 중인 국유재산 소송 현황을 감안하여 배상금 및 반환금의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유재산관리는 국유재산 관련 소송패소에 따른 국가 배상금·반환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 배상금(310-02)[96] 1억 4,200만원, 포상금(310-03) 2,500만원, 반환금(710-03)[97] 1억 2,500만원을 편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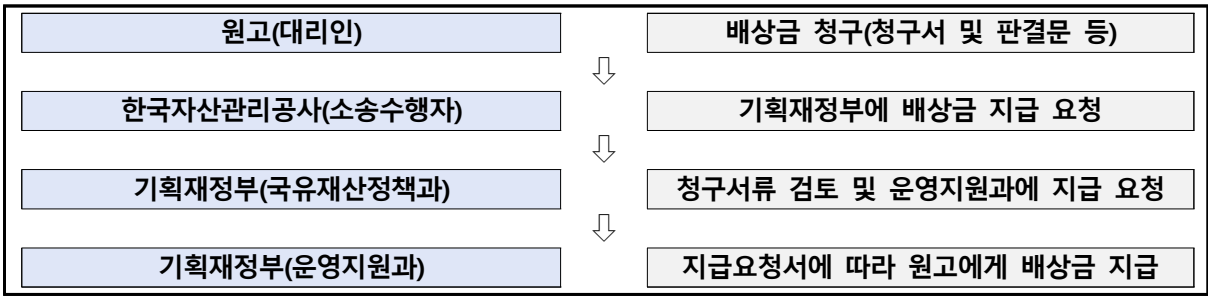
국유재산 관련 위법한 행정처분, 사용료 및 변상금 과다 부과 등으로 국가가 손해배상 또는 반환금 지급 의무를 부과받는 경우,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총괄청[98]으로서 배상금 및

96) 국가가 사업을 수행하거나 국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국가배상법이나 기타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경비(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등)

97) 1. 반환금 : 과오납금, 반환금, 수표지불미청산금, 상환금, 기타 반환금
2. 손실금 : 유가증권, 고정자산등의 매출손실금, 대손금 또는 대손상각충당금, 기타 잡손실

반환금 지급 절차를 담당함.

[배상금 지급 절차]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러나, 2023년부터 동 사업의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배상금의 경우 2023년은 1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2024년 및 2025년은 전액 불용하고 있으며, 반환금의 경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액 불용 중인 상황임.

배상금 및 반환금은 국가소송의 재판 결과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하며 항소·상고 등에 따라 집행 시기를 예측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나, 그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매년 배상금 및 반환금의 불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배상금 및 반환금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국유재산관리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배상금	280	117	192	-	142	-	142
반환금	190	-	190	-	125	-	125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 9월 기준 기존 국유재산 관련 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761, 서울고등법원 2023누50600)은 2024년 10월 30일에 종료되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없는 상황임. 배상금 및 반환금의 경우 집행 시기를 예측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더라도, 현

98)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0.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①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은 제외한다)을 관리·처분한다.
②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 관리·처분한다.

재 진행 중인 국유재산 관련 소송이 없다는 점과 행정소송의 경우 제1심 평균 처리기간이 311.6일, 항소심 평균 처리기간이 276.2일, 상고심 평균 처리기간이 123.1일인 점을 고려하면[99], 2026년도 예산액의 집행 가능성은 낮은 편임.

[국유재산 관련 소송 경과]

(2025.7.31. 기준)

사건번호	원고	피고	소제기일	진행현황	사건개요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761	甲	기획재정부장관	2022.8.10.	소 각하	용도폐지 처분 무효 확인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3누50600	甲	기획재정부장관	2023.7.17.	항소 기각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761에 대한 항소

주: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761, 서울고등법원 2023누50600은 2024년 10월 30일에 종료
자료: 기획재정부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관련 배상금 및 반환금 집행 추이, 진행 중인 국유재산 소송 현황, 소송 처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 규모를 산정함으로써 재정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2025년 9월 기준 진행 중인 국유재산 관련 소송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6년 국유재산관리의 반환금 및 배상금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99) 2025 사법연감

(17) 법적 근거가 미비한 출연금 감액 필요 (국유재산관리, 국고국)

< 현 황 >

「국유재산관리」는 국유재산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운영경비, 국유재산 관련 소송패소에 따른 국가 배상금·반환금,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등을 시행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과 동일한 6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국유재산관리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국유재산관리 (2234-302)	621	621	621	-	-
-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65	65	65	-	-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특례존치평가 사업을 위한 사업출연금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출연금 6,500만원을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유재산특례존치평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특례 일몰제가 도입됨에 따라 2025년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특례부터 존치평가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 2025년과 동일하게 사업출연금(350-02) 6,500만원을 편성함.

국유재산특례존치평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100]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10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7조(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특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른 점검·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지출액 규모, 운용 절차 등 운용 실태에 대한 점검
2.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목표달성도, 경제적 비용, 운용성과 등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국유재산특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출연기관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출연금을 받아 수행하고 있음.

[국유재산특례존치평가 출연금 산출 내역]

구분	산출 내역	금액
연구원 인건비	책임연구원: 19백만원 × 1명 연구보조원 8백만원 × 2명	35백만원
회의비	회의실 임대료: 220천원 × 2명 다과비: 11천원 × 2회 × 9명 간담회비: 30천원 × 2회 × 10명	1.2백만원
인쇄비	최종보고서 인쇄비: 912천원 교정교열비: 360천원	1.3백만원
여비 등	국내출장비 및 시내출장비: 91천원 × 3명 × 3회	0.8백만원
전문가 활용비	외부평가위원: 8,000천원 × 3명	24백만원
일반관리비	(인건비 + 경비) × 6% 이내	2.7백만원
합계		65백만원

자료: 기획재정부

그런데, 「국가재정법」[101]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관에 출연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 근거를 갖추도록 정하고 있으나,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는 동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부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102]으로 정부는 연구기관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103]할 수 있으나,

---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요청
2.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와 관련한 조사·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의뢰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2(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평가)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이하 이 조에서 "국유재산특례평가"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유재산특례의 효과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입법목적 달성도
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용실적 등 성과목표 달성도
2. 국유재산특례의 타당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유재산특례의 존치 필요성
나.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재정지출 금액 규모의 적정성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국유재산특례평가와 관련한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 그 밖에 국유재산특례평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조사·연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101)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10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제2호

10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운영 재원)**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

이는 기관운영출연금의 법적 근거일 뿐 동 사업에서 지급하는 사업출연금의 법적 근거로 보기는 어려움[104].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을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고, 「국가재정법」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 근거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연의 법적 근거는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2131-306)」 사업은 조세특례 심층평가와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를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출연금 지급을 통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6항[105]은 출연의 법적 근거를 구비하고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사업출연금(350-02) 6,5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향후 관련 사업 추진 시에는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 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04) 기관운영출연금(350-01): 법령에 의한 출연금 중 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비
사업출연금(350-02): 법령에 의한 출연금 중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105)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사회정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목적,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정책효과, 연도별 예상 세수효과 및 관련 통계자료 등을 포함한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를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이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3.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 지원 기간이 일시적이고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세특례를 개선하려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평가 내용에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18) R&D 사업의 평가 부담 과중 및 재평가 실시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신규 출연금 편성 여부 재검토 필요 (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편성에 관한 연구(R&D), 예산실)

< 현 황 >

「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편성에 관한 연구(R&D)」 사업은 정부R&D 예산의 전략적 편성 및 관련 제도개선 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R&D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4억 5,000만원(60.0%) 증액된 12억원이 편성되었음.

동 예산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2026년도에는 'TARB 및 NDCC 예산 연계 지원'을 위하여 4억 5,000만원의 출연금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2026년도 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편성에 관한 연구(R&D)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편성에 관한 연구(R&D) (2446-401)	750	750	1,200	450	60.0
- TARB 및 NDCC 예산 연계 지원	-	-	450	450	순증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편성에 관한 연구(R&D)에 신규로 편성된 'TARB 및 NDCC 예산 연계 지원'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신규 편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R&D 사업의 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 차원의 재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편성에 관한 연구(R&D) 사업에 신규로 편성된 'TARB 및 NDCC 예산 연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은 2026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TARB 및 NDCC'라는 R&D 사업에 대한 평가 제도에 대해 기획재정부 차원의 재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임.

정부는 R&D 사업의 사업의 성과 저하 및 사업화 저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 예산안부터 'TARB' 및 'NDCC'라는 R&D 사업에 대한 사전적·전주기적 평가 제도를 신설하였음.

'TARB(기술체계 검토위원회, Technical Architecture Review Board)'란 사업기획 시 설정된 기술 목표가 격하되지 않고 달성될 수 있도록 R&D 전주기 동안 사업·과제를 모니터링하는 제도로, 검토단을 구성하여 사업·과제를 검토·평가를 실시하는 제도임. 또한, 'NDCC(전략연구지원센터)'란 2026년 R&D 사업의 PBS(연구과제중심제도)가 폐지되고 출연연별 기관전략개발단(ISD, Institute Strategic Development)이 출범하면서 이와 연계하여 해당 과제의 전주기 점검·평가 기능을 전담하기 위한 신규 조직을 설치·운영하는 제도임.

동 사업은 이러한 TARB 및 NDCC에서 R&D 사업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물을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재평가하고, 그 재평가 결과를 R&D 예산 편성에 환류시키기 위하여 출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그러나 R&D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하여 TARB 및 NDCC와 같은 평가 제도를 2026년에 신설할 예정임에도 그 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 차원의 재평가를 신설하는 것이 R&D 사업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 될 가능성 및 성과 제고라는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TARB 및 NDCC 평가 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R&D 사업은 TARB 또는 NDCC 평가 및 과기부 평가에 이어 동 사업에 따른 기획재정부 평가까지 최소 3개의 평가를 거쳐야 하므로 과도한 평가 부담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특히 NDCC 계획안에 따르면 NDCC 제도 내에서도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등 2단계 평가를 이미 거치게 되는데, 그 평가 결과에 대하여 다시 기획재정부의 재평가를 거치게 될 경우 과도한 평가 부담으로 인하여 오히려 R&D 성과 도출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NDCC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지표(안)]

평가 지표	단계평가	최종평가
❶기술개발 진척도	○ TRL 4~5단계 도달 여부 ○ 기술적 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 전략 포함 여부 ○ 국가전략임무 적합도(70%↑)	○ TRL 6~7단계 도달 여부 ○ 국가전략임무 적합도(90%↑)
❷사업화 준비도	○ 초기 시장 분석 및 타깃 고객 정의 ○ IP 확보 및 인증 전략 수립 여부	○ 사업화 파트너 확보 여부 ○ 제품화 계획 or 수요계약
❸경제성 평가	○ 경제성 예비 분석 수행 여부 ○ 예상 시장 규모 및 수익 모델 수립 여부	○ 사업화 시 기대 수익성 ○ 고용 창출 or 산업 연계 효과

자료: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기획재정부는 R&D 사업 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를 통하여 이를 중앙부처별 지출한도 설정 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통해 중앙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하향식(down-top)식 예산편성 방식으로,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top-down)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존재함.

따라서 2026년 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된 'TARB 및 NDCC 예산 연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은 해당 제도가 R&D 사업 평가에 대한 재평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R&D 사업에 과도한 평가 부담이 될 가능성 및 R&D 성과 제고라는 TARB 및 NDCC 제도의 도입 취지를 저하시킬 가능성 등의 관점에서 제도 신설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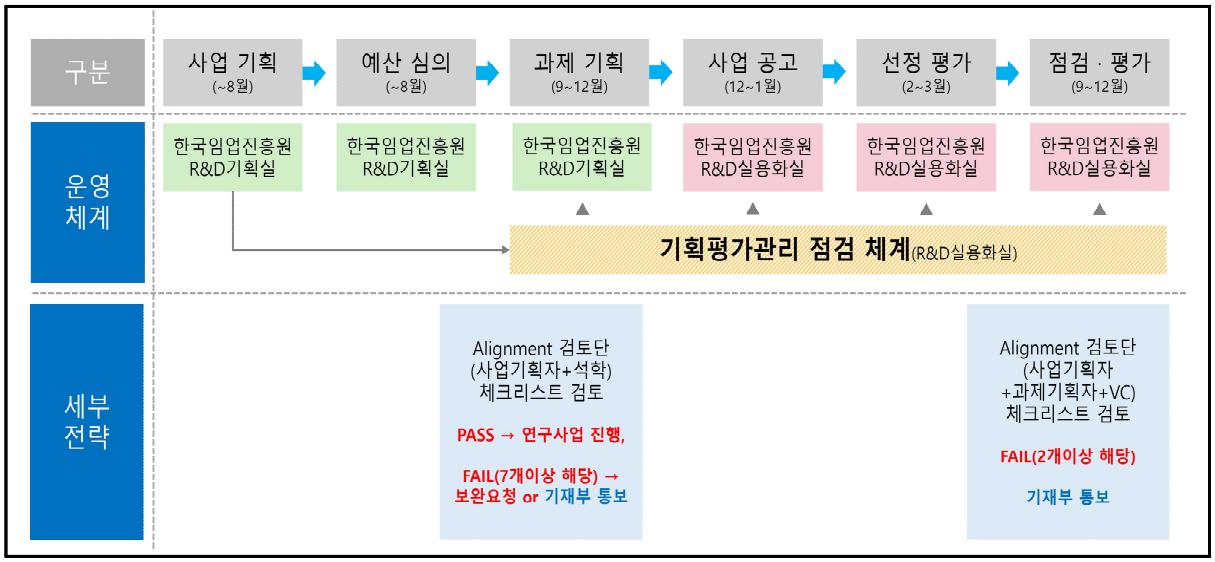
둘째, TARB 제도의 시행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며, TARB 및 NDCC 평가 결과는 2026년 12월에야 도출되므로 이에 대한 재평가는 2027년에야 가능하다는 점, 사업기획안 단계부터 재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2026년 예산안을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에 신규로 반영된 출연금은 전술한 바와 같이 TARB 및 NDCC 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이므로 TARB 및 NDCC 평가 결과가 도출된 후에야 사업의 수행이 가능함.

그러나 2025년 10월 현재를 기준으로 TARB 제도의 경우 그 구체적인 추진계획안이 수립된 것은 중기부, 문체부, 해수부, 산림청, 기상청, 원안위의 6개 부처에 불과하며, 타 부처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추진계획안이 수립되지 않았음. 이에 따라 TARB의 대상 사업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제도 시행 준비가 미흡하여 그 시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추진계획안이 도출된 산림청이나 원안위 추진계획에 따르면, TARB의 점검 평가는 12월에나 도출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평가는 2027년에서야 비로소 가능할 것으로 보임.

[TARB 점검 체계 운영(안)]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NDCC 운영 계획(안) 역시 NDCC가 2026년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여 9개월분에 대한 예산안을 수립한 바, 이에 따르면 최종 평가는 12월에야 도출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평가 역시 2027년에서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 2026년에 동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은 TARB와 NDCC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 뿐만 아니라 사전적인 평가로 사업기획안 내용에 대한 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므로 2026년부터

예산안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TARB나 NDCC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사업기획안 단계에서부터 별도의 평가를 추가로 실시하는 것 역시 R&D 사업 수행에 있어서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 및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처럼 동 사업은 사업의 전제가 되는 TARB 제도 시행 준비가 미흡하며, TARB 및 NDCC 평가 결과는 2026년 말에나 도출될 것으로 보여 그에 대한 재평가인 동 사업의 수행은 2027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 사업기획안 단계에서부터 기획재정부가 별도의 평가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고려하여 2026년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출연금 4억 5,000만원의 규모를 감액할 필요가 있음.

(19) 실제 업무수행기간을 고려하여 출연금 감액 필요 (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편성에 관한 연구(R&D), 예산실)

< 현 황 >

「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편성에 관한 연구(R&D)」 사업은 정부R&D 예산의 전략적 편성 및 관련 제도개선 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R&D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4억 5,000만원(60.0%) 증액된 12억원이 편성되었음.

동 예산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2026년도에는 '대형R&D 사업 효율적 관리'를 위한 출연금이 전년과 동일하게 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심의지원'을 위한 출연금이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3억 2,500만원 편성되었음.

[2026년도 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편성에 관한 연구(R&D)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편성에 관한 연구(R&D) (2446-401)	750	750	1,200	450	60.0
- 대형R&D사업 효율적 관리	200	200	200	0	0
- 예산편성·심의지원	325	325	325	0	0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R&D 사업의 예산요구서 제출 일정을 고려할 때 '예산편성·심의지원' 사업 예산안이 과다편성된 문제가 있으므로 과다편성된 예산안 1억 3,000만원을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음.

'예산편성·심의지원' 사업은 부처가 제출한 R&D 사업 예산요구서에 대해 유사 및 중복 사업 분석 등을 통해 예산안 편성 및 심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KISTEP에 교부하는 출연금임.

기획재정부는 동 내역사업의 예산안으로 4월부터 8월까지의 연구인력 인건비 및 연구활동비 등으로 총 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6년도 예산편성·심의지원 산출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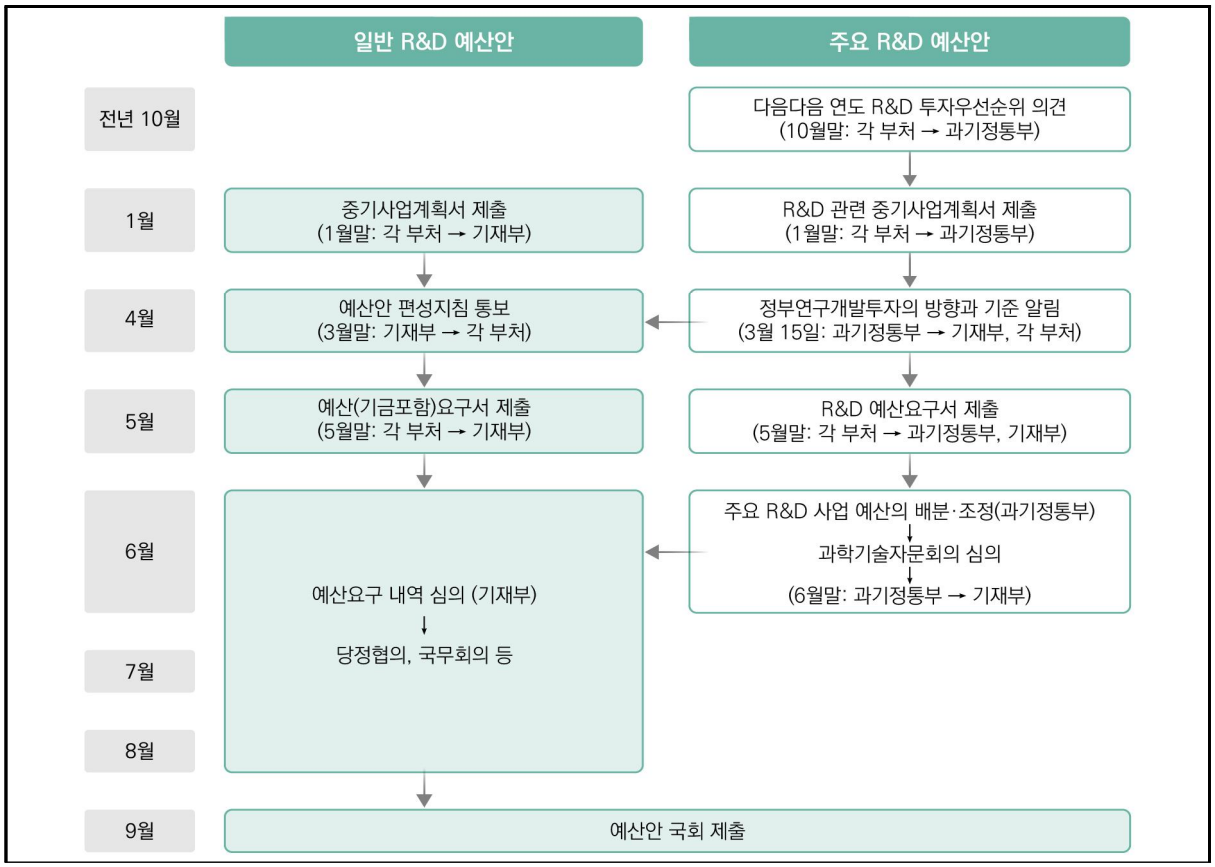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연구인력 인건비	14명×2.5백만원×5개월(4월~8월)	175
연구활동비	14명×1.43백만원×5개월(4월~8월)	100
연구시설 및 간접비 등		50
합계		325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R&D 사업의 예산안 편성과정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보하는 시점은 3월 말이며, 이에 따라 R&D 사업을 포함한 예산요구서를 각 부처에서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시점은 5월 말임.

[R&D 예산안의 편성과정]



자료: 「2025 대한민국 재정」, 국회 예산정책처

이러한 예산안 편성 일정을 고려할 경우, KISTEP이 R&D 예산안에 대한 편성 및 심의를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예산요구서 제출 시점 이후인 6월부터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기 직전인 8월까지이므로 약 3개월분에 대한 예산안이 편성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심의지원' 사업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러한 예산요구서 제출 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분의 예산안을 편성한 문제가 있음. 따라서 R&D 사업의 예산요구서 제출 시점 및 실제 사업의 수행 가능기간을 고려하여 과다편성된 '예산편성·심의지원' 사업의 예산안 2개월분인 1억 3,000만원[106]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106) 3억 2,500만원 ÷ 5개월 × 2개월 = 1억 3,000만원

(20) 공운위 자문료, 정책워크숍 용역비 감액 필요 등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공공정책국)

< 현 황 >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사업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2억 500만원 감액(△2.9%)된 69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2531-300)	7,187	7,187	6,982	△205	△2.9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사업의 2026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과다편성된 각종 위원회 자문료 및 참석수당 등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사업의 2026년 예산안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 민간위원에 대한 참석수당이나 자문료, 안전등급심사단에 대한 참석수당, 고객만족도조사 용역 기술평가 등에 대한 자문료를 편성하였음. 그 구체적인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6년도 예산안 내 각종 참석수당 및 자문료 편성 현황]

구분		단가	금액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본회의	참석수당 15만원	15만원×**13명**×16회=3,120만원
		자문료 35만원	**35만원×13명×16회=7,280만원**
	간담회	**참석수당 15만원**	**15만원×10명×16회=2,400만원**
		자문료 15만원	**15만원×10명×16회=2,400만원**
	인사소위	참석수당 15만원	15만원×5명×10회=750만원
	경평소위	참석수당 15만원	15만원×6명×5회=450만원
		자문료 15만원	**15만원×6명×5회=450만원**
	기능제도개선소위	참석수당 15만원	15만원×5명×3회=225만원
		자문료 15만원	**15만원×5명×3회=225만원**
	AI소위(신설)	참석수당 15만원	15만원×6명×2회=180만원
		자문료 15만원	**15만원×6명×2회=180만원**
안전등급 심사단	전체회의	참석수당 20만원	20만원×28명×2회=1,120만원
	분과회의	참석수당 25만원	25만원×28명×4회=2,800만원
	현장검증	참석수당 15만원	15만원×28명×12회=5,040만원
고객만족도조사 용역 기술평가		**자문료 25만원**	**25만원×8명×2회=400만원**
공공기관 신규 일자리창출		**자문료 25만원**	**25만원×4명×4회=400만원**
통합공시 기준 및 매뉴얼 개정		**자문료 25만원**	**25만원×4명×3회=300만원**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이러한 참석수당 및 자문료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감액이 필요함.

우선, 공운위와 관련하여 ① **공운위 참석수당 및 자문료 지급 대상**인 민간위원을 13인으로 가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법률 개정을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한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공운위 참석수당 및 자문료 지급 대상인 민간위원을 13인으로 가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공운위 민간위원은 최대 11명이며, 민간위원 수를 상향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법률 개정을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적절치 않을 것임.

따라서 법률 개정을 전제로 민간위원 13인에 대해 편성된 공운위 참석수당 및 자문료는 감액할 필요가 있음.

또한, ② **공운위 간담회 참석수당 및 자문료** 지급을 위한 예산 총 4,800만원은 기존에 간담회 개최횟수에 비해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공운위 간담회를 사유로 매년 참석수당 및 자문료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2026년에도 간담회 16회 개최를 기준으로 참석수당 및 자문료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최근 5년간 공운위 간담회 개최 실적은 2025년 4회, 2024년 2회 수준으로 이러한 개최 실적에 비해 예산안 산출 근거인 16회는 과다하게 책정된 문제가 있음.

[최근 5년간 공운위 간담회 개최 실적]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7회	4회	2회	2회	5회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공운위 간담회 관련 예산 4,800만원은 이러한 최근 개최 실적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음.

③ **공운위 본회의 및 소위에 대한 자문료**가 중복되어 지급되므로 본회의 또는 소위에만 자문료를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공운위 본회의 및 소위 개최 시 민간위원에게 참석수당에 더하여 자문료

를 매번 추가 지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자문료가 실질적으로는 참석수당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음. 실제 2026년 예산안에서도 본회의나 소위 개최 시 참석수당과 자문료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이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특히 소위원회 참석수당은 소위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며, 본회의보다 개별 소위에서 안건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위원회가 아닌 본회의에 참석수당 외에 별도로 자문료를 지급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인사소위의 경우 기존까지는 참석수당과 자문료가 지급되었으나 본회의와 소위 자문료가 중복되어 지급된다는 지적으로 인하여 2026년에는 별도의 자문료가 편성되지 않았음.

④ **공운위 자문료 및 고객만족도조사 용역 기술평가 등에 대한 자문료** 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하향조정하고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의 예산안에 공운위 본회의 자문료 35만원, 고객만족도조사 용역 기술평가 · 공공기관 신규 일자리창출 · 통합공시 기준 및 매뉴얼 개정 자문료로 각각 25만원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35만원 또는 25만원의 자문료 수준은 기획재정부 내 다른 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그 단가가 과도하게 높은 문제가 있음. 일례로 기획재정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에 대한 참석수당 외에 지급하는 자문료를 10~15만원 수준에서 지급하고 있음.

특히 2024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심사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운위 자문료 수준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사업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자문료를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것(제도개선)”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음에도 기획재정부는 동일한 수준의 자문료를 2026년 예산안에 편성하여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문제가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동 예산안에 편성된 자문료를 적정 수준으로 감액하고, 해당 예산안 역시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정책워크숍 예산안 1억 4,500만원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명확한 산출 근거 없이 편성되었으므로 면밀한 계획을 통하여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의 2026년 예산안에 정책워크숍 개최를 위한 예산안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정책워크숍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최 목적이나 필요성, 개최 주제 및 참석대상 등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계획 없이 예산안을 편성한 문제가 있음. 또한, 이로 인하여 기획재정부는 용역비 1억 4,500만원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그 명확한 산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동 사업은 2024년 예산안 편성시에는 동 예산으로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이와 전혀 관련없는 혁신성과 공유대회(1,271만원)를 개최하였으며, 2025년에는 공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기업 기관장 워크숍(976만원)을 개최하였음.

이처럼 정책워크숍 예산안은 연례적으로 사전에 면밀한 계획 없이 예산안을 편성한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당초 예산안에 비해 집행 실적도 저조한 상황임. 실제 기획재정부는 2022년과 2023년의 경우 코로나19를 사유로 정책워크숍을 개최하지 못해 집행액이 없는 상황이며, 2024년의 경우 정책워크숍 1건을 개최하였고, 집행액은 총 1,271만원이고 2025년은 정책워크숍 3건을 개최하여 집행액이 총 5,640만원에 불과한 상황임.

종합하면, 정책워크숍 예산안은 연례적으로 면밀한 계획 수립과 명확한 산출 근거 없이 편성되는 문제가 있으며, 그간의 집행 실적도 예산안 규모에 비해 저조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워크숍 예산안 1억 4,500만원을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음.

셋째, 기관장 평가 신설을 사유로 한 별도의 기관장 평가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용역비 1억원이 증액된 바, 기존 경영실적 평가단을 통해 기관장 평가를 수행할지 별도의 평가단을 새로 구성할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기존 경영실적 평가단을 통해 기관장 평가를 흡수할 경우 동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사업의 2026년 예산안에 기관장 평가 신설을 사유로 기관장 평가단 구성을 위한 일반용역비를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기관 평가와 별도로

기관장 평가 신설을 추진하며 이에 따라 기관장 평가단을 추가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용역비를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기획재정부는 최근(2025.9.) 경영실적 평가 편람을 수정하여 기존 배점이 5점이었던 기관장 평가를 별도로 분리하여 신설하였음. 구체적으로 기관장 평가의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신설된 기관장 평가는 기관 경영성과, 경영계약이행성과, 리더십 성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신설된 '기관장 평가' 평가지표]

평가범주(배점)	평가지표	비고
① 기관 경영성과(20점)	전략기획, 윤리경영,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등	기관평가 준용
② 경영계약이행성과(50점)	성과목표의 적정성, 연차별 실행계획 이행실적 및 질적 우수성 등	기관 경영성과와 밀접히 연계
③ 리더십(30점)	기관 설립목적 구현 및 생산성 제고, 이사회 기능 활성화, 대·내외 소통·협력, 국정과제 이행, 안전경영 등을 위한 노력·성과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획재정부는 기존 경영실적평가와 통합 운용 중이던 기관장 평가를 별도로 신설하면서 그 등급을 4등급(우수/보통/미흡/아주미흡)으로 나누어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미흡'인 경우 기관장 경고, '아주 미흡'인 경우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예정임.[107]

이러한 기관장 평가는 현재 경영평가에 통합하여 운영 중이었던 기관장 평가를 독립하여 신설하는 제도임. 현행법[108]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과의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기초로 기관장에 대한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영실적 평가 시 해당 계약 이행 보고서 등을 기초로 경영실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가 부진한 경우 기관장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109]을 두고 있어 현재까지는 경영실적 평가 시 기관장에 대한 평가도 같이 이루어지도록 배점 5점을 부여하여 통합운용 중임.

---

107)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5.9.30.

10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 ⑥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의 실적을 재임 중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다.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에는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10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기관장 평가와 관련하여, 경영실적 평가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기관장 평가만으로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0]이 발의되어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

기획재정부는 2026년에 실시할 예정인 기관장 평가는 경영실적평가의 일환으로, 경영실적 평가 내 일부 배점(기존 5점)으로 실시 중이던 기관장 평가를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입장임.

이처럼 동 사업의 2026년 예산안에는 경영실적 평가 내에 기관장 평가를 신설하면서 이를 실시하기 위해 경영실적평가단 외에 기관장 평가단을 새로이 구성하기 위한 용역비 1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음.

따라서 경영실적 평가 내에서 기관장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경영실적 평가단을 통해서 기관장 평가를 실시할 것인지 별도의 기관장 평가단을 새로 구성하여 실시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경영실적 평가단을 통해 기관장 평가를 흡수할 경우 별도의 기관장 평가단 구성·운영 예산 1억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110) 의안번호 제2211830호(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2335호(김병기의원 대표발의)

(21) 예산낭비신고 제도 활성화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재정집행관리, 재정관리국)

< 현 황 >

'재정집행관리' 사업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집행 효율화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재정집행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예산성과금 제도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 홍보 및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예산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00만원이 감액(△5.4%)된 2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재정집행관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세목명)	2024 결산	2025		2026 예산안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재정집행관리 (2643-300)	200	240	240	227	△13	△5.4
-일반수용비(210-01)	**79**	**106**	**106**	**100**	**△6**	**△5.7**
-일반용역비(210-14)	35	30	30	30	-	-
-국내여비(220-01)	17	21	21	21	-	-
-국외업무여비(220-02)	-	7	7	-	△7	순감
-사업추진비(240-01)	21	21	21	21	-	-
-정책연구비(260-02)	40	40	40	40	-	-
-포상금(310-03)	**7**	**15**	**15**	**15**	**-**	**-**

자료: 기획재정부

< 질의사항 >

기획재정부는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예산낭비신고 제도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재정집행관리 세부사업의 일반수용비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최근 재정집행관리 세부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임. 최근 3년간 63.4%, 50.9%, 71.9% 수준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5년의 경우에도 7월말 기준으로 편성예산 중 20.4%만을 집행한 상황임. 따라서 동 세부사업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2026년도 예산안이 합리적인 규모로 편성되었는지 검토하고 사업을 활성화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임.

[2022~2025년도 재정집행관리 세부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2	278	278	-	△50	228	176	63.4	77.4	12	40
2023	318	318	12	-	330	162	50.9	49.1	-	168
2024	278	278	-	-	278	200	71.9	71.9	-	78
2025.7.	240	240	-	-	240	49	20.4	20.4	-	-

자료: 기획재정부

우선, 포상금(310-03) 집행이 지속적으로 부진하므로 기획재정부는 동 제도를 활성화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 세부사업에 일반수용비 및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1,5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음.

[예산낭비신고 제도 개요]

○ 설치근거: 국가재정법 제100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기재부 훈령)
○ 위원회 구성 : 6명
- 정부위원(2)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위원장),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부위원장)
- 민간위원(4) : 예산회계 및 국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등급별 포상금 금액
1. 신고 등급이 1등급인 경우 600만원 2. 신고 등급이 2등급인 경우 500만원
3. 신고 등급이 3등급인 경우 300만원 4. 신고 등급이 4등급인 경우 200만원
5. 신고 등급이 5등급인 경우 100만원 6. 신고 등급이 6등급인 경우 50만원
7. 신고 등급이 7등급인 경우 20만원
○ 예산낭비신고 방법(국민신문고, 서신, 전화 1577-1242) 및 처리절차



그러나 동 포상금의 집행률이 2021년 40.7%, 2022년 전액불용, 2023년 34.7%, 2024년 44%로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해 보이고, 2025년도 8월말 기준으로 상반기 심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아직 지급한 사례가 없음. 2026년에도 동일하게 1,500만원 편성했는데 적절한 집행이 가능할지 우려됨.

[최근 재정집행관리 포상금(310-03) 집행실적]

(단위 : 천원, 건)

연도	예산현액 (A)	신고 건수	포상금 심의 건수	지급 건수	총지급 액(B)	집행률 (B/A)	지급상세내역 (지급액별 인원)
2021	15,000	3,065	-	15	6,100	40.7%	100만원 2명 50만원 5명 20만원 8명
2022	15,000	2,280	-	-	-	0.0%	-
2023	15,000	1,977	7	7	5,200	34.7%	200만원 1명 100만원 1명 50만원 4명 20만원 1명
2024	15,000	1,522	12	10	6,600	44.0%	100만원 5명 50만원 2명 20만원 3명
2025.8.	15,000	1,088	-	-	-	0.0%	-

자료: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 포상금은 예산낭비신고를 독려하여 예산낭비 및 절감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관련 조치 및 제도를 개선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도 자체는 지속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만,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다는 것은 동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제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도 신고포상금은 '과거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실제 집행가능한 적정소요만 반영'하여야 하며,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신고포상금은 집행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한 후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획재정부는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제도의 집행실적 개선을 위하여 신고포상금의 요건 및 절차, 심사기준 개선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이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예산낭비 신고는 매년 1,500~3,000건 가량 접수되지만 각 부처에서 타당한 신고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신고 건 중 극히 일부만 기획재정부로 포상을 요청하여 대상으로 선정되고 있음. 기획재정부에서는 부처에서 타당한 신고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낭비신고 심사기준'을 제공하고 일정 점수 이상이면 포상 대상이 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포상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심사 대상 자체가 될 수 없으므로, 심사기준 개선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산낭비신고 심사기준]

① 착안의 혁신·난이성	배점	세부 기준
○ 예산낭비신고 내용이 통상적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정도	4	국내에 없던 혁신적이고, 난이한 신고·제안
	3	정부·공공기관 내에 없던 난이한 신고·제안
	2	일상적인 사고 이상으로 다소 개선된 신고·제안
	1	일상적 수준의 신고·제안
② 신고내용의 구체성	배점	세부 기준
○ 구체적인 예산낭비 신고를 통해 제도개선 및 시정 조치 등 개선방안 도출 가능성의 정도	4	**통상적 수준보다 상당히 구체적 신고·제안**
	3	통상적 수준에 비하여 다소 구체적 신고·제안
	2	통상적 수준보다 약간 구체적 신고·제안
	1	통상적 수준의 신고·제안
③ 신고내용의 합리성	배점	세부 기준
○ 합리적인 예산낭비신고를 통해, 제도개선 및 시정조치 등 개선방안 도출 가능성의 정도	4	**통상적 수준보다 상당히 합리적 신고·제안**
	3	통상적 수준에 비하여 다소 합리적 신고·제안
	2	통상적 수준보다 약간 합리적 신고·제안
	1	통상적 수준의 신고·제안
④ 재정개선 효과	배점	세부 기준
○ 예산 절감(수입 증대) 조치로 개선 가능한 규모	4	2억원 이상
	3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2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	5천만원 미만
⑤ 파급 효과	배점	세부 기준
○ 신고 내용에 대한 개선의 파급 효과	4	**법령·지침에 반영하여 적용**
	3	모든 정부·공공기관 유사사업 적용가능
	2	모든 정부·공공기관 동일사업 적용가능
	1	해당기관 내에서 적용가능

자료: 기획재정부

또한,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제도의 경우 시민들의 신고 건수가 증가해야 적합한 포상 대상을 산정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동 제도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인지하고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접근성을 제고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최근 예산낭비신고 제도의 홍보내역을 확인해보면 열차(SRT, 지하철) 내 영상 광고 및 유튜브를 통한 광고가 대부분이었음. 그러나 SRT 및 지하철은 해당 시설이 설치된 일부 지역에서만 홍보가 가능하다는 지역적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수단 외에 SNS 등 온라인 홍보채널을 다양화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

[최근 예산낭비신고 제도 홍보현황]

연도	홍보방법	기간	홍보비 편성 (천원)
2023	열차 내 영상 광고, 강남버스터미널 게이트 영상광고, 카카오모먼트	2023.11.16 ~ 2023.12.15	35,000
2024	열차(SRT, 지하철) 내 영상 광고, 유튜브	2024.11.16 ~ 2024.12.15	35,000
2025	열차 내 영상 광고, 유튜브	4분기 예정	30,000
2026	열차 내 영상 광고, 유튜브	-	30,000

자료: 기획재정부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포상금 심사기준이나 지급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예산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수단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신고 건수를 늘리도록 노력하는 등 내실 있는 예산낭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방식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다음으로, 연례적으로 동 세부사업의 일반수용비(210-01)의 집행이 저조하므로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동 세부사업의 일반수용비는 예산낭비신고 제도 및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및 홍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집행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집행실적 및 목표 달성 여부 등 점검하는 회의로서 기획재정부 및 각 부처 집행담당 고위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재정관리점검회의 운영 등에 소요됨.

그러나 최근 동 세부사업의 일반수용비 집행률은 40~50% 수준으로 연례적으로 저

조한 상황임.

[최근 재정집행관리 세부사업 일반수용비(210-01) 사업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편성내역			집행내역			집행률(%)	
2022	예산낭비 및 예산성과금	93	129	예산낭비 및 예산성과금	33	69	35.5	53.5
	재정집행점검회의 운영	36		재정집행점검회의 운영	36		100.0	
2023	예산낭비 및 예산성과금	93	173	예산낭비 및 예산성과금	65	70	69.9	40.5
	재정집행점검회의 운영	80		재정집행점검회의 운영	14		17.5	
2024	예산낭비 및 예산성과금	93	133	예산낭비 및 예산성과금	62	79	66.7	59.4
	재정집행점검회의 운영	40		재정집행점검회의 운영	17		42.5	
2025.8.	예산낭비 및 예산성과금	65	106	예산낭비 및 예산성과금	18	41	27.7	38.7
	재정집행점검회의 운영	41		재정집행점검회의 운영	23		56.1	
2026	예산낭비 및 예산성과금	59	100					
	재정집행점검회의 운영	41						

자료: 기획재정부

이와 같이 일반수용비 집행이 저조한 것은 편성 대비 재정집행점검회의 개최 건수 저조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바, 최근 집행실적을 고려해 볼 때 동 세부사업의 일반수용비가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음.

(22)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 관련 정보공개 및 관리 강화 필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재정관리국)

< 현 황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① 민간투자심의위원회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운영지원 ② 해외 민간투자시장 확대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민간투자제도 국제협력 ③ 민간투자제도 환경에 대응을 위한 민간활성화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원이 감액(△30.3%)된 2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결산	2025		2026 예산안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2645-300)	333	330	330	230	△100	△30.3

자료: 기획재정부

< 질의사항 >

기획재정부는 부대사업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하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함으로써 신뢰성을 증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민간투자사업이란 기존에 정부부문의 범주에 속했던 도로·항만·철도·환경시설 등 사회기반시설(SOC)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부문이 담당하여 추진하는 것을 의미함. 정부는 1994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 제정[111] 이후 30년간 도로·철도·환경·교육 등 분야에서 153.5조원 규모의 872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민간의 창의·효율을 활용하였음.

111) 제정 당시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1994～2024)]

구 분	사업수(개)					투자규모(조원)			
	합계	운영중	시공중	준비중	종료	합계	민간 투자비	건설 보조금	토지 보상비
BTO	284	192	21	10	61	116.2	72.5	26.2	17.5
BTL	588	518	35	18	17	37.3	36.5	0.8	0.02
합계	872	710	56	28	78	153.5	109.0	27.0	17.5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2025.5.)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부대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해당 사업(본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사용자의 편익증진에 연관되고, 본 사업의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민간투자법」 제21조제1항 각 호[112]의 사업을 말함. 부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14항[113]에 따라 부대사업의 사업비가 해당 총민간사업비의 범위 이내이면서 해당 민간투자사업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11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補塡)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사업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9.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10.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시장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도매배송서비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
11.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운영 사업
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1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설치·운영 사업
1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 사업
17.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의 설치·운영 사업
18. 그 밖에 사용료 인하 또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1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⑭ 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대사업의 사업비는 해당 총민간사업비(총사업비에서 제5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 이내일 것
2. 해당 민간투자사업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

그런데, 본사업의 경우와 달리 부대사업에 대하여는 민간투자사업의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관리 및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 보임.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법」 제51조의2[114]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사업(본사업) 운영현황, 추진실적 및 실시협약서 등은 각 주무관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현재 어떤 유형의 부대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로 실시 중인지, 부대사업으로 인한 순이익이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 간에 어떤 비율로 공유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그러나, 「민간투자법」 제21조의2[115] 상 주무관청이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국유·공유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체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재산인 국유·공유재산을 장기간 사용하게 되며, 부대사업의 이익은 「민간투자법」 제21조제1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116]에 따라 통행료·임차료 등 사용료 인하, 재정지원의 절감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대사업의 시행도 정부의 재정투입 및 시설 사용자의 사용료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만큼, 부대사업도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인근 주민 및 시설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임.

따라서 부대사업에 대해서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관리가 필요하며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질 필요가

---

11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1조의2(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① 주무관청은 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별로 그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1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의2(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유·공유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체결(해당 국유·공유 재산의 허가권자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권자 등에 대한 허가 등 신청의 대행을 말한다)
2. 해당 부대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수업무의 대행
3. 그 밖에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1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⑮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의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인하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조의2(부대사업의 시행) ② 주무관청은 법 제21조제15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이익을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 적정 수익률,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임차료 등 사용료의 인하, 제37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절감 등에 사용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실시협약에 반영해야 한다.

있어 보임.

특히, 최근 정부는 부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유형을 기존의 17개에서 7개 사업을 추가하여 24개로 확대하였으며, 부대사업 관련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기간을 본사업과 동일하게(최대 50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4742호)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임.

[부대사업의 유형]

기존(17개)		추가(7개)*
1.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사업 3. 도시·군계획시설사업 4. 도시개발사업 5. 재개발사업 6. 산업단지개발사업 7.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사업 8. 물류터미널사업 9. 항만운송사업 10. 대규모점포(시장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도매배송서비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 11. 노외주차장 설치·운영 사업 12. 체육시설업 13. 문화시설 설치·운영 사업 14.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5.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16.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 사업 17. 건축물의 설치·운영 사업	+	1. 역세권개발사업 2. 테마파크업 3. 장사시설을 설치·조성·관리·운영하는 사업 4. 도심항공교통사업 및 버티포트개발사업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 6.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7. 동물장묘업

* 「민간투자법」 제21조제1항제18호에서 그 밖에 사용료 인하 또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와 같이 부대사업 유형을 확대하고 부대사업 관련 국유·공유재산 사용·수익 기간 관련 특례를 규정하여 최대 50년까지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대사업의 실시현황 및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 간 이익공유 현황 등에 대한 정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에도, 기획재정부는 관련된 현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본사업의 경우에는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을 기획재정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투자사업의 절차 중 실시협약 체결 절차에서 해당사업의 구체적이고 중요한 사항들이 대부분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반영하여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117]하여 2020년 10월부터는 기획재정부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출받고 이를 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음.

이와 같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2020년 법 개정의 취지 및 최근 부대사업 관련 국유·공유재산 사용·수익 기간 관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는 부대사업 추진 시에도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에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의 정보 및 실시협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부대사업 실시 및 운영현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118]

추가적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본사업의 경우에는 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현황 및 실시협약서 등의 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실시협약서가 공개되어 있지 않거나, 실시협약서가 공개되더라도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4제3항[119]에 따라 사업행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재무모델 및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영업상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등의 사유로 총사업비, 총민간사업비 및 공사비 등의 핵심정보가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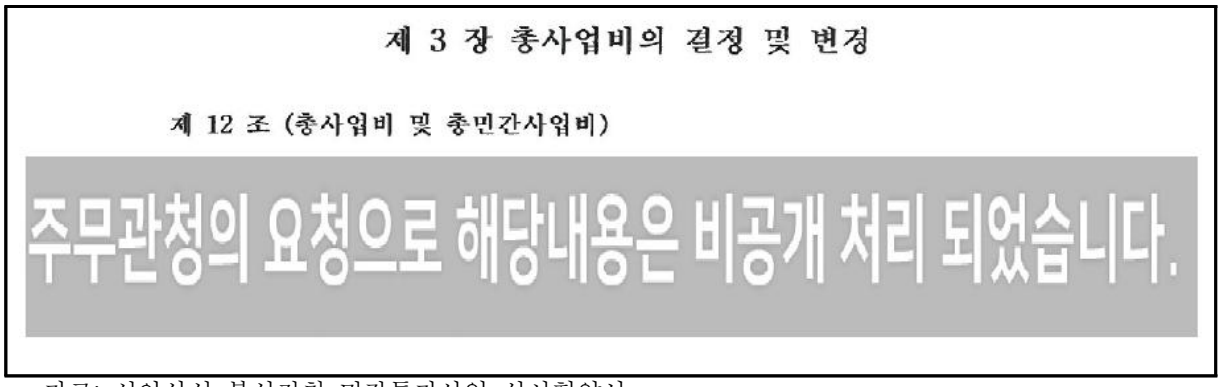
11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1조의3(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4(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등) ① 주무관청은 법 제51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해당 주무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을 종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구축·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매년 공개해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운용하기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18) 또한, 기획재정부는 현행 법령상 부대사업을 전산화 형태로 관리하는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므로 필요시 동 내용을 「민간투자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할 필요도 있어 보임.

1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4(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등)** ③ 주무관청은 법 제51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1. 실시협약에 첨부된 재무모델
2.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영업상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정보

공개 처리되어 있는 사례가 일부 존재하고 있음.

[실시협약서 비공개 처리 예시]



자료: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실시협약에 실제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사업시행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시협약의 전면적인 공개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이나,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사업시행자가 국가를 대신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크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대법원 판례[120]에서도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고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 등을 참고하여 실사용자인 국민에게 최대한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각 주무관청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실시협약서를 비공개하도록 관리하는 등 본사업의 정보공개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사업자 선정 및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신뢰성을 증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

120) 대법원 2007.6.1.선고 2006두20587 판결

(23) 소규모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절차 준수 필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정보화), 재정정책국)

< 현 황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정보화)」은 국가 재정업무 전 과정의 통합적 수행을 지원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개선을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11억 7,100만원 증액된 219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정보화)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세목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2713-500)	20,770	20,770	21,941	1,171	5.6
- 일반연구비 (260-01)	2,667	2,667	1,613	△1,054	△39.5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는 예산안편성지침 등에 따른 시한을 경과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모두의 재정' 구축 사업계획서 검토를 요청하였는바, 향후 이와 같은 예산 편성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재정정보 통합 플랫폼인 '모두의 재정'을 구축·제공하기 위한 일반연구비 16억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함. '모두의 재정'은 중앙재정(열린재정)·지방재정(지방재정365)·지방교육재정(지방교육재정알리미)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는 재정정보 플랫폼을 통합하고, 생성형 AI 서비스를 도입하여 일반국민 등 수요자 맞춤형 재정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을 통해 플랫폼 구축 후 2027년부터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임.

[2026년도 모두의 재정 구축사업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정보공개 프로그램 개발	-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통합한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 : 573백만원
생성형 AI 서비스	- 생성형 AI 등을 활용하여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고 분석 가능한 기능 마련: 531백만원
온라인 콘텐츠 구성 등 컨설팅	- 수요자 중심 재정정보 콘텐츠 구성(온라인 재정박물관 등) : 389백만원
기타	- 감리비 및 조달수수료: 120백만원

자료: 기획재정부

[모두의 재정 시스템 구축(안)]



자료: 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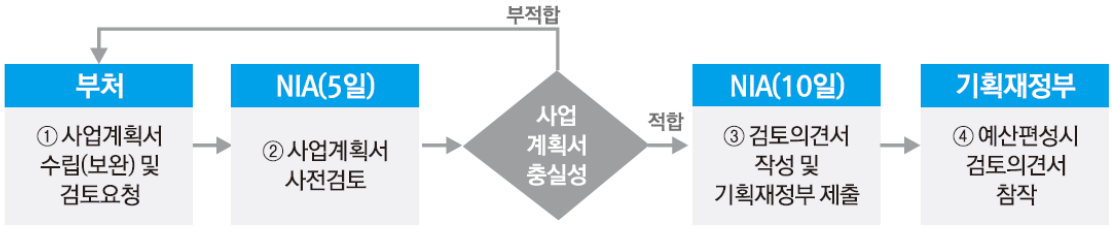
정보화 사업의 경우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및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에 따라 원칙적으로 ISP·ISMP 수립 완료 이후에 예산을 요구하여야 하나, 2025년 위 지침들을 개정하여 총구축비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ISP 수립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121].

다만, 이 경우에도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 요구에 앞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122].

121)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45-46
122) 기획재정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 제9판」, p.110-113

사업계획서에는 시스템 개요, 현황 분석, 목표 모델 설계, 이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정책 연계성, 문제해결의 시급성 등 6개 항목을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함.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전 부처에 대하여 2026년도 예산안 반영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보화 사업의 경우 부처의 예산요구시한인 2025년 5월 말[123]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음.

[소규모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수립 주요절차]



※ 검토기간 : 최대 15일(사전검토, 검토의견서 작성 포함)

출처: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 제9판」, p.110.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모두의 재정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중앙관서의 예산요구시한을 경과한 2025년 7월 25일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사업계획서 검토를 요청하였고, 8월 8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회신을 거쳐 2026년도 예산안에 해당 예산을 편성하였음.

소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예산요구에 앞서 사업계획서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사업 기획단계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려는 취지임.

따라서 기획재정부에서 중앙관서 예산요구시한을 경과하여 모두의 재정 사업계획서 검토를 요청하고 이를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것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등 관련 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향후 이와 같은 예산 편성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123)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4) 부정수급 현장점검 예산의 적정 비목 편성 및 기획재정부 관여도 강화 필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정보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 현 황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정보화)」 사업은 국고보조금의 全 처리과정을 통합관리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관련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대비 11억 1,500만원 감소한 181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정보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 (2713-501)	19,303	19,303	18,188	△1,115	△5.8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부정수급 현장점검 업무는 보조금법상 기획재정부가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하는 업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업무에 대한 출연 근거를 명확히 하거나, 일반용역비 등 적정 비목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되, 통합관리망의 운영·개선, 보조금관리정보 및 금융·신용정보 처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신청·접수·결정·교부 및 사후관리의 전자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을 위한 사업출연금을 편성하고 있음.

2026년도 예산안 산출내역을 보면, 기획재정부는 총 173억 9,100만원의 사업출연금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12억 6,000만원을 부정수급 현장점검 위탁 비용으로 책정하였음.

[2026년도 예산안 부정수급 현장점검 위탁 소요예산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도 예산안	
	금액	산출 세부 근거
▪ 부정수급 현장점검 위탁	1,260	①+②+③+④+⑤
① 노무비	869	7,245,170원(책임연구원) x 12(명) x 10(월)
② 경비	114	1. 여비 : 110 2. 보고서 등 제작, 전산 소모품 등 : 4
③ 일반관리비	59	(노무비 + 경비) x 6%
④ 이윤	104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0%
⑤ 부가가치세	115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10%

자료: 기획재정부

부정수급 현장점검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허위 신청·서류 제출·이중 지원 등 중복·부정수급이 있었는지를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는 활동임.

[부정수급 현장점검 인력 현황]

(단위: 명)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기재부	1	관리단 내 모든 직원(6명)이 담당업무와 별개로 현장점검에 투입	
한국재정정보원	4	5	6
회계법인	12	12	12

자료: 기획재정부

[최근 3개년(2022~2024년) 부정수급 현장점검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합동 현장점검 건수	330	400	510[124]
적발 건수	82	169	249
적발 금액	74.1	324.2	453.1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에서 부정수급모니터링에 대해 부정수급 의심사업 추출, 부처 통보, 현장조사, 점검 및 조치결과의 보조금시스템 등록까지를 규정[125]하고 있어, 보조금시스템 운영의 일환인 부정수급모니터링도 위탁 근거에 포함된다는 입장임.

---

124) 특별 현장점검 60건 포함

125)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5조의2(부정수급 모니터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한 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시스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한 즉시,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점검 및 현장조사 결과와 제5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등록 결과가 다른 경우 중앙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동 지침은 부정수급 모니터링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보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부정수급 모니터링은 보조금 관련 금융·신용정보 등을 활용해 의심 사례를 통보하는 과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현장조사까지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정수급 현장점검 위탁 명목의 사업출연금의 실제 집행내역은 회계법인 용역비, 한국재정정보원 직원 출장비 등으로 확인되는데, 이를 고려하여 현장점검 예산안은 사업출연금이 아닌 일반용역비 등 적정 비목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부정수급 현장점검 위탁에 대한 실제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9월 기준
회계법인 용역비	935	935	682	530*
출장비	12	14	29**	40
수수료 등***	140	68	54	11

* 2025년 회계법인 용역비 총액(756.8백만) 기준 선급금 70%(530백만) 집행
** (여비 기준 변경) 일비·식비 각 2만 → 각 2.5만
*** 조달수수료, 업무협의 등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등
자료: 기획재정부

또한, 「국가재정법」상 출연금은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보조금법상 현장점검 비용을 사업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기획재정부는 현장점검 업무에 대한 사업출연금을 편성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근거를 보조금법상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보조금법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된 '보조금시스템 운영 업무' 중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회계법인 용역과 출장비 등을 출연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부정수급 모니터링에는 회계 관련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만큼, 한국재정정보원과 용역기관인 회계법인 간에 유기적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현재 부정수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이 임시조직으

로 조직이 폐지되는 등 불안정한 조직 성격의 한계상 연속적이고 책임있는 관리를 위해서는 일반용역비 편성이 곤란하므로, 향후 한국재정정보원 등 실무기관이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임.

이와 같이 부정수급 현장점검 업무는 보조금법상 기획재정부가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하는 업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업무에 대한 출연 근거를 보조금법상에 명확히 규정하거나, 일반용역비 등 적정 비목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25) 예비비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 (예비비, 예산실)

< 현 황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따로 항목을 두어 마련된 경비를 말함.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22조[126]에 따라 예산의 편성 · 확정시점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하고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임.

2026년도 「예비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1조 8,000억원 증액(75.0%)된 4조 2,000억원이 편성되었음. 이 중 일반예비비는 8,000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된 반면, 목적예비비는 3조 4,000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조 8,000억원(112.5%) 증액편성되었음.

[2026년도 예비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비비 (3069-300)	2,400,000	3,800,000	4,200,000	1,800,000	75.0
- 목적예비비	1,600,000	2,600,000	3,400,000	1,800,000	112.5
- 일반예비비	800,000	1,200,000	800,000	0	0

자료: 기획재정부

126)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2026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 및 최근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026년 예산안의 예비비 증가율은 75.0%로, 이는 목적예비비가 전년 본예산 대비 112.5%로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함.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목적예비비 증액 사유에 대하여 기존에 일반예비비로 집행하였던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제2조[127]에 따른 안전보장 소요'를 목적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라 대형화되는 재해재난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과거 집행 실적을 고려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이러한 예비비 증가율은 2026년 예산안의 총지출이 전년 본예산 대비 8.1% 증가하여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도 과도하게 높은 문제가 있음.

[2026년도 예산안 예비비 증가율 및 총지출 증가율 비교]

(단위: 조원, %)

구분		2025 본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증가율 [(b-a)/a]
총지출		673.3	728.0	54.7	8.1
예비비	전체	2.4	4.2	1.8	75.0
	목적예비비	1.6	3.4	1.8	112.5
	일반예비비	0.8	0.8	0	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기획재정부는 2025년 본예산 예산안 편성 당시에도 예비비를 4.2조원 편성하였으나,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 당시 총지출 증가율(3.2%)에 비해 예비비 증가율(14.3%)이 과도하게 높다는 등의 사유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비비가 50% 감액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안에는 총지출 증가율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증가율로 예비비 예산안을 편성한 문제가 있음.

127)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예비비)**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소관으로 한다.

또한, 2026년 예산안에는 각 부처의 재해대책비가 2025년 본예산에 비해 큰 규모로 증액 편성되어 있는바 이와 별도로 예비비를 크게 증액시킬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음. 2026년 예산안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에 편성된 재난대책비는 1조 100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6,500억원(180.6%)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며, 각 부처에 편성된 재해대책비는 총 2조 93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9,270억원 대비 1조 823억원(116.8%) 증액 편성되었음.

[2026년 각 부처별 재난재해대책비 편성 현황]

(단위: 억원, %)

부처명	사업명	2025년		2026년	증감(b-a)	증감율
		본예산(a)	제2회 추경	예산안(b)		(b-a)/a
행안부	재난대책비	3,600	10,200	10,100	6,500	180.6
농림부	재해대책비	1,600	1,600	2,500	900	56.3
환경부	재해대책비	500	1,620	500	0	0
	하천재해대책비	2,320	2,320	4,000	1,680	72.4
해수부	양식등 재해대책비	250	270	493	243	97.2
산림청	산림재해대책비	1,000	2,740	2,500	1,500	150.0
합계		9,270	18,750	20,093	10,823	116.8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집행률이나 집행액에 비해서도 2026년 예산안의 예비비는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예비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부터 2022년을 제외하고는 집행률이 28~39%로 저조하며, 집행액 역시 2조원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예비비 집행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A)	56,100	97,000	55,000	46,000	42,000
집행(B)	54,467	92,721	47,049	13,091	16,380
집행률(B/A)	97.1	95.6	85.5	28.5	39.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2024년의 경우 목적예비비 집행액은 5,584억원에 불과하여 예산액 2조 2,000억원 대비 집행률이 25.4% 수준으로 저조하였음. 또한, 2025년 8월 기준으로도 일반예비비 1조 2,000억원 중 15.2%인 1,821억원만이 지출 결정되었으며, 목적예비비의 경우 2조 6,000억원 중 62.2%인 1조 6,176억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나, 이 중 선거관리경비가 3,867억원이었고 2025년 예산안 편성 시부터 어느 정도 예측되어 예산총칙에 반영되었던 무

상교육 관련 지출결정액은 5,966억원으로, 2025년에 이와 같이 한시적으로 발생한 특수 상황을 제외할 경우 지출결정액은 예산액의 24.4%인 6,343억원임.

이처럼 2026년 예비비 예산안은 총지출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증가율을 보이나, 각 부처에도 재해대책비 예산안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편성되어 있고 최근 집행 실적을 고려할 때도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 바 총지출 증가율 및 최근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6) 국부펀드 투자협력 행사를 위한 일반용역비 감액 필요 (금융협력사업, 국제금융국)

< 현 황 >

「금융협력사업」은 주요국과의 금융협력을 위해 국제부담금을 납부하고, 행사를 개최하려는 것임.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1억 7,300만원 감소한 57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중 일반용역비는 2025년 대비 7,000만원 증가한 6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금융협력사업 보조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세목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금융협력사업 (3131-304)	5,891	5,891	5,718	△173	△2.9
- 일반용역비(210-14)	548	548	618	70	12.8

자료: 기획재정부

일반용역비(210-14)는 ① 아시아 공무원 초청 연수 4억 4,800만원(전년동), ② 한일 교류행사 개최 5,000만원(전년대비 2,000만원 증액), ③ 양자회의 등 개최(전년대비 △1,000만원 감액), ④ 역내 금융협력 강화 국제세미나 개최 2,000만원(전년동), ⑤ 국부펀드 투자협력 관련 행사 개최 6,000만원(신규)이 편성되었음.

이중 '국부펀드 투자협력 관련 행사 개최' 예산(6,000만원)은 3,000만원 이내 용역 2회 수행을 목적으로, 연내 필요에 따라 UAE 등 주요 국부펀드 방한행사·전문가 간담회·기업 간담회 등을 개최한다는 계획임.

< 검토의견 >

국부펀드 투자협력 관련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일반용역비 예산 6,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① 과거 집행실적이 부진한 점과 ② 간담회는 일반용역비가 아닌 사업추진비 등으로 편성하여 직접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액할 필요가 있음.

2023년과 2024년에는 국부펀드 투자협력을 임시조직인 금융투자지원단('23.2.22 ~ '24.2.21)과 국제투자협력단('24.2.22 ~ '25.2.21)이 각각 담당하였음. 이에 따라 2023년에는 관련 예산이 「금융투자지원단 운영」에서 집행되고 2024년에는「국제투자협력단 운영」에서 집행되었음.

그런데 2024년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사업 일반용역비는 9,000만원 중 44.4%인 4,000만원만 집행되었고 이중 국부펀드 관련 행사를 위해 집행된 금액은 4,000만원(2건)임. 그리고 2023년 「금융투자지원단 운영」 사업 일반용역비는 1억 2,000만원 중 64.4%인 7,730만원만 집행되었고 이중 국부펀드 관련 행사를 위해 집행된 금액은 2,900만원(2건)임.

[2023년~2025년 국부펀드 관련행사 계약 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계약명	계약 금액	사업명	계약기간	외국 국부펀드 관계자 참석 여부
2023	UAE 국부펀드 방한행사 (기획 및 운영)	19	금융투자 지원단운영	'23.5.15	○
	한-중동 투자협력 전문가 간담회 개최	10		'23.12.11	×
2024	UAE 국부펀드 방한행사 기획 및 운영	18	국제투자 협력단운영	'24.6.26	○
	한-국제 투자협력 전문가 간담회(기획 및 운영)	22		'24.12.16~ '24.12.20	×
2025	UAE 진출 한국기업 투자유치 간담회(기획 및 운영)	18	국제투자 협력단운영	'25.2.14~ '25.2.20	×

주) 2025년 9월 19일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즉, 국부펀드 방한행사 및 기업·전문가 간담회는 예산이 충분했음에도 일반용역비 집행이 부진했고, 2023년에서 2025년 사이 국부펀드 관련 행사별 평균 계약금액은 1,740만원 수준으로 실제 행사별 예산 소요도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단가 3,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또한, 2023년에 개최된 2건의 행사 중 1건은 국부펀드 관계자가 직접 참석하지 않은 전문가 간담회이고, 2024년의 경우에도 2건의 행사 중 1건은 전문가 간담회임. 2025년에 개최된 1건의 행사 역시 간담회에 해당됨. 2023년에 전문가 간담회를 위해 1,000만원의 일반용역비가 집행되었고, 2024년에 2,200만원의 일반용역비가 집행되었으며, 2025년에는 1,800만원의 일반용역비가 집행되는 등 기획재정부는 전문가 간담회를 용역을 통해 개최하고 있음.

그런데 외빈 초청 등이 아닌 전문가 간담회는 일반용역비로 집행하여 과다한 예산을 지출하기보다는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하여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적절함.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일반용역비의 적용대상은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임. 기획재정부의 다른 사업의 경우에도 전문가 간담회는 일반용역비가 아닌 소액의 사업추진비(240-01)와 참석자 수당 지급을 위한 일반수용비(210-01)로 편성됨.[128]

전문가 간담회를 기획재정부가 직접 추진하면 예산안에 편성된 일반용역비보다 작은 금액의 업무추진비 등을 편성해도 충분함.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도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 규모, 전문성 필요 여부, 행사대행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용역비로 요구”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① 국부펀드 투자협력 관련 행사 개최 실적이 부진한 점과 ② 전문가 간담회 등은 용역계약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추진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용역비를 감액할 필요가 있음.

128)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협력강화」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위해 업무추진비 162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27) 보조대상 업무의 구체화와 이에 근거한 예산안 편성 필요 (국제금융센터 보조, 국제금융국)

< 현 황 >

「국제금융센터 보조」는 국제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 조기경보 시스템(EWS), 자본유출입 모니터링 등 정부 위임업무를 수행하는 국제금융센터의 사업비를 지원하려는 것임.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과 동일한 2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국제금융센터 보조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국제금융센터 보조 (3132-301)	2,150	2,150	2,150	-	-

자료: 기획재정부

동 사업은 전액 민간경상보조(320-01)로 편성되며 사단법인인 국제금융센터에 지급됨. 국제금융센터는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기업 등 사원으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아 운영됨.

< 검토의견 >

첫째, 국제금융센터 보조금은 보조대상 업무가 모호하여 보조금 수준의 적절성이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정책상 장려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보조의 대상이 되는 업무가 명확하게 설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보조금 규모 및 보조율 등이 결정되어야 함.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국제금융센터 업무 중 보조대상이 되는 업무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고 예산안 편성 시 보조금과 자부담 간 일정한 매칭비율 등을 설정하지 않은 채

로 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에 따라 명목상 보조금 비율은 100%이고 국제금융센터의 자부담금은 없음.

국제금융센터의 보조사업계획서에도 해당 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전반이 사업계획에 명시되어 있어 보조의 대상이 되는 업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음.

예를 들어, 국제금융센터의 2024년도 보조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에는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지원이 업무계획 및 실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국제금융센터는 2024년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지원하면서 외국환평형기금으로부터 별도의 용역비 1억 7,969만원(총 외평채 발행액의 0.01%)을 지급받았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지원이 보조 대상이 되는 업무라면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획재정부로부터 별도의 용역비를 지급받는 것은 중복지원으로 부적절하나, 해당 업무를 보조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상 보조대상 업무에 포함시키면서 동시에 해당 업무를 위해 별도의 용역비를 지급받은 문제가 있음.

그리고 국제금융센터는 한국은행 및 증권사 등 다른 기관들로부터 지원금 및 분담금을 납부받고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일정한 매칭비율을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보조하고 있어 보조금 지원비율이 매년 임의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문제가 있음.

[국제금융센터 보조금 지원 비율 변동 추이]

(단위: 백만원)

연도	기재부 (A)	한국은행	정사원 (은행·증권사)	준사원·후원사 (금융기관, 금융회사)	계 (B)	보조금 지원 비율(A/B)
2025년	2,150	1,650	6,352	191	10,343	20.8%
2024년	2,000	2,000	6,012	358	10,370	19.3%
2023년	2,000	2,000	5,522	358	9,880	20.2%
2022년	2,100	2,100	4,924	358	9,482	22.1%
2021년	2,100	2,100	4,568	358	9,126	23.0%

주) 수입내역은 결산 기준, 2025년은 9월까지의 수입내역임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서도 국제금융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국가의 사무가 없다고 보기 곤란하고, 국가의 사무에 상응하는 금액이 현 국고보조금의 전

부 혹은 일부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며, 보조금 수준의 적정성은 이러한 문제점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음.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국제금융센터 보조)]

ㅇ 보조금 수준의 적절성과 사업 효과성에 관한 문제점 이전에 동사업이 현재와 같이 민간보조방식으로의 지속 추진에 따른 본질적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우선 요구됨 - 동사업의 목적(국제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 조기경보시스템(EWS), 자본유출입 모니터링 등 정부 위임업무를 수행), 내용(국제금융과 관련된 각종 보고서 및 분석 자료를 통한 정보 제공,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함으로서 국민 편익 증대), 수혜자(일반국민, 정부, 국회, 금융기관, 연구소 등)를 종합하여 비추어볼 때 국가의 사무가 전혀 없다고 보기가 곤란함 - 국고보조금, 한은지원금, 사원분담금, 기타 수입으로 구성된 동사업에서 국제금융센터의 총 지출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2024년 기준 18.4%, 총지출액 증가와 보조금 지출액 감소에 따라 보조금 비중은 매년 감소 추세)이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겪고 있는 동 보조사업의 애로는 국가의 사무를 민간보조방식으로 추진하는 문제점과 국가의 사무에 상응하는 금액이 현 국고보조금의 전부 혹은 일부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고 보조금 수준의 적정성은 이러한 문제점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본질적 검토가 요망됨

자료: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발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센터 업무의 대부분이 보조사업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으나, 국제금융센터의 전체 예산이 ①자산취득비·②인건비·③퇴직급여·④국고보조사업비·⑤일반사업비·⑥운영경비·⑦예비비로 구분되고, 국고보조금은 정보수집, 전산시스템, EWS운영 및 외환정보분석, 해외사무소 운영 등에 지출되는 '④국고보조사업비'로만 집행 중이라는 입장임.

그러나 국제금융센터 예산 중 '국고보조사업비' 예산은 자료비, 회의비, 통신비, 지급임차료, 전산업무비, 해외사무소 항목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일반사업비' 예산도 자료비, 회의비, 통신비, 지급입차료, 전산업무비 등의 항목으로 지출되고 있어 지출항목이 중복됨.

예를 들어, 국제금융센터는 기재부에서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사무실 임차료를 지출하

는 동시에 자체수입으로 임차료를 지출하고 있음. 2024년에 국제금융센터는 보조금으로 임차료 2억 8,605만원을 지출하는 동시에 자체수입으로 임차료 6억 3,633만원을 지출하였음.

즉, 다른 예산 항목에서 지출되지 않고 '국고보조사업비' 예산에서만 지출되는 사업은 해외사무소 운영비가 유일하며, 그 외 '국고보조사업비' 예산에서 지출되는 항목은 '일반사업비' 예산 등 다른 예산에서도 지출되고 있음.

이에 비추어볼 때,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보조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의 구분이 불명확하며, 국고보조금과 자체수입이 동일한 항목에 함께 집행되고 있으므로 보조율이 100%로 설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보조의 대상이 되는 국제금융센터의 업무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적정 보조금 예산액을 산출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제금융센터는 보조금 재원을 우선 지출하고 그 이후 자체수입 재원을 지출하고 있어 당기운영이익이 발생하고 이익잉여금이 이월되고 있는데, 자체수입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조정할 여지가 있음.

국제금융센터는 보조금을 먼저 집행한 후 자체수입을 집행하는 관계로 보조금 정산 시 반환액은 미미하고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당기 운영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2024년도 공익목적사업 수입(총 129억원)은 보조금 수익 20억원과 그 외 자체수입 109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조금은 대부분 집행되어 20억원 중 231만원만 반환되고, 당기 운영이익 13억 2,954만원이 발생했음. 2023년에는 당기 운영이익 7억 9,267만원이 발생했음. 즉, 자체수입보다 보조금이 우선 집행되어 당기 운영이익이 크게 발생한 것임.

앞서 서술된 바와 같이 국제금융센터가 보조금으로 지출할 비용과 자체수입으로 지출할 비용이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제금융센터가 보조금과 자체수입을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집행하는 사례가 있음.

2024년 말 기준 국제금융센터의 미처분잉여금은 9억 5,871만원임.

[국제금융센터 고유목적사업회계 잉여금처분계산서(2024년 말)]

(단위 : 원)

과 목	금 액
Ⅰ. 처분전잉여금	**1,761,022,538**
1. 전기이월잉여금	379,164,069
2. 당기잉여금	1,381,858,469
Ⅱ. 잉여금처분액	**802,312,203**
1. 차기이월금(2025년 수입예산 대체)	800,000,000
2. 국고보조금 반납	2,312,203
Ⅲ. 미처분잉여금	**958,710,335**

자료: 2024년 국제금융센터 재무제표

따라서, 국제금융센터의 미처분잉여금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129)]

129)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감액시 센터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한국은행 지원금과 사원분담금이 함께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매년 결산 시에 전기이월 및 당기잉여금에서 매년 일정 부분을 차기이월금으로 계상하여 차년도 수입예산을 대체하고 있으므로 감액이 어렵다는 입장임.

[2024년 국제금융센터 운영성과표]

제26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25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국제금융센터 (단위 : 원)

과 목	당 기			전 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사업수익	12,849,766,328	12,908,070,708	645,695,620	11,920,788,828	12,052,356,228	572,432,600
기부금수익 (한은·후원금)	2,265,000,000	2,265,000,000	0	2,265,000,000	2,265,000,000	0
보조금수익	2,000,000,000	2,000,000,000	0	2,000,000,000	2,000,000,000	0
회비수익 (정·준사원)	6,104,600,000	6,104,600,000	0	5,614,600,000	5,614,600,000	0
전입금수입	1,034,470,708	1,738,470,708	0	768,756,228	1,472,756,228	0
이월수입	800,000,000	800,000,000	0	700,000,000	700,000,000	0
매출액	645,695,620	0	645,695,620	572,432,600	0	572,432,600
사업비용(주석5)	11,193,825,037	10,874,588,883	319,236,154	10,854,071,016	10,555,716,927	298,354,089
사업수행비용	9,059,542,381	8,770,013,177	289,529,204	8,787,247,405	8,515,089,351	272,158,054
일반관리비용	2,134,282,656	2,104,575,706	29,706,950	2,066,823,611	2,040,627,576	26,196,035
사업이익(손실)	1,655,941,291	2,033,481,825	326,459,466	1,066,717,812	1,496,639,301	274,078,511
사업외수익	1,327,739,268	53,860	1,327,685,408	1,265,807,224	28,810	1,265,778,414
이자수익	1,327,665,408	0	1,327,665,408	1,265,758,414	0	1,265,758,414
외환차익	0	0	0	0	0	0
잡수입	73,860	53,860	20,000	48,810	28,810	20,000
사업외비용	10	704,000,000	10	10	704,000,000	10
외환차손	0	0	0	0	0	0
잡손실	10	0	10	10	0	10
목적사업지원금	0	704,000,000	0	0	704,000,000	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101,194,431	0	1,101,194,431	811,956,575	0	811,956,575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	1,882,486,118	1,329,535,685	552,950,433	1,520,568,451	792,668,111	727,900,340
법인세비용	16,160,720	0	16,160,720	13,567,870	0	13,567,870
당기운영이익(손실)	1,866,325,398	1,329,535,685	536,789,713	1,507,000,581	792,668,111	714,332,470

[참고] 내부거래 제거 : (통합)전입금수입과 (공익)목적사업지원금 상계(704,000,000원)

(28) 경협사업의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 필요 (통상연계형 경협사업, 대외경제국)

< 현 황 >

「통상연계형 경협사업」은 신흥국 내 비관세장벽 등 FTA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통상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신흥국과의 경제협력을 하려는 것임.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3,500만원 감소한 6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통상연계형 경협사업 예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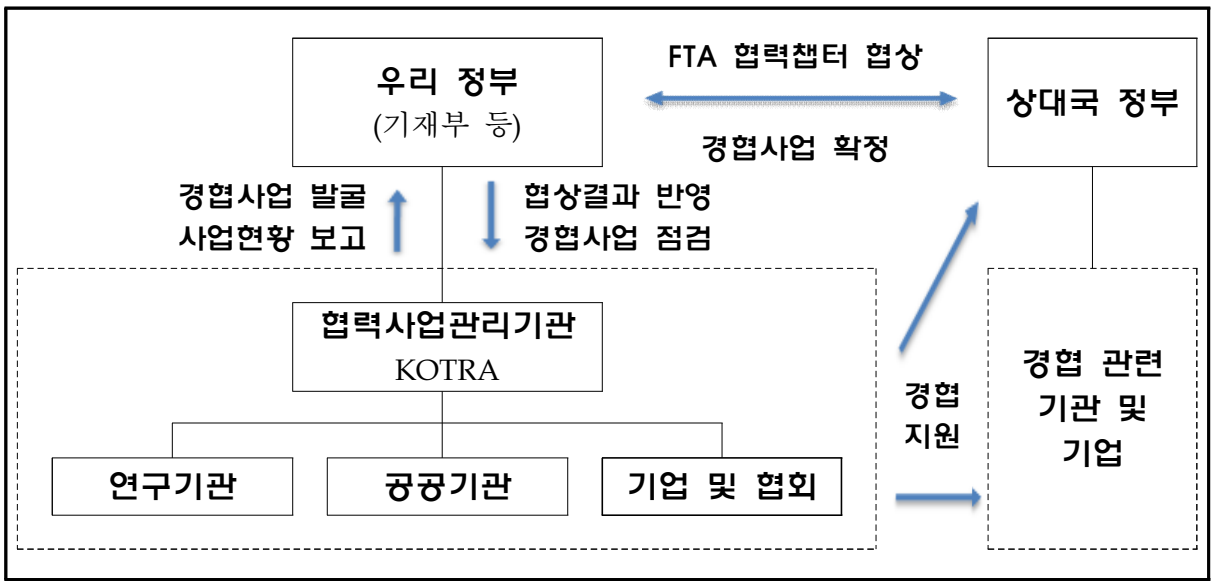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통상연계형 경협사업 (3231-308)	699	699	664	△35	△5.0

자료: 기획재정부

동 사업은 2017년부터 개시되었는데, 대상국은 FTA 체결 시 우리 측에서 경제협력을 협상카드로 제시하고, 협정문 내 경제협력위 설치·운영이 명시된 국가임. KOTRA가 경협사업 관리기관으로 민간경상보조(320-01) 예산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함.

[통상연계형경협사업 사업 집행절차]



2026년도 예산안은 2건의 경협사업에 대해 각각 3억 3,200만원이 편성되어 총 6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

「통상연계형 경협사업」은 ① 2025년에 예산안 편성 내역과 달리 2건의 경협사업이 아닌 1건의 경협사업과 1건의 연구용역으로 집행되어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되었으며, ② 상대국과의 협의 경과를 고려할 때 2026년에도 2건의 경협사업에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①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 2건의 경협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각각 3억 4,900만원을 편성했는데, 편성 내역과 달리 1건의 경협사업만 추진하고 계획에 없던 '통상연계형경협사업 추진전략 수립 연구'를 진행하였음. 사업별 단가 3억 4,900만원은 연구가 아닌 경협사업에 대해 책정된 단가임에도 불구하고, KOTRA에 3억 4,900만원을 보조금으로 전액 교부하였음. 그리고 KOTRA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대외경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음.

[2025년도 통상연계형 경협사업 예산안 산출 근거]

① 통상연계형 경협사업 : ('24) 499백만원 → ('25) 699백만원(+200백만원)
- (산출) 통상연계형 경협 사업 349백만원 x 2개 사업

ㅇ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4년 예산 산출내역		'25년 예산안 산출내역	
499	○ **민간경상보조(320-01) : 499백만원** 가. 통상연계형 경협사업 (499백만원) • 보조금 : 249백만원×2개 사업=499백만원	699	○ **민간경상보조(320-01) : 699백만원** 가. 통상연계형 경협사업 (699백만원) • 보조금 : 349백만원*×2개 사업=699백만원 * 타 유사사업 KSP(400백만원), EIPP(558백만원) 대비 단가 조정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도 통상연계형 경협사업 추진 현황]

구 분		추진 사업		예산	수행 기관
2025	소계	인니, 1개/ 연구, 1개		6.99억원	
	1	인니	제조업 디지털화를 위한 스마트팩토리 가이드라인 개발	3.49억원	이노비즈협회-능률협회컨설팅
	2	연구	통상연계형경협사업 추진전략	3.49억원	대외경제硏

자료: 기획재정부

KOTRA는 '통상연계형경협사업 추진전략'을 위해 교부된 보조금 3억 4,900만원 중 연구개발비로 3억 1,000만원을 배정하고, 3,950만원을 KOTRA가 집행하는 출장비 등 사업관리비로 배정하였음.[130)]

[2025년도 통상연계형경협사업 추진전략 사업 소요예산(안)]

구 분		소요예산(안)	비고
연구개발비		310,000,000원	연구용역
사업관리비	일반수용비	14,900,000원	평가회 자문비, 보고서 및 홍보물, 사후원가정산 용역, 차량임차료, 행정소모품비, 무역관 통신비
	국내여비	400,000원	국내출장비
	국외여비	20,000,000원	해외출장비
	기관업무비	4,200,000원	본사 및 무역관 회의, 업무협의 오만찬 등
	소계	39,500,000원	
합계		349,500,000원	

자료: 2025년 통상연계형 경협사업 계획(안)

‘통상연계형경협사업 추진전략 수립 연구’는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관한 연구로서, 민간경상보조(320-01)가 아닌 정책연구비(260-02)로 기획재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131] 이를 고려할 때, 기획재정부는 보조금을 KOTRA에 지급하여 정책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용 등을 통해 적절한 비목으로 집행했어야 함.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3억 4,900만원을 KOTRA에 전액 교부하여 KOTRA를 통해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음.

또한, KOTRA가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본사의 국외여비와 무역관의 기관업무비 등 연구용역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관리비 예산도 보조금으로 교부받고 집행한 것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의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임. 2025년에 추진중인 다른 사업인 ‘제조업 디지털화를 위한 스마트팩토리 가이드라인 개발’ 경협사업은 보조금 3억 4,900만원 중 5,250만원이 KOTRA 사업관리비로 배정되었는데, 경협사업이 아닌 연구용역을 하면서 이와 비슷한 수준인 3,950만원이 KOTRA 사업관리비로 배정된 문제가 있음.

특히, ‘통상연계형경협사업 추진전략 수립 연구’에 소요된 예산 3억 4,900만원은 과거 기획재정부에서 전략 수립을 위해 수행했던 연구용역에 비해 과다한 문제가 있음. 예를 들어, ‘對아프리카 우선순위 경제협력 분야 선정 및 추진전략 제언’(2023년 11월~2024년

130) 백만원 단위 미만에서 단수 차이가 있음

131) 주요 연구내용은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대상국 심층 분석, 통상연계형 경협 사업 모델의 방향 분석, 통상연계형 경협 사업 국별 마스터플랜 제시(캄보디아, 필리핀), 유명 경제협력 분야 도출, 분야별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방안 연구임.

8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계약액이 5,000만원이고,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발굴 체계와 전략 연구’(2024년 5월~2024년 12월, 한국개발정책학회)는 계약액이 5,000만원이며, ‘팬데믹 이후 유상원조 성과와 중기 발전전략’(2024년 6월~2024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계약액이 8,500만원이고,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2024년 10월~2025년 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는 계약액이 1억 2,500만원으로 KOTRA에 교부된 예산 3억 4,900만원에 비해 작은 수준임.

② 「통상연계형 경협사업」은 상대국의 참여의지가 중요한 사업으로서 비용 부담 등에 대해 상대국이 비협조적인 경우 사업을 정상 추진하기가 어려움. 일례로 2024년에 기획재정부는 당초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였던 경협사업인 ‘베트남 태양광 설비 시험·인증 실무 인력 양성’ 사업을 수행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사업비용 공동 부담에 대한 베트남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사업이 무산되었기 때문임.

기획재정부는 2026년에 인도네시아와의 경협사업 1건과 캄보디아와의 경협사업 1건을 추진한다는 계획임. 그러나 아직까지 추진이 확정된 사업이 없으며, 인도네시아 경협사업 후보군은 전부 계획 미흡 등의 사유로 재검토 및 보완 요청 중으로, 2025년과 같이 2건의 경협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132)]

[통상연계형 경협사업 2026년 사업 후보군]

(단위: 백만원)

연번	구분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 상대국과의 협의 경과
1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기업규제 개혁 모범사례 교환을 통한 한국 투자 강화 제안(투자부)	332	26.2.1. ~ 26.12.31	요청 과업 범위가 포괄적이며 실질적 결과 활용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여 보완 요청중
2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산업 및 보건인력 역량 강화를 통한 보건산업에 대한 한국 투자 강화 제안(보건부)	332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활용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지 않아 재검토중
3		인도네시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헬프데스크 구축을 통한 CEPA 활용기업 지원 강화 제안(무역부)	332		기존 FTA 센터와의 차별점이 떨어지며, 기관 설립/유지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여 재검토중

132)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계획을 수정하여 인도네시아와 경협사업을 2건 추진할 계획이며, 인도네시아 경협 후보군으로 기존 3건 외 16건의 후보군을 다시 제출받았다는 입장임.

연번	구분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 상대국과의 협의 경과
4	캄보디아	캄보디아 FTA 원산지 증명시스템 고도화 컨설팅 사업 제언(상무부)	332		캄보디아 측의 기존 시스템 고도화 우선순위가 낮아 보완 협의중
5		캄보디아 FTA 이행 역량 강화사업(상무부)	332		FTA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협력국의 의지가 있고 초기 1차년도 사업 주제로 적합하여 세부 협의중
6		캄보디아 식품가공업 수출증진 및 외국인투자 유치확대에 관한 컨설팅(상무부)	332		캄보디아 대표 농식품(망고)의 수출 방안 및 투자유치 현실화 가능성 높아 세부 협의중

자료: 기획재정부

따라서, 2025년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 사례와 경협사업 선정이 완료되지 못해 2건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9) 집행잔액을 고려하여 기여금 조정에 대해 OECD와 협의 필요 (OECD 동남아시아 데스크2 운영을 위한 자발적 기여금(ODA), 대외경제국)

< 현 황 >

「OECD 동남아시아 데스크2 운영을 위한 자발적 기여금(ODA)」은 OECD 경제국 내 동남아 데스크2를 신설하여 인니 및 필리핀에 대한 OECD의 경제 분석 및 보고서 발간을 지원하기 위해 OECD에 출연하려는 것임.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7,800만원 증가한 8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OECD 동남아시아 데스크2 운영을 위한 자발적 기여금(ODA)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OECD 동남아시아 데스크2 운영을 위한 자발적 기여금(ODA) (3231-400)	799	799	877	78	9.8

자료: 기획재정부

동 사업은 전액 국제부담금(340-02)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인에 대한 인건비(인당 연봉 21.7만 유로) 43.4만유로(6억 9,180만원), 보고서 작성을 위한 미션비용 6.3만유로(1억 42만원), 기타비용 5.3만유로(8,448만원) 등 55만유로(8억 7,700만원)가 편성되었음.[133]

동 사업은 2025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서, OECD 내 인니 및 필리핀에 대한 경제분석 및 보고서를 발간하는 2인 부서(동남아 데스크2)를 운영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자발적으로 기여금을 출연하는 것임. 우리나라 외에 다른 국가나 OECD는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음.[134]

133) 환율 1,594원/유로가 적용됨

134) OECD 동남아시아 데스크1은 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에 대한 OECD 경제분석 및 보고서 발간을 지원하고 있는데, 데스크1은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 검토의견 >

「OECD 동남아시아 데스크2 운영을 위한 자발적 기여금(ODA)」 사업은 채용이 2025년 9월에 완료되는 등 OECD에 출연된 기여금의 상당 부분이 집행되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행잔액이 확정되면 기여금 조정에 대해 OECD와 협의할 필요가 있음.

「OECD 동남아시아 데스크2 운영을 위한 자발적 기여금(ODA)」 사업은 2025년도 예산안에 직원 2인에 대한 인건비 43.4만유로, 보고서 작성을 위한 미션비용 6.3만유로, 기타 5.3만유로 등 55만유로(7억 9,900만원)가 신규로 편성되었음. 이는 2025년에 전액 OECD에 출연될 예정임.

OECD는 신설되는 데스크2를 위해 2025년에 신규로 인력을 채용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OECD에 직원 2인에 대한 1년치 인건비를 포함한 기여금을 납부할 예정임.

그러나 연초에 인력 채용이 완료되지 못하는 등 인력 채용이 지연되었음. 특히, 신설되는 데스크2를 위해 OECD에 신규 채용된 2인 중 1인은 기재부 직원이 채용되었는데, 해당 직원은 2025년 9월 1일에 고용되어 고용휴직을 한 상황임. 다른 직원 1인도 9월 이후에 채용되어 데스크2 운영이 9월 1일에 개시되었음.

이에 따라 OECD에 기여금으로 납부된 2025년도 인건비 및 기타 비용 등이 연말까지 전액 집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상당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135)]

올해 인건비는 4개월분(2025년 9월~12월)만 집행되고 8개월치 인건비 잔액이 남을 것으로 보이므로, 4개월치 인건비에 해당되는 기여금 2억 3,060억원(=인건비 6억 9,180만원×4개월/12개월)만 출연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임.

또한, 추가적으로 인건비 외 기타 예산의 집행잔액도 고려해야 하나, OECD 회계부서에서 월말 결산을 통상 진행하지 않아 현재 정확한 실집행 현황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미션비용 및 기타비용도 4개월분의 기여금만 집행 가능하여 8개월분의 잔액이 남는다고 가정하면, 2026년에 4개월분의 미션비용 3,347만원(=미션비용 1억 42만원×4개

135) 단, 기획재정부는 데스크2 직원 2인이 9월에 채용되기 전 연초부터 OECD에서 관련 업무를 하면서 인건비 등 비용을 지출했다는 입장이지만, OECD는 월말 결산을 진행하지 않아 정확한 집행실적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월/12개월)과 4개월분의 기타비용 2,816만원(=기타비용 8,448만원×4개월/12개월)만 출연해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됨.

이를 합산하면 2026년에 2억 9,233만원의 기여금을 납부해도 OECD 동남아시아 데스크2가 정상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OECD 동남아시아 데스크2 운영을 위한 자발적 기여금 반영예산 및 필요예산]

구분	2026년도 반영예산 (A)	2026년도 필요예산 (B)	차이 (A-B)
인건비	6억 9,180만원 (12개월분)	2억 3,060만원 (4개월분)	4억 6,120만원 (8개월분)
미션비용	1억 42만원 (12개월분)	3,347만원 (4개월분)	6,695만원 (8개월분)
기타비용	8,448만원 (12개월분)	2,816만원 (4개월분)	5,632만원 (8개월분)
합계	8억 7,670만원 (12개월분)	2억 9,233만원 (4개월분)	5억 8,447만원 (8개월분)

자료: 기획재정부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2025년 집행잔액이 확정되면, 2026년에 OECD에 출연해야 하는 기여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OECD와 협의할 필요가 있음.

(30) 한국수출입은행이 직접 투자하는 방안 고려 필요 (공급망안정화 프로그램 지원, 경제공급망기획관)

< 현 황 >

「공급망안정화 프로그램 지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투자재원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한국수출입은행에 출자하려는 것임. 2026년도 예산안은 10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2026년도 공급망안정화 프로그램 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공급망안정화 프로그램 지원 (3236-303)	-	-	10,000	10,000	순증

자료: 기획재정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 설치된 기금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의 도입·개발·개량·상용화 등을 위한 사업을 대출, 보증, 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함.[136]

공급망안정화기금은 2024년 9월에 출범하였으며, 재원은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성됨.[137]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한

136) **「공급망안정화법」**
제38조(공급망안정화기금의 설치) 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지원한다.
1. 경제안보품목등의 확보, 도입 및 공급
2.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3.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의 도입·개발·개량·상용화
4.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긴급 지원
5.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분야로서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인정하는 분야

137) 공급망안정화기금은 2025년 8월 말까지 총 2.94조원의 채권을 발행하였음.

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25년 9월 30일에 의결되었음.

동 사업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에 100억원을 출자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100억원을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예정임. 그리고 공급망안정화기금에 특별투자한도 1,000억원을 신설할 계획임. 출자금 100억원은 특별투자한도 1,000억원에 수출입은행 목표 BIS 비율 13%, 금감원 권고 BIS비율 11.5% 등을 고려하여 10%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되었음.

< 검토의견 >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된 자금은 국가재정으로 회수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금을 통해 투자하기보다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직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므로, 한국수출입은행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투자대상을 고려하여 기금의 투자계획을 축소하고 기금에 출연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공급망안정화기금은 한국수출입은행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국가재정법」상 기금이 아니므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재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그리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은 별도의 운용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138] 공급망안정화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국가재정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139]

반면, 한국수출입은행에 출자된 자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정부에 당기순이익의 일부를 배당하는 방식을 통해 매년 일정금액을 국가재정으로 회수할 수 있음.[140]

따라서, 공급망안정화기금이 투자하려는 대상에 한국수출입은행도 투자할 수 있다면,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자금을 출연하기보다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직접 투자를 하도록 하고 향후 배당을 통해 수익을 국가재정으로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

138) 「공급망안정화법」에는 기금의 조성을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조성기한만 규정하고 있음.(법률 제19828호 부칙 제2조)

139) 단, 기금 청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재정으로 귀속하도록 「공급망안정화법」을 개정할 수 있음

140) 2025년 한국수출입은행의 정부배당은 2,828억원임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대출·보증을 받은 법인에 출자할 수 있고 집합투자기구에도 출자할 수 있음. 그리고 대출·보증과 연계하지 않고도 법인에 출자하고,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25년 9월 30일에 의결되었음.

실제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대상은 한국수출입은행의 투자대상과 일부 중복됨. 2024년에 기금에서 공급망안정화펀드(블라인드 펀드)에 1,000억원을 출자하였는데 한국수출입은행도 동일한 펀드에 함께 1,000억원을 출자했음.[141)]

이를 고려할 때, 한국수출입은행도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대상에 투자를 늘리기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재정에서 출자된 자금의 회수를 어렵게 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따라서, 수출입은행의 투자를 늘리는 대신 기금의 투자계획을 축소하고, 기금에 출연하기 위한 수출입은행 출자금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한국수출입은행의 2025년 6월 BIS 비율[142)]은 17.16%로서 관리 목표인 13%와 비교할 때 양호한 수준이므로 투자를 확대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임.

[한국수출입은행 BIS비율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BIS자기자본(A)	163,033	169,727	175,021	200,102	235,796	263,724
위험가중자산(B)	1,080,523	1,144,007	1,308,231	1,382,604	1,535,974	1,537,178
BIS비율(A/B)	15.09	14.84	13.38	14.47	15.35	17.16

자료: 기획재정부

141) 동 펀드는 총 1.8조원이 조성되었음

142) BIS 비율은 국제결제은행(BIS)에서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임. 위험가중자산은 빌려준 돈을 위험 정도에 따라 다시 계산한 것으로 위험이 높을수록 가중치를 높게 적용하여 산출함.

(31) 한-미 관세협상 타결 결과를 고려 필요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대외경제국)

< 현 황 >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이 대미 투자패키지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국수출입은행에 출자하려는 것임. 2026년도 예산안은 7,0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026년도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3236-304)	-	-	700,000	700,000	순증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합의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패키지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 투자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에 출자하려는 것인데, 한-미 관세협상이 최근 타결되고 수출입은행이 직접 투자하는 방안이 아닌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투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감액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와 미국은 2025년 7월 30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시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패키지 조성에 합의하였으며, 양국은 조선, 에너지, 핵심광물, 배터리, 반도체, 의약품, AI 퀀텀 컴퓨팅 등 전략 산업 강화를 지원하는 데 금융 패키지를 활용하기로 하였음.

대미 투자패키지의 투자 구조 및 수익 배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이 있어 협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입은행이 직접 대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7,000억원의 출자금이 편성된 예산안이 국회에 9월 초에 제출되었음.

10월 말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었고, 정부는 현금투자 2,000억 달러(연 최대 200억달러 이내로 한정)와 조선협력 1,500억 달러(우리 기업의 주도적 투자로 대출, 보증과 선박금융 등을 포함)를 투자하기로 하였음.

정부는 재정운용 효과성과 대미투자 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금을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기금의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확정된 것은 없으나, 정부는 정부보증채 발행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에 있음.

수출입은행이 직접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신설되는 기금이 대미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수출입은행이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대출·보증 등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된 7,000억원의 출자금은 전액 감액이 필요한 상황임.

(32) 민간위탁사업비 초과지출의 사후적인 보전을 위한 예산안 편성 부적절
(지식협력단지운영, 대외경제국)

< 현 황 >

「지식협력단지운영」은 대한민국 경제발전과정을 볼 수 있는 유물·자료 전시와 체험·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식협력단지를 운영하려는 것임.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3억 3,000만원 증가한 99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지식협력단지운영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세목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지식협력단지운영 (3239-301)	9,583	9,583	9,913	330	3.4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2,815	2,815	3,145	330	11.7

자료: 기획재정부

지식협력단지는 2013년에 KDI가 세종시로 이전한 후, 남은 부지와 건물을 활용해 2018년 10월에 개관한 단지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사를 보여주는 전시관을 운영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국제기구 및 주요 협력국과 세미나·연수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지식협력단지 건물관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민간위탁사업비를 교부받아 집행하고 있음.

< 검토의견 >

「지식협력단지운영」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과거에 지식협력단지 운영을 위해 교부받은 민간위탁사업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민간위탁기관이 교부받은 민간위탁사업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사후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보전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감액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민간위탁사업비 예산안은 전년대비 3억 3,000만원이 증액된 31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음. 증액분 3억 3,000만원 중 1억 7,000만원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민간위탁사업비 초과 지출액 1억 7,000만원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143)]

[지식협력단지운영 민간위탁사업비 정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예상)
예산(A)		2,815	2,815	2,815	2,815
지출	용역비(건물관리용역비및외주용역등)	2,178	2,314	2,417	2,309
	공과금(전기,수도,가스등)	386	434	446	460
	수선유지비	116	104	70	71
	보험료등(재산종합보험등)	5	6	9	10
	합계(B)	2,685	2,858	2,942	2,850
정산금액(A-B)		130	**(-)43**	**(-)127**	(-)35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즉,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3년에 기획재정부로부터 28억 1,500만원을 교부받았음에도 건물 관리를 위해 28억 5,800만원을 집행하여 미수금 4,300만원이 발생했고, 2024년에 28억 1,500만원을 교부받았음에도 건물 관리를 위해 29억 4,200만원을 집행하여 미수금 1억 2,700만원이 발생했는데, 기획재정부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안에 1억 7,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했다는 입장임.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회에서 확정된 민간위탁사업비 예산의 교부액 내에서 자금을 집행해야 하며 기획재정부 역시 민간위탁사업비 교부액 범위 내에서 집행되도록 감독해야 함. 만약 민간위탁사업비 예산이 부족하다면 해당 연도에 다른 사업의 잔여 재원의 이·전용 및 예비비 배정 등을 통해 예산을 충당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144)]을 준수해야 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교부액을 초과하여 자금을 집행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추가

143) 그 외 증액분 1억 6,000만원은 그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2026년도 소요 사업비를 증액한 것임.

144)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지출분을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집행 및 예산안 편성임.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과거 초과지출분을 보전하기 위해 편성된 민간위탁사업비 예산 증액분 1억 7,000만원을 감액하고, 필요하다면 2025년도 예산 집행과정에서 자체 절감재원을 마련하여 이·전용 등을 통해 이를 보전하는 것이 적절함.

(33) 신규 출연 또는 출연 확대 시 국회에 대한 사전보고 필요 (기후행동강화 지원(ODA), 개발금융국)

< 현 황 >

「기후행동강화 지원(ODA)」은 기후대응을 위해 국제기구 기금 등에 출연하려는 것임.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100억 7,700만원 증가한 214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음.

내역사업인 「GGGI 신탁기금」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에 2022년~2030년간 연 60억원 규모 신탁기금 설치·운영하고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Global Voluntary Carbon Market)[145] 협력 등 2026년~2030년간 연 90억원 규모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GGGI에 출연하려는 것임.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90억원 증가한 150억원이 편성되었음.

내역사업인 「UNFCCC 협력사업」은 UN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이 추진 중인 개도국 수요기반 기후재원 프로젝트(국가 전략 수립, 고위급 투자 포럼 개최, 후보사업 발굴 등)에 한국 정부도 2025년~2029년간 연 10억원을 지원하고, GVCM 구축을 위해 2026년~2028년간 연 150만불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UNFCCC에 출연하려는 것임.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20억 7,000만원 증가한 30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기후행동강화 지원(ODA)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기후행동강화 지원(ODA) (3333-332)	11,340	11,340	21,417	10,077	88.9
- GGGI 신탁기금	**6,000**	**6,000**	**15,000**	**9,000**	**150.0**
- UNFCCC 협력사업	**1,000**	**1,000**	**3,070**	**2,070**	**207.0**
- 손실과 피해대응 기금	3,140	3,140	3,347	207	6.6
- AF 공여	1,200	1,200	-	△1,200	△100.0

자료: 기획재정부

동 세부사업은 전액 국제부담금(340-02)으로 편성되었음.

145) GVCM은 기존 자발적 탄소시장보다 신뢰도를 높여서 글로벌 거래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기존 문제점을 개선한 탄소시장임. ①민간이 해외에서 자발적으로 창출한 탄소 감축 실적을 ②공신력 있는 기준에 따라 ③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한 크레딧으로 전환해 거래할 수 있도록 ④다자 체계로 운영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음.

<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는 GVCM 추진을 위해 GGGI와 UNFCCC에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110억 7,000만원을 추가적으로 출연한다는 MOU를 2025년에 서명하였고 이를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음.

그런데 국제기구와의 신뢰관계를 고려할 때, MOU 서명이 완료되면 국회에서 출연 예산액을 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는 향후 예산 반영이 필요한 MOU를 국제기구와 체결하기 전에 국회에 사전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음.

「GGGI 신탁기금」 사업과 「UNFCCC 협력사업」은 GVCM 추진을 위한 한-GGGI 신탁기금 협정 개정(2025년 5월 서명)과 한-UNFCCC 양해각서 서명(2025년 5월)에 따라 전년대비 각각 90억원과 20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음.

GVCM 추진에 따라 「GGGI 신탁기금」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270억원의 출연 소요가 발생하고, 「UNFCCC 협력사업」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450만불(62억 1,000만원)의 출연소요가 발생할 예정임.

[2026년도 기후행동강화 지원(ODA) 예산안 산출근거]

1 GGGI 신탁기금 : ('25) 6,000백만원 → ('26 예산안) 15,000백만원, 9,000백만원 증

ㅇ 한-GGGI 신탁기금 협정 개정('25.5월 서명)에 따라 '26년 납입액 15,000백만원(원화) 요구 ('22~'30년간 연 6,000백만원 납부(신탁기금) / '26~'28년간 연 9,000백만원 납부(GVCM))

2 UNFCCC 협력사업 : ('25) 1,000백만원 → ('26 예산안) 3,070백만원, 2,070백만원 증

ㅇ 한-UNFCCC 사무국 협력 협정('24.7월 서명)에 따라 '26년 납입액 1,000백만원(원화) 요구 ('25~'29년간 연 1,000백만원 납부)

ㅇ GVCM 추진 협력을 위한 한-UNFCCC 양해각서 서명('25.5월)에 따라 '26년 납입액 2,070백만원(원화) 요구 ('26~'28년간 연 150만불 납부)

3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 : (`25) 3,140백만원 → (`26 예산안) 33,47백만원, 207백만원 증

ㅇ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대통령 신규 공여 계획 발표, 기후변화 관련 대외정책 일관성, 정치권 및 시민단체 등의 국내적인 출연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7백만불 출연 추진하고, 3개년(`25~`27년) 분할 납입 감안 시 '26년 3,347백만원(242.5백만불 수준) 요구 ('25년 215만불, '26년 242.5만불, '27년 242.5만불)

자료: 기획재정부

즉, GGGI와 UNFCCC에 현재 연간 70억원을 출연하고 있는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110억 7,000만원을 추가적으로 출연하게 되어 출연 규모를 2배 이상 늘리게 되는 것임.

그런데 정부가 국제기구에 신규 출연을 하거나 출연금액을 늘리는 MOU를 국제기구와 체결하면,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출연예산을 사후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MOU 체결 이후 출연예산이 감액되어 정부가 국제기구에 약속한 출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정부와 해당 국제기구 간 신뢰관계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신규 출연을 하는 등 향후 예산 반영이 필요한 MOU를 국제기구와 체결하기 전에 정부가 사전적으로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4) 최근 집행실적을 고려한 전문가 참석수당 등 일반수용비 예산 감액 필요
(녹색기후기획사업, 개발금융국)

< 현 황 >

「녹색기후기획사업」은 기후 관련 국제 초청행사 개최, GCF 이사회·UN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 등 국제회의 참석과 대응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3,300만원 증가한 6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녹색기후기획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세목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녹색기후기획사업 (3333-333)	630	630	663	33	5.2
- 일반수용비(210-01)	51	51	81	30	58.8

자료: 기획재정부

이중 일반수용비는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146], 신규기후재원목표 후속 조치 등을 위한 간담회, 전문가 자문료 등 소요 증가 예상'으로 2025년 대비 3,000만원 증가한 8,100만원이 편성되었음.

146)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lobal Voluntary Carbon Market, GVCM)은 기존 자발적 탄소시장보다 신뢰도를 높여서 글로벌 거래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기존 문제점을 개선한 탄소시장임. ①민간이 해외에서 자발적으로 창출한 탄소 감축 실적을 ②공신력 있는 기준에 따라 ③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한 크레딧으로 전환해 거래할 수 있도록 ④다자 체계로 운영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음. 2025년 5월 기획재정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구축 협력을 위해 각 양해각서에 서명하였음.

< 검토의견 >

「녹색기후기획사업」의 최근 간담회 및 전문가 자문 실적이 저조하고 일반수용비 집행이 부진하므로, 간담회 등 소요 증가 예상을 이유로 증액된 일반수용비 예산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간담회 및 전문가 자문료 등 소요 증가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일반수용비를 3,000만원 증액하여 편성했음. 그러나 과거 집행실적을 감안할 때, 2026년에 이를 전문가 자문료 등으로 전액 집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147)]

2024년 예산안의 경우에도 기획재정부는 '전문가 회의 및 국제회의 자료 생산 수요 고려'를 이유로 일반수용비를 전년대비 1,400만원 증액하여 8,500만원 편성했음.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중 5,000만원을 정책연구비로 전용했으며, 간담회 및 전문가 자문을 위해 집행한 금액은 예산액의 8.2%인 693만원에 불과하였음. 이는 전년대비 증액분 1,4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임.

[2024년 녹색기후기획사업 간담회 및 전문가 자문 실시현황]

날 짜	주 제	비 용	비 고
'24. 2. 23.	기후사업 해외진출 TF 회의	135만원	9인 지급
'24. 2. 27.	'24년 정책연구용역 소위원회	30만원	3인 지급
'24. 4. 4.	국제탄소시장 전문가 간담회	60만원	4인 지급
'24. 5. 23.	기후테크 스타트업 관련 현안 청취 간담회	108만원	6인 지급
'24. 8. 20.	UNFCCC와 함께 하는 기후변화 투자 포럼	120만원	4인 지급
'24. 8. 26.	자발적 탄소시장 간담회	120만원	6인 지급
'24. 10. 4.	녹색 기후분야 국제 이슈 대응 간담회	120만원	6인 지급
계		693만원	

자료: 기획재정부

결과적으로 2024년도 예산은 일반수용비 8,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3,100만원 집행(집행률 36.5%)되는 것에 그쳤음.

147) 2026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상 전문가 회의 수당을 위해 편성된 일반수용비는 2,700만원임.

[2024년 녹색기후기획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합계	641	641	△12	629	603	26	630
- 상용임금 (110-03)	39	39	-	39	27	12	41
- 일반수용비 (210-01)	**85**	**85**	**△50**	**35**	**31**	**4**	**51**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2	2	-	2	-	2	2
- 특근매식비 (210-05)	5	5	-	5	1	4	5
- 임차료 (210-07)	20	20	-	20	20	-	4
- 일반용역비 (210-14)	278	278	-	278	278	-	328
- 국내여비 (220-01)	12	12	△1	11	10	1	12
- 국외업무여비 (220-02)	107	107	△11	96	96	-	104
- 사업추진비 (240-01)	10	10	-	10	10	-	10
- 관서업무추진비 (240-02)	4	4	-	4	4	-	4
- 정책연구비 (260-02)	70	70	50	120	119	1	60
- 고용부담금 (320-09)	7	7	-	7	6	1	8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에도 일반수용비 예산 5,100만원 중 전문가 회의 수당을 위한 일반수용비가 1,620만원 편성되었으나, 9월 19일 기준으로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를 위해 일반수용비를 집행한 실적이 없음. 2025년도 일반수용비 예산 5,100만원 중 7월 말 기준 집행액은 1,400만원(집행률 27.5%)에 그치고 있어, 집행이 부진함.

이와 같이 2024년과 2025년에 전문가 자문 실적 등이 저조하며 당초 편성된 예산액 대비 일반수용비 집행이 부진한 점을 고려할 때, 2026년에 간담회 등을 늘리기 위해 일반수용비를 증액할 필요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산액 증액분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3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준수 및 법정 의무 미이행에 대한 페널티 부과 필요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기관운영), 인사과)

< 현 황 >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기관운영)」은 기획재정부 본부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3억 7,100만원 증가한 74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그 중 고용부담금(320-09)은 연금지급금 및 비공무원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2025년 대비 5,300만원이 증가한 7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기관운영)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세목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기관운영) (7111-201)	7,112	7,112	7,483	371	5.2
- 고용부담금 (320-09)	703	703	756	53	7.5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는 매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바, 향후 동 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과거 장애인 고용부담금 집행 규모를 고려하여 관련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148]은 국가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14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장애인을 법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못한 기관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149]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부담금(320-09)[150] 세목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기획재정부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준수 여부를 살펴보면 기획재정부는 매년 법정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특히, 비공무원(공무직)의 경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목표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2.6%인 장애인 고용률이 2024년에는 0.9%까지 하락하였음. 정부부문의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이 6.12%이며, 중앙행정기관으로 한정하더라도 2.9%인 점을 고려하면 기획재정부가 공무직 장애인 고용률 증진을 위한 노력은 미흡한 상황임.

[기획재정부 장애인 고용률 현황]

(단위: %)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목표	3.4	3.6	3.6	3.8
공무원 고용률	3.6	3.5	3.6	3.6
비공무원(공무직) 고용률	2.6	1.9	0.8	0.9

주: 공무원 고용률 및 비공무원 고용률은 12.31.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부문 및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고용률 현황]

(단위: %)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공무원 고용률	정부부문	2.97	2.93	2.86	2.85
	중앙행정기관	3.68	3.66	3.54	3.53
비공무원(공무직) 고용률	정부부문	5.83	6.16	6.14	6.12
	중앙행정기관	3.08	3.13	3.12	2.90

주: 공무원 고용률 및 비공무원 고용률은 12월 기준
주: 정부부문 = 중앙행정기관 + 헌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자료: 장애인고용현황총괄표, e-나라지표

---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14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150)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고용부담금(320-09) 세목 내역은 아래와 같음.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타직(110-02목), 상용직(110-03목), 일용직(110-04목) 등을 고용함에 따라 사용자인 기관이 부담해야하는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부담금
 * 퇴직연금 가입시 연금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납입금을 포함
 **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해 국가가 납부해야할 부담금은 '기금전출금(610-03)목'으로 지출
2.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에 의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보험료액 중 국가가 납부해야하는 부담금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규모는 2021년 328만원에서 2022년 3,120만원, 2023년 4,383만원, 2024년의 경우 7,397만원으로 매년 확대되는 추세임.

이처럼 기획재정부가 법정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매년 고용부담금 납부를 관례화하는 것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정한 법정 의무를 사실상 회피하는 행위임.

[기획재정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공무원 고용부담금	3	23	6	30
비공무원(공무직) 고용부담금	-	8	38	44
합계	3	31	44	74

자료: 기획재정부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면밀한 계획 수립을 통해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장애인 고용 노력이 미흡한 경우 자체 예산 절감을 통하여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법정 의무 불이행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여 고용부담금의 관례적 지출을 근절할 필요가 있음.

(36) 연례적 불용을 고려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 감액 필요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기관운영), 운영지원과)

< 현 황 >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기관운영)」은 기획재정부 본부 운영을 위한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3억 7,100만원 증가한 74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그 중 복리후생비(210-12)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직원 동호회 지원 등을 위하여 2025년과 동일하게 13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기관운영)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세목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기관운영) (7111-201)	7,112	7,112	7,483	371	5.2
- 복리후생비 (210-12)	1,301	1,301	1,301	-	-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는 매년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을 실수요보다 과다하게 편성하며 연례적으로 연말에 복리후생비를 다른 비목으로 전용하여 집행하고 있으므로, 예산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실수요에 맞추어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151]에 따라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점수를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도록 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는 제도임.

151)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복지점수를 배정·운영하고 있으며, 소속 공무원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 복지혜택 항목 범위 내에서 복지점수를 사용할 수 있음[152].

[맞춤형 복지제도 지급 기준]

○ 배정기준: 개인별 복지점수 = 기본점수+근속점수+가족점수

기본점수(400점)	근속점수(300점)	가족점수
○ 전 직원 400점 일률 배정	○ 근무연수 1년당 10점 ○ 최고 30년까지 300점 배정	○ 배우자: 100점 ○ 부양가족 1인당 50점 ○ 자녀1: 50점, 자녀2: 100점, 자녀3 이후: 1인당 200점

○ 출산축하 복지점수(둘째자녀 2,000점, 셋째자녀 이후 자녀당 3,000점)
난임(총2회, 회당 500점), 태아산모검진 지원(총2회, 회당 100점)

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대응
자료: 기획재정부

그런데, 맞춤형 복지제도는 기본경비로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합리적인 예산 계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이 과다 편성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매년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으로 10억 7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연례적으로 연말에 복리후생비를 다른 비목으로 전용하고 집행하고 있으며, 실제 맞춤형 복지제도 집행액은 2022년 8억 6,000만원, 2023년 8억 3,000만원, 2024년 9억원에 불과함.

또한, 기획재정부는 매년 연말에 맞춤형 복지제도 예상 불용액을 직책수행경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전용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2022년의 경우 5,000만원에서, 2023년은 7,000만원, 2024년은 1억원으로 확대되고 있음.

152)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8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운영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 "복지점수"라 한다)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률(B/A)	비고
2022년	1,070	860	80%	
2023년	1,070	830	78%	
2024년	1,070	900	84%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 재구성

[기획재정부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일자	전용 증액			전용 감액			전용 사유	비고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2022.12.16.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기관운영) (7111-201)	직책수행경비 (250-02)	50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기관운영) (7111-201)	복리후생비 (210-12)	△50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신설 등에 따른 전용	자체 전용
2023.12.15.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기관운영) (7111-201)	직책수행경비 (250-02)	70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기관운영) (7111-201)	복리후생비 (210-12)	△70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및 조세개혁추진단 신설 등으로 직책수행경비 70백만원 부족분 충당	자체 전용
2024.12.20.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기관운영) (7111-201)	직책수행경비 (250-02)	100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기관운영) (7111-201)	복리후생비 (210-12)	△100	경제공급망 및 민생안정지원단 신설 등으로 직책수행경비 100백만원 부족 전망	자체 전용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 재구성

한편,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153]은 기본경비의 경우 최근 수년간의 이·전용, 불용 등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적극적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 배분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기본경비에 대하여 동 원칙을 배제하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을 스스로 위반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훼손하고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을 실수요에 맞추어 감액 조정하며,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예산 효율성 및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53) 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 15p

(37) 온북 도입 관련 예산안 감액 필요 (기획재정정보화(정보화), 기획조정실)

< 현 황 >

「기획재정정보화(정보화)」는 기획재정부 내부 직원용 정보시스템의 기획, 개발, 유지관리 등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려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대비 43억 5,300만원 증액(77.9%)된 99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기획재정정보화(정보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기획재정정보화(정보화) (7134-500)	5,589	5,589	9,942	4,353	77.9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온북 도입 규모의 적절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온북 도입 예산의 단가가 과다산출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의 2026년 예산안에 온북(업무용 노트북) 도입을 위한 예산 7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음. 행정안전부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온북'이란 국정원 보안 규정을 지키면서도 사무실 및 원격지에서 동일한 업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업무용 노트북을 의미함.

기획재정부는 온북 도입을 위하여 2023년에 6,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온북 100대를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24년에는 이·전용을 통하여 온북 210대를 신규로 도입하였고, 2025년 예산에도 온북 550대를 신규 도입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 중임. 이러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도 온북 100대 추가 도입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2026년 예산안대로 온북 100대가 추가 도입될 경우 기획재정부 정원 1,129명의 약 85%가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온북이 도입되는 것임.

기획재정부는 온북을 도입할 경우 업무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으므로 업무환경의 질이 제고될 것이므로 온북 도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처럼 정원의 85%가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온북이 확대도입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선, ① 예산안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만 온북을 대규모로 도입하고 있는 것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전술한 바와 같이 온북은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에 처음 도입한 것으로, 당시 행정안전부는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전부처 차원에서 온북 도입을 추진하였음.

그러나 부처별 온북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처음 도입을 추진한 행정안전부조차 온북 도입 대수는 320대에 불과하며 교육부나 국방부, 산업자원통상부의 경우 온북 도입 대수가 100대 초반에 불과하고, 통일부, 산림청, 문체부 등은 20~40대에 수준이며, 아예 도입조차 되지 않은 부처도 다수 존재함.

[부처별 온북 도입 현황]

(단위: 대)

구분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기재부	통일부	산림청	문체부	산자부
2021	320	-	-	-	-	-	-	-
2022	-	123	-	-	-	-	-	-
2023	-	-	110	100	40	30	-	-
2024	-	-	-	210	-	-	20	-
2025 (진행중)	-	-	-	550	-	-	-	100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각 부처의 경우 온북 도입이 저조한 반면, 기획재정부에는 이미 온북이 860대 도입되었으며 2026년 예산안에도 100대 추가 도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편성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처럼 예산안 편성권을 갖는 기획재정부가 자체 예산에만 온북 대규모 도입을 위한 예산이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타 부처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온북이 대규모로 도입되어 있는 기획재정부의 2026년 예산안에 추가 도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② 특히, 기획재정부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로 분리될 예정임을 고려할 때, 직제 및 기존 도입된 온북의 배분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온북 추가 도입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음.

기획재정부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2026년 1월 2일부터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로 분리될 예정임. 그러나 2025년 10월 현재 두 부처의 구체적인 직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기획재정부의 자산 배분 방침 역시 미정인 상황으로, 기존에 도입된 총 860대 온북 역시 구체적인 배분 방침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임.

이에 따라 동 사업에 반영되어 있는 온북 100대 추가 도입을 위한 예산안 역시 해당 온북 100대를 기획예산처나 재정경제부에 어떻게 배분할 계획인지 등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 세워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2026년 예산안에 편성된 온북 추가 도입을 위한 예산안 7억 4,300만원은 아직 정부 조직개편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6년 예산안에는 반영하지 않고 추후 구체적인 직제 및 업무 등이 확정되고

그 업무를 수행한 후 온북 도입에 대한 소요를 재추산하여 예산안 반영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③ 온북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그 단가가 과다산출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 온북 도입의 단가를 개당 743만원으로 편성하여 온북 추가 100대 추가도입을 위한 예산을 7억 4,300만원 편성하였음.

그러나 온북의 실제 도입 단가를 살펴보면, 처음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2023년에만 단가가 600만원 이상이며, 2024년 및 2025년은 실제 온북 도입 단가가 각각 500만원, 53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2026년 예산안 산출 시 온북 도입 단가를 2025년 실제 도입 단가인 534만원 수준으로 산출하여 과다계상된 예산안을 감액할 필요가 있을 것임.

(38) 유사·중복 사업 통합조정 필요 및 과다계상된 교육인원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의 감액 조정 필요 (미래융복합경제교육, 기획조정실)

< 현 황 >

「미래융복합경제교육」 사업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태안 교육 시설을 활용한 체험형·집중형 경제교육 및 직무교육 등 추진하려는 것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2억 2,900만원 증가(115.6%)한 41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미래융복합경제교육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미래융복합경제교육 (7135-310)	1,928	1,928	4,157	2,229	115.6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미래융복합경제교육 사업의 2026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감액할 필요가 있음.

첫째, 미래융복합경제교육 사업은 '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 및 '재정교육' 사업 등과 유사·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예산을 통합조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미래융복합경제교육 사업은 2026년 예산안에 ① 직무기본교육 6,590만원, ② 직무전문교육 4억 4,970만원, ③ 융복합경제교육 2억 2,6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우선 ① 직무기본교육이란 신규전입자나 승진자 및 청년인턴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이나, 이는 인사과의 '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에서도 신규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문제가 있음. 특히 인사과는 2025년에도 해당 사업에서 청년인턴 교육 및 신규주무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26년 예산안에도 '업무 전문 역량개발 교육 예산 1억 2,600만원 및 교육지원 2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중복되는 문제가 있음.

[2026년도 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중 교육 관련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업무 전문 역량개발 교육	3만원 × 350명 × 12월	126
직원 교육 지원		23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② 직무전문교육은 실국 소관 업무 전문성 향상 등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임.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재정교육' 사업 역시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재정제도 이해도 제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경제교육사업이라는 점에서 교육 목적 및 대상이 유사·중복되는 문제가 있음.

특히 2025년 직무전문교육주제를 살펴보면 세법 해설, 예산 실무, 경제정책 과정, 국고관리, 국가계약, 공공정책, 재정정책, 민간투자사업 등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재정교육사업의 e-재정배움 사이트에도 국고금관리법의 이해, 국가재정법, 공공기관 경영평가,

국가계약제도, 예비타당성조사, 예산 실무, 회계,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등의 교육 강의가 개설되어 있어 교육 내용 측면에서도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미래융복합경제교육 사업은 타 사업과 달리 태안 정책연수원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므로 차이가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교육 대상이 동일하고 교육 내용 또한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음에도 단순히 장소를 기준으로 사업 및 예산을 구분하는 것은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여 지출구조조정을 하고자 하는 정부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미래융복합경제교육', '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재정교육' 등 부처 내 산재되어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재정 교육 관련 사업들을 통폐합하고 중복 예산을 통합조정하는 등 교육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둘째, 미래융복합경제교육 사업의 교육인원은 과다계상된 문제가 있으므로 2025년 교육이수인원 실적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미래융복합경제교육 사업의 2026년 예산안을 총 3,47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전제로 편성하였음.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는 직무기본교육 290명, 직무전문교육 2,000명 등 직무교육의 경우 2,290명을 교육목표인원으로 산정하였고, 융복합경제교육은 960명을 교육목표인원으로 산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2025년 기획재정부 정원은 1,129명으로, 직무교육대상을 2,290명으로 산정한 것은 기획재정부 전체 인원이 연 2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하는 수준으로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문제가 있음. 특히, 기획재정부는 2026년 기준으로 조직이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로 분리될 예정으로 이로 인하여 정원이 감소될 것을 고려할 경우 해당 교육대상 인원은 더욱 과다산출된 것으로 보임.

또한, 2025년 9월 기준으로 교육이수인원을 살펴보면, 직무기본교육 이수인원은 29명(계획 대비 12.1%)에 불과하며, 직무전문교육은 1,255명(계획 대비 50.2%), 융복합경제교육은 656명(계획 대비 65.6%)로 당초 계획에 비해 그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2025년 및 2026년 교육목표인원 및 2025년 교육인원 실적]

(단위: 명)

구분		2025년		2026년 교육목표인원
		교육목표인원	실제 인원 (9월 기준)	
직무 기본 교육	신규자	80	29	120
	승진자	60	0	70
	청년인턴	100	0	100
직무전문교육		2,500	1,255	2,000
융복합경제교육		1,000	656	960
합계		3,740	1,940	3,47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안 편성시 직무교육과정을 총 88회 계획하였으나 2025년 8월 기준 총 43회를 실시하였으며 연말까지 총 55회 가량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여 33회분에 대한 예산 2억 6,000만원이 불용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임.

이처럼 2025년의 경우 교육목표인원에 비해 실제 이수 실적이 부진하며 이로 인하여 불용이 발생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2026년 예산안 편성 시 교육목표인원을 또다시 과다하게 산출하고 있어 과다편성 문제가 재발하고 있으므로 2025년 교육이수 실적 등을 고려하여 2026년 교육목표인원을 하향조정하고 이에 맞게 예산안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셋째,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위한 예산은 실제 기능개선 소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2025년 동 사업의 예산으로 미래융복합경제교육과 관련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2026년 예산안에 이러한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위한 연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동 홈페이지가 25년 9월 말 현재 구축 중이고, 아직 오픈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한 기능개선 소요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액의 약 40%에 달하는 금액의 5,000만원의 기능개선 예산안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문제가 있음.

기능개선을 위한 예산의 경우 홈페이지 구축이 완료되어 운영한 후 구체적인 기능개선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요가 무상하자보수 범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한 뒤 기능개선이 필수적인 경우에 한하여 구체적인 산출 내역을 도출하여 예산안에 편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임.

따라서 구체적인 소요 없이 반영된 2026년 홈페이지 기능개선 예산안은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으며, 홈페이지를 1~2년 운영한 후 구체적인 기능개선 소요가 생길 경우 해당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넷째,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팀에 대한 과운영비(540만원)와 과다편성된 특근매식비를 감액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의 2026년 예산안에 6인 이상 2팀 및 5인 이하 1팀의 총 3팀에 대한 1년치 과운영비 5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명에 대한 특근매식비 1,296만원을 편성하였음.

[2026년 과운영비 및 특근매식비 예산안 산출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과운영비	18만원 × 2팀 × 12개월 + 9만원 × 1팀 × 12개월	5.4
특근매식비	9,000원 × 10명 × 12일 × 12개월	12.96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2026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은 과운영비를 '각 중앙관서의 직제에 반영된 과·팀 등의 기본운영경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 수행을 위한 미래융복합경제교육 관련 팀은 현재 기획재정부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이므로 해당 팀들에 대한 과운영비를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또한, 동 사업은 현재 2개 팀, 8명의 현원으로 구성[154]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바, 3개 팀 및 최소 17인의 사업수행인원을 전제로 한 2026년도 과운영비는 현재 팀구성이나 현원에 비추어보아도 과다편성된 문제가 있으며, 10명을 기준으로 산출한 특근매식비 역시 현원(8명)에 비해 과다산출된 문제가 있음.

154) 미래융복합경제교육기획팀 4인, 미래융복합경제교육운영팀 4인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현재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미래융복합경제교육 관련 팀을 직제로 반영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것을 추진 중이므로 과운영비 및 특근매식비를 현원에 비해 증액 편성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동 사업과 유사한 경제교육지원 사업의 경우 역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기획재정부 직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과운영비를 편성하지 않았으며, 경제교육지원 사업은 동 사업보다 이전부터 임시조직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사업과 달리 「경제교육지원법」이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존재함에도 아직 직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 수행을 위한 행정안전부와의 직제 협의는 단기간에 완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직제에 편성되지 않은 팀에 대한 과운영비 540만원과 과다편성된 특근매식비 2인에 해당하는 약 260만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과다편성된 간담회 개최용 업무추진비 역시 감액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의 2026년 예산안에 간담회 추진 및 업무협의 등을 사유로 사업추진비와 관서업무추진비를 총 4,590만원 편성하였음. 그 구체적인 산출 내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직무전문교육 간담회 40회, 융복합경제교육 간담회 20회, 전문가 간담회 30회 등 간담회를 총 98회 개최할 것을 전제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음.

[2026년 업무추진비 산출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사업추진비 (240-01)	**1. 직무기본교육 간담회: 300천원 × 8회 = 2,400천원** **2. 직무전문교육 간담회: 300천원 × 40회 = 12,000천원** **3. 미래융복합경제교육 간담회: 300천원 × 20회 = 6,000천원**	20.4
관서업무추진비 (240-02)	**1. 전문가 간담회: 30천원 × 15명 × 30회 = 13,500천원** 2. 관계부처 업무협의: 30천원 × 10명 × 30회 = 9,000천원 3. 유관기관 업무협의: 30천원 × 5명 × 10회 = 1,500천원 4. 국회 등 업무협의: 30천원 × 5명 × 10회 = 1,500천원	25.5
합계		45.9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동 사업이 실시된 첫 해인 2025년 간담회 개최 횟수는 8월말 기준 22회에 불

과하며, 이마저도 실질적으로 업무협의 성격의 태안 정책연수원 교육시설 운영과 관련된 관리소장 등과의 회의 3회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최종보고 2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간담회 개최 횟수는 15회에 불과함.

[2025년 간담회 실시 현황]

일시	내용	참석자
4.3.	교육과정 개발 등 관련 연구용역 착수보고	경제교육 관련 연구진
4.10.	실국 교육 담당자 등 대상 교육과정 설계 지침, 향후 일정 등 행정사항 안내	실국 교육담당자
4.23.	태안연수원 교육시설 운영 관련 간담회	캠코 관리소장, 시설과장 등
4.30.	홈페이지 구축 관련 간담회	업무담당자
6.2.~ 6.10.	부내 교육 수요 파악을 위한 실국별 교육담당자 정책 협의(총 15회, 실국별 개최)	각 실국별 교육담당자, 경제교육 관련 연구진
6.12.	태안연수원 교육시설 운영 관련 간담회	캠코 관리소장, 시설과장 등
7.9.	태안연수원 교육시설 운영 관련 간담회	캠코 관리소장, 시설과장 등
7.22.	교육과정 개발 등 관련 연구용역 최종보고	경제교육 관련 연구진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동 사업은 간담회 수요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 첫 해에도 간담회 개최 횟수는 8월말 기준 22회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실질적인 업무협의를 제외할 경우 15회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간담회 총 98회(업무협의 제외) 개최를 전제로 편성한 업무추진비 3,390만원은 과다하게 편성된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이를 실제 간담회 개최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음.

2. 기획재정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가. 개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4조에 따라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동 법 제75조에 근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운용 주체는 기획재정부 장관이고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되어 있음.[155]

2026년도 지특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액 14조 7,440억원에서 7조 8,866억원 증액된 22조 6,305억원이 편성됨. 이 중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액 13조 9,089억원에서 7조 7,556억원(55.8%) 증가한 21조 6,745억원임.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2026년	증감 (B-A)	
	예산액(A)	예산안(B)		(B-A)/A
○ 주세	32,093	31,451	△642	△2.0
○ 일반회계 전입금	59,533	123,985	64,452	108.3
○ 특별회계 전입금	42,782	56,586	13,804	32.3
○ 계정간 전입금	-	-	-	-
○ 전년도 세계잉여금	4,680	4,724	44	0.9
합 계	**139,089**	**216,745**	77,656	55.8

자료: 기획재정부

지특회계는 지역자율계정·지역지원계정·제주특별자치도계정·세종특별자치시계정 등 4개의 계정으로 구분됨. 지역자율계정은 지자체 자율편성에 의한 포괄보조사업으로, 각 지자체가 시·도 및 시·군·구 포괄보조사업 중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을 선택하여 지자체별 지출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있음.

155)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4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5조(회계의 관리·운용) ① 회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세출예산의 배정·자금운영·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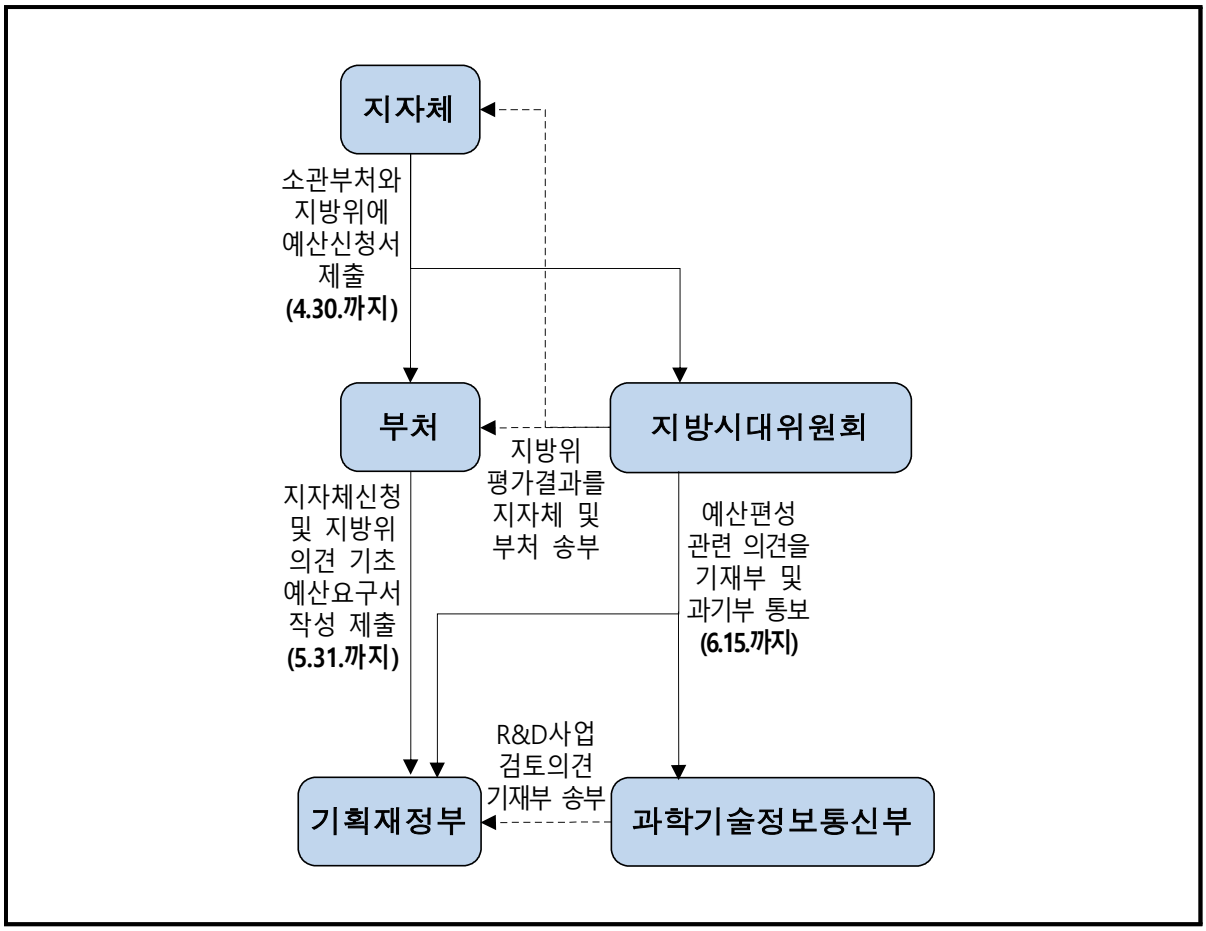
지역지원계정은 부처 직접편성사업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중앙부처가 각 시·도의 예산요구 내용을 검토하여 부처별 지출 한도 내에서 요구내용을 조정한 후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계정과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은 지자체 자율편성사업과 부처 직접편성사업이 혼재되어 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구분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 자치시계정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지자체 자율편성	① 시·도 자율 편성사업 ②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③ 시 자율편성사업	④ 도 자율편성사업 ⑤ 특별지방행정 기관이관사무 수행경비
부처 직접편성	-	⑥ 부처직접 편성사업	⑦ 부처직접 편성사업	⑧ 부처직접 편성사업

주: ① 시·도 자율편성사업(지역자율계정)
: 지역의 일반적 개발사업으로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②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지역자율계정)
: 성장촉진지역 등 기반구축사업으로 지출한도(계속소요)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③·④·⑤ 자율편성사업(세종·제주계정)
: 사업군별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⑥·⑦·⑧ 부처직접편성사업(지역지원계정, 세종·제주계정)
: 광역협력권 지원을 위한 시·도간 연계사업 등 국가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각 부처가 시·도 발전계획 및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의거 지자체 요구 등을 받아 부처에서 직접 예산 편성
자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2024. 4.)을 재구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절차]



자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2025. 4.)

3.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1) 공공자금관리기금

가. 개요

공공자금관리기금은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공공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4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이후 국채관리기금과 재정융자 특별회계를 각각 흡수·통합하였음. 이에 따라 현재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총괄계정(공공자금관리기금과 국채관리기금 통합), 융자계정(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계정의 흡수), 차관계정(재정융자특별회계 차관계정의 흡수)으로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음.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규모는 2025년 계획 대비 4조 8,733억원 감소한 334조 8,530억원으로서, 일반회계 예탁(△5조 486억원) 및 지방채 인수(△1조 1,100억원) 감소 등에 기인함.

2026년도 수입 계획안에 따르면 신규 국공채 발행수입은 231조 9,516억원으로 2025년 계획 대비 8,489억원 증가하고, 특별회계·기타기금 예수금은 총 25조 1,179억원으로 2025년 계획 대비 1조 8,660억원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기타기금 예탁원금회수는 총 43조 8,639억원으로 2025년 계획 대비 1,322억원 감소하였음.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수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 초	수 정(A)			
지방자치단체이자수입(54-541)	144,789	159,789	177,972	18,183	11.4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261,099	261,099	373,726	112,627	43.1
기타재산이자외수입(54-547)	79,727	79,727	-	△79,727	순감
지방자치단체융자원금회수(75-751)	18,931	18,931	163,991	145,060	766.3
국공채발행수입(81-811)	197,552,511	231,102,744	231,951,617	848,873	0.4
한국은행예치금회수(85-851)	100	100	100	-	-

구 분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당 초	수 정(A)			(B-A)/A
계정간전입금(91-915)	-	-	150,000	150,000	순증
특별회계예탁원금회수(92-922)	622,391	622,391	588,953	△33,438	△5.4
기금예탁원금회수(92-923)	43,373,753	43,373,753	43,274,974	△98,779	△0.2
계정간예탁원금회수(92-925)	171,801	171,801	-	△171,801	순감
특별회계예수금(94-942)	4,189,322	4,189,322	3,179,060	△1,010,262	△24.1
기금예수금(94-943)	21,890,555	22,794,629	21,938,868	△855,761	△3.8
일반회계예탁이자수입(95-951)	28,992,437	29,403,558	25,587,178	△3,816,380	△13.0
특별회계예탁이자수입(95-952)	313,389	320,783	397,347	76,564	23.9
기금예탁이자수입(95-953)	6,950,224	6,958,697	6,908,403	△50,294	△0.7
계정간예탁이자수입(95-955)	3,473	3,473	-	△3,473	순감
총계(총괄계정)	**304,564,502**	**339,460,797**	**334,692,189**	△4,768,608	△1.4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54-542)	1,420	1,420	1,030	△390	△27.5
비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54-543)	2,264	2,264	1,712	△552	△24.4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5,168	5,168	-	△5,168	순감
통화금융기관융자원금회수(75-752)	6,738	6,738	5,298	△1,440	△21.4
비통화금융기관융자원금회수(75-753)	12,217	12,217	11,188	△1,029	△8.4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75-754)	50,000	50,000	50,000	-	-
한국은행예치금회수(85-851)	185,147	185,147	89,094	△96,053	△51.9
일반회계전입금(91-911)	-	-	-	-	-
기금예탁원금회수(92-923)	2,400	2,400	2,400	-	-
기금예탁이자수입(95-953)	134	134	43	△91	△67.9
총계(융자계정)	**265,488**	**265,488**	**160,765**	△104,723	△39.4
총계(차관계정)	**-**	**-**	**-**	**-**	**-**
총 계	**304,829,990**	**339,726,285**	**334,852,954**	△4,873,331	△1.4

자료: 기획재정부

2026년도 지출 계획안에 따르면 일반회계 예탁금은 109조 9,002억원으로 2025년 계획 대비 5조 486억원 감소하였음. 국고채 원금 상환액은 116조 2,180억원으로 2025년 계획 대비 1조 3,171억원 감소, 이자 상환액은 34조 3,900억원으로 3조 9,810억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기타기금 예탁금은 총 47조 5,107억원으로 2025년 계획 대비 8,034억원 감소하였고, 지방채 인수는 1조 1,100억원 감소하였음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출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당 초	수 정(A)	계획안(B)	(B-A)	(B-A)/A
지방채인수(1031-100)	10,000	1,210,000	100,000	△1,110,000	△91.7
기타민간차입이자상환(1071-760)	10,000	10,000	10,000	-	-
국고채이자상환(1071-780)	29,977,898	30,409,038	34,389,999	3,980,961	13.1
기타경비(3576-201)	3,205	3,205	6,891	3,686	115.0
일반회계예탁(8520-851)	82,765,297	114,948,803	109,900,225	△5,048,578	△4.4
특별회계예탁(8540-853)	2,766,163	3,280,377	2,816,883	△463,494	△14.1
특별회계예수원금상환(8601-900)	1,621,411	1,621,411	1,977,758	356,347	22.0
특별회계예수이자상환(8712-900)	226,401	226,401	211,412	△14,989	△6.6
기타기금예탁(9020-900)	44,477,199	45,033,785	44,693,866	△339,919	△0.8
기타기금예수원금상환(9130-910)	24,266,958	24,266,958	23,616,162	△650,796	△2.7
기타기금예수이자상환(9220-920)	904,817	915,666	750,900	△164,766	△18.0
한국은행예치(9702-970)	100	100	100	-	-
국고채원금상환(9862-981)	117,535,053	117,535,053	116,217,993	△1,317,060	△1.1
총계(총괄계정)	**304,564,502**	**339,460,797**	**334,692,189**	△4,768,608	△1.4
총괄계정전출(9301-900)	-	-	150,000	150,000	순증
총괄계정예수원금상환(9502-950)	171,801	171,801	-	△171,801	순감
총괄계정예수이자상환(9602-960)	3,473	3,473	-	△3,473	순감
한국은행예치(9702-970)	89,094	89,094	10,765	△78,329	△87.9
장애인자립자금융자(4531-300)	560	560	-	△560	순감
민간보육시설지원(4731-300)	560	560	-	△560	순감
총계(융자계정)	**265,488**	**265,488**	**160,765**	△104,723	△39.4
총계(차관계정)	**-**	**-**	**-**	**-**	**-**
총 계	**304,829,990**	**339,726,285**	**334,852,954**	△4,873,331	**△1.4**

자료: 기획재정부

나. 검토의견

(1) 과다계상된 한국은행 일시차입 이자지급 계획안 감액 필요 (기타민간차입 이자상환, 국고국)

< 현 황 >

「기타민간차입 이자상환(총괄계정)」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일시 부족자금 해결을 위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임. 2026년도 계획안은 2025년 계획액과 동일한 10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기타민간차입 이자상환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기타민간차입 이자상환(총괄계정) (1071-760)	10,000	10,000	10,000	0	0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기타민간차입 이자상환 사업은 차입금액 및 일시차입기간, 적용 금리가 모두 과다산출된 것으로 보이며 최근 집행률도 낮은 수준이므로 이를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공자기금이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동 사업의 2026년 계획안을 100억원 편성하였으며, 그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음.

[2026년도 기타민간차입 이자상환 산출근거]

○ 한국은행 일시차입금(한도 10조원)에 대한 이자 소요 - 10조원 x 2.50%* x 15/365** ≒ 10,000백만원 * 최근 한은 기준금리 ** 일시차입기간 15일 수준 가정

자료: 기획재정부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해당 산출 근거는 ① 대상 일시차입금액, ② 적용금리 및 ③ 일시차입기간이 모두 과다산출된 문제가 있음.

우선, ① 대상 일시차입금액의 경우 기획재정부는 2026년 예산총칙(안)에 설정되어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한도인 10조원 전체에 대하여 이자지급을 산정하였음.

[2026년도 예산총칙(안)의 한국은행 일시차입 한도]

제8조 2026년도에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연도 중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① 통합계정 : 40,000,000,000,000원 ② 양곡관리특별회계 : 2,000,000,000,000원 ③ 공공자금관리기금 : 10,000,000,000,000원 ④ 국유재산관리기금 : 200,000,000,000원

자료: 기획재정부

그러나 2020년부터 2024년간 공자기금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과 2024년을 제외하고는 일시차입을 한 적이 없으며, 그마저도 일시차입금의 연중 최고 잔액은 2020년 5.5조원, 2024년 8조원에 불과함.

[2020년~2024년 공자기금의 한국은행 일시차입 현황]

(단위: 조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중 최고액	5.5	0	0	0	8.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일반회계가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일시차입금이자상환(일반회계)'의 경우 동 사업과 같이 2022년 및 2023년에 한국은행 일시차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안 산출 시 2022년~2024년 일시차입 연평균잔액을 기준으로 10.2조원을 대상으로 하였음.

또한,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과 같이 예산총칙(안) 상에 일시차입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으나 그간의 일시차입 실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자지급 계획안을 편성하지 않은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최근 5년간의 일시차입 실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총칙(안) 상의 최고 일시차입금 한도를 대상으로 이자지급금을 산출한 바 이는 실제 소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대상액을 과다하게 산출한 문제가 있음.

또한, ② 적용금리 역시 실제 적용금리에 비해 과다산출된 문제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의 계획안 산출에 있어서 적용금리를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인 2.5%로 적용하였음. 그러나 동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의 실제 적용금리는 '직전분기 말월 중 91일물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 + 0.100%p'로, 2025년 9월 기준 해당 금리는 2.357%이며 최근 그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2025년 월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91일물) 시장금리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금리	2.881	2.850	2.717	2.554	2.513	2.480	2.418	2.361	2.357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실제 전술한 일반회계의 '일시차입금이자상환(일반회계)'의 경우 적용금리를 2025년 7월 기준 통화안정증권(91일물)에 10bp를 더하여 2.45%로 산출하였음에도 공자기금의 동 사업은 산출금리를 한국은행 기준금리 2.5%로 적용한 것은 그 금리를 과다계상한 것임.

따라서 실제 적용금리 및 최근 금리 인하 추세를 고려하여 적용금리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③ 일시차입기간의 경우, 기획재정부는 2026년 예산안 산출시 일시차입기간을 15일로 가정하였음.

그러나 최근 5년간 일시차입 실적이 있었던 2020년과 2024년의 차입 및 상환일자를 살펴보면, 2020년의 경우 최장 일시차입기간이 9일이었으며 2024년의 경우 최장 일시차입기간이 7일이었다는 점에서 해당 일시차입기간 15일 또한 과다산출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2024년 최장 기간인 7일 수준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음.

[2020년~2024년 공자기금의 한국은행 일시차입 현황]

회계연도	차입금액(일자)	상환금액(일자)
2020	3.5조원(6.22.), 2.0조원(6.29.)	5.5조원(7.1.)
2024	2.5조원(3.25.), 2.0조원(3.27.) 0.3조원(3.28.), 3.2조원(3.29.)	0.9조원(4.1.), 7.1조원(4.2.)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종합하면, 동 사업은 2026년 예산안 산출에 있어 ① 대상 일시차입금액, ② 적용금리 및 ③ 일시차입기간이 모두 과다산출된 문제가 있음. 특히 동 사업은 최근 5년간 동일한 계획액을 편성하였음에도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집행률 또한 연례적으로 저조한 상황임.

[최근 5년간 기타민간차입 이자상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		계획현액(a)	집행액(b)	집행률 (b/a)	불용액
	당초	수정				
2022	10,000	10000	10000	-	0.0	10,000
2023	10,000	10000	10000	-	0.0	10,000
2024	10,000	10000	10000	4,482	44.8	5,518
2025	10,000	10000	10000	3,506	35.1	집행중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의 계획액을 실제 일시차입 실적에 부합하도록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부진한 수요에 비해 과다편성된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수수료 감액 필요 등 (기타경비(총괄계정), 국고국)

< 현 황 >

「기타경비(총괄계정)」 사업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원활한 자금관리·집행, 국·공채 인수, 기금 예탁 및 재예탁 등을 관리하기 위한 기금운용에 소요되는 경상경비임. 이 중 일반수용비는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에 소요되는 수수료 지급을 위한 경비임. 동 사업의 2026년도 계획안은 2025년 대비 36억 8,600만원 증가(115.0%)한 68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기타경비(총괄계정)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세목명)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기타경비(총괄계정) (3576-201)	3,205	3,205	6,891	3,686	115.0
- 일반수용비	3,160	3,160	6,850	3,690	116.8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기타경비(총괄계정) 사업의 2026년 계획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2025년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투자용국채 연간 발행계획을 2025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 일반수용비는 과다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개인투자용국채 발행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일반수용비 역시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음.

개인투자용국채란 2023년에 「국채법」[156]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국채의 유형으로,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하여 발행하는 국채를 의미함. 개인투자용 국채는 2025년 기준 5년물과 10년물, 20년물로 구분되며, 표면 금리는 직전월 동일 연물 국고채의 최고 낙찰금리로 결정[157]됨.

기획재정부는 2026년 예산안 편성시 개인투자용국채를 2025년 1.4조원 대비 1.6조원 확대한 총 3조원을 발행할 것을 계획하여, 이에 대한 발행 수수료를 6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2025년 개인투자용국채의 월별 청약실적을 살펴보면,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수요가 부진하여 청약액이 발행계획액에 못 미치고 이로 인하여 청약 경쟁률이 1:1도 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5년 중 개인투자용국채 청약액이 발행계획액에 비해 많아 경쟁률이 1:1 이상이었던 경우는 5년물이 처음 발행된 3월, 4월 및 5월에 불과하였으나 그마저도 최고 경쟁률이 1.30:1에 불과하여 그 수요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5년물의 경우 기존 개인투자용국채 수요 부진으로 인해 새로이 도입된 물량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도입된 2025년 3월 이후로 그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처음 발행된 3월에도 경쟁률이 2:1도 되지 않는 등 뚜렷한 수요 증진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156) **「국채법」 제4조((국채의 종류 등)** ① 국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국채
가. 매입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발행하는 국채(이하 “국고채권”이라 한다)
나.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하여 발행하는 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 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

157)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금리)** ① 개인투자용국채의 표면금리는 직전월 동일 연물 국고채의 최고 낙찰금리로 한다.

[2026년 개인투자용국채 월별 청약 실적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총계				5년물			
	계획액	발행액	청약액	경쟁률	계획액	발행액	청약액	경쟁률
2025.1.	1,000	869	869	0.87:1	-	-	-	-
2025.2.	1,000	505	505	0.51:1	-	-	-	-
2025.3.	1,200	1,200	1,561	1.30:1	600	790	1,151	1.92:1
2025.4.	1,200	1,200	1,436	1.20:1	700	912	1,149	1.64:1
2025.5.	1,300	1,300	1,633	1.26:1	800	933	1,266	1.58:1
2025.6.	1,400	1,376	1,376	0.98:1	900	1,095	1,095	1.22:1
2025.7.	1,400	931	931	0.67:1	900	606	606	0.67:1
2025.8.	1,400	1,373	1,373	0.98:1	900	945	945	1.05:1
2025.9.	1,400	추가예정	추가예정	추가예정	90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실제 개인투자용국채가 처음 발행된 2024년의 경우 동 국채의 수요 부진으로 12억 6,100만원에 달하는 불용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60.7%에 불과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5년물 추가 도입한 2025년의 경우에도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수요가 역시 부진하며, 2025년 7월 기준 집행률 44.1%에 불과한 상황임.

[최근 3년간 기타경비(총괄계정)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2024	3,205	3,205	-	3,205	1,944	-	1,267	60.7
2025.7.	3,205	3,205	-	3,205	1,414	-	미정	44.1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를 전제로 개인투자용국채를 확대 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용국채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해당 제도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및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어려운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을 2025년 1.4조원 대비 1.6조원 확대된 3조원으로 계획하여 계획안을 산출한 바, 이는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다하게 예산안을 산출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그간의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수요 부진 및 최근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개인투자용국채 발행 계획을 적정 수준으로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부합하게 발행 수수료를 위한 동 사업의 예산안 역시 감액할 필요가 있음.

둘째, 판매대행기관 수수료율이 과다책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기존 판매대행기관 수수료율을 고려하여 이를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음.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을 위해서는 ① 전자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에 지급하는 사무처리 수수료와 ② 판매대행기관인 증권사에 지급하는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함. ① 사무처리 수수료의 경우,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158] 은 예탁결제원에 지급하는 사무처리 수수료를 분기별로 2.5억원과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액의 0.015%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② 판매대행 수수료는 증권사와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는데,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대행사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수수료는 20bp 이내에서 협상대상자가 입찰가격을 통해 제시한 보수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5년의 경우 연 1.4조원 발행과 14bp 보수율을 적용하여 판매대행기관인 증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제 지급수수료는 실제 발행물량에 따라 조정됨.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2026년 예산안 중 판매대행기관 수수료를 편성함에 있어 1조원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0.14%를 적용하고, 2조원에 대해서는 0.2%의 보수율을 적용하였음.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하여 개인투자용국채 취급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위탁판매 수수료율을 0.2%로 추정하여 적용하였다는 입장임.

[2026년 개인투자용국채 발행 수수료 계획액 산출 근거]

구분	산출근거	금액
전자등록기관 수수료	2.5억원 × 4분기 + 3조원 × 0.015%	14억 5,000만원
판매대행기관 수수료	3조원 × 1/3 × 0.14%(현행) + 3조원 × 2/3 × 추정가격 0.2%	54억원
		68억 5,000만원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58)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사무처리 수수료)** ① 전자등록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한 수수료는 분기별 2.5억 원에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액의 0.015%를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분기별로 지급하며, 그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과다편성된 측면이 있음. 우선 ① 기존 수수료율 0.14%이 적용되는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이 판매하는 국채 발행액을 1조원으로 계산하였으나, 해당 금액은 2025년 국채 발행액인 1.4조원에 비해 작은 금액으로, 추정 수수료율보다 이미 미래에셋증권과 체결된 수수료율이 낮은 상황에서, 그 판매금액을 2025년보다 작은 판매금액인 1조원으로 설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동 계약은 미래에셋증권과 체결한 장기계속계약으로, 당초 2024년 계약시 1억원을 기준으로 4년간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2026년에도 미래에셋증권과의 계약금액을 1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미래에셋증권과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연간 국채 발행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 총 발행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159]되어 있음. 실제 2025년의 경우 2024년에 비해 개인투자용국채 발행계획이 증가함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이 1.4조원을 기준으로 계약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도 2025년 연말에 동 계약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이처럼 2025년의 경우 1.4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이미 미래에셋증권에서 기발행하였으며, 연말에 계약을 수정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계약금액을 2025년보다 낮은 1조원으로 편성한 것은 계획안을 과다편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적정 금액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② 또한, 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용국채 취급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신규로 추가되는 기관에 대한 수수료율은 기존보다 높은 수준인 0.2%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수수료율은 위탁계약 체결에 따라 정해지는데, 기존의 위탁계약이 이미 0.14%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수준으로 수수료율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음.

특히 취급기관들은 같은 종류의 개인투자용국채의 판매를 대행한다는 점에서 취급기관별로 수수료율이 상이한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을 것임.

이처럼 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용국채 판매대행기관 수수료 산출에 있어서 수수료율 등을 과다책정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음.

---

159) 제8조(과업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① 기획재정부는 연간 국채 발행계획, 관련 법령 및 정책의 변경, 국채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투자용국채의 총 발행액 및 판매대행기관별 발행액을 조정하거나 제3조에 의한 위탁업무 범위 외의 추가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발행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계약금액 및 제7조제2항의 총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나, 발행액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추가 업무를 지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국유재산관리기금

가. 개요

국유재산관리기금은 2011년 개정된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존의 유지·보존 위주의 국유재산 관리정책에서 벗어나,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해 국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운용되고 있음.

2026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규모는 2025년 수정 계획(3조 4,824억원) 대비 1,861억원(6.5%) 증가한 3조 6,685억원이며, 수입은 토지매각대 등 국유재산 매각대 1조 7,865억원, 국유재산 대여 등 재산수입 1조 9,419억원, 변상금 등 경상이전수입 543억원, 정부내부수입 1조 818억원, 여유자금회수 5,51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지출은 청·관사 등 공용재산취득사업 등 사업비로 1조 2,961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인 정부내부지출로 14,500억원, 여유자금운용 9,194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6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계획안에는 총 22개의 신규 세부사업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항 목	2025년 계획 (A)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 자체수입	2,042,888	2,034,925	△7,963	△0.4
- 토지매각대 등 국유재산매각대	1,777,878	1,786,537	8,659	0.5
- 국유재산 대여료 등 재산수입	147,922	194,083	46,161	31.2
- 변상금 등 경상이전수입	117,088	54,305	△62,783	△53.6
○ 정부내부수입	978,278	1,081,758	103,480	10.6
- 기금예탁원금회수	860,876	960,000	99,124	11.5
- 기금예탁이자수입	117,402	121,758	4,356	3.7
○ 차입금	-	-	-	-
○ 여유자금회수	460,829	551,774	90,945	19.7
합 계	**3,481,995**	**3,668,457**	**186,462**	**5.4**

자료: 기획재정부

[2026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항 목	2025년 계획 (A)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 사업비	1,082,624	1,296,096	213,472	19.7
- 공용재산 취득사업	982,624	996,096	13,472	1.4
(계속사업)	968,072	964,295	△3,777	△0.4
(신규사업)	14,552	31,801	17,249	118.5
- 비축토지 매입사업	100,000	300,000	200,000	200.0
○ 기금운영비	2,686	2,919	233	8.7
○ 정부내부지출(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1,350,000	1,450,000	100,000	7.4
○ 차입금 이자상환	-	-	-	-
○ 여유자금운용	1,046,685	919,442	△127,243	△12.2
합 계	**3,481,995**	**3,668,457**	**186,462**	**5.4**

자료: 기획재정부

[2026년 신규 세부사업안]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025년	
		요구	조정
관사	관세청 관사시설 리모델링	1,303	1,303
청사	대법원 청주지법 제천지원 신축	370	370
청사	문체부 베트남 코리아센터 건립	9,009	9,009
청사	법무부 대전소년원 리모델링	432	432
청사	법무부 무주 외국인출국지원센터 신축	598	598
교정시설	법무부 서울구치소 수용동 증축	340	340
청사	국립대전현충원 청사	156	156
청사	국립산림재난안전교육훈련센터 신축	933	933
관사	산림청 관사시설 취득	125	125
청사	주뉴욕(총) 통합청사 매입	330	330
청사	주멕시코(대) 통합청사 신축	1,100	1,100
청사	부천통합청사 신축	100	100
관사	영월 청년직원 통합관사 리모델링	660	660
청사	경찰청 경기남부 부천원미경찰서 신축	11	11
청사	경찰청 세검정로 별관동 신축	268	268
청사	경찰청 서울청 제1기동단 신축	94	94
청사	경찰청 경북청 기동대·수사부서 통합청사 신축	293	293
청사	경찰청 울산청 경찰특공대 신축	47	47
청사	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신축	446	446
청사	경찰청 강원 화천경찰서 신축	165	165
청사	경찰청 전남 고흥경찰서 신축	82	82
청사	대법원 전주지법 남원지원 신축	110	110

나. 검토의견

(1) 수납률 제고를 위한 실효적 방안 마련 필요 (총괄, 국고국)

< 현 황 >

미수납액이란 징수 결정되었으나 아직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변상금」, 「건물매각대」, 「토지매각대」는 2023년 및 2024년 매년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음. 2024년 결산 기준 각 목의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토지대여료」는 505억 6,600만원, 「건물대여료」는 76억 2,200만원, 「변상금」은 2,915억 4,400만원, 「건물매각대」는 176억 5,400만원, 「토지매각대」는 7,582억 300만원임.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변상금, 건물매각대. 토지매각대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목명	연도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토지대여료(51-511)	2023	125,503	181,715	131,841(73%)	**49,875**(27%)
	2024	135,610	174,635	124,069(71%)	**50,566**(29%)
	2025	140,700	77,528	77,528	
	2026	137,169			
건물대여료(51-512)	2023	7,387	14,994	7,222(48%)	**7,772**(52%)
	2024	7,062	14,684	7,062(48%)	**7,622**(52%)
	2025	7,222	5,979	5,979	
	2026	6,557			
변상금(57-571)	2023	56,673	322,841	41,331(13%)	**281,510**(87%)
	2024	57,565	326,989	35,445(11%)	**291,544**(89%)
	2025	57,565	18,824	18,824	
	2026	47,279			
건물매각대(71-711)	2023	36,699	25,773	21,245(82%)	**4,528**(18%)
	2024	39,272	65,552	47,898(73%)	**17,654**(27%)
	2025	39,356	33,731	33,731	
	2026	36,947			
토지매각대(72-721)	2023	1,618,200	2,206,500	1,688,662(77%)	**517,838**(23%)
	2024	1,734,634	2,659,451	1,901,248(71%)	**758,203**(29%)
	2025	1,738,522	1,036,252	1,036,252	
	2026	1,749,590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는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변상금, 건물매각대, 토지매각대 미수납액이 불납결손되지 않도록 수납률 제고를 위한 실효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변상금은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제재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행정 처분임을 고려할 때 불납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미수납액이란 징수 결정되었으나 아직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분납 등에 따라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상채권과 납부기한이 도래한 연체채권이 모두 포함되며, 2024년 미수납액에도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상채권과 납부기한이 도래한 연체채권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한편, 각 중앙행정기관의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액 중 면제,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 불납결손 결정[160]을 하고 있음.

2024년 미수납액 중 연체채권 현황을 살펴보면, 토지대여료는 249억 8,300만원, 건물대여료는 54억 7,800만원, 건물매각대는 1억 3,200만원, 토지매각대는 485억 6,100만원이 납부기한을 도래한 상황임.

기획재정부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상채권의 경우 우편, 알림톡 서비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납부를 안내하고 있으며, 연체채권의 경우 회수를 위하여 정기 독촉·재산압류 등을 진행하고 있고 장기 연체채권의 경우 연체관리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 연체채권의 경우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불납결손되어 종국적으로 수납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수납액의 수납률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변상금은 「국유재산법」[161]에 따라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징벌적 성격으로

160)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 ① 수입징수관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채무 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불납결손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납결손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161)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

부과되는 제재처분으로서,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20%를 변상금으로 징수하고 있음. 변상금의 경우 무단점유자에게 징벌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세입항목보다 미수납액 비율이 큰 경향이 있으며, 2023년 및 2024년 결산 기준 변상금 미수납액 비율은 각각 87%, 89%에 이르고 있음.

특히, 변상금 미수납의 고착화는 변상금이 무단점유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징벌의 실효성을 상실시키고 국가 자산에 대한 무단 점유 행위를 방치하는 결과에 이르러 정당한 사용료를 납부하는 국민과의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국유재산 관리 주무 부처로서의 법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행위이므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 징수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집행하여 무단 점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2024년 미수납액에 대한 처리 경과]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징수결정액	2024년 미수납액	2025년 8월 기준 수납액	2025년 8월 기준 미수납액	납부기한 미도래	납부기한 도과
토지대여료(51-511)	174,635	50,566	24,390	26,176	1,192	24,983
건물대여료(51-512)	14,684	7,622	2,043	5,579	101	5,478
변상금(57-571)	326,989	291,544	12,454	279,090		
건물매각대(71-711)	65,552	17,654	16,428	1,226	1,094	132
토지매각대(72-721)	2,659,451	758,203	289,718	468,485	419,924	48,561

주: 기획재정부는 변상금의 경우 연체에 대하여 독촉·압류 등「국세징수법」에 정한 절차로만 징수가 가능하며, 장기소액 연체 등에 대한 결손절차가 없어 회수가능성 없는 장기 연체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분 등 절차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자료: 기획재정부

기금의 수입은 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및 기금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초 재원으로, 기금의 미수납액이 누적되는 경우 기금의 재정 운영에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하고, 국유재산 취득·개발[162] 등 사업 집행에 필요한 유동성이 부족할 우려가 있음.

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밝혀져 국가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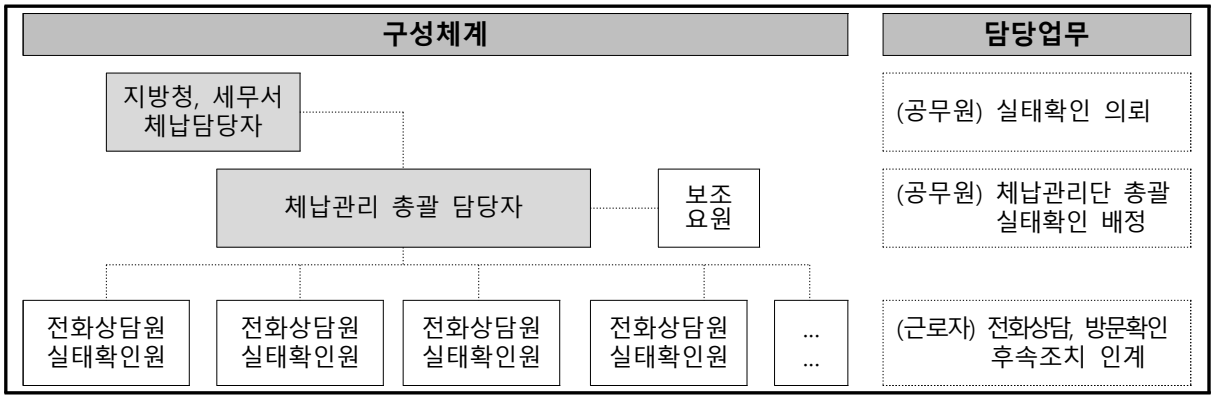
② 제1항의 변상금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經緯), 무단점유지의 용도 및 해당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사용료와 제47조에 따른 대부료의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162) **「국유재산법」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①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에서 추진하는 「국세 체납관리단」[163] 과 같이 미납자의 생활실태 및 납부능력 등을 직접 확인하고, 세무서장이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 주소 또는 거소 확인 등 사실행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국세징수법」 규정[164]을 참고하여 변상금을 비롯한 주요 세입항목에 대한 사실행위 위탁 근거를 「국유재산법」에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하여, 미수납액의 불납결손 처리를 방지하고 수납률을 제고하여 국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국세 체납관리단」 구성체계와 담당업무]



자료: 국세청 보도자료, 모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국세 체납관리단」본격 추진, 2025.9.4.(목)

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국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3. 제26조의4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제26조의6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위탁료 등의 지출
5. 제42조제1항에 따른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6. 제57조에 따른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7. 「국가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163)국세청 보도자료, 모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국세 체납관리단」본격 추진, 2025.9.4.(목) 참조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할「국세 체납관리단」은 국세청이 일반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며, 이들이 모든 체납자를 가가호호 방문할 예정으로, 총 3년간('26년~'28년) 모든 체납자('24년말 기준 133만명)를 1회 이상 방문하여 체납자의 경제상황을 확인하고 유형 분류를 실시할 계획

164)**「국세징수법」 제11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2. 체납자의 재산 조사
3.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 방법, 위탁 대상 체납액의 범위, 위탁 수수료 및 위탁의 해지 등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세목조정을 통한 집행률 제고 및 2026년 계획액 감액 필요 (서울법원 제2청사 신축, 국고국)

< 현 황 >

「서울법원 제2청사 신축」은 노후(1982년 건축)하고 협소한 법원 청사를 신축하여 업무 효율성 증진 및 대국민 사법서비스를 향상하려는 사업임. 2025년도 계획안은 공사비(420-03)가 10억원 편성되었으나, 2026년도 계획안은 기본설계비(420-01) 5억 1,500만원, 실시설계비(420-02) 3억 8,500만원으로 총 9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서울법원 제2청사 신축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세목명)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서울법원 제2청사 신축 (1331-618)	1,000	1,000	900	△100	△10
- 기본설계비(420-01)	-	-	515	515	-
- 실시설계비(420-02)	-	-	385	385	-
- 공사비(420-03)	1,000	1,000	-	△1,000	△100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서울법원 제2청사 신축 사업은 사업 경과를 고려할 때 전액 불용이 예상되므로 세목조정을 통하여 집행률을 제고하는 한편, 세목조정 규모를 고려하여 2026년 계획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서울법원 제2청사 신축 사업은 기존 서울법원종합청사가 협소하고 제3·4 별관의 노후도 심화에 따른 안전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사를 신축 건립하는 사업으로, 당초 2020년에 착수하여 2026년에 종료할 것으로 예정되었음.

그러나, 동 사업은 2021년 환경영향평가에서 불소(F)와 비소(As) 등 토양오염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2023년 5월 서초구청으로부터 오염토양 정화명령[165]을 받고 설계가 중지된 상황임. 이에 따라, 오염토양 정화명령 이행을 위한 위해성평가 용역비가 추가로 반

영되면서 총사업비가 1,477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사업 완료 기간 또한 당초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되었음.

[서울법원 제2청사 신축 경과]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20	1,456		2020	2026	
1차 변경	2021		1,455	2020	2026	기본설계 집행 잔액 감액
2차 변경	2021		1,459	2020	2026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반영
3차 변경	2022		1,462	2020	2026	토양정밀조사 용역비 반영
4차 변경	2022		1,468	2020	2026	지하안전평가 및 아름다운 공공청사 용역비 반영
5차 변경	2025		1,477	2020	2029	위해성평가 용역비 반영, 사업기간 연장(+3년)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 7월 기준, 서울법원 제2청사 신축 사업의 진행 경과를 살펴보더라도 집행률은 0%이고, 2025년 9월 1일에 공고된 위해성평가 용역[166]이 2027년 6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임을 고려할 때 2025년 서울법원 제2청사의 착공은 불가능하며 공사비 집행 또한 어려워 2025년 계획액은 전액 불용될 것으로 보임.

한편, 「국고금 관리법」은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 금액 범위에서 지출원인 행위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167], 계약 상대방이 선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

165)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정화책임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정화책임자 및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거나 정화책임자에 의한 토양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의 정화를 실시할 수 있다.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2. 해당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3. 오염토양의 정화
④ 삭제<2004.12.31.>
⑤ 삭제<2004.12.31.>
⑥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조치명령의 내용 및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6) 서울법원 제2청사 위해성평가 용역 입찰공고(법원행정처 공고 제2025 - 229호)

167) **「국고금 관리법」 제19조(지출의 총괄과 관리)**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

선금을 지급하도록 명시[168]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위해성평가 용역을 위한 금액 배정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국고금 관리법」을 위반하였고, 이는 법령에서 부여한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선금 지급 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음.

[서울법원 제2청사 위해성평가 용역]

○ 용 역 명: 서울법원 제2청사 위해성평가 용역 ○ 위　　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1-1 ○ 부지면적: 42,144.60㎡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7. 06. 30.까지 위해성평가 계획서(환경부 제출)는 2025. 12. 31.까지 수행할 것 ○ 용역예정금액: 964,000,000원, 부가세 포함

자료: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5 - 229호

기획재정부 및 법원행정처는 2026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기본설계비를 위해성평가 용역에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국고금 관리법」에서 보장한 청구권 보호를 위하여 2025년 불용이 예상되는 공사비의 세목조정을 선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서울법원 제2청사 신축 사업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집행하였음. 2022년의 경우 광주법원 종합청사 별관의 시설부대비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4,500만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2023년의 경우 ① 공사비 9억 6,700만원을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로 세목변경, ② 설계 중지로 불용이 예상되는 43억 8,300만원을 광주법원 종합청사 등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 2024년의 경우 69억 6,000만원을 수원법원 위탁개발 임차료로 기금운용계획 변경하여 집행률을 제고하였음.

관서의 장은 그 소관 지출원인행위(국고금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168)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선급과 개산급)**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공사·제조·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槪算)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선급) ①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4. (생　략)

15.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16.~18. (생　략)

③ 제1항제15호에 따른 경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 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기획재정부 및 법원행정처는 불용이 예상되는 공사비 10억원을 세목조정하여 ‘서울법원 제2청사 위해성평가 용역’ 비용에 충당함으로써 집행률 제고와 함께 「국고금 관리법」에서 보장한 계약상대자의 선금 지급 청구권을 보호하고, 세목조정 금액만큼 2026년 기금운용계획을 감액하여 국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 대외경제협력기금

가. 개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은 개발도상국의 산업 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 간 경제 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정을 통해 설치되었음.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는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하고 있으며, 기금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있음.

2026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규모는 전년 계획 대비 1.1% 증가한 2조 3,797억원으로 편성되었음.

2026년도 수입 계획안에 따르면 일반회계로부터 1조 3,348억원을 전입할 계획이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는 6,282억원을 예수할 계획임. 대개도국차관에 따른 융자금 원금 회수는 3,093억원, 융자 이자 수입은 736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그 밖에 여유자금 예치금 회수는 291억원, 여유자금 운용수입 등 47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2026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계획 (A)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합 계	**2,352,735**	**2,379,711**	**26,976**	**1.1**
일반회계 전입금	1,317,379	1,334,845	17,466	1.3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633,951	628,163	△5,788	△0.9
융자금 원금 회수	277,615	309,274	31,659	11.4
융자금 이자 수입	62,430	73,633	11,203	17.9
여유자금 회수(정부예금 회수)	47,343	29,100	△18,243	△38.5
여유자금 운용 수입	13,748	4,436	△9,312	△67.7
면허료 및 수수료	269	260	△9	△3.3

자료: 기획재정부

2026년도 지출 계획안에 따르면 대개도국차관 계획액은 1조 6,275억원으로, 아시아차관은 8,235억원, 아프리카차관은 6,230억원, 중동-CIS 차관은 1,634억원, 중남미차관은 176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은 2,731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대개도국차관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401억원을, 경협증진자금(EDPF)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70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밖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원금 및 이자 상환은 3,548억원, 기금 운영비는 281억원,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492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2026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계획 (A)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합 계	**2,352,735**	**2,379,711**	**26,976**	**1.1**
대개도국차관	1,374,735	1,627,534	252,799	18.4
- 아시아차관	870,189	823,517	△46,672	△5.4
- 아프리카차관	380,458	622,965	242,507	63.7
- 중동·CIS차관	85,999	163,411	77,412	90.0
- 중남미차관	38,089	17,641	△20,448	△53.7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775,215	273,066	△502,149	△64.8
대개도국차관 지원	55,952	40,118	△15,834	△28.3
경협증진자금 지원	3,853	6,971	3,118	80.9
공자기금예수 원금 및 이자 상환	87,074	354,758	267,684	307.4
기금 운영비	26,806	28,069	1,263	4.7
여유자금운용	29,100	49,195	20,095	69.1

자료: 기획재정부

나. 검토의견

(1) 여유자금 운용수입 규모 및 예치금 회수 계획의 적정성 검토 필요 (기타재산이자수입·정부예금회수, 개발금융국)

< 현 황 >

「기타재산이자수입」은 기 승인한 차관사업의 집행대기자금인 여유자금의 운용수입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2025년 대비 93억 1,200만원 감소한 44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목명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13,748	13,748	4,436	△9,312	△67.7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예금회수」는 전년도에 통화금융기관 및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했던 여유자금을 회수하여 다음연도 수입에 계상하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2025년 대비 182억 4,300만원 감소한 291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정부예금회수 계획안]

(단위: 백만원, %)

항명 (- 목명)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정부예금회수(85)	47,343	47,343	29,100	△18,243	△38.5%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852)	838	838	562	△276	△32.9%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853)	46,505	46,505	28,538	△17,967	△38.6%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연례적으로 여유자금 관련 수입의 계획과 실적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국가재정의 합리적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최근 3개년 실적을 반영하여 여유자금 운용수입을 증액하고, 증액분만큼 일반회계전입금을 감액하는 한편, 과소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예금회수 계획안 산출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사업비 집행 지연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별 차관사업의 규모 확대를 고려하여 여유자금 운용수입 감액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여유자금 운용수입은 기 승인한 차관의 집행대기자금인 여유자금을 연기금투자풀에 위탁운영하거나 수출입은행이 직접 운용하여 얻는 수입으로 2026년 계획안은 2025년 계획 대비 93억 1,200만원 감소한 44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그런데 최근 여유자금 운용수입의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여유자금 운용수입 계획액 대비 수납액이 초과하여 발생하고 있음.

[연도별 여유자금 운용수입 계획 및 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7월	2026(안)
계획액	1,368	2,564	2,951	3,742	13,748	4,436
수납액	1,621	4,847	11,208	9,190	5,880	-
수납률	118.5	189.0	379.8	245.6	42.8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기획재정부는 여유자금 운용수입은 월별 예상 여유자금 평균잔액과 목표수익률을 고려하여 편성하는데, 2026년의 경우 2025년 대비 융자사업비가 감소하여 월별 여유자금 평균잔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라 목표수익률도 감소(2025년 3.55% → 2026년 2.84%)하여 감액 편성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2026년 계획안의 전체 차관 융자사업비는 감소하였으나, 사업비 집행지연으로 집행대기자금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별 차관의 융자사업비는 2025년 대비 증가하였다

는 점을 고려하여 2026년 계획안 편성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연도별 차관사업 융자사업비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지역별 차관	1,014,460	1,086,061	1,178,620	1,423,118	1,374,735	1,627,534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243,736	247,362	324,356	608,861	775,215	273,066
계	1,258,196	1,333,423	1,502,976	2,031,979	2,149,950	1,900,60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여유자금 운용수입이 과소 계상될 경우 그만큼 일반회계전입금 규모가 불필요하게 확대되어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여유자금 운용수입이 적정하게 편성될 필요가 있겠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최근 3개년 여유자금 운용수입 수납액 등을 고려하여 여유자금 운용수입 계획안을 증액하고, 증액분만큼 일반회계전입금 규모를 감액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정부예금회수 계획안 산출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부예금회수 수입은 기금의 전년도 총 수입액에서 총 지출액을 공제하고 남은 여유자금을 다음연도의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N년도 정부예금회수 계획안은 N-1년도 계획 편성 시 추계한 여유자금 계획액을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편성되고 있음.

이에 따라 2026년도 정부예금회수 계획안은 2024년에 추계한 2025년도 여유자금 계획액이 그대로 반영되어, 2025년도 계획 편성 이후의 사업추진 변동사항 및 2025년 집행현황과 예상실적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는 연례적으로 정부예금회수 수입의 계획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임.

[연도별 정부예금회수 및 여유자금운용 계획액 및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정부예금회수(수입)			여유자금운용(지출)		
	계획액	수납액	수납률	계획액	수납액	수납률
2022	44,891	44,009	98.0	43,040	36,501	84.8
2023	42,881	36,501	85.1	30,081	40,791	135.6
2024	30,081	40,791	135.6	59,112	70,457	119.2
2025*	47,343	70,457	148.8	29,100		
2026(안)	29,100			49,195		

주) 2025년의 경우 2024년 계획액과 동일금액인 59,112백만원이 정부안에 편성되었으나, 국회심의과정에서 감액되었음

자료: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수입의 80% 이상을 일반회계전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에 의존하고 있어 정부예금회수 계획액과 실적의 지나친 괴리는 국가재정의 합리적인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정부예금회수 계획안 편성 시 전년도에 추계한 여유자금 운용계획액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의 사업추진 변동사항과 집행현황을 반영하여 재추계하도록 산출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겠음.

(2) 사업추진 지연 차관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 (대개도국차관, 개발금융국)

< 현 황 >

「대개도국차관」 단위사업은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제공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개도국과의 호혜적 경제협력을 달성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사업으로, 개별 국가에 직접 차관을 제공하는 「아시아차관」, 「아프리카차관」, 「중동-CIS차관」, 「중남미차관」 4개 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2026년도 계획안은 2025년 대비 2,527억 9,900만원이 증가한 1조 6,275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대개도국차관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명 (- 세부사업명)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대개도국차관(3331)	1,374,735	1,593,449	1,627,534	252,799	18.4%
- 아시아차관(융자)(ODA) (3331-301)	870,189	870,189	823,517	△46,672	△5.4%
- 아프리카차관(융자)(ODA) (3331-302)	380,458	607,172	622,965	242,507	63.7%
- 중동-CIS차관(융자)(ODA) (3331-303)	85,999	85,999	163,411	77,412	90.0%
- 중남미차관(융자)(ODA) (3331-304)	38,089	30,089	17,641	△20,448	△53.7%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대개도국차관사업은 연례적으로 당초 계획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고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으로의 자체변경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집행이 부진한 내역사업의 경우 수원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 점검을 철저히 하여 계획액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으로의 불요불급한 자체변경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대개도국차관 사업은 일반적으로 ① 수원국의 개발수요 파악을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 간 협의를 거쳐 후보사업을 확정한 후, ② 기술적·경제적·정책적 측면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③ 수원국의 차관신청을 바탕으로 사업심사를 하여, ④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사업을 승인하고, ⑤ 정부간 시행약정 등의 협정을 체결하고 차관계약을 체결한 뒤, ⑥ 차관계약의 내용에 따라 컨설턴트와 본구매 업체를 선정하고, ⑦ 사업실시 후 자금을 집행하는 체계로 진행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진행절차]

단 계	진 행 절 차
사업 발굴	○ 정상회담, 고위급회의 또는 EDCF 사무소 등을 통해 수원국의 개발수요 파악 ○ 정부 간 정책협의를 통해 후보사업(Rolling Plan) 등 확정
타당성조사(F/S)	○ 수원국 자체적 타당성조사 또는 수원국 요청시 수은 발주로 기술적,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조사
사업 심사 (현지심사 포함)	○ 수원국의 차관신청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입은행장에게 사업에 대한 심사 요청 ○ 수은은 사업범위, 사업비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재부장관에게 제출
사업승인	○ 기재부장관은 외교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조건 등 지원방침을 결정
정부간협정 체결	○ 정부간 시행약정(Arrangement; A/R) 체결 단, 기본약정(Framework Arrangement; F/A) 체결시, AR 생략
L/A 교섭 및 체결	○ 정부간 협정(기본약정 포함)에 따라 수출입은행장은 수원국 정부와 차관계약 내용에 대해 교섭하고 차관계약(Loan Agreement: L/A) 체결
컨설턴트 고용	○ 수원국의 사업실시기관은 차관계약의 내용에 따라 컨설턴트를 선정하고 고용계약 체결
본구매	○ 사업실시기관은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시공사 선정 후 구매계약 체결
사업실시 및 자금지출	○ 공정진행 단계에 따라 컨설턴트 및 본구매 계약자 앞으로 대금 지급

단 계	진 행 절 차
사후관리	○ 완공점검(사업완공보고서 접수시점)시에는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수행되었는지를 점검 ○ 사후평가(완공점검 후 2년) 시에는 사업의 준비단계부터 사업시행에 따른 사회 · 경제적 파급효과, 수원국 국민 복리증진 및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 종합적 평가

대개도국차관 사업은 사업추진이 결정된 이후에도 자금이 집행되기까지 정부간 약정 및 차관계약 체결, 컨설턴트 고용 및 본구매(시공사) 계약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수원국의 여건 변동으로 인해 자금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함.

이로 인해 당초 기금운용계획액 대비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고 집행이 용이한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사업으로의 계획액 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대개도국차관 사업의 집행률은 당초 계획 대비 낮게 나타나고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의 집행률은 당초 계획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연례적인 자체변경은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EDCF 차관사업 집행률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2022				
	계획액		집행액	집행률		계획액		집행액	집행률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대개도국차관	1,014,460	726,714	697,968	68.8	96.0	1,086,061	830,688	819,590	75.5	98.7
민간·국제기구 협력차관	243,736	531,482	528,690	216.9	99.5	247,362	399,868	398,014	160.9	99.5

구분	2023					2024				
	계획액		집행액	집행률		계획액		집행액	집행률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대개도국차관	1,178,620	759,851	668,419	56.7	88.0	1,423,118	1,303,542	1,167,878	82.1	89.6
민간·국제기구 협력차관	324,356	743,125	727,652	224.3	97.9	608,861	728,437	680,666	111.8	93.4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연도별 대개도국차관 지역별 집행률 현황]

(단위: %)

연도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CIS		중남미	
	당초대비	수정대비	당초대비	수정대비	당초대비	수정대비	당초대비	수정대비
2020	89.5	97.3	32.4	74.7	66.6	90.7	48.9	91.1
2021	66.5	96.2	91.4	97.1	20.7	88.7	32.2	83.9
2022	72.6	100.0	95.3	99.0	26.7	99.6	62.0	79.0
2023	64.8	91.3	61.9	80.4	7.3	88.0	36.4	95.3
2024	74.3	88.0	97.2	97.2	95.3	80.2	54.4	67.7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한편, 이와 같은 집행률 부진에도 대개도국차관 사업의 2026년 계획안은 2025년 대비 2,527억 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특히 각 지역별 차관 내역사업에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 10월 기준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6년 계획안에 편성된 대개도국차관 사업 130개 내역사업[169] 중 2024년 결산 기준 집행률이 0%였던 사업은 총 55개 사업인데, 이 중 32개 사업은 2025년에도 미집행이 예상되어 집행부진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170]

[2026년 계획안 편성 내역사업 중 2024년 및 2025년 집행부진 사업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2026년 내역사업 수	집행부진 사업 수	2026년 계획안	집행부진 사업 계획안
아시아차관	78	20	823,517	40,397
아프리카차관	33	6	622,965	34,515
중동-CIS차관	13	4	163,411	10,029
중남미차관	6	2	17,641	367
계	**130**	**32**	**1,627,534**	**85,308**

주) 2026년 내역사업수는 2025년 계획 및 2026년 계획안에 신규편성된 17개 내역사업은 제외한 숫자임.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169) 2025년 계획 및 2026년 계획안에 신규편성된 17개 내역사업은 제외한 숫자임.
170)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32개 사업(2026년 예산안 853억원 반영) 모두 2026년 상반기부터 컨설턴트·본구매 계약, 선수금 집행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함.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집행이 부진했던 내역사업의 경우 수원국과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계획액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대개도국차관사업의 불가피한 집행지연으로 예기치 못한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집행률 제고를 위한 민간·국제기구차관사업으로의 불요불급한 자체변경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참고: 지역별 차관 국가별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국가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	증감
아시아차관	라오스	73,876	35,752	△38,124
	몽골	33,357	107,487	74,130
	미얀마	6,554	13,691	7,137
	방글라데시	12,612	27,073	14,461
	베트남	119,348	72,651	△46,697
	스리랑카	25,542	3,677	△21,865
	인도	3,404	-	△3,404
	인도네시아	93,521	12,485	△81,036
	캄보디아	280,241	151,583	△128,658
	파키스탄	102,977	62,894	△40,083
	파푸아뉴기니	56	-	△56
	필리핀	109,756	332,743	222,987
아프리카차관	가나	18,795	6,996	△11,799
	르완다	38,777	16,492	△22,285
	모로코	237,398	270,409	33,011
	모잠비크	8,931	8,399	△532
	세네갈	6,992	19,625	12,633
	앙골라	10,613	41,156	30,543
	에티오피아	37,714	79,620	41,906
	우간다	35	892	857
	이집트	183,564	67,600	△115,964
	케냐	9,576	39,933	30,357
	코트디부아르	3,011	6,511	3,500
	콩고민주공화국	625	-	△625
	탄자니아	45,866	54,526	8,660
	튀니지	5,155	4,103	△1,052
중남미차관	니카라과	6,260	535	△5,725
	볼리비아	8,221	4,658	△3,563
	에콰도르	14,579	9,839	△4,740
	엘살바도르	2,959	-	△2,959
	온두라스	401	118	△283
중동-CIS차관	요르단	451	839	388
	우즈베키스탄	71,740	159,864	88,124
	우크라이나	6,778	-	△6,778
	키르기스스탄	174	938	764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3) 사후관리지원 내역사업 및 비대면 온라인서비스 유지보수비 감액 필요 (사업진행컨설팅(ODA), 개발금융국)

< 현 황 >

「사업진행컨설팅(ODA)」은 차관사업의 준비, 실시 및 사후관리 등 사업진행 단계별 지원을 통해 유망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차관지원의 경쟁력 및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사업임. 2026년도 계획안은 2025년 대비 144억 9,200만원 감소한 312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사업진행컨설팅(ODA)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사업진행컨설팅(ODA) (3376-302)	45,746	45,746	31,254	△14,492	△31.7
- 사업준비지원	34,160	34,160	19,436	△14,724	△42.5
- 사업실시지원	3,969	3,969	4,196	227	5.7
- 사후관리지원	**2,347**	**2,347**	**3,522**	**1,175**	**50.1**
-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470**	**470**	**100**	**△370**	**△78.7**
- 사업관리컨설턴트	4,800	4,800	4,000	△800	△16.7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사후관리지원 내역사업 계획안 중 상반기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의 계획액을 일부 감액하고, 2025년 12월 구축 완료 예정인 개발정보시스템의 무상하자보수 기간 등을 감안하여 유지보수비를 일부 감액할 필요가 있음.

첫째, 사후관리지원 내역사업 중 수원국과 사후지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확정 사업의 경우 상반기 계약 발주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2026년 계획액은 선급금만 반영하여 일부 감액할 필요가 있음.

사후관리지원 사업은 대개도국차관 지원사업의 완공 이후 유지, 보수, 관리 등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을 지원하여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완공 후 7년 이하 사업을 대상으로 시설물, 기자재 등의 개보수 및 교체 등을 지원하고 있음.

동 내역사업의 2026년 계획안은 2025년 계획 대비 11억 7,500만원(50%) 증액된 35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사후관리지원 예상소요를 2025년 2건에서 2026년 3건으로 확대 편성한 것임.

[2026년 계획안 사후관리지원 내역사업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사후관리 대상사업	2026년 계획안	진행상황
볼리비아 바네가스 교량건설사업 (2018년 2월 완공)	1,174	· '23년 5월 수원국 사후지원 신청 · '25년 4월 MOU 체결 · '25년 12월 계약추진 예정
몽골 국립의료원 건립사업 (2021년 8월 완공)	1,174	· '24년 10월 수원국 사후지원 신청 · '25년 10월 MOU 체결 · '26년 2월 계약추진 예정
미정	1,174	-
계	3,522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사후관리지원 사업은 ① 사후지원 수요조사 실시, ② 후보사업 선정, ③ 수원국 정부로부터 사후지원 신청서 접수, ④ 사후지원 심사 및 수원국 정부와 합의서 작성 ⑤ 기

획재정부 사업승인, ⑥ 수원국의 공급자 선정 및 사업 실시, ⑦ 수원국의 요청에 따라 자금 집행의 절차를 거치는데, ODA 사업 특성상 수원국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사후관리지원 사업 집행절차]

후보사업 선정	심사·승인	사업실시
◦ 정기 수요조사 : 매년 2회 (2월/8월) ◦ 수요조사결과 취합 및 후보사업 선정	◦ 사후관리지원 신청서 접수 ◦ 수원국 정부와 지원내용 협의 ◦ 기획재정부 사업승인	◦ 수원국의 공급자 선정 ◦ 사업실시 및 자금집행 ◦ 사후지원 완료확인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실제로 2026년 계획안에 편성된 볼리비아와 몽골의 사후관리지원 대상사업의 경우 2025년 계획에도 편성되었으나,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2025년에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2026년 계획안에 재편성된 것임.

볼리비아 바네가스 교량건설사업의 경우 2023년 5월 수원국의 사후관리지원 신청서가 접수되어 2년 후인 2025년 4월 사후관리지원 합의서가 체결되었으며, 몽골 국립의료원 건설사업의 경우 2024년 10월에 사후관리지원 신청서가 접수되어 1년이 경과한 2025년 10월 사후관리지원 합의서가 체결되었음.

이와 같이 사후관리지원 사업은 수원국의 사후관리지원 신청 이후에도 사후관리지원 합의서 작성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이후에도 사후관리지원 용역업체와의 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자금이 집행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이를 고려하면, 2026년 계획안에 편성된 사업 중 수원국과의 사후관리지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확정 사업 1건의 경우 2026년 상반기에 집행될 가능성이 저조해 보임.

따라서 사업지원컨설팅(ODA) 세부사업 내 사업준비지원 내역사업 등 다른 내역사업의 경우 하반기 발주 사업의 경우 선급금 40%만 계획안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사후관리지원 내역사업 중 미확정 사업 1건의 경우에는 2026년 계획안 11억 7,400만원 중 선급금 40%만 반영하고 감액할 필요가 있음.

둘째,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내역사업은 2025년 12월 구축 완료 예정인 개발사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무상하자보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감액할 필요가 있음.

동 내역사업은 기존 대외경제협력기금 비대면 업무시스템을 확대 개편하여 기금사업의 사업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구축 완료 예정인 개발사업정보시스템(DFIS)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것으로, 2026년 계획안에서는 동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비 1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그러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응용소프트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등에 대해 개발 완료 후 1년간 무상 하자보수 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스템 운영비를 제외한 유지보수 소요는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025년 구축한 기능에 대한 오류 수정은 무상으로 하자보수가 지원되나, 2026년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능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유상으로 기능개선이 필요하며, 기금운용위탁기관인 수출입은행이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내부시스템 개편사항과 2026년 구축 예정인 AI모델을 개발사업정보시스템에 도입하는 경우 유상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대폭적인 기능변경 및 사용방법 개선 등 통상적인 하자보수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유지관리를 지양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스템 도입 1년차에 대규모 기능개선 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과 수출입은행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I모델 구축의 경우 2026년 하반기 추진예정으로 개발사업정보시스템에의 도입여부 및 도입범위 등이 불확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2026년 계획안을 일부 감액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복권기금

가. 개요

복권기금은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기 위하여「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에 따라 설치됨(2004. 4. 시행).

2026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전년 대비 8.1% 증가한 9조 5,863억원이며, 이 중 복권기금 지원사업비로 3조 3,987억원이 편성됨.

복권수익금의 35%는 법정배분사업으로서 과학기술진흥기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8개 기금·기관과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포함)에 복권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이 정하고 있는 비율대로 배분하고 있으며, 2026년도 계획안에는 1조 1,430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복권수익금의 65% 및 기타수입 등은 복권법 제23조제3항에 명시된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국가유공자 복지사업, 소외계층 복지사업, 문화예술 진흥사업 등 공익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며 2026년도에는 2조 2,557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2026년도 복권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억원, %)

항 목	2025년 계획 (A)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 복권판매수입	76,879	80,958	4,079	5.3
○ 여유자금 회수	999	1,031	33	3.3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원금 회수	700	1,582	882	126.0
○ 연금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회수	6,288	6,852	565	9.0
○ 미지급 당첨금	545	548	3	0.6
○ 기타 이자, 불용액 등	3,275	4,892	1,617	49.4
합 계	**88,685**	**95,863**	**7,178**	**8.1**

자료: 기획재정부

[2026년도 복권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억원, %)

항 목	2025년 계획 (A)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 복권판매사업비 (당첨금, 판매수수료, 위탁수수료)	45,558	48,063	2,505	5.5
○ 부담금 등	118	122	4	3.2
○ 복권기금지원 사업비	32,251	33,987	1,736	5.4
- 법정배분(과학기술진흥기금, 보훈공단 등)	11,051	11,430	378	3.4
- 공익사업(서민주거안정, 소외계층 등)	21,199	22,557	1,358	6.4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1,582	3,000	1,418	89.6
○ 여유자금 운용	1,554	2,160	606	39.0
○ 연금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운용	6,852	7,600	748	10.9
○ 연금복권당첨금 지급분 교부	770	932	162	21.0
합 계	**88,685**	**95,863**	**7,178**	**8.1**

나. 검토의견

(1)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 검토 필요(총괄, 복권위원회)

< 현 황 >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35%는 10개 기금·기관(이하 “법정배분기관”이라 함)에 의무적으로 배분되고 있으며, 배분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171]

법정배분사업에 대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379억원이 증액된 1조 1,430억원이 편성됨.[172]

「복권법」은 복권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 산림법 등에 근거하여 10개의 기관으로 분산된 복권발행기관을 국무총리 소속[173]하에 설치한 복권위원회로 일원화하

---

17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4. 삭제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7. 지방자치단체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100분의 12.583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100분의 10.371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100분의 5.310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00분의 6.356
5.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100분의 14.286
6.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17.267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100분의 17.267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0분의 4.286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00분의 5.846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00분의 6.428

172) 복권수익금(복권판매수입(8조 958억원) - 복권판매사업비(4조 8,063억원) - 사행산업부담금(116억원) = 3조 2,779억원)의 35%인 1조 1,473억원에 2024년도 법정배분금 정산액(복권법 시행령 제17조제7호에 따른 2024년도 예산과 결산 차액의 정산) 43억원을 감한 금액임

173) 현재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임.

고, 복권기금을 신설하여 이를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되었음.

「복권법」 제정 당시 복권기금의 수익금 중 30%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에 따라 기존 10개 발행기관의 기존 용도에 배분하도록 법정배분제도를 규정하였음. 이후 2009년 「문화재보호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에 문화재보호기금[174]이 추가되면서 이를 고려하여 법정배분비율을 복권수입금의 35%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2016년 복권기금의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법정배분대상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제외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음.[175]

[2026년도 법정배분사업 기금·기관 및 배분비율]

(단위: %)

구분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증진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	국가유산보호기금	지방자치단체	제주도특별회계	사회복지모금회	산림환경증진자금	보훈복지의료공단
법정배분비율	12.583	10.371	5.310	6.356	14.286	17.267	17.267	4.286	5.846	6.428
실제 배분비율 (가감 후)	10.066	8.297	5.307	7.288	14.929	18.034	17.265	4.145	7.015	7.654

자료 : 기획재정부

174) 현행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175) 다만, '주택도시기금'이 법정배분기관에서 제외되었음에도(11개 기관 → 10개 기관), 배분비율은 동일하게 35%로 유지되는 중임.

< 검토의견 >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는 경직된 배분구조로 인해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법정배분제도의 경직성 완화를 위한 제도 개편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법정배분제도는 「복권법」 제정에 따라 기존 복권발행기관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법정배분기관은 사업을 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그러나 「복권법」이 제정된 2004년 이후 2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법정배분율이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복권법」 제정 당시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복권수익금 지원 없이 자체 사업 운용이 가능한 기금·기관에도 복권수익금이 배분되거나,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 사업 수요가 있음에도 기관별 배분비율을 초과한 지원이 이뤄질 수 없음에 따라 제한된 규모로 지원된 경우가 발생하는 등 법정배분기관의 재정 상황 및 사업 필요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복권수익금이 정률 배분되면서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법정배분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011년 「복권법」 개정을 통해 법정배분기관의 자금 소요 및 「복권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법정배분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배분액을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176]

17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복권기금의 운용·관리 및 평가)** ③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제23조제2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된 사업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이하 "복권기금사업"이라 한다)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제27조에 따른 복권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가감조정에 따른 2026년 복권기금 법정배분 계획액]

(단위: 억원)

평가순위	법정배분기관	25년 최종 배분액	가감조정					24년 결산 차액 (E)	최종 배분 계획액 (F=A+B+C+D+E)	증감 (F-A)	
			기초 법정 배분 (A)	1단계 (B)	2단계 (C)	3단계 (D)	가감율 (%)				(%)
	합 계	11,051	11,473	△8	△366	374	-	△43	11,430		
1	산림환경증진자금	775	671	134	-	-	20.0%	△3	802	131	19.6
2	보훈복지의료공단	801	737	111	-	30	19.1%	△3	875	138	18.7
3	중소벤처진흥기금	826	729	73	-	34	14.7%	△3	833	104	14.2
4	국가유산보호기금	1,448	1,639	74	-	-	4.5%	△6	1,706	67	4.1
5	지방자치단체	1,906	1,981	-	-	88	4.4%	△7	2,062	81	4.1
6	과학기술진흥기금	1,374	1,444	-	△289	-	△20.0%	△5	1,150	△294	△20.4
7	제주도특별회계	1,908	1,981	△79	-	79	0.0%	△7	1,973	△8	△0.4
8	근로복지증진기금	617	609	△61	-	61	△0.1%	△3	606	△3	△0.5
9	국민체육진흥기금	920	1,190	△161	△77	-	△20.0%	△4	948	△242	△20.3
10	사회복지모금회	474	492	△98	-	82	△3.3%	△2	474	△18	△3.6

자료 : 기획재정부

※ (1단계) 평가결과에 따라 하위 4개기관 감액 후 상위 4개 기관에 배분
(2단계) 기관 자체수입·여유자금 및 사업수요 등 감안 추가 감액
(3단계) 감액재원을 성과 우수사업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에 가산
(결산차액) 복권법 시행령 제17조 제7항에 따라 '24년 배분하여야 할 금액과 기 배분된 금액 차액을 정산

그러나 법정배분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을 하더라도 기본배분액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 배분되어야 하므로 법정배분기관의 자금 소요 및 사업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법정배분된 금액만큼 사업을 편성하지 못하여 법정배분금 중 일부가 여유재원으로 활용되거나 불용되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자체 수입원이 있어 재정적으로 외부에 의존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기관이나 기금에 대해서도 법정배분율에 따라 복권수익금이 지급된다는 문제도 있음.

예를 들어,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경우 2021년부터 복권기금 법정배분사업에 여유자금 운용 사업을 편성하고 있으며, 2026년 계획안에는 법정배분금액 1,150억원 중 266억원을 여유자금 운용으로 편성하였음.

또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경우 2026년에 기금의 자체수입이 2조 4,281억원 수준이며,

공공자금관리기금에 6,000억원을 예탁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1,100억원, 영화발전기금에 600억원을 각각 전출할 계획이며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규모가 9,391억원임에 비추어 볼 때, 자금 여력이 충분하여 재정적으로 외부에 의존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법정배분율에 따라 복권수익금이 지급된다는 문제도 있음.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계정) 2026년도 수입·지출 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자체수입			2,428,078
정부내부수입	기금전입금(복권기금)	94,808	816,800
	공공기금예탁금원금회수	684,327	
	공공기금예탁금이자수입	37,665	
여유자금회수			150,000
합 계			3,394,878
사업비			1,637,186
기금운영비			31,690
정부내부지출 (기금간거래)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공공자금관리기금)**	**600,000**	**786,878**
	기금 간 전출(영화발전기금기금)	**60,000**	
	기금 간 전출(문화예술진흥기금)	**110,000**	
	기금 간 전출(복권기금)	**16,878**	
여유자금운용			939,124
합 계			3,394,878

자료 : 기획재정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와 같이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는 경직된 배분구조로 인해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속적인 지적을 받고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법정배분 대상 기금·기관의 재정상태 및 복권기금 전출사업의 세부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고, 법정배분제도의 경직성 완화를 위한 전면적인 개편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복권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는 「복권법」을 개정하여 현행법 제23조제1항[177]에서 복권수익금의 35%로 고정되어 있는 법정배분비율을 "35% 이내"로 변경하여 가감 조정한 잔

17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여재원을 공익사업 재원으로 전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법정배분제도를 폐지하고 공익사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개편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법정배분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며 「복권법」 개정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임.

(2) 신규로 출시하는 햇살론 특례보증 상품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복권위원회)

< 현 황 >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에게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대출을 공급하여 금융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 대학생·청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학업·취업에 전념하여 향후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842억 6,200만원이 증액된 3,50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결산	2025		2026 계획안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6346-328)	166,969	165,738	165,738	350,000	184,262	111.2

자료: 기획재정부

< 질의사항 >

기획재정부는 기존 햇살론15 및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통합하여 신규로 출시하는 햇살론 특례보증 상품의 공급규모가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하고, 대위변제율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3호[178]에 따라 실시하는 공익사업으로, 2025년까지는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자햇살론' 대출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이었으나, 금융위원회의 정책서민금융 상품체계 개편 방향에 맞추어 2026년부터는 상대적으로 우량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햇살론'은 민간재원(은행 출연금)을 활용토록 하고, 복권기금으로는 기존에 금융위원회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던 '햇

17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살론15' 및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을 통합하여 ① "햇살론 특례보증"을 신설하여 서민금융상품 중에서도 가장 신용·소득이 낮은 차주를 대상으로 운용할 예정이며, 기존에 복권기금의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6346-329)' 세부사업에서 지원하던 ② "햇살론 유스" 사업도 동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에서 지원할 예정임.

[정책서민금융 상품체계 개편방향(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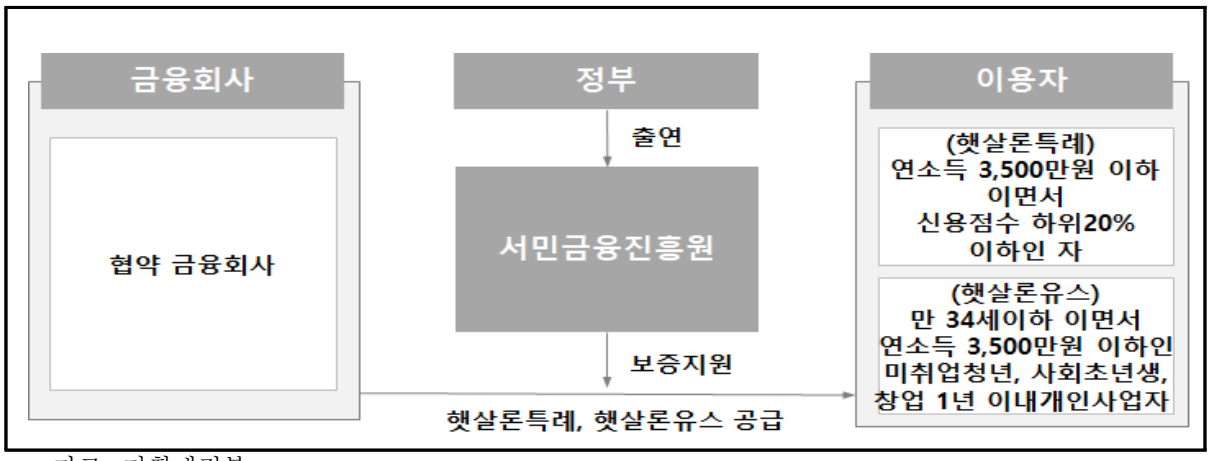
<table>
<tr><td>소득·
신용</td><td colspan="3">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td><td>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10% 이하</td><td>연소득
3.5천만원
이하 청년</td></tr>
<tr><td>재원</td><td>민간</td><td>민간 + 정부</td><td>민간 + 정부</td><td>정부</td><td>정부</td></tr>
<tr><td>업권</td><td>은행</td><td>저축·상호·보험</td><td>은행</td><td>은행·저축</td><td>은행</td></tr>
<tr><td>현행
(~'25)</td><td>햇살론뱅크</td><td>근로자햇살론</td><td>햇살론15</td><td>최저신용자
특례보증</td><td>햇살론유스</td></tr>
<tr><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r><td>개편
('26~)</td><td colspan="2">햇살론 일반보증</td><td colspan="2">① 햇살론 특례보증</td><td>② 햇살론유스</td></tr>
<tr><td>소득·
신용</td><td colspan="2">연소득 3.5천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td><td colspan="2">연소득 3.5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td><td rowspan="3">(현행 유지)</td></tr>
<tr><td>재원</td><td colspan="2">민간</td><td colspan="2">정부</td></tr>
<tr><td>업권</td><td colspan="4">全 업권</td></tr>
</table>

* : **복권기금 재원 투입 사업**

자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햇살론 특례보증 및 햇살론유스 사업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보증을 지원(보증비율 100%)하고, 서민금융회사에서 해당 신용보증을 담보로 대출을 공급하는 체계로 운영함.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사업 집행 절차]



자료: 기획재정부

[햇살론 특례보증 및 햇살론유스 사업개요]

구분	햇살론 특례보증	햇살론유스
개요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가 제도권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부 대출상품 ※ 기존 <햇살론15>,<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통합 상품	대학생·청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학업·취업에 전념하여 향후 제도권금융 안착을 지원하는 보증부 대출상품
출시 연도	2026년(예정)	2020년 1월
지원 대상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인 자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대학생, 미취업청년,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청년사업자(창업 1년 이하)
지원 금액 (대출 한도)	최대 1,000만원	동일인 기준 최대 1,200만원 -일반생활자금: 1회 300만원, 연 600만원 -특정용도자금: 용도(학업·취업준비·의료·주거) 증빙 시 연 900만원
대출 금리	15.9% 이내 (대출금리 6~7%, 보증료율 7.9~9.9%)	연 5.0%(은행금리 4.0%, 보증료율 1%) ※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2.0%(은행금리 3.5%, 보증료율 0.1%, 1.6%p 이차보전 지원)
상환 방식	3년 또는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별도 거치기간 1년)	최대 7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별도 거치기간 최대 8년)
자금 조성	복권기금(3,039억원) 및 금융위원회 일반회계(1,000억원)	복권기금(461억원)

자료 :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체계 개편을 통하여 기존 정책금융상품 이용상의 불편함[179]이 해소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다만, 기획재정부는 햇살론 특례보증 및 햇살론유스 사업이 소외계층 지원이라는 복권기금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하고, 한정된 복권기금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특히, 신규로 출시하는 햇살론 특례보증 상품의 경우 기존 햇살론15 및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2025년 대비 2026년에 투입되는 정부의 재정규모 및 공급(예상)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 2025년에는 햇살론15 및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금융위원회 예산 1,825억원이 투입되어 총 1조 3,300억원의 공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6년의 경우 복권기금 3,039억원 및 금융위원회 예산 1,000억원 등 총 4,039억원이 투입되며 2025년 대비 1조원이 증가한 총 2조 3,3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임.

[햇살론 특례보증 관련 정부재정 및 공급규모 변화]

(단위: 억원)

구분	2025년				2026년(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합계		햇살론 특례보증
일반회계	925	900	1,825	⇨	1,000
복권기금	-	-	-		3,039
정부재정	925	900	**1,825**		**4,039**
공급규모	2,800	10,500	**13,300**		**23,300**

* 햇살론15는 민간재원(금융회사 출연금)을 통한 공급액까지 포함

자료 :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러나, 기존에 운영되던 햇살론15 및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공급규모를 감안했을 때 신설되는 햇살론 특례보증 상품의 목표 금액이 다소 과다하게 산정된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기존 두 상품의 공급금액의 합은 2022년 1조 5,307억원, 2023년 1조 6,010억원, 2024년 1조 2,790억원이며 2025년의 예상공급규모도 1조 3,300억원 수준임.

179) 예를 들어, 기존에는 신용도가 상당히 낮아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국민도 일단 햇살론15 신청이 거절된 후에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했음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미래 성장동력 확충,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 지원을 위한 2026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2025.8.29.)

[햇살론15 및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신청 대비 공급 현황]

(단위: 건,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신청건수	공급건수	공급금액	신청건수	공급건수	공급금액
햇살론15	152,748	145,423	14,305	142,938	138,621	13,086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34,835	34,208	1,002	118,926	112,009	2,924
합계	**187,583**	**179,631**	**15,307**	**261,864**	**250,630**	**16,010**
구 분	**2024년**			**2025년(7월말)**		
	신청건수	공급건수	공급금액	신청건수	공급건수	공급금액
햇살론15	136,349	129,442	10,855	141,158	126,799	10,304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75,665	70,636	1,935	59,479	55,274	1,968
합계	**212,014**	**200,078**	**12,790**	**200,637**	**182,073**	**12,272**

* 햇살론15는 민간재원(금융회사 출연금)을 통한 공급액까지 포함

자료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따라서 기존의 두 서민정책금융 상품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다소 과다하게 필요재원 및 공급목표를 설정한 측면이 있어 보임.[180] 특히, 햇살론 특례보증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전액(100%) 보증해 줄 예정인 만큼, 자칫 무분별한 대출 실행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은 없을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햇살론15의 경우 올해 7월말에 이미 목표 금액을 달성하는 등 서민금융상품의 수요는 충분해서 2026년도 햇살론 특례보증 공급예상금액은 과다하지 않다는 입장임.

특히, 공급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대위변제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커지므로, 대위변제율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햇살론 특례보증 사업 필요액 산정 시 순대위변제율을 28.3%로 가정하고 보증료수입률 및 운영비용을 고려하여 사업손실률을 17.3%로 가정하여 산출하였음.

180) 각 연도별로 신청한 수요자가 전부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1인당 대출금액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계산) '22년 1.6조원, '23년 1.7조원, '24년 1.4조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2026년도 햇살론 특례보증 계획안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햇살론 특례보증 303,900백만원	(1) 햇살론 특례보증 보증재원 **403,900백만원** = 2.33조원(대출공급액) × 17.3%(사업손실률) × 100%(보증비율) * 사업손실률 = 순대위변제율(28.3%) - 보증료수입률(13.6%) + 운영비용(2.5%) (2) 일반회계(금융위)로 조달하는 보증재원 **100,000백만원** ⇨ (1) - (2) = **303,900백만원**

자료 : 기획재정부

그러나 기존의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사업의 대위변제율 및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햇살론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도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있음.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경우 상품 출시 이후 대위변제율이 증가하여 3년만인 2025년 8월말 기준 대위변제율이 26.7%까지 증가하였으며, 햇살론15의 경우에도 2025년 8월말 기준 대위변제율이 25.8%까지 증가하였음.

특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제도의 경우 2022년 출시 당시에는 사업손실율을 20%로 산정했으나,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대위변제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2025년부터는 사업손실율을 33%로 상향한 바 있음.[181]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연도별 공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신규보증액	보증잔액 (A)	대위변제액 (C)	대위변제율 (C/A)
2022년	100,195	96,689	8	0.01
2023년	292,350	291,795	57,085	14.5
2024년	193,535	310,784	99,767	26.8
2025년 8월	220,824	407,124	58,298	26.7

* 대위변제액(순증) = 각 기간 중 대위변제발생액 - 각 기간 중 대위변제회수액
* 대위변제율 = (각 기간말 누적 대위변제발생액 - 각 기간말 누적 대위변제회수액) / 각 기간말 누적 보증공급액

※ 각 기간 중 신규보증액, 각 기간 말 보증잔액
※ 동 상품은 2022년 9월 출시됨
자료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181)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위변제율 추정치(%, 누적) : (1년차) 23.9 (2년차) 41.5 (3년차) 49.1 (4년차) 52.1 (5년차) 53.5

[햇살론15 연도별 공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신규보증액	보증잔액 (A)	대위변제액 (C)	대위변제율 (C/A)
2021년	1,086,231	1,245,235	269,316	14.0
2022년	1,430,451	1,862,815	256,782	15.5
2023년	1,308,586	2,095,948	504,903	21.3
2024년	1,085,481	2,032,359	498,142	25.5
2025년 8월	1,109,222	2,319,268	303,341	25.8

* 대위변제액(순증) = 각 기간 중 대위변제발생액 - 각 기간 중 대위변제회수액
* 대위변제율 = (각 기간말 누적 대위변제발생액 - 각 기간말 누적 대위변제회수액) / 각 기간말 누적 보증공급액

※ 각 기간 중 신규보증액, 각 기간 말 보증잔액

※ 국민행복기금보증 햇살론15(17),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햇살론15 합산

자료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특례보증 상품의 경우에도 지원 목적이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가 제도권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므로 지원대상 차주의 상환능력이 전반적으로 낮아서 대출 실행 이후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품 출시 이후 거치기간(최대 1년)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상환이 시작되면서부터 보증사고 발생에 따른 대위변제 규모가 상당히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대위변제율이 증가하면 가입요건 심사 강화로 인해 금융지원이 절박한 최저신용자가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동일한 보증재원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출규모를 축소시키므로 재정 투입 대비 사업효과를 제약하게 될 우려가 있음.

특히, 본 상품의 지원대상인 최저신용자의 경우 연체 경험 등이 있어 일반적인 대출상품 이용이 어렵거나,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다중채무 상황에 놓여있는 등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큰 만큼, 대위변제 발생 시 구상채권 회수를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이는 사업의 손실로 이어져서 결국 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임.

따라서 정부는 기존 햇살론15 및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사례를 참고하여 최초에는 일정수준의 대출 공급 후 성실상환자에 한하여 추가대출을 제공하거나, 금융교육 이수자 또는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보

증 제공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환 의지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대위변제율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고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기금관리주체로서 복권기금의 사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관리 의무가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복권기금 재정을 투입하여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가 제도권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대위변제율 관리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기적으로는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나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최저신용자에 대한 교육이나 고용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5)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가. 개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의 신용을 보증하여 사업시행자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투자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4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음.[182]

동 기금의 수입은 전년 대비 3.2% 감소한 7,763억원이 계획되었음.

[2026년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계획 (A)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 자체수입	38,542	47,582	9,040	23.5
- 이자수입	13,083	17,501	4,418	33.8
- 대위변제회수	3,011	5,399	2,388	79.3
- 보증료수입	22,448	24,682	2,234	10.0
○ 정부내부수입	10,000	50,000	40,000	400.0
- 출연금	10,000	50,000	40,000	400.0
- 기금예탁원금회수	-	-	-	-
- 기금예탁이자수입	-	-	-	-
○ 여유자금회수	753,362	678,705	△74,657	△9.9
합 계	**801,904**	**776,287**	**△25,617**	**△3.2**

자료: 기획재정부

18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 민간투자사업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제34조제1항 각 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관리·운용한다.
제34조(보증 대상 및 한도 등)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 정부발주사업을 초과시공하는 자 및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는 자의 경영상태, 사업전망, 신용상태 등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 또는 정부발주사업을 초과시공하는 자가 금융회사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2.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는 자가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3.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는 자가 해당 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위하여 대출기관등으로부터 대출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동 기금의 지출 중 사업비는 BTL특별인프라펀드 등 필수 소요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41.7% 감소한 666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운영비는 전년 대비 1.9% 증가한 90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계획 (A)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 사 업 비	114,348	66,612	△47,736	△41.7
- 대위변제	13,583	15,613	2,030	14.9
- 구상권관리비	68	74	6	8.8
- 보증료환급	397	516	119	30.0
- 맞춤형컨설팅	300	409	109	36.3
- 특별인프라펀드	100,000	-	△100,000	-
- BTL특별인프라펀드	-	50,000	50,000	-
○ 기금운영비	8,851	9,017	166	1.9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	-	-	-
○ 여유자금운용	678,705	700,658	21,953	3.2
합 계	**801,904**	**776,287**	**△25,617**	**△3.2**

주1) 대위변제: 산업기반신용보증에 의해 민간투자사업 자금을 조달한 사업시행자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기금이 보증채무를 채권은행에 직접 이행
주2) 구상권관리비: 부실기업으로부터 구상권을 회수하기 위한 채권보전조치 및 소송·경매 등 강제집행 비용
주3) 맞춤형컨설팅: 민자사업 추진단계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주4) 특별인프라펀드: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출자 전용 특별인프라펀드에 출자
주5) BTL특별인프라펀드: BTL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BTL특별인프라펀드에 출자
자료: 기획재정부

나. 검토의견

(1) BTL 특별인프라펀드 사업 실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필요 (BTL 특별인프라펀드, 재정관리국)

< 현 황 >

「BTL 특별인프라펀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BTL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BTL 특별인프라펀드에 출자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은 2026년도 계획안에 50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2026년도 BTL 특별인프라펀드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결산	2025		2026 계획안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BTL 특별인프라펀드 (2032-461)	-	-	-	50,000	50,000	순증

자료: 기획재정부

< 질의사항 >

기획재정부는 BTL 특별 인프라펀드 사업을 신규로 실시하기 위하여 실시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금 재정운용의 리스크 증가 상황을 감안하여 BTL 특별 인프라펀드 사업 신규 실시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획재정부는 BTL 특별 인프라펀드 사업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규 편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민간투자사업이란 기존에 정부부문의 범주에 속했던 도로·항만·철도·환경시설 등 사회기반시설(SOC)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부문이 담당하여 추진하는 것을 의미함.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 제30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용되는 기금으로, 민간투자사업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 사업시행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금전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을 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 확충·운영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동 기금에서는 출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에 신규로 기금에서 1,000억원을 출자하여 '특별 인프라펀드'를 조성하여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에 투자하고 있으며[183], 2026년에는 기금에서 신규로 500억원을 출자하여 'BTL 특별 인프라펀드'를 조성하여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투자할 예정임.

[특별 인프라펀드 비교]

구 분	특별인프라펀드	BTL 특별인프라펀드(안)
신설시기	2025년	2026년
규모	2,000억원(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000억원, 산업은행 1,000억원)	1,000억원(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500억원, 산업은행 500억원)
대상사업	BTO	BTL
투자대상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시행법인이 발행하는 지분증권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시행법인이 발행하는 지분증권 및 대출(예정)
투자한도	사업별 출자지분의 1/3 이하	사업별 출자지분의 95% 이하

자료: 기획재정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기획재정부는 2026년 BTL 특별 인프라펀드 사업의 실시근거로 「민간투자법」제3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법 시행령」제28조제3호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46조를 제시하고 있음.

[BTL 특별 인프라펀드 관련 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 민간투자사업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제34조제1항 **각 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

제3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183) 다만, 2025.9월말 현재까지는 출자금이 집행된 내역은 없으며, 관련 협의가 진행 중임(기획재정부)

2. 제31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 및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조(기금의 운용) 법 제3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이나 정부 또는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 사채,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46조 (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법 제32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기금을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이나 정부 또는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영 제28조제3호의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이란 연기금투자풀에의 예탁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보증을 위한 유동화회사에 대한 출자, **출자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에 대한 출자※**를 의미한다.

※ 2024.10.14. 기본계획 개정 시 신규로 추가된 부분임

그러나 「민간투자법」제30조에서는 기금의 설치목적이 사업시행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금전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의 구체적 용도는 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도 펀드에 출자하여 민간투자사업에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제28조제3호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46조가 BTL 특별 인프라펀드 사업 시행의 법적 근거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 제32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바, 이는 기금의 주된 용도 이외에 여유자금 운용 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을 위한 위임으로 보임. 영 제28조에서는 세부적인 여유자금 운용 방식을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 제28조제3호를 근거로 기획재정부공고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출자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에 대한 출자'라는 기금의 새로운 용도를 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이는 특별 인프라펀드와 유사한 점이 있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사업의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4에서,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4에서 신용보증 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직접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있음.

과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별도의 법적근거 없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대책」(2004.7.)의 후속조치로서 2005년 1월 재정경제부 지침을 근거로 하여 보증연계투자 사업을 시작했으나, 감사원 감사 결과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 2011년 6월 사업을 중단하였으며, 각각 2013년 3월과 2012년 6월에 「신용보증기금법」과 「기술보증기금법」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보증연계투자 사업 실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한 바 있음.

[보증연계투자 관련 규정]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업무)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2의2. 보증연계투자 (이하 생략)

제23조의4(보증연계투자) ① **기금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1. 주식의 인수
2. 전환사채의 인수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4. 교환사채의 인수
5. 「상법」 제287조의8 또는 제556조에 따른 지분의 인수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기술보증
3. 신용보증
3의2. 보증연계투자 (이하 생략)
제28조의4(보증연계투자) ① **기금은 기술보증 관계가 성립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②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보증” 및 그에 수반되는 역할만 하던 기금이 새로운 성격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 근거 및 관련 내용을 기획재정부공고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뿐만 아니라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2025년 특별 인프라펀드 사업에 이어 2026년 BTL 특별 인프라펀드 사업도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 없이 실시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임.

특히, 후술할 바와 같이 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투자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둘째, 기획재정부는 지속적인 운용배수 확대 및 최초의 대위변제 발생 등 기금 재정운용의 리스크 증가 상황을 감안하여 BTL 특별 인프라펀드 사업 신규 실시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민간투자법」 제34조제3항[184]은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신용보증할 수 있는

18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4조(보증 대상 및 한도 등)** ③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신용보증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출연금과 제33조제5항에 따른 적립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총액의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이를 '운용배수'라 함),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9조제1항[185]에 따르면 기본재산(출연금 및 적립금)의 20배까지 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기금은 BIS자기자본비율 최소한도인 8%를 반영하여 기금 내부 적정배수를 기본재산의 12.5배[186]로 정하고 있으나, 최근 기금 운용배수 추이를 보면 2015년에는 12배 수준이었으나 2024년 운용배수가 법정한도(20배)의 76.5%인 15.3배까지 상승하는 등 운용배수가 커지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유사한 기관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운용현황] (단위: 억원, 건, 배)

연도	보증공급액	누계	보증공급 건수	보증잔액 (A)	기본재산 (B)	운용배수 (A/B)
2015	17,833	193,213	22	82,868	6,884	12.0
2016	25,905	219,118	17	93,325	7,183	13.0
2017	20,286	239,404	13	98,536	7,416	13.3
2018	20,832	260,236	16	105,539	7,753	13.6
2019	18,102	278,338	12	111,559	8,025	13.9
2020	20,513	298,849	12	114,001	8,345	13.7
2021	25,642	324,492	13	127,402	8,635	14.8
2022	23,106	347,598	6	128,873	8,789	14.7
2023	26,543	374,141	6	140,689	9,557	14.7
2024	31,399	405,540	16	157,000	10,272	15.3

자료: 기획재정부

[유사기관별 운용배수 현황]

구 분		운용배수 기준		2024년말 운용배수
		법정한도	적정한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20**	**12.5**	**15.3**
유사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40	16.3	11.1
	신용보증기금	20	12.5	8.2
	기술보증기금	20	12.5	8.6

자료: 기획재정부

18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9조(보증의 한도)**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연금과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86) 운용배수 = 보증잔액(위험가중자산) ÷ 기본재산(자기자본) = 12.5배(=100/8)

현재 수준으로 운용배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2030년에는 운용배수가 법정배수(20배)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으로 출연하는 정부출연금을 기존 100억원 수준에서 2026년에는 500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음.

[현재 수준으로 지속 가정 시 2026년 이후 운용배수 전망]

(단위: 억원, 배)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보증잔액	185,501	201,470	217,248	232,802	248,356
기본재산	11,034	11,415	11,796	12,177	12,558
운용배수	**16.8**	**17.6**	**18.4**	**19.1**	**19.8**

※ 산기반신보 출연금 2025년 수준인 100억원 출연 가정시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게다가, 정부가 2024년 10월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업당 금전채무 보증한도액을 2조원으로 확대하여 최근 5년 사이에 보증한도액이 4배로 증가[187][188]하였으며, GTX 등 대형 민자사업 출현에 따른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 수행을 위해 보증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발표하는 등 기금의 보증공급 확대 기조로 인해 향후에도 지속적인 운용배수 확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기금 재정운용의 리스크도 커지게 될 것임.

특히, 동 기금은 1994년 설립 이래 2024년까지는 단 한번도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대위변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보증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설명되어 왔으나, 2025년 5월에 최초로 18.2억원의 대위변제까지 발생한 상황임.

18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9조(보증의 한도)**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금전채무(제2호의 금전채무는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보증의 경우: 2조원
2. 사업시행자가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한 자금을 미리 조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의 경우: 3천억원

188) 최근 5년간 보증한도액: 5천억원('19.5.) → 7천억원('22.11.) → 1조원('23.12.) → 2조원('24.12.)

[2025년 발생한 대위변제 개요]

사업명	전남 친환경 농수축산물 유통센터 건립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BTO)		
시행자	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유통(주)	주무관청	전라남도
운영기간	'12. 7월 ~ '23. 12월 [기존 '30. 7월]	채권은행	광주은행
보증기간	'11. 10월 ~ '28. 7월	대위변제금액	18.2억원
주요경과	○ '11. 6월 : 산업기반신용보증서(91억원) 승인·발급, 채권은행 대출 실행 및 관리운영권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 '24. 7월 : 채권은행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신용보증 부실통지 * 채권은행 동의 없이 주무관청과 시행자 합의로 실시협약이 단축 해지되었고, 해지에 따라 해당 물건에 대한 관리운영권 종료로 대출원리금 일부 연체 ○ '25. 1월 : 채권은행 보증채무 이행 청구 ○ **'25. 5. 20. : 보증채무 이행(대위변제금액 18.2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이와 같이 운용배수가 매년 상승하고 있고, 기금 조성 이후 최초로 대위변제 사례가 발생하는 등 기금의 재무위험 요인 확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미 2025년에 1,000억원을 출자하여 특별인프라펀드를 조성하여 활용가능한 재원이 축소되었으며, 기본재산 부족 우려로 정부출연금을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액 요청한 상황에서,

비록 기금 기본재산의 5% 수준이지만 5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하여 BTL 특별 인프라펀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오늘날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의 건설과 운영에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투자제도의 활성화 및 이를 위한 BTL 특별 인프라펀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금전채무를 보증한다는 기금본연의 업무수행 및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신중한 검토를 거쳐 신규 사업의 실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후에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운용배수 확대 및 최초의 대위변제 발생 등 기금 재정운용의 리스크 증가 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외국환평형기금

가. 개요

외국환평형기금은 환율의 급등락 조정 및 외화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한 외환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되었음.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해 환율 상승(원화 절하)시에는 외화를 매도해 원화를 매입하고, 환율 하락(원화 절상)시에는 원화를 매도해 외화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응하고 있음. 외국환평형기금은 국고채 발행으로 조달된 원화를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하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원화와 외화를 조달하는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함.

2026년도 외국환평형기금 운용계획안 규모는 전년도 계획 대비 5조 1,547억원 감소한 135조 1,347억원으로, 주로 국공채 상환액 4조 4,888억원 감소에 기인함.

2026년도 수입계획안에 따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39조 486억원을 예수할 계획이고, 외평채 발행을 통한 외화 차입은 전년 대비 2억달러 증가한 14억달러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원화 외평채 발행을 통해 13조 6,650억원을 조달할 계획임. 외환건전성부담금은 1,414억원을 징수할 계획이고, 한국투자공사(KIC) 출자에 따른 배당금 수입은 803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그 밖에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여유자금 회수는 79조 874억원, 기타이자수입·재산수입 등은 1조 1,8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2026년도 외국환평형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계획 (A)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합 계	140,289,389	135,134,651	△5,154,738	△3.7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38,066,251	39,048,583	982,332	2.6
차입금(외평채 발행)	21,656,000	15,597,000	△6,059,000	△28.0
부담금(외환건전성부담금)	148,927	141,434	△7,493	△5.0
정부출자수입(KIC배당금)	80,000	80,258	258	0.3
여유자금 회수	78,607,621	79,087,377	479,756	0.6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730,590	1,179,999	△550,591	△31.8

자료: 기획재정부

2026년도 지출계획안에 따르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원금 상환 계획액은 33조 8,224억원, 예수 이자 상환 계획액은 5조 2,261억원이고, 2026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외평채 원금 상환액은 13조 6,650억원, 7억유로 및 330억엔으로 계획하고 있음. 그 밖에 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1조 3,847억원, 한국은행 및 KIC 등에 대한 여유자금 예치는 79조 5,938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기금 운영비는 14억 2,4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2026년도 외국환평형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계획 (A)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합 계	**140,289,389**	**135,134,651**	**△ 5,154,738**	**△3.7**
공자기금예수 원금 상환	32,926,251	33,822,440	896,189	2.7
공자기금예수 이자 상환	5,013,480	5,226,143	212,663	4.2
외평채 원금 상환	19,595,000	15,106,180	△4,488,820	△22.9
차입금 이자 상환	1,026,196	1,384,668	358,472	34.9
여유자금 운용	81,727,105	79,593,796	△2,133,309	△2.6
기금 운영비	1,357	1,424	7	4.9

자료: 기획재정부

나. 검토의견

(1) 자산운용 위탁수수료 지급 예산 이관 및 수수료율의 국회 보고 필요 (기타이자상환, 국제금융국)

< 현 황 >

「기타이자상환」은 외환시장 안정조치 수행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려는 것임. 2026년도 계획안은 2025년 대비 133억 6,600만원 감소한 3,571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기타이자상환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기타이자상환 (3171-797)	370,559	370,559	357,193	△13,366	△3.6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의 여유자금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에 여유자금 일부에 대한 운용을 위탁하고 있으며,[189] 한국투자공사는 외평기금으로부터 위탁자산 운용수수료를 지급받음.

기획재정부는 해당 수수료를 동 사업에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2026년도 예산안에 수수료로 편성된 금액은 3,264억 4,000만원임.

2024년에는 9.95억불(약 1조 3,731억원)을 위탁받아 누적 자산운용 위탁액이 886억불(약 122조 2,680억원)임. 그리고 2024년에 한국투자공사에 지급된 자산운용 위탁수수료는 1.98억불(약 2,732억원)이며, 최근 10년간 지급된 총 자산운용 위탁수수료는 16.82억불(약 2조 3,212억원)임.[190]

189)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여유자금 위탁은 ‘여유자금운용’ 프로그램 내 ‘비통화금융기관예치’ 사업(9703-972)에서 지출됨
190) 2026년도 예산안 편성 기준 환율 ‘1,380원/달러’을 적용하여 원화 금액을 산출함

[최근 10년 간 외평기금의 한국투자공사 자산운용 위탁 및 위탁수수료 현황]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연도별 위탁액	달러화 기준 (억불)	100.0	100.0	50.0	25.7	5.0	40.0	50.0	-	4.5	9.95
누적 위탁액		600.4	700.4	750.4	776.2	781.2	821.2	871.2	871.2	875.6	886
연도별 자산운용 위탁수수료	달러화 기준 (억불)	0.96	1.04	1.29	1.41	1.73	2.09	2.74	1.61	1.97	1.98
	원화 기준 (억원)	1,084	1,201	1,455	1,554	2,015	2,427	3,162	2,072	2,600	2,739

주) 연말 기준 환율
자료: 한국투자공사

< 검토의견 >

첫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시 '기획재정부는 향후 외국환평형기금 자산운용위탁 수수료를 「기금운영비」 사업에 편성하고 지출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제도개선)를 채택한 점을 고려하여, 자산운용 위탁수수료 예산을 「기금운영비」 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은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시 기금운영비 내 경상운영비 계상범위에 대해 "기금운용을 위한 기관 운영경비, 기금 자산운용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기금 사업추진을 위한 부대적 경상지출 경비는 모두 기금운영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여유자금 등 자산운용을 위탁할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경상운영비에 별도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지침과 달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하는 자산운용 위탁수수료를 「기금운영비」 사업에 편성하지 않고 「기타이자상환」 사업에 편성하여 지출하는 것은 지침에 위배되며, 이자를 지급하려는 「기타이자상환」 사업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이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시 '기획재정부는 향후 외국환평형기금 자산운용위탁 수수료를 「기금운영비」 사업에 편성하고 지출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제도개선)를 2025년 8월 21일에 의결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기획재정위원회 예비심사)]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자산운용 위탁수수료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개선	관련 사업명	외국환평형기금 - 기타이자상환(3171-797)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지적 사항	○ 기획재정부는 연례적으로 한국투자공사에 지급하는 외평기금 자산운용 위탁수수료를 「기금운영비」 사업에 편성하여 집행하지 않고 「기타이자상환」 사업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이는 부적절한 기금운용임 - 자산운용 위탁수수료를 「기금운영비」 사업에 편성하도록 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자산운용 위탁수수료 지급은 이자상환이라는 「기타이자상환」 사업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기타이자상환」 사업은 전액 '차입금 이자(510-03)'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자산운용 위탁수수료는 해당 비목을 집행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되지 않음		
	시정 요구 사항	○ 기획재정부는 향후 외국환평형기금 자산운용위탁 수수료를 「기금운영비」 사업에 편성하고 지출할 것		

자료: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도 자산운용위탁수수료를 「기금운영비」 사업에 편성하지 않고 「기타이자상환」 사업에 편성하는 문제점을 반복하였으므로, 「기타이자상환」 사업을 감액하고 자산운용위탁수수료 예산을 「기금운영비」 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시 '기획재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이 지급하는 한국투자공사 자산운용 위탁수수료의 수수료율을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보고하는 등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한 국회 예결산 심사 시 수수료율을 국회에 적정한 방법으로 보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제도개선)를 채택한 점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 수수료율을 보고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외평기금의 자산운용 위탁기관을 공개경쟁 등을 통해 선정하고 있지 않고,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라 한국투자공사가 독점적으로 위탁 받아 운용하고 있

음.[191][192]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한국투자공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수수료율에 대해 위탁기관 간 계약 주요사항 노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한국투자공사는 경쟁 없이 외평기금의 자산을 운용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투자공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국회에서 심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참고로, 외평기금과 한국은행이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한 자산의 누적 수익률은 4.58%로, 운용수익 합계는 939억불(138조 330억원)이고 한국투자공사의 수수료 수익 합계는 28.47억불(3조 3,704억원)임.[193]

[외평기금 및 한국은행의 한국투자공사 위탁자산 운용 수익률 및 수수료 수익]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운용수익률(%)		15.21	13.52	8.94	△14.46	11.44	8.35	4.58
운용수익	억원	233,876	237,184	200,350	△376,388	252,722	236,670	1,380,330
	억불	202	218	169	△297	196	161	939
수수료 수익	억원	2,640	3,218	4,037	2,707	3,235	3,485	33,704
	억불	2.27	2.77	3.50	2.10	2.46	2.53	28.47

주 1) 상기 한국투자공사 위탁 총자산 운용수익률은 한국투자공사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수령하는 운용수수료 비용을 차감한 후의 수익률
2) 상기 운용수익률 '합계'는 2006년 최초 투자 이후 2024년까지의 연환산 수익률
자료: 기획재정부

이를 고려하여 기획재정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시 '기획재정부

---

191) **「한국투자공사법」**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사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사에 대한 경영실적의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31조제1항 각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거래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등록·신고 등을 하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1.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
2.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
3. 삭제
4.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신고수리
③ 외국환평형기금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자산위탁을 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공사는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제63조·제88조 및 제91조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192) 서민금융진흥원과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다른 기관은 여유자금에 대한 위탁운용사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각 운용사는 제안서에 운용보수율을 포함하여 제시함.

193) 기획재정부는 위탁기관별 운용전략 노출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익률을 위탁기관별로 구분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음

는 외국환평형기금이 지급하는 한국투자공사 자산운용 위탁수수료의 수수료율을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보고하는 등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한 국회 예결산 심사 시 수수료율을 국회에 적정한 방법으로 보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제도개선)를 2025년 8월 21일에 의결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기획재정위원회 예비심사)]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외평기금 자산운용 위탁 수수료율에 대한 국회 보고	관련 사업명	외국환평형기금 - 기타이자상환(3171-797)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기획재정부는 한국투자공사에 지급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자산운용 위탁수수료의 수수료율을 비공개하고 있어, 수수료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외평기금 결산에 대한 국회의 내실 있는 심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음 - 2024년 말 기준 외국환평형기금과 한국은행이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한 자산의 누적 수익률은 4.58%로, 운용수익 합계는 939억 달러이고 한국투자공사의 누적 수수료 수익 합계는 28.47억 달러(3조 3,704억원)임 - 한국투자공사는 당기순이익 중 일부를 대부분의 연도에 걸쳐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어 향후 기관 운영비에 활용될 여지가 있으며, 인건비도 전반적인 증가추세에 있어 수수료 수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한국투자공사는 2020년·2021년·2022년·2024년에 당기순이익의 10~30%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였고, 총 인건비도 2020년 355.9억원에서 2024년 475.1억원으로 33.5% 증가했음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이 지급하는 한국투자공사 자산운용 위탁수수료의 수수료율을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보고하는 등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한 국회 예결산 심사 시 수수료율을 국회에 적정한 방법으로 보고할 것		

자료: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특히, 한국투자공사의 임의적립금과 인건비 추이와 보수 수준을 고려하면 현 수수료 수입이 부족하지 않다고 보임.

한국투자공사는 당기순이익 중 일부를 대부분의 연도에 걸쳐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어 임의적립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임의적립금은 향후 기관 운영비에 활용될 여지가 있음. 2020년에서 2024년 사이에는 2023년을 제외한 매년 당기순이익의 10%~30%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임의적립금은 2020년 말 기준 972억 1,200만원에서 2024년 말 기준 1,758억 2,800만원으로 늘어났음.

[한국투자공사 2020년~2024년 당기순이익 처분현황]

(단위: 백만원)

당기순이익 귀속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당기순이익 처분액 합계	96,650	168,023	80,083	94,383	126,476
이익준비금 적립 (비율)	9,665 (10%)	16,802 (10%)	-	-	-
임의적립금 적립 (비율)	28,995 (30%)	33,604 (20%)	16,016 (20%)	-	12,647 (10%)
배당 (비율)	57,990 (60%)	117,616 (70%)	64,067 (80%)	94,383 (100%)	113,828 (90%)

주) 정관 제41조 손익금의 처리 규정에 따라 당기순이익 발생시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자료: 알리오, 한국투자공사 연도별 결산보고서

[한국투자공사 임의적립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20년 말	2021년 말	2022년 말	2023년 말	2024년 말
임의적립금	97,212	126,207	159,812	175,828	175,828

자료: 알리오, 한국투자공사 연도별 결산보고서

한국투자공사 인건비는 2020년 355억 8,500만원에서 2024년 475억 600만원으로 119억 2,100만원 증가(증가율 33.5%)했고, 2025년도 예산은 이보다 많은 606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그리고 임직원 1인당 인건비도 2020년 기준 1억 1,600만원에서 2024년 기준 1억 4,500만원으로 2,900만원 증가(증가율 25%)했음.

[한국투자공사 2020년~2025년 인건비 현황]

(단위: 백만원, 명)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인건비(A)	35,585	35,664	27,067	51,356	47,506	60,615 (예산 기준)
임직원 수(B)	306	306	327	317	328	332 (1분기 기준)
임직원 1인당 인건비(A/B)	116	117	83	162	145	183

자료: 알리오

또한, 2024년 기준 공공기관의 일반정규직 직원 평균보수는 7,170만원이고 기타공공기관의 평균보수는 6,936만원인데, 한국투자공사의 평균보수는 1억 2,374만원으로 이보다 높은 수준임. 또한, 2024년 기준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평균연봉은 1억 5,969만원이고, 이중 기타공공기관의 상임이사 평균연봉은 1억 5,648만원인데, 한국투자공사의 상임이사 연봉은 3억 1,552만원으로 높은 수준임. 상임기관장 연봉도 한국투자공사는 4억 2,995만원으로 공공기관 평균(1억 9,117만원)과 기타공공기관 평균(1억 8,517만원)의 2배 이상에 달하고 있음.

[2024년 한국투자공사와 공공기관 평균 보수 비교]

연도	공공기관 평균	기타 공공기관 평균	한국투자공사
일반정규직 직원 평균보수	7,170만원	6,936만원	1억 2,374만원
상임이사 평균연봉	1억 5,969만원	1억 5,648만원	3억 1,552만원
상임기관장 평균연봉	1억 9,117만원	1억 8,517만원	4억 2,995만원

자료: 알리오

기획재정부는 2026년에 50억불의 자산을 한국투자공사에 신규 위탁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로 인해 외평기금의 2026년 수수료 지급액이 전년대비 늘어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심사 시, 수수료율과 책정된 수수료율의 적정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7) 기후대응기금

가. 개요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22년 1월에 신규로 설치되었음.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의 총 규모는 2025년 계획 대비 10.8% 증가한 2조 9,057억원으로 편성되었음.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은 배출권 유상할당 매각 등 수입과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의 일부(7%,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로서 배출권 유상할당 매각 수입은 2025년 대비 119.4% 증가한 7,651억원, 일반회계 전입은 2025년 대비 13.7% 감소한 1조 1,488억원으로 추산되었음.

이외에도 교통시설특별회계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재원 전입금이 전년과 동일하게 각각 3,000억원과 2,00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복권기금 전입금은 2025년 대비 0.7% 감소한 1,069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은 2025년 대비 68.7% 감소한 1,000억원으로 편성되었음.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억원, %)

항 목	2025년 계획 (A)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 자체수입	3,630	8,320	4,690	129.2
- (배출권매각대금)	3,487	7,651	4,164	119.4
- (기타경상이전수입 등)	143	669	526	367.8
○ 일반회계(교통세)	13,312	11,488	△1,824	△13.7
○ 교특회계 전입금	3,000	3,000	-	좌동
○ 전력기금 전입금	2,000	2,000	-	좌동
○ 복권기금 전입금	1,076	1,069	△7	△0.7
○ 공자기금 예수금	3,199	1,000	△2,199	△68.7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2,180	2,180	순증
합 계	**26,217**	**29,057**	**2,840**	**10.8**

자료: 기획재정부

기후대응기금 사업비는 2025년 계획 대비 10.1%가 증가한 2조 5,581억원이 편성됨. 기금 사업비 중 약 35.9%는 기업 및 산업전반의 저탄소화 지원, 도시 및 국토의 저탄소화 지원, 탄소흡수원 기반 구축 등 온실가스 감축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 계획안에는 9,177억원이 편성되었음. 사업비의 22.9%는 탄소중립 유망기업 및 인력육성, 녹색금융 지원 확대 등 저탄소 생태계 조성에 배정되었으며, 2026년 계획안에는 5,867억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취약한 산업·고용·지역에 공정한 전환 부문에서 기금 사업비의 8.5%, 2026년 계획안 상 2,16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탄소중립 미래기술 개발 등 탄소중립 기반구축 지원에 사업비의 32.7%, 2026년 계획안 상 8,375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억원, %)

항 목	2025년 계획 (A)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 사업비	23,226	25,581	2,355	10.1
- (온실가스 감축)	8,607	9,177	570	6.6
- (저탄소 생태계 조성)	5,684	5,867	183	3.2
- (공정한 전환)	2,078	2,162	84	4.0
- (탄소중립 기반구축)	6,857	8,375	1,518	22.1
○ 기금운영비	27	34	7	25.9
○ 정부내부지출(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 등)	500	483	△17	△3.4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464	2,959	495	20.1
합 계	**26,217**	**29,057**	**2,840**	**10.8**

자료: 기획재정부

나. 검토의견

(1)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금 추계 적정성 검토 및 수입금 확대 노력 필요 (기타재산이자외수입, 미래전략국)

< 현 황 >

「기타재산이자외수입」[194]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제2항제7호[195]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편입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며, 2026년도 계획안은 2025년 대비 4,164억 2,300만원 증가한 7,651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기타재산이자외수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목명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기타재산이자외수입 (54-547)	348,700	348,700	765,123	416,423	119.4

자료: 기획재정부

194) 기타재산이자외수입은 기타 정보의 재산, 금융자산, 무형자산의 소유로 인한 이자외 수입을 말함.

195)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② 기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

< 검토의견 >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의 계획 대비 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므로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의 유상할당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안 추계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배출권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기후대응기금의 자체수입 확대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기후대응기금의 기타재산이자외수입인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금은 기후대응기금의 주요 자체수입원으로, 유상할당 경매 수입금[196]과 시장조성자 예비분 상환 수입금[197]으로 구성되는데, 2026년 계획안은 2025년 3,487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7,651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금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내 용					편성액
3,846만톤	×	100%	×	19,894원	765,123
(예상공급량)		(예상평균낙찰률)		(예상낙찰단가)	

자료: 기획재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자료

196)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수입금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유상할당된 배출권을 경매방식으로 공급하여 얻은 수익으로, 2019년부터 한국거래소에서 매월 1회 경매가 실시되고 있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배출권의 할당)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되,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등 국제적 동향,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등) ③ 3차 계획기간 이후의 무상할당비율은 100분의 90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국제적 동향 및 이전 계획기간의 감축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할당계획에서 정한다. 이 경우 무상할당비율은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에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경매의 방법으로 할당한다.

197) 정부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배출권 시장 조성자를 지정하여 배출권을 대여하고 상환시 배출권 또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상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현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금임.

그런데, 그동안의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수입[198]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당초 계획 대비 크게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수입 계획 및 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 수량	입찰 수량(A)	응찰 수량	낙찰 수량(B)	낙찰률 (B/A)	낙찰 단가	수입금		
							계획	실적	실적/계획
2019	7,950	8,090	12,195	7,950	98.3	29,238	204,600	232,174	113.5
2020	8,250	9,434	9,428	8,171	86.6	30,385	215,818	248,017	114.9
2021	18,243	20,463	12,999	11,177	54.6	26,373	490,325	294,461	60.1
2022	25,800	23,236	14,585	13,642	58.7	23,243	730,584	316,714	43.4
2023	20,600	19,010	8,265	7,888	41.5	10,672	389,340	84,088	21.6
2024	20,150	20,150	21,595	17,948	89.1	10,355	289,694	185,655	64.1

자료: 기획재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이는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배출권 수요 감소 및 배출권 공급과잉으로 배출권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으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과 유상할당 비율이 낮게 설정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임.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199]에 따라 5년 단위

198)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는 2019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매각 대금은 2021년까지는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수입금이었으나, 2022년 기후대응기금이 설치되면서 기후대응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성되고 있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

19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한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하여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이하 "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배출허용총량에 따른 해당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총수량에 관한 사항
3.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관한 사항
4. 부문별·업종별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량에 관한 사항
5.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량에 관한 사항
6.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방식에 관한 사항
7. 제12조제3항 및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에 따른 이행연도별 배출권 유상할당 목표비율에 관한 사항
7의2. 제12조제3항에 따른 배출권의 유상할당 방법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배출권의 유·무상할당 비율을 정하고 있음.

유상할당 비율은 제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 3%에서 제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 10%로 상향되었으나, 이는 실제 전체 할당 배출권 대비 약 4%에 불과하여[200] 매년 95% 이상의 배출권이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었음.

[계획기간별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및 유상할당 규모]

(단위: 만톤)

구분	제1차 계획기간 (2015~2017)	제2차 계획기간 (2018~2020)	제3차 계획기간 (2021~2025)
배출허용총량	168,987	177,713	303,551
유상할당량	-	2,173	11,614
유상할당비율	0%	3%	10%

자료: 기획재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제3차 계획기간 연도별 전체 할당 배출권 대비 유상할당 배출권 비중]

(단위: 천톤)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전체 할당배출권(A)	591,808	592,441	595,894	586,297	573,719
유상할당 배출권(B)	22,419	21,802	22,682	25,007	24,225
비율(B/A)	3.8%	3.7%	3.8%	4.3%	4.2%

자료: 기획재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자료

또한, 제3차 계획기간의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높게 설정되어 배출권 초과공급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음.

---

200) 3차 계획기간에 적용된 유상할당 결정방식은 무상할당 업종을 선정한 후 무상할당 비대상 업종을 대상으로 10%의 유상할당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유상할당비율은 10%보다 낮은 수준이 됨.

무상할당 업종은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0.002 이상인 업종에 속하는 업체가 선정되는데,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업체가 무상할당 대상으로 지정되는 형태임.

비용발생도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 기준기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부가가치 생산액

무역집약도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출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입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매출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입액]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량]

(단위: 백만톤)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배출허용총량	592	592	596	586	574
인증 배출량	591	572	550	550	

자료: 기획재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EU 및 미국의 배출권 가격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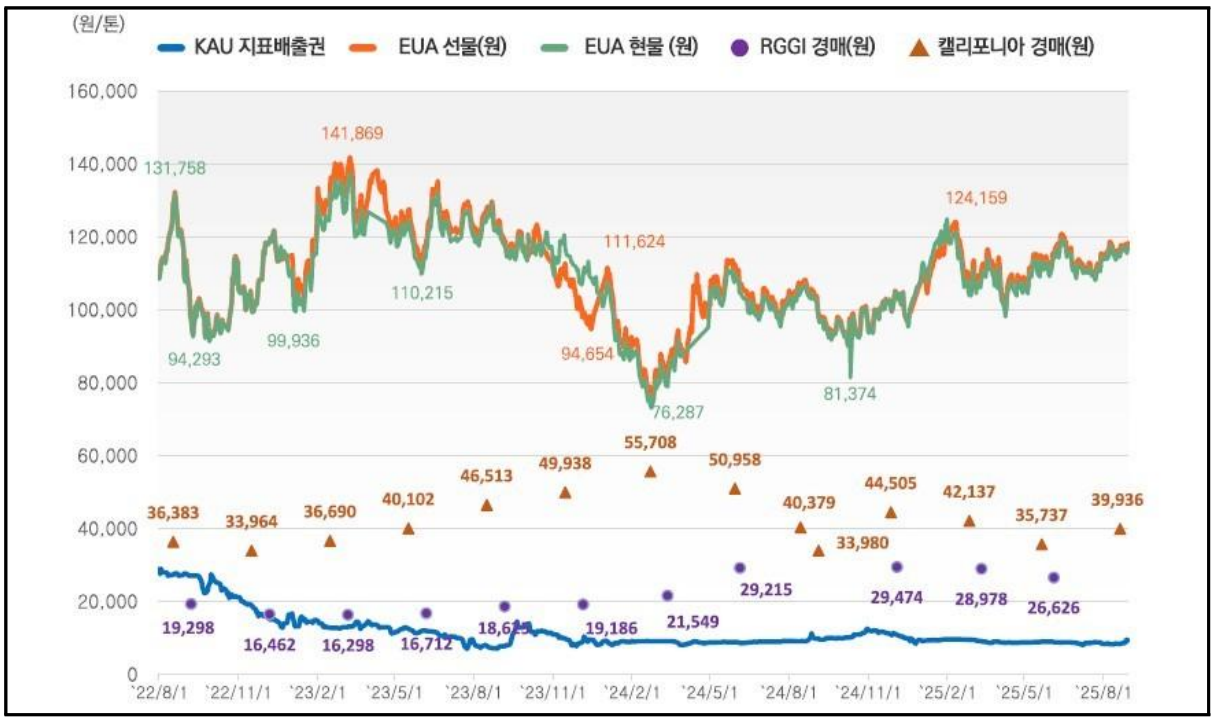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낙찰단가]

(단위: 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9
낙찰단가	26,373	23,243	10,672	10,355	9,135

자료: 기획재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EU 및 미국과의 배출권 가격 비교]



주 1) KAU는 한국, EUA는 유럽, RGGI 및 캘리포니아는 미국의 탄소배출권임
2) 환율은 1,621.61원/EUR, 1,390.1원/USD 기준임
자료: 한국환경공단, 「ETS INSIGHT 」, 2025. 9.

이러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의 2026년 계획안을 2025년 계획 대비 약 2배 이상으로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2026년부터 시작되는 향후 확정될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감소와 유상할당 비율 확대를 전제로 한 것임.

정부는 지난 9월 30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설명회를 열어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2026년 15%를 시작으로 2030년 50%까지 확대하고, 연평균 배출허용총량을 제3차 계획기간 대비 16.4% 감소한 5억 746만톤 수준으로 설정하겠다는 계획안을 발표하였음.[201]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유상할당 비율]

구분		1차	2차	3차	4차(안)				
					'26	'27	'28	'29	'30
탄소누출 非우려업종	발전	0%	3%	10%	15%	20%	30%	40%	50%
	발전외				15%	15%	15%	15%	15%
탄소누출 우려업종 및 특례업종			0%	0%	0%	0%	0%	0%	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연평균 배출허용총량]

(단위: 백만톤)

구분	1차	2차	3차	4차(안)
연평균 배출허용총량	563	592	607.1	507.5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26년 계획안의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낙찰수량과 낙찰단가를 2024년 실적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추계하여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금을 2024년 실적 대비 4배 이상 수준으로 편성하였음.

20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는 2025년 6월말까지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2025년 10월 현재까지 미수립된 상황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2025년 11월 중 확정될 예정임.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낙찰수량 및 낙찰단가]

(단위: 천톤, 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안)	
	단가	수량	단가	수량	단가	수량	단가	수량	단가	수량
계획	28,317	25,800	27,000	14,420	23,000	12,154	16,958	20,069	19,894	38,846
실적	23,243	13,642	10,672	7,888	10,355	17,949	9,135	8,550		

주 1) 계획 수량은 각 연도 낙찰율을 반영한 것임
2) 2025년 실적은 9월까지의 평균단가 및 낙찰수량임
자료: 기획재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수입 계획액 및 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년	2026년(안)
계획	730,584	389,340	289,694	348,700	765,123
실적	316,714	84,088	185,655	78,729	

주 1) 2025년 실적은 9월 기준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정부가 잠정 발표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따르면, 2026년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이 2024년 대비 5%P 상향된 15%로 확대되고, 연간 배출허용총량(약 507백만톤) 또한 2024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약 550백만톤)보다 낮게 설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배출권 수요 증가와 그에 따른 배출권 가격 상승을 일정 부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계획안 편성 당시 20%로 가정한 유상할당 비율이 15%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유상할당 비율은 EU 및 미국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202], 배출권 매각 수입은 경기여건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금이 2024년 실적의 4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을지 불

202) **EU 및 미국의 유상할당 비율**

EU	미국
발전: 100% 지역난방: 70% 열병합발전: 탄소누출 0%, 탄소비누출 70%('30년까지 100%) 항공: 15% 산업: 탄소누출 0%('30년까지 48.5%), 탄소비누출 70%('30년까지 100%) ※할당량 기준 57%	<RGGI(북동부권)> 발전: 100% <캘리포니아> 발전: 100% 산업: 차등적용 ※할당량 기준 62%

자료: 기획재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분명한 측면이 있음.

기획재정부는 매년 계획안 편성시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수입을 과다하게 추계함에 따라 연말에 기금운용계획을 자체 변경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감액조정하고, 이에 맞추어 사업비 등을 감액하고 있어 기금 지출사업의 안정적인 운용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감소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

(단위: 백만원)

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변경일자	감액규모	변경사유 및 내용
2022	22.12.8	193,725	○ 배출권 수입이 당초계획을 하회하여 수입·지출규모 조정 - 28개 사업비 및 여유자금 감액 및 공자기금 예수이자 조정
2023	23.11.24	192,236	○ 배출권 수입이 당초계획을 하회하여 계획 변경 - 44개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감액, 여유자금 전액삭감
2024	24.12.2	104,530	○ 배출권매각수입 감소 및 일반회계 전입금 감액에 따라 계획 변경 - 24개 사업비 감액 및 공자기금 예수이자 조정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기획재정부는 2026년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금 계획안을 2024년 실적의 4배 이상 대폭 증액하고 있는데, 계획안대로 기금 수입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 감액으로 기금 지출사업이 계획대로 충실히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재발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향후 확정될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유상할당 비율 및 배출허용총량, 2026년 경기전망 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이 적절한 수준으로 추계되었는지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후대응기금의 수입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11.4%로 매우 저조한 점[203]을 고려하여 배출권 이월제도의 단계적 완화, 경매참여 대상의 확대 등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후대응기금의 주요 자체수입원인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겠음.

203) **기후대응기금 수입의 자체수입 비중**

구분		2022		2023		2024	
		금액(백만원)	비중	금액(백만원)	비중	금액(백만원)	비중
수입 합계		2,046,509	100	2,226,698	100	2,305,830	100
자체수입	소계	323,250	15.8	113,532	5.1	264,723	11.4
	배출권수입금	318,826	15.6	85,233	3.8	187,677	8.1
	기타	4,424	0.2	28,299	1.3	77,046	3.3
정부내부수입	소계	1,723,259	84.2	2,090,498	93.9	2,025,244	87.9
	일반회계전입금	763,154	37.3	1,222,255	54.9	1,097,001	47.6
	기금전입금	500,000	24.4	595,646	26.8	608,333	26.4
	기금예수금	460,105	22.5	272,597	12.2	319,910	13.9
여유자금 회수		-	-	22,668	1.0	15,863	0.7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2) 실집행 이월액 및 유치국과의 협의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안 감액 필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산업부), 산업통상부)

< 현 황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산업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해외 탄소감축설비 설치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지원하거나 투자지원 전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지원하는 사업임. 2026년도 계획안은 2025년 당초 계획액에 비해 88억 8,000만원 감액(△29.2%)된 215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 중 투자지원 사업은 2026년 계획안은 2025년 당초 계획액 대비 90억원 감액(△40.9%)된 13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산업부)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산업부) (6131-311)	30,425	8,425	21,545	△8,880	△29.2
- 투자지원	22,000	-	13,000	△9,000	△40.9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산업부)의 내역사업인 투자지원 사업은 2024년 실집행 이월액이 2025년 10월 기준으로도 집행되지 않은 상황이며, 유치국과의 협의 역시 진전된 바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6년 계획안을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음.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산업부)의 내역사업인 투자지원 사업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해외 탄소감축설비 설치 기업들을 대상으로 직접비의 50%까지 지원하고, 그에 상응하는 국제감축실적을 회수하여 NDC 달성에 기여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 민간위탁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2026년 예산안에는 대규모 사업 1건에 대한 지원 100억원 및 소규모 사업 1건에 대한 지원 30억원을 전제로 130억원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동 내역사업의 최근 3년간 실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2024년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공단에 계획액 296억 2,9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실집행액은 42억 7,800만원에 불과하였으며, 그 잔액인 253억 5,100만원이 전액 이월되었음. 산업통상부는 이에 대하여 주요 유치국인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우즈벡 등이 시범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으나, 자국의 법·제도가 정비된 후에 사업을 승인하겠다고 입장이 변경됨에 따라 실집행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함.

[최근 3년간 투자지원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 사업명	2024년				2025년 7월말				2026 계획안
	당초 계획	수정 계획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당초 계획	수정 계획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투자지원	29,629	29,629	29,629	29,629 [4,278]	22,000	-	-	- [-]	13,00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동 사업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당시 베트남 등 유치국과 협의 상황이 진전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2024년에 실집행이 이월된 253억 5,100만원이 전혀 집행되지 않음에 따라 2025년 당초 계획액 220억원이 전액 감액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의 2026년 계획안에 대규모 사업 1건 및 소규모 사업 1건 등 총 2건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130억원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2025년 10월 기준으로도 베트남, 우즈벡 등 유치국과의 협의 상황이 진전되지 않아 유치국 내의 법·제도 등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며, 이에 따라 여전히 2024년 실집행 이월액 253억 5,100만원은 집행되지 않고 반납처리될 예정임.

이처럼 현재 베트남, 우즈벡 등 유치국과의 협의 상황에는 진전이 없는 상황으로, 2026년에 사업의 진행이 가능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산업통상부는 동 내역사업의 계획안을 편성한 문제가 있음. 특히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대규모 사업 1건 및 소규모 사업 1건의 구체적인 사업이 정해진 것도 아니어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계획안이 산출된 문제가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유치국과의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고 구체적인 대상사업이나 유치국을 확정한 후 이에 기반하여 2026년 계획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유치국과의 협의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안을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음.

(3) 레디니스 사업의 실효성 강화 방안 마련 필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 현 황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환경부)」은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환경 분야 국제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를 위한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고, 정부가 국내기업에게 온실가스 감축사업비(설비 투자비, 운영비 등) 일부를 투자 지원하고, 투자분만큼의 감축실적을 획득하여 NDC 달성에 활용하는 사업임. 2026년도 계획안은 2025년 대비 75억 9,300만원 증가한 251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환경부)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환경부)(6131-610)	17,550	17,550	25,143	7,593	4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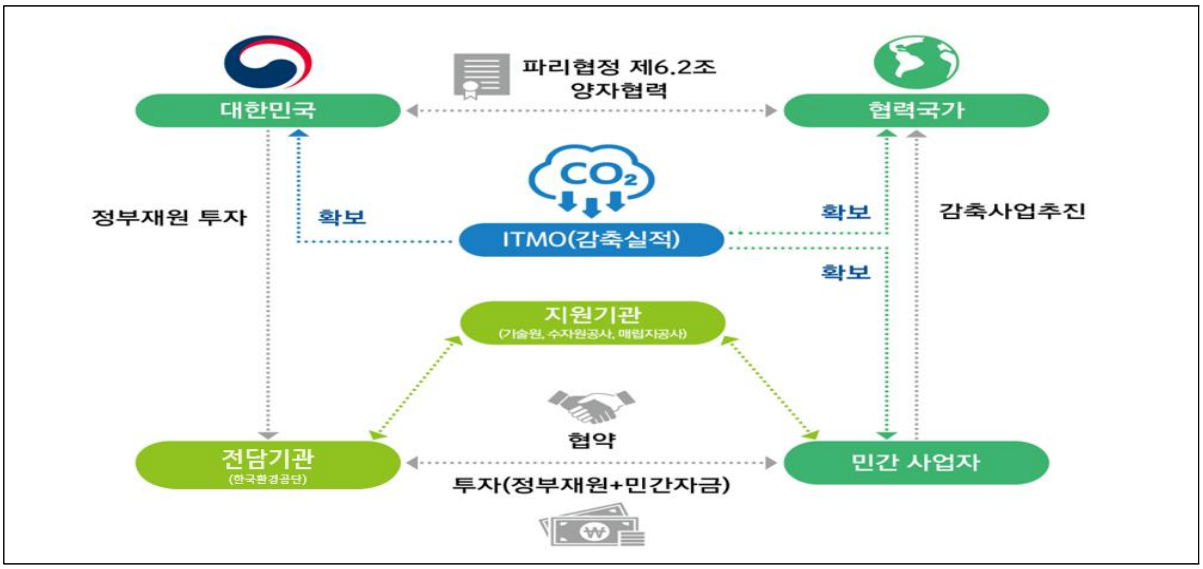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레디니스 사업[204]은 단순 교육·행사성 집행을 지양하고, 대상국에 대한 이행 준비도 진단을 통해 국가별로 취약한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등 감축실적의 적기 확보·이전을 위한 사업 유치국 역량배양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파리협정 제6.2조는 국가 간 협력적 접근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상호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하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활용하려 하고 있는데, 국제감축사업의 전 과정(사업 개발 - 이행 - 감축량 검증 - 이전)에서 유치국 정부와 기관의 제도적·행정적 준비 부족이 사업 추진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국제감축사업 추진 절차]



실제로 국내 사업자 다수는 유치국의 MRV(측정·보고·검증) 능력, 국가등록부 운영, 제도·법령 기반 부재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유치국 역량배양 지원(레디니스)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특히 협정·MOU 체결 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 개발 단계에서부터 유치국 정부와 실무자의 역량을 보완하는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며, 향후 2~3년 내 우

204) 레디니스(Readiness) 사업이란,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설계·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 조직, 인력, 기술, 데이터, 인프라 등을 구축하는 사전 준비 단계의 지원사업임.

리나라 기업들이 추진 중인 국제감축사업에서 감축 실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생성된 실적을 적기에 국내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유치국의 제도적 역량 강화가 시급함.

국제감축사업 지원을 위한 레디니스 사업은 국제감축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치국의 제도적·행정적 역량을 배양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추진 방식은 ① 준비도 평가 및 현지 조사, ② 국제감축 실무자 초청 연수, ③ 맞춤형 현지 컨설팅 실시의 3단계로 구성됨.

[레디니스 사업 추진 방식]

1단계	2단계	3단계
준비 단계	**초청 연수**	**맞춤형 컨설팅**
• 대상국 이행 준비도 평가	• 국제감축 관련 법·제도 제·개정 • 국가등록부 구축·운영 • 감축량 산정·보고 • 감축량 검증 체계 수립·운영 • 보고서 작성 방법 교육	• 물, 폐기물, 환경 분야 현지 사업 개발 컨설팅 • 법제 등 현지 여건 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2~3년 내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제감축사업에서의 감축실적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레디니스 사업을 통해 실적을 적기에 국내로 이전하기 위한 유치국의 역량배양에 기여하고, 협정 및 MoU를 통해 협력기반을 구축한 국가의 사업개발과 이행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의 국제감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임.

[국제감축사업 관련 협정 및 MoU 체결 현황]

구 분	국 가
협정 旣체결 (9개국)	베트남('21.5), 몽골('23.2), 가봉('23.5), 우즈벡('23.6), UAE('24.5), 모로코('24.6), 페루('24.6), 라오스('24.10), 키르기스스탄('24.12)
MOU 旣체결 (9개국)	(산업부) 베트남('23.6), 인니('24.6), 방글라데시('24.6), 캄보디아('24.6) (기후에너지환경부) 카자흐스탄('24.6), 말레이시아('24.11), 파나마('25.2) (산림청) 라오스('23.12), 온두라스('25.1)

자료: 기획재정부

이러한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레디니스 사업이 정부 차원의 유치국 역량배양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집행 방식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계획안 산출 근거를 살펴보면 레디니스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안 8억 6,000만원 중 세부내역으로 이행준비도 평가 및 운영매뉴얼 제작을 위한 준비단계(1단계)에 1억원, 사업유치국 관계 공무원 초청 연수(10개국) 등 본 과정(2단계)에 5억원, 현지 법령 및 현황 조사, 컨설팅 비용 등 맞춤형 컨설팅(3단계)에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음.

[2026년도 레디니스 사업 계획안 산출 근거]

1단계		2단계		3단계
준비 단계		본 과정		맞춤형 컨설팅
• 이행준비도 평가(50백만원) • 운영매뉴얼 제작(50백만원)	⇨	• 초청 연수(500백만원, 10개국)	⇨	• 현지 컨설팅(60백만원) • 법령 등 현황 조사(200백만원)

이에 따르면 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초청 연수에 집중 배분되어, 준비도 평가와 맞춤형 컨설팅 등 제도·행정 기반 강화를 위한 자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구조로, 국가당 3인씩 총 30인의 관계 공무원을 초청하여 시설 견학과 감축 실적 홍보 등 단순 교육·연수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타 부처에서 추진 중인 해외 공무원 초청 연수사업과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사업 추진 시 행사성 집행을 지양하고, 대상국가별 이행 준비도 진단을 토대로 취약 분야(법제, MRV, 등록부 운영 등)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우리나라가 국제감축사업을 위해 협력관계를 구축한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사업 여건과 레디니스 수요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이 레디니스 사업은 국제감축사업의 전 과정에서 유치국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는 사업 수행 시 단순 연수 중심의 형식적 집행을 지양하고, 대상국에 대한 이행 준비도 진단을 통해 국가별로 취약한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4) 신규 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과의 연계 필요 (탄소중립·그린 국제개발협력(ODA), 기후에너지환경부)

< 현 황 >

「탄소중립·그린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은 환경 중점협력국 대상 기후·환경 ODA의 全주기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녹색전환 및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임. 2026년도 계획안은 2025년 대비 189억 6,600만원 감소한 281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모잠비크 마푸토 매립장 정비 및 매립가스 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마푸토시의 비위생 매립장을 정비하고 매립가스를 안정적으로 포집·처리하는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2026년도 계획안은 14억이 신규 편성되었음.

내역사업인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주 수소차 생태계 구축 사업」은 인도네시아 내 음식물쓰레기 매립지 가스를 활용한 수소차 생태계 구축을 통해 폐기물의 에너지화, 지역의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2026년도 계획안은 7억 4,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026년도 탄소중립·그린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세목명)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A)	수정			(B-A)/A
탄소중립·그린 국제개발협력(ODA)(6131-621)	47,145	47,145	28,179	△18,966	△40.2
-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 시범사업	4,977	4,977	963	△4,014	△80.7
- 인도네시아 누산따라 신수도 탄소중립 상수도 인프라 구축 사업	10,000	10,000	600	△9,400	△94.0
- 가나 아크라 상수도 스마트물관리 시스템 구축	2,700	2,700	2,500	△200	△7.4
- 우즈벡 지자흐주 지속가능 폐기물처리시설 구축	4,500	4,500	500	△4,000	△88.9
- 캄보디아 프놈펜 ICT 기반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	3,679	3,679	6,616	2,937	79.8

- 우즈벡-키르기스스탄 기후변화대응 스마트 관개시스템 구축	3,325	3,325	4,658	1,333	40.1
- 이집트 카이로주 폐기물 자원화 및 기술이전 지원	5,000	5,000	100	△4,900	△98
- 스리랑카 고형 폐기물 관리 및 자원화수 실증화 사업	1,000	1,000	4,516	3,516	351.6
- 탄자니아 이링가시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1,500	1,500	3,000	1,500	100
- 모잠비크 마푸토 매립장 정비 및 매립가스 처리 시설 설치	-	-	**1,400**	**1,400**	-
- 캄보디아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	1,628	1,628	-
- 라오스 화학물질 안전 역량 강화 사업	-	-	958	958	-
-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주 수소차 생태계 구축 사업	-	-	**740**	**740**	-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신규사업인 모잠비크 마푸토 매립장 정비 및 매립가스 처리시설 구축사업과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주 수소차 생태계 구축사업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프라 지원에 그치지 않고,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과 연계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탄소중립·그린 국제개발협력(ODA)의 내역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모잠비크 마푸토 매립장 정비 및 매립가스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주 수소차 생태계 구축사업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프라 지원을 넘어 개발도상국의 환경문제 해결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제적 과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임.

먼저 모잠비크 마푸토 매립장 정비 및 매립가스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마푸토시의 비위생 매립장을 정비하고 매립가스를 안정적으로 포집·처리하는 시설을 구축하려는 것임. 현재 마푸토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대부분이 사업 대상지인 Hulene 비위생매립장에 매립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종 병원균 확산과 침출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여 주변 환경과 주민 보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본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보건위생을 개선하는 동시에 매립가스 포집·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발생 가스의 양과 성질을 검토한 후, 현지 환경기준에 맞게 소각 처리함으로써 메탄가스 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시한 현지 기관에 의한 자립적 운영 구상은 제도적·행정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기술이전·인력양성·유지관리 체계 마련 등 후속 조치를 병행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사업은 매립가스에서 정제한 바이오메탄을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공급하고 이를 수소차 운행과 연계하는 사업임.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1년에 발표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서 수소를 청정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2030년까지 수소 생산 및 활용 확대 계획을 수립, 2035년까지 수소차 50%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교통 부문의 탈탄소화와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정합성이 높아 보임.

[206년도 모잠비크 및 인도네시아 신규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분		모잠비크 마푸토 매립장 정비 및 매립가스 처리시설 구축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주 수소차 생태계 구축	
사업기간		2026~2028년(3년)		2026년~2029년(4년)	
총사업비		16,500		10,000	
연차별 사업비 및 사업내용	2026년	1,400	기초조사 및 매립장 정비 기본계획 설계	740	인도네시아 수소 분야 정책 및 제도 현황 심층조사, 규정 및 표준 분석, 매립가스 정제 및 수소공급시스템 설계
	2027년	10,000	실시설계 및 매립장 정비 시공	7,270	국내외 수소차 생태계 정책 및 제도 현황 비교·분석, 매립가스 정제 및 수소공급시스템 제작·설치 및 수소차 보급
	2028년	5,100	매립장 운영 및 역량강화	1,790	인니 수소차 생태계 확대 추진 마스터플랜 보고서 마련, 매립가스 정제 및 수소공급시스템 설치 완료
	2029년			200	인니 수소차 생태계 확대 추진 전략의 정책반영 추진 지원, 시스템 안정화 및 운영 최적화, 유지보수 지침 개발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다만, 초기 단계에서는 충전 인프라와 차량 보급 기반이 미흡하므로 소규모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점진적 확산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두 내역사업 모두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므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 지원에 그치지 않고,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후속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연계 가능성 및 감축실적 산정 가능성 등을 수원국과의 협의를 통해 검토하는 등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동 내역사업이 개발도상국의 환경·에너지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

는 동시에 우리나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아울러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정부는 신규사업 수행 시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프라 지원에 그치지 않고,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과 연계하여 우리나라의 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계 추진할 필요가 있음.

(5) 바이오가스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기후에너지환경부)

< 현 황 >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은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처리 및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지원을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바이오가스 종합정보 시스템 및 바이오가스센터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임. 2026년도 계획안은 2025년 대비 148억 3,500만원 증가한 308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6131-623)	16,018	16,018	30,853	14,835	92.6
-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11,491**	**11,491**	**28,922**	**17,431**	**151.7**
- 바이오가스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2,874	2,874	1,420	△1,454	△50.6
- 바이오가스센터 구축운영	1,653	1,653	511	△1,142	△69.1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은 시설 확충을 통한 생산 목표 달성과 더불어,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판매처 연계 및 활용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이라 함)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의무생산자[205]로 지정하여 매년 생산목표 달성 여부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민간의무생산자에 해당하는 대규모 양돈농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체,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자는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206]의 일정 비율 이상을 바이오가스로 전환해야 함.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의 내역사업인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은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2종 이상 통합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기존 단독 시설을 통합형으로 전환[207]하도록 지원하는 사업[208]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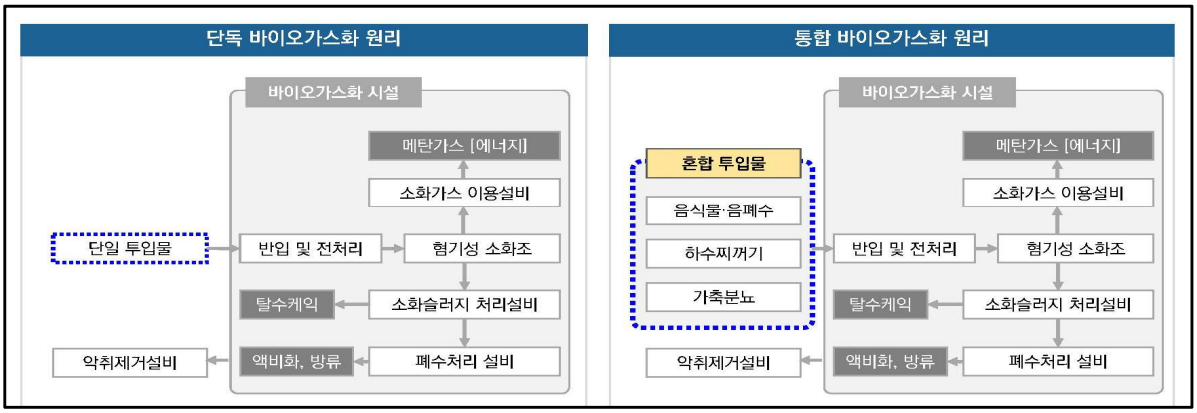
205)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설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 및 민간의무생산자(이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매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1. 공공의무생산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2. 민간의무생산자: 제1호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3조(민간의무생산자) ①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이하 "민간의무생산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설정된 해당 연도(이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라 한다)의 전년도 기준 직전 3년간 월평균 돼지 사육두수가 2만5천두 이상인 사업자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중 1일 가축분뇨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의 전년도 기준 직전 3년간 연평균 가축분뇨 반입량 대비 돈분(豚糞) 반입량 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의 전년도 기준 직전 3년간 연평균 사업장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1천톤 이상인 사업자

206)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기성 폐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
나. 「하수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분뇨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동·식물성 잔재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기성 물질

207) 여러 종류의 유기성 폐자원을 한 시설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구조나 설비를 교체

[단독·통합 바이오가스화 공정 원리]



설치 비용 보조 규모는 지방자치단체는 30~70%, 민간의무생산자는 60~70%[209]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단독시설 대비 설치비는 25%, 운영비는 20%가 절감되며, 바이오가스 생산효율도 20%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연도별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 현황]

연도	신규사업	계속사업
2022년	서울특별시, 구미시, 청주시	
2023년	대전광역시, 남양주시, 김해시, 김제시	서울특별시, 구미시, 청주시
2024년	춘천시, 횡성군, 과천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목포시, 순천시, 부여군	구미시, 청주시, 대전광역시, 남양주시, 김해시, 김제시
2025년	김천시, 완주군, 포천시, 보성군, 김포시, 충주시, 민간형 2개소	남양주시, 김해시, 춘천시, 횡성군, 과천시, 목포시, 부여군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도 계획안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추진 중인 계속사업 19개소와 신규사업 2개소에 대한 설치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비목으로 289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25년 대비 174억 3,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임.

208)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14조(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09) 공공: 특별시 30%, 광역시 40%(가축분뇨 투입 시 50%), 시군 60%(가축분뇨 미투입 시 50%, 투입 시 70%)
민간: 가축분뇨 미투입 시 60%, 투입 시 70%

[2026년도 계속사업 계획안]

(단위 : 백만원)

연번	지방자치단체명	총사업비	2026년 추진계획
1	구미시	190,970	실시설계 및 착공
2	청주시	177,595	실시설계 및 착공
3	대전광역시	41,992	기본설계
4	남양주시	178,214	착공
5	김해시	106,810	기본설계
6	춘천시	105,723	착공
7	횡성군	48,872	실시설계
8	과천시	37,530	실시설계
9	광주광역시	83,843	기본설계
10	인천광역시	121,405	기본설계
11	순천시	177,575	기본설계
12	부여시	49,138	기본설계
13	김천시	46,935	착공
14	완주군	46,000	기본 및 실시설계
15	보성군	64,097	기본 및 실시설계
16	김포시	100,089	기본계획
17	충주시	46,077	기본설계
18	민간형	선정 예정(2025.11.)	기본설계
19	민간형	선정 예정(2025.11.)	기본설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의 확대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실제 집행 수준을 감안,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충 보조금 등을 증액하였다는 입장임.

그런데, 바이오가스의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생산량의 55%는 자가소비, 25~30%는 도시가스 등 외부에 판매되고, 나머지 약 15%는 미활용되어 소각·재연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 설치 또는 통합형 전환이 확대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안정적인 바이오가스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활용률 저하와 운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바이오가스 연도별 미이용 현황]

(단위: 천Nm³/년, %)

2021년			2022년			2023년		
생산량	미이용량	미이용률	생산량	미이용량	미이용률	생산량	미이용량	미이용률
375,002	57,284	15.3	369,713	53,799	14.6	383,321	57,210	14.9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따라서 생산시설 확충에 따른 생산목표 달성과는 별개로, 바이오가스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음.

바이오가스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바이오가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규칙은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바이오가스 생산자와 생산량을 거래할 수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동 시스템을 구축 중인데, 이를 활용하여 의무생산자 간 의무이행을 위한 거래 외에, 생산한 바이오가스에 대한 외부 판매를 매칭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만, 바이오가스법 및 동 시행규칙상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은 의무생산자 간 생산량 거래 및 목표 달성 관리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어, 외부 수요처와의 연계·매칭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바이오가스법 또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바이오가스센터 및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정부는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충을 통한 생산 목표 달성과 더불어,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판매처 연계 및 활용률 제고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실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집행률 제고 필요 등(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 산업통상부)

< 현 황 >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시설 및 R&D 프로젝트에 투자할 기업에 장기·저리의 융자지원하거나 이차보전 지원을 하는 사업임. 2026년도 계획안은 2025년 계획액에 비해 449억 5,000만원 감액(△20.7%)된 1,720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 (6232-400)	217,000	217,000	172,050	△44,950	△20.7
- 융자지원	215,000	215,000	169,960	△45,040	△20.9
- 이차보전지원	2,000	2,000	2,000	0	0
- 사업운영비	-	-	90	90	순증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융자지원 사업의 경우 2025년 7월 기준 집행률 및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융자지원 사업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시설 및 R&D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장기·저리로 대출금을 융자하는 사업임. 그 지원비율은 프로젝트당 총 소요자금에 대하여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0%, 대기업 50% 이내로 기업 규모별로 상이하며, 지원한도는 사업장 당 시설자금의 경우 500억원 이내, R&D 자금의 경우 100억원 이내이며, 지원 기간 및 금리는 다음과 같음.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방식	• 취급은행(14곳)을 통한 간접대출
지원비율	• 프로젝트당 총소요자금의 100%(중소기업), 90%(중견기업), 50%(대기업) 이내
지원한도	• 사업장 당 시설자금 500억원 이내, R&D 자금 100억원 이내
지원기간	• 최대 10년(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대출기관	• 전담기관과 약정을 체결한 취급은행(14개)
금리	• 매년 3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대출금리'(기재부 공시)에서 중소·중견 2.0%p, 대기업 1.5%p 차감하여 적용(1.3% 미만일 경우 1.3% 적용)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내역사업은 2026년 계획안에 2024년 선정 프로젝트 6건, 2025년 선정 프로젝트 11건, 2026년 신규 선정 프로젝트 15건에 대한 지원을 전제로 총 1,69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음.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2026년 계획안 산출 근거]

구분	산출 내역
2024년 선정 3차년도 지원	· 6건 × 4,167백만원=25,000백만원
2025년 선정 2차년도 지원	· 11건 × 5,455백만원=60,000백만원
2026년 신규 선정 지원	· 15건 × 5,664백만원=84,960백만원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실제 동 사업의 2025년 7월 기준 집행 현황에 따르면, 계획액 2,150억원 중 교부액은 1,118억 7,300만원으로 교부액 기준 집행률은 52.0%이나, 실집행액은 292억 2,70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13.6%에 불과한 상황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하여 계속 지원 대상인 기업의 대출 신청이 연기되고 있으며, 2025년 신규 선정 기업의 대출 신청이 지연됨에 따라 상반기 집행률이 저조하였으나, 10월 말 2025년 신규 지원 기업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므로 집행률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함. 실제 2025년에는 신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10월 초 기준 9개에 불과하며, 10월 말에 추가 모집을 통해 총 25개 기업을 선정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동 내역사업의 실집행률 저조 문제는 사업 시작 이래로 연례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으로, 2022년과 2023년의 경우 당초 계획액 대비 수정 계획액이 감액되었음에도 그 실집행률은 각각 58.5%, 83.7%에 불과하였으며, 당초 계획액 대비 실집행률은 각각 35.1%, 65.4%에 불과한 상황임.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부처			한국산업단지공단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실집행액 (C)	실집행률 (C/B)	실집행률 (C/A)
	당초(A)	수정(B)					
2022	150,000	90,000	54,000	54,000	52,685	58.5	35.1
2023	145,000	113,230	98,115	98,115	94,760	83.7	65.4
2024	221,600	221,600	221,600	221,600	177,639	80.2	80.2
2025.7.	215,000	215,000	111,873	111,873	29,227	13.6	13.6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동 내역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저조한 상황이며, 2025년 역시 대출 신청이 지연되고 있어 교부액 중 상당 부분이 이월될 것으로 보임.

이처럼 동 내역사업은 최근 실집행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며, 2025년 역시 대출 신청 지연으로 인하여 실집행이 저조하고 대규모 이월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다 면밀한 집행계획 수립을 통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이차보전지원 사업의 경우 실제 지원 내역 및 사업운영비가 별도로 편성된 점 등을 고려하여 7,000만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이차보전 사업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시설 및 R&D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하여 대출받는 기업에 대하여 대출금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차보전하는 사업으로, 그 지원 한도는 시설자금 대출시 연 10억원 이내, R&D 자금 대출시 연 2억원 이내이며 그 지원 기간은 최대 10년임.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 이차보전 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방식	• 전담기관 직접 지원
지원비율	• 대출금의 2.0%
지원한도	• 사업장 당 시설자금 대출 시 연 10억원 이내, R&D 자금 대출 시 연 2억원 이내
지원기간	• 최대 10년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사업은 2022년부터 이차보전 지원을 시작하였으나, 그 신청이 저조하여 2024년부터 신규지원 프로젝트를 선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계획안에 2022년 및 2023년 선정 프로젝트를 계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안 20억원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실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원 실적에 따르면, 매년 7개 기업에 대하여 총 19억 3,000만원의 이차보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6년에 신규로 이차보전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바, 2026년 계획안으로 편성된 20억원은 실제 지원 실적인 19억 3,000만원에 비해 7,000만원 과다편성된 것을 보이는 바 해당 금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이차보전 연도별 지원액]

(단위: 백만원)

기업명	대출금액	연도별 이차보전 지원액		
		2022	2023	2024
OOOO유틸리티	28,950	579	579	579
OO파워	28,950	579	579	579
OO컴퍼지트	2,000	40	40	40
OOOO플랜트	2,000	40	40	40
OO정보기술	1,600	32	32	32
OO스	10,000	200	200	200
OO스틸	23,000	460	460	460
합계		1,930	1,930	1,93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동 내역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계획안 편성시에는 20억원을 전액 이차보전지원에 사용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 내역에 따르면 계획액 20억원 중 19억 3,000만원은 이차보전 지원에 사용하였으며 차액 7,000만원은 이차보전 지원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기획평가비로 지급하였음.

그러나 이처럼 이차보전 지원 사용을 위해 편성하여 승인받은 계획액의 집행 잔액을 기획평가비로 사용하는 것은 국회가 심의한 계획액의 사용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또한, 2026년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지급하기 위한 사업운영비 9,000만원이 별도로 편성된 바, 동 기획평가비 7,000만원은 이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감액될 필요가 있을 것임.

따라서 이차보전지원 내역사업의 2026년 계획안은 실제 지원 실적을 고려하여 7,000만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7) 기금 운용배수를 고려하여 심사 필요 (녹색전환보증, 기후에너지환경부)

< 현 황 >

「녹색전환보증」은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거나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에 대한 보증 지원을 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려는 것임. 2026년도 계획안은 2025년 대비 100억원 증가한 1,500억원이 편성되었음.

내역사업인「기후대응보증(신보출연)」은 온실가스 저감 기술개발·사업화, 연료·공정 전환 등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보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려는 것임. 2026년도 계획안은 2025년 대비 50억원 증가한 650억원이 편성되었음.

내역사업인「기후대응보증(기보출연)」은 온실가스 저감 기술개발·사업화, 연료·공정 전환 등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보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려는 것임. 2026년도 계획안은 2025년 대비 150억원 증가한 55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녹색전환보증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녹색전환보증 (6232-505)	140,000	140,000	150,000	10,000	7.1
- 기후대응보증 (신보출연)	**60,000**	**60,000**	**65,000**	**5,000**	**8.3**
- 기후대응보증 (기보출연)	**40,000**	**40,000**	**55,000**	**15,000**	**37.5**
- 녹색기술산업보증	40,000	40,000	30,000	△10,000	△25.0

자료: 기획재정부

기후대응보증은 2022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저탄소 사업전환 기업, 저탄소 기술혁신 기업 및 저탄소 프로젝트 추진 기업이 지원대상임.

「기후대응보증(신보출연)」은 2026년에 6,500억원의 신규보증을 공급할 목적으로, 보증배수 10배가 적용되어 650억원[=6,500억원(신규보증공급) / 10(보증배수)]이 편성되었음. 「기후대응보증(기보출연)」은 2026년에 5,500억원의 신규보증을 공급할 목적으로, 보증배수 10배가 적용되어 550억원[=5,500억원(신규보증공급) / 10(보증배수)]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녹색전환보증 계획안 산출근거]

2025년 계획 산출내역	2026년 계획안 산출내역
< 기후대응보증(신보출연) > - (산출) 60,000백만원 = 720,000백만원(신규보증공급) / 12(보증배수) **< 기후대응보증(기보출연) >** - (산출) 40,000백만원 = 480,000백만원(신규보증공급) / 12(보증배수) **< 녹색기술산업보증(기보출연) >** - (산출) 40,000백만원 = 280,000백만원(신규보증공급) / 7(보증배수)	**< 기후대응보증(신보출연) >** - (산출) 65,000백만원 = 650,000백만원(신규보증공급) / 10(보증배수) **< 기후대응보증(기보출연) >** - (산출) 55,000백만원 = 550,000백만원(신규보증공급) / 10(보증배수) **< 녹색기술산업보증(기보출연) >** - (산출) 30,000백만원 = 210,000백만원(신규보증공급) / 7(보증배수)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기후대응보증(신보출연)」과 「기후대응보증(기보출연)」은 2025년도 계획안에 보증배수 12배가 적용된 것과 달리 2026년도 계획안에는 보증배수 10배가 적용되어 계획액이 산출되었는데, 기금의 보증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기후대응보증(신보출연)」과 「기후대응보증(기보출연)」의 2025년도 계획안은 보증배수 12배가 적용되어 각각 600억원과 400억원이 편성되었음. 기획재정부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기후대응보증 관련 운용배수[210]가 높은 수준이라는 이유로 2026년도 계획안은 보증배수 10배를 적용하여 출연금을 산출하였음. 그런데 기금의 운용배수 관리목표, 부실률, 자체변경을 통한 증액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액을 심사할 필요가 있음.

210) 운용배수는 보증규모(보증잔액)를 기본재산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으로서, 대위변제 청구에 즉시 대응하는 지급능력과 보증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보증공급여력 등을 가늠하는 지표임.

①「신용보증기금법」과「기술보증기금법」 상 운용배수 상한이 20배인 점[211]을 고려하여 기후대응보증의 운용배수 관리 목표를 20배로 본다면, 2024년 말 기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기후대응보증 계정의 운용배수는 각각 16.1배와 12.3배로서 추가적인 보증여력이 있음.

[기후대응보증 운용배수 현황]

(단위: 억원, 배)

연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잔액 (A)	기본재산 (B)	운용배수 (A/B)	보증잔액 (C)	기본재산 (D)	운용배수 (C/D)
2022년	5,049	353	14.3	4,561	332	13.7
2023년	8,834	597	14.8	7,623	644	11.8
2024년	11,555	718	16.1	11,182	911	12.3

주) 보증잔액, 기본재산, 운용배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전체 보증 사업이 아닌 기후대응보증 계정의 보증잔액, 기본재산, 운용배수임
자료: 기획재정부

또한, 보증기금의 부실률[212]이 높아질수록 운용배수 조정 필요성이 커지는데, 2023년 및 2024년 부실률을 비교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기후대응보증 계정은 자체계정에 비해 부실률이 낮은 수준임. 2024년 신용보증기금의 기후대응보증 계정의 부실률은 2.6%로, 자체계정 부실률 3.6%에 비해 낮음. 2024년 기술보증기금의 기후대응보증 계정의 부실률은 2.5%로, 자체계정 부실률 4.7%에 비해 낮은 수준임.

[기후대응보증 부실률 현황]

(단위: %)

연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후대응보증 계정 부실률	자체 계정 부실률	기후대응보증 계정 부실률	자체 계정 부실률
2023년	1.1	3.3	1.1	4.2
2024년	2.6	3.6	2.5	4.7

자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211) **「신용보증기금법」 제25조(보증 등의 한도)** ① 기금의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보증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보증기금법」 제31조(보증 등의 한도) ① 기금의 보증채무부담 및 재보증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2) 부실률은 보증사고 순증금액을 기말 보증잔액으로 나눈 값을 의미함.

②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기후대응보증 계정은 기금의 자체계정이 아닌 위탁 계정이므로, 「신용보증기금법」과「기술보증기금법」상 운용배수 상한을 적용받지 않음. 그러므로 운용배수가 20배를 초과해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운용배수가 20배를 초과할 것을 우려하여 선제적으로 낮은 운용배수를 적용해 출연금을 늘릴 필요성이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③ 또한, 보증사고가 급증하여 대위변제를 하기 위한 기본재산이 부족해지는 최악의 경우에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자체변경을 통해 계획액을 증액하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을 보충할 수 있음. 기금은 자체변경을 통해 프로그램 단위로 계획액을 최대 20%까지 증액할 수 있기 때문에[213] 기본재산 부족으로 긴급하게 출연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동 사업의 계획액을 최대 582억 700만원(저탄소생태계조성 프로그램 계획액 2,910억 3,300만원 × 20%) 증액할 수 있음.

기후대응보증 계정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자체계정과는 별도로 운영되어 운용배수가 증가해도 다른 보증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금의 정책금융 공급이 위축될 우려도 없음.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계획액 산출시 적용할 보증배수와 이에 따른 적정 계획액을 심사할 필요가 있음.

---

213)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지출금액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
   가. 기금운용계획상 여유자금 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
   나. 수입이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계획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
   다.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출금액
5.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한 국채 원리금 상환
6.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한 국채 원리금 상환

(8) 대기업에 대한 지원 집중을 고려하여 예산안 규모를 조정할 필요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 현 황 >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은 녹색경제활동 추진 기업이 필요자금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임. 2026년도 계획안은 2025년 대비 125억 2,100만원 증가한 664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 (6232-601)	53,967	53,967	66,488	12,521	23.2

자료: 기획재정부

동 사업은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경제활동,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국외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이차보전을 통해 대출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것임. 시중 금융기관의 민간자금으로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지원하고, 정부가 은행에 기업이 제공받은 우대금리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임.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금리 비율이 30% 이내(0.5%p 한도)이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리 비율은 50% 이내임.

2026년도 계획안은 기존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579억 8,300만원과 신규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85억 500만원 등 664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음. 신규 대출 3조원 중 60%를 대기업에 지원하고, 40%를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할 계획임.

[2026년도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 계획안 산출근거]

○ **녹색정책금융활성화**
: ('25) 53,967백만원 → ('26요구) 66,488백만원, 12,521백만원 증액

- **(요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26년

지속 반영 필요하며, 매년 신규대출에 따른 이차보전 계속 지원액 증가 등을 감안하여, '25년 대비 +23.2% 증액 요구

- **(산출)** 이차보전액(66,488백만원)
  = 1~4차년도 대출('22~'25년) 이차보전(57,983백만원) + 신규대출*('26년, 3조원) 이차보전(8,505백만원)

* 신규대출 세부내역
  - **[대 기 업]** 3조원 × 60%(대기업 지원비율) × 0.5%(정부지원금리 상한) × 50%(6개월) × 70%(승인액 대비 대출액 비율) = 3,150백만원
  - **[중소중견]** 3조원 × 40%(중소·중견기업 지원비율) × 2.55%(평균우대금리, 추정) × 50%(정부부담분) × 50%(6개월) × 70%(승인액 대비 대출액 비율) = 5,355백만원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은 대기업 지원 비율을 감안할 때, 신규대출 이차보전 계획액의 조정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균형 있게 지원한다는 사업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대부분이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사업이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문제가 있음. 최근 4년간 신규대출 승인 실적을 살펴보면,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70.3%에서 2024년 88.5%까지 증가하였음.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 신규대출 승인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대기업	545,000	2,128,500	950,000	1,235,000
(비율)	(70.3%)	(78.4%)	(88.5%)	(96.9%)
중소중견	199,900	585,000	123,000	40,000
(비율)	(25.8%)	(21.6%)	(11.5%)	(3.1%)
합계	774,900	2,713,500	1,073,000	1,275,000
(비율)	(100.0%)	(100.0%)	(100.0%)	(100.0%)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실수요 중견·중소기업으로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의 지원금리 상한(0.5%p)을 설정하고, 보조율을 하향(50→30%)하는 등 2024년 9월에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기준'을 개정하였음.

그러나 2025년에도 8월 말 기준 신규대출 승인 중 대기업의 비율이 96.9%에 이르고 있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2025년 8월 말까지 총 1조 2,750억원의 대출이 승인되었는데, 이 중 1조 2,350억원이 대기업에 대한 대출임.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도 기획재정부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지원비율을 각각 60%와 40%로 설정하여 계획액을 산출하였으나, 계획과 다르게 대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이 집행되고 있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2026년 신규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액이 85억 500만원 편성되었는데, 2026년 신규대출의 대기업 비율이 70%인 경우에는 이차보전액 소요가 76억 9,100만원이고, 80%인 경우에는 68억 7,800만원이므로 조정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비율별 신규 이차보전액 소요]

지원비율	신규 이차보전액 소요	산출근거	비고
대기업 60%, 중소중견 40%	8,505백만원	• [대 기 업] 3조원 × 60%(대기업 지원비율) × 0.5%(정부지원금리 상한) × 50%(6개월) × 70%(승인액 대비 대출액 비율) = 3,150백만원 • [중소중견] 3조원 × 40%(중소·중견기업 지원비율) × 2.55%(평균우대금리, 추정) × 50%(정부부담분) × 50%(6개월) × 70%(승인액 대비 대출액 비율) = 5,355백만원	계획액 편성 기준
대기업 70%, 중소중견 30%	7,691백만원	• [대 기 업] 3조원 × 70%(대기업 지원비율) × 0.5%(정부지원금리 상한) × 50%(6개월) × 70%(승인액 대비 대출액 비율) = 3,675백만원 • [중소중견] 3조원 × 30%(중소·중견기업 지원비율) × 2.55%(평균우대금리, 추정) × 50%(정부부담분) × 50%(6개월) × 70%(승인액 대비 대출액 비율) = 4,016백만원	814백만원 감액 가능

지원비율	신규 이차보전액 소요	산출근거	비고
대기업 80%, 중소중견 20%	6,878백만원	• [대 기 업] 3조원 × 80%(대기업 지원비율) × 0.5%(정부지원금리 상한) × 50%(6개월) × 70%(승인액 대비 대출액 비율) = 4,200백만원 • [중소중견] 3조원 × 20%(중소·중견기업 지원비율) × 2.55%(평균우대금리, 추정) × 50%(정부부담분) × 50%(6개월) × 70%(승인액 대비 대출액 비율) = 2,678백만원	1,627백만원 감액 가능

참고로, 이와 같이 대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는 이유는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대출상품의 금리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자금 수요를 유인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설정되지 않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 대출상품 평균 우대금리]

구 분		우대등급	
취급은행	기업규모	A	B
산업·신한·KB·농협·수출입	중소	2.76%	2.54%
	중견	2.54%	2.32%
	대기업 (계열사)	2.12%	1.90%

자료: 기획재정부

그리고 동 사업에 대한 중소중견 기업의 인지도 부족으로 인해 수요가 제한되는 측면도 있음. 중소기업은행의 '2025년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에 따르면 녹색 금융을 인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4.1%에 불과하였음.

(9)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예산 감액 필요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 산업통상부)

< 현 황 >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자율적·선제적 사업 재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재편 수요 발굴 및 파트너십 구축, 컨설팅, 업종별 분석 및 실태조사, 심의위원회 운영, 전담지원기관 운영 등 사업재편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하려는 것임. 2026년도 계획안은 2025년 대비 1억 9,700만원 감소한 57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 (6332-403)	5,965	5,965	5,768	△197	△3.3
-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	5,615	5,615	5,453	△162	△2.9
- 산업금융협업통계시스템구축운영	350	350	315	△35	△10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사업의 사업 재편 유형이 '탄소중립'에 해당하는 경우는 4건에 불과하며 동 사업은 기후대응기금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감액이 필요함.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사업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214]에 따라 기업의

21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업재편"이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 정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합병,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소유, 회사의 설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
나.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야나 방식을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사업구조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재편 유형은 ① 과잉공급(2016.3.), ②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2019.11.), ③ 신산업 진출(2019.11.), ④ 디지털 전환(2024.3.), ⑤ 탄소중립(2024.3.), ⑥ 공급망 안정(2024.7.) 6가지로 분류됨[215].

동 사업은 2022년 기후대응기금 설립 당시 기금 사업으로 편입되었는데, 실제 사업 내용이 기후대응기금의 설립 목적 및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탄소중립 유형이 2024년 3월에 신설된 유형인 점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가 43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2024.6.)부터 승인한 사업재편 유형을 살펴보더라도, 82건의 승인기업 중 탄소중립 유형은 4건에 불과하여 5% 미만이며, 대부분 사업재편은 신산업 유형(66건, 80%)으로 이루어지고 있음[216].

[사업재편 승인기업 유형 분류]

연도	심의회	일시	승인기업 유형 분류
2024	42차	2024.5.	사업재편계획 변경: 3
	43차	2024.6.	신산업: 3, 탄소중립: 1, 변경: 1
	44차	2024.9.	신산업: 17
	45차	2024.12.	과잉공급: 2, 신산업: 21, 디지털 전환: 3, 탄소중립: 1, 공급망 안전: 2
2025	46차	2025.3.	신산업: 20, 디지털 전환: 3, 탄소중립: 1
	47차	2025.6.	신산업: 5, 디지털 전환: 2, 탄소중립: 1

자료: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관련 보도자료 재구성

하는 등 사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4. "공급안정 사업재편"이란 기업의 사업재편을 통하여 다음 각 목의 상황을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과잉공급: 해당 업종의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또는 향후 상당 기간 공급의 증가, 수요의 감소 등으로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비용 대비 제품·서비스의 가격변화율이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등 기업의 경영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공급망 위협: 경제·통상·정치·안보 등 대내외 상황 변화 및 자연재해 등으로 국가경제에 필요한 핵심 품목 공급망의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훼손되어 상당한 기간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5. "미래 사업재편"이란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산업 진출: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진출하는 행위

나. 디지털전환활동: 공정 최적화,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 방식의 고도화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데이터를 활용하는 행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탄소중립활동: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를 위하여 공정 최적화, 특정설비나 기술 활용, 연료 및 원료전환 등을 추진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5)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당시(2016.8.) 사업재편 유형은 과잉공급 해소에 한정되었으나, 법률 개정에 따라 사업재편 유형을 순차적으로 신설

216) 과잉공급:2, 신산업: 66, 디지털 전환: 8, 탄소중립: 4, 공급망 안정: 2

[탄소중립 유형 사업재편 승인기업 현황]

기업명	사업 내용	승인 일시
㈜미코파워	수소연료전지(SOFC) 소재부품 제조	2024.6.
㈜펨토사이언스	탄소저감형 반도체 식각공정 개발	2024.12.
㈜일신화학	친환경 시멘트 첨가제(규산소다) 생산	2025.3.
㈜빅스	산업부산 이산화탄소 활용 폴리우레탄 원료 합성	2025.6.

자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17]에 따라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됨. 따라서, 기후대응기금 용도[218]는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 및 기후위기 대응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그런데,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사업의 경우 탄소중립 유형은 4건(5%)에 불과하고, 대부분 신산업 유형(80%) 등 기후대응기금의 설립 목적 및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재편을 위하여 집행되고 있음.

산업통상부는 탄소중립 유형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하여 제도의 운영 기간이 짧아 탄소중립 유형 승인기업의 숫자가 적고, 신산업 유형, 디지털 전환 및 공급망 안정 유형도 사업재편 심의 과정에서 탄소중립 감축과 밀접한 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등 기후대응기금과 부합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21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1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운영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3.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창출 지원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융자·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8.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0.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11.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그러나, 제47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디지털 전환 사업을 살펴보더라도 자동차 차체부품 생산 기업이 전기차용 고강도 차체모듈을 생산하거나 3D프린팅 의료기기 생산 기업이 수술계획 자동화 솔루션을 구상하는 신기술을 도입하는 사항으로, 산업 첨단화 목적에 부합할 수 있으나 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과 직접적 연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제47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승인기업 개요]

구분	기업명	기존 사업	신규 사업
디지털 전환	A	자동차 차체부품	전기차용 고강도 차체모듈
	B	3D프린팅 의료기기	수술계획 자동화 솔루션

자료: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보도자료, 반도체·배터리 등 8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따라서,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이 기후대응기금의 목적 및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집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탄소저감 효과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도가 명확한 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계획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10) 인센티브 구조 개선을 통한 지속적 운영 체계 마련 필요 (친환경소비생활 및 저탄소 생산기반 구축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현 황 >

「친환경소비생활 및 저탄소 생산기반 구축지원」 사업은 저탄소생활과 소비생활을 연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저탄소 생산·녹색생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2026년도 계획안은 2025년 대비 13억 9,600만원 증가한 324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친환경소비생활 및 저탄소 생산기반 구축지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친환경소비생활 및 저탄소 생산기반 구축지원(6333-301)	31,092	31,092	32,488	1,396	4.5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자동차) 운영	14,251	14,251	13,601	△650	△4.6
-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운영	**15,962**	**15,962**	**18,137**	**2,175**	**13.6**
- 그린카드제도 운영	379	379	250	△129	△34.0
-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	495	495	495	-	-
- 일반 경비	5	5	5	-	-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실천) 운영 사업은 국민의 지속적인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급액의 적정성과 수급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월별·일별 한도 설정 등 구조적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계획액 증가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은 전자영수증·텀블러 이용 및 친환경제품 구매 등 일상생활 속 녹색생활 실천활동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고자 12가지 실천 항목별로 녹색생활 실천활동에 따른 인센티브를 연간 개인 최대 7만원까지 제공하는 제도임.

[2026년도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항목]

실천항목 구분	포인트 산정금액	실천항목 구분	포인트 산정금액
1. 전자영수증 발급	100원/건	7. 친환경제품 구매	1,000원/건
2.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300원/개	8.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100원/kg
3. 일회용컵 반환	200원/개	9. 폐휴대폰 반납	1,000원/개
4. 리필스테이션 이용	2,000원/회	10. 미래세대실천행동	기후행동1.5℃ 운영계획에 따름
5. 다회용기 이용	2,000원/회	11. 공유자전거 이용	50원/km
6. 무공해차 대여	100원/km	12. 잔반제로 실천	100원/건

자료: 기획재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실천항목은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 실천이 용이하고, 민간기업이 참여 실적을 제공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선정하였으며, 지급단가는 실천난이도, 기존 민간 자체적인 할인금액 등을 고려해 산정하였다는 입장임.

친환경소비생활 및 저탄소 생산 기반 구축지원의 내역사업인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실천) 운영 사업의 2026년도 계획안은 2025년도 계획액 159억 6,200만원에서 21억 7,500만원이 증가한 181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녹색생활실천 분야의 탄소중립포인트가 조기 소진됨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됨에 따라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동 내역사업의 2026년도 계획안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가입자

220만명을 기준으로 각 항목별 포인트 지급액에 가입자 중 실제로 해당 항목에 대한 녹색생활을 실천하여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비율인 수급률과 평균 실천 횟수를 곱하여 항목별 인센티브 지급액을 산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2026년도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분야 참여자 인센티브 지원 산출내역]

· (전자영수증) 220만명 × 100원(지급액) × 46회 × 70%(수급률) = 7,084백만원
·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220만명 × 300원(지급액) × 24회 × 35%(수급률) = 5,544백만원
· (리필스테이션 이용) 220만명 × 2,000원(지급액) × 1회 × 1%(수급률) = 44백만원
· (다회용기 이용) 220만명 × 2,000원(지급액) × 1회 × 1%(수급률) = 44백만원
· (무공해차 충전) 220만명 × 100원/km(지급액) × 25km × 30%(수급률) = 1,650백만원
· (친환경제품 구매) 220만명 × 1,000원(지급액) × 10회 × 10%(수급률) = 2,200백만원
·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220만명 × 100원/kg(지급액) × 5kg × 15%(수급률) = 165백만원
· (폐휴대폰 반납) 220만명× 1,000원(지급액) × 1회 × 2%(수급률) = 44백만원
· (일회용컵 반환) 220만명 × 200원(지급액) × 12회 × 15%(수급률) = 792백만원
· (공유자전거 이용) 220만명 × 50원/km(지급액) × 48km × 1%(수급률) = 53백만원
· (잔반제로 실천) 220만명 × 100원(지급액) × 192회 × 1%(수급률) = 422백만원
· (미래세대 기후행동) 100백만원(행사 개최비) × 3회 = 300백만원
· (텀블러 소상공인 지원) 참여 30원 × 15만회 = 4.5백만원
· (다회용기 소상공인 지원) 참여 200원 × 3.75만회 = 7.5백만원

자료: 기획재정부

이러한 인센티브는 녹색생활을 실천할 경우 소액의 포인트를 지급하여 해당 행동을 습관화하도록 유도하는 금전적 보상으로, 행동의 습관화를 위해서는 적정 금액 외에도 인센티브의 지속성이 필요해 보임.

그런데, 녹색생활 실천 분야의 탄소중립포인트는 2024년에는 11월분까지, 2025년에는 이보다 더욱 빠른 7월분까지만 인센티브가 일부 지급되고, 예산 소진으로 지급이 중단되었음.

[2023년~2025년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분야 예산 소진 시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 소진 시점	11월	11월	7월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와 같이 인센티브가 연간 지속적으로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 생활습관형 참여 유도가 어렵고, 국민 입장에서는 제도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2026년도 인센티브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2026년도 계획안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단순한 총액 확대만으로는 동일한 문제가 재발할 수 있음. 정부는 현재 12개인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분야를 점차 확대하겠다는 입장인데, 분야 확대는 참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현재와 같은 1회 실천당 지급액으로는 지속적인 예산 증액이 수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2022년~2025년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분야 가입자수]

(단위: 만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가입자 수(누적)	26	104	180	205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분야 지급 대상자]

(단위: 천명, %)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가입자	지급 대상자	비율	가입자	지급 대상자	비율	가입자	지급 대상자	비율	가입자	지급 대상자	비율
259	228	87.9	1,044	765	73.3	1,802	1,207	67.0	2,054	1,713	83.4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따라서 제도 초기 설정한 회당 지급액을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가입자 확대 및 인센티브 지급 분야 확대, 수급률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지속적인 녹색생활 실천의 유인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한도로 조정하고, 연간 지급 한도 외에도 월별 또는 일별 한도를 설정하여 예산이 조기 소진되지 않도록 하는 등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분야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5년 월별 인센티브 지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1월분*	2월분	3월분	4월분	5월분	6월분	7월분	계
지급액	4,650	1,390	1,990	1,820	1,537	2,303	1,422	15,112

* 1월분(전년도 미지급액 31억원 포함)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12개 녹색생활 항목별 실제 참여율 및 수급률 통계]

(단위: 천명, %, 천건)

구분	참여		수급	
실천항목	참여자 수	수급률	실적건수	참여율
계	2,731	100	82,588	100
전자영수증	1,472	53.90	58,825	71.23
리필스테이션	3	0.11	8	0.01
무공해차	13	0.45	8,876	10.75
다회용기	12	0.49	31	0.04
친환경제품	568	20.79	1,976	2.39
텀블러·다회용컵	574	21.03	10,380	12.57
일회용컵 반환	26	0.17	1,020	1.24
고품질 재활용품	57	2.10	1,450	1.76
폐휴대폰	5	0.97	22	0.03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와 같이 정부는 녹색생활 실천 분야의 탄소중립포인트 운영 사업이 안정적인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국민의 지속적인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1회당 인센티브 지급액의 적정성과 수급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월별·일별 한도 설정 등 구조적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계획액 증가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11)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간 확보를 위한 조속한 협약체결 필요 (총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 황 >

기후대응기금 소관 사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는 과학기술연구개발 분야 사업은 「탄소자원화플랫폼화합물제조기술개발(R&D)」 등 15개 사업임.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행 기후대응기금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탄소자원화플랫폼화합물제조기술개발(R&D) (6431-305)	8,494	8,494	7,000	△1,494	△17.6
무탄소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R&D) (6431-315)	59,182	59,182	68,827	9,645	16.3
(혁신도전형)소재혁신 양자시뮬레이터 개발(R&D) (6431-320)	9,367	9,367	9,000	△367	△3.9
한계돌파형 4대 차세대이차전지 핵심원천기술개발(R&D) (6431-322)	6,200	6,200	9,500	3,300	53.2
탄소 네거티브 DAC 기술 고도화 사업(R&D) (6431-327)	-	-	5,000	5,000	순증
수소융합혁신기술 개발(R&D) (6431-331)	-	-	4,000	4,000	순증
Net-zero 구현 초격차 태양전지 개발(R&D) (6431-333)	-	-	5,000	5,000	순증
청정수소원천기술 밸류업(R&D) (6431-334)	-	-	4,500	4,500	순증
AI기반무탄소에너지활용화학기술개발(R&D) (6431-336)	-	-	3,400	3,400	순증

세부사업명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토양기반기후회복력진단및강화기술개발(R&D) (6431-337)	-	-	1,625	1,625	순증
CO2동시포집-전환(RCC)융합기술개발사업(R&D) (6431-338)	-	-	4,500	4,500	순증
H2GATHER(R&D) (6431-339)	*(4,025)	*(4,025)	5,055	5,055	순증
글로벌 CLEAN(R&D) (6431-340)	*(4,025)	*(4,025)	5,366	5,366	순증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사업(R&D) (6431-341)	*(700)	*(700)	7,000	7,000	순증
민관합작 차세대원자로 개발 프로젝트(R&D) (6431-342)	*(7,500)	*(7,500)	6,716	6,716	순증

자료: 기획재정부

*2026년부터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된 사업

< 검토의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과제 일부가 법령상 규정된 협약체결기한을 경과하여 협약이 체결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연구수행기간 확보를 위해 조속히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선정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 해당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219]. 또한, 동법 시행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정평가 결과를 통보한

219)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를 거쳐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성격을 고려하여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2.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3.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지역적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4.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한다.
1.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을 포함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의무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의무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220].

그런데 기후대응기금 소관 사업 중 과학기술연구개발 분야 사업의 과제별 평가결과 통보일과 협약체결일시를 살펴보면, 일부 과제가 평가결과 통보 후 30일을 경과하여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남.

[평가결과통보 30일 경과 협약체결 과제 현황]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과제명	평가결과통보일	협약체결일	과제수행기간
민관합작 차세대원자로 개발 프로젝트(R&D)	차세대 원자력 정책센터	차세대 원자력 정책센터	2024-04-30	2024-06-25	2024-04-01~ 2027-12-31
무탄소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R&D)	H2NEXTROUND	차세대 고효율 음이온교환막 수전해 원천기술개발	2024-07-31	2024-09-23	2024-07-01~ 2029-12-31
H2GATHER (R&D)	H2GATHER	AEMWE 내구성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기술 개발	2025-04-30	2025-06-11	2025-04-01~ 2029-12-31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처럼 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 후 협약체결까지 시간이 지연된 것은 과제 내용 및 참여자 등에 일부 수정·보완 사항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임. 가령 「민관합작 차세대 원자로 개발 프로젝트(R&D)」의 내역사업인 '차세대 원자력 정책센터'의 경우 2024년 4월 30일 평가결과가 통보되었으나 실제 협약은 6월 25일에 체결되었는데, 이는 당초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원자력연구원 외에 산·학·연 참여 주체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한이 소요되었기 때문임.

다만 이처럼 협약체결을 위한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에는 실질적인 연구가 수행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협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실질적인 연구수행기간에 비해 연구개발출연금이 과지급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실질적인 연구수행기간 확보를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20)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협약(이하 "연구개발과제협약"이라 한다)을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한다.

위해 법령상 기한 내에 조속히 협약체결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협약체결이 3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 차년도 연구개발출연금 예산을 일정 수준 감액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가데이터처 소관

가. 개요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26년 국가데이터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6억 8,200만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300만원(2.9%) 증가하였음.

이는 고정자산매각대 수입에서 4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에서 9,200만원 증액, 수입대체경비 수입에서 1,500만원 증액을 반영한 결과임.

[2026년 국가데이터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본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 감(B-A)		비 고
			금 액	%	
합 계	3,579	3,682	103	2.9	
○ 재산수입	2	2	-	-	· 기관명의 통장 이자
○ 경상이전수입	162	162	-	-	· 과년도 과지급금 환수, 과태료
○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2,191	2,284	92	4.2	· 가계금융복지조사 분담금 · 통계간행물 판매수입 ·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등
○ 수입대체경비수입	1,151	1,166	15	1.3	· 통계교육 수입대체경비 ·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 고정자산매각대	72	68	△4	△5.6	· 불용 관용차량 매각 등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26년도 국가데이터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4,547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9.2%(1,080억 8,700만원) 감소하였음.

주요사업비는 전년 예산 대비 28.9% 감액한 2,773억 5,800만원이며, 프로그램 단위로 보았을 때,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은 5년 주기의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 완료 소요분 반영으로 36.8% 감소한 1,940억 3,500만원이 편성됨. 통계행정지원은 개도국 양자 통계지원(ODA) 사업 등으로 2.8% 감소한 178억 9,300만원이 편성됨.

[2026년 국가데이터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B-A)	
			금 액	%
합 계	562,765	454,678	△108,087	△19.2
○ 인 건 비	155,020	159,152	4,132	2.7
○ 기 본 경 비	17,653	18,168	515	2.9
○ 주 요 사 업 비	390,092	277,358	△112,734	△28.9
- 통계제도정비 및 통계교육	16,745	17,712	967	5.8
- 통계정보확충 및 서비스체계 개선	46,531	46,154	△377	△0.8
-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307,040	194,035	△113,005	△36.8
- 성과중심 책임운영기관운영	1,376	1,564	188	13.7
- 통계행정지원	18,400	17,893	△507	△2.8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026년도 국가데이터처 소관 예산안 사업비 중 신규 세부사업은 없으며, 20억원 이상이면서 2025년 본예산 대비 2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4개 세부사업임.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경제규모를 파악하는 5년 주기의 경제총조사 사업(662억 5,600만원), 247개 기관, 453종의 국가승인통계 생산시스템을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으로 운영 전환하고 신규 확대하기 위한 나라통계시스템구축(정보화) 사업(113억 200만원), 제66차 ISI 세계통계대회 준비를 위해 국제통계협력강화 사업(31억 5,300만원) 등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26년 국가데이터처 주요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B-A)	
			금 액	%
나라통계시스템구축(정보화)	8,768	11,302	2,534	28.9
경제총조사	1,427	66,256	64,829	4,543.0
국제통계협력강화	2,315	3,153	838	36.2
개도국 다자 통계지원(ODA)	2,812	3,690	878	31.2

나. 검토의견

(1) 장애인 의무고용율 제고 노력 필요

(총괄)

< 현 황 >

국가데이터처의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7011-251)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 도서관 및 전시관 운영 등의 예산을 집행관리하는 사업임. 2026년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7011-251)에 공공요금및제세(220-02) 예산을 전년 대비 2,600만원 증가한 114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된 예산은 장애인 고용부담금(공무원 부문)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21]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시행 중에 있음.

---

2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 납부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1조(같은 조 제1항제6호 및 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42조(같은 조 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으로, "의무고용률"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로,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1.7.20.>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위: %)

구 분		2019-2021	2022-2023	202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4	3.6	3.8
	비공무원	3.4	3.6	3.8
공공기관		3.4	3.6	3.8
민간기관		3.1	3.1	3.1

< 검토의견 >

국가데이터처는 공무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예산 소요에 맞게 적정 규모로 편성하고, 장기적으로는 기관 차원의 장애인고용율 목표를 설정하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가데이터처의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보면, 공무원의 경우 2023년까지 법정비율을 준수하였으나 2024년에는 의무고용인원(83명)을 2명 미달하여 법정비율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2024년 의무고용비율 미달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2025년에 1,645만원 납부하였음.[222] 비공무원의 경우는 2024년 의무고용비율 미달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2억 4,114만원 납부하였는데, 최근 5년간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집행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국가데이터처 장애인고용률 현황(2021-2025)]

(단위: %, 천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9
공무원	고용율	4.0	3.9	3.9	**3.7**	**3.2**
	고용부담금	-	-	-	16,452	95,454
비공무원	고용율	**3.08**	**3.05**	**3.21**	**2.89**	**2.90**
	고용부담금	57,982	137,099	98,974	241,141	168,585

자료: 국가데이터처

222)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금년 실적을 익년에 집행

국가데이터처는 2026년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7011-251) 공공요금및제세(220-02)[223]에 신규로 장애인 고용부담금(공무원)을 2,500만원 편성하였는데, 2024년 의무고용 미달로 2025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 발생에 따른 예산소요를 2026년 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보임.

한편, 2026년에 납부해야 하는 공무원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025년 9월까지 누적된 금액이 9,545만원이며, 12월말까지 합산하면 납부해야 할 부담금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6년 예산안에는 2,500만원만 편성되어 있어 집행상의 문제가 예상됨.

[2026년 국가데이터처 장애인 고용부담금 편성내역(각목명세서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공공요금및제세(220-02)	87,615	113,566
- 기관운영	2,045	966
- 전화료	44,880	44,880
- 우편요금	30,000	30,000
- 사회보험 EDI 사용료	180	180
- 유선방송료	720	720
- 공용차량 관리	5,300	4,800
- 공무원 책임보험 및 재정보증보험	3,500	6,000
- 미술품 보험료	300	300
- 한국도서관협회 연회비	390	390
- 한국전문도서관협회 연회비	300	330
- 장애인 고용부담금(공무원 부문)	-	25,000

자료: 국가데이터처

한편,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있는데,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는 실·국별 기본경비 예산의 공공요금및제세(220-02) 또는 세부사업별 공공요금및제세(220-02) 항목에서 실·국별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223)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p.226)에 따르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공공요금및제세(210-02)로 편성

통계정책국과 통계서비스정책관의 경우에는 매년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적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2021년 이후 매년 기본경비의 일반수용비(210-01)에서 공공요금및제세(220-02)로 세목조정하여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2026년 예산 집행시에도 이러한 관행이 반복될 것으로 보임.

국가데이터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비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율 목표 설정 등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적정 소요를 반영한 예산편성을 통해 부적절한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1-2025년 통계정책국 및 통계서비스정책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통계정책국			통계서비스정책관		
	부담금	세목조정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집행액	부담금	세목조정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집행액
2025	7	7	7	11	11	11
2024	5	5	5	5	5	5
2023	4	4	4	5	5	5
2022	2	2	2	3	3	3
2021	1	1	1	1	1	1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집행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2021	2022	2023	2024	2025
직속부서	448	946	2,241	2,470	4,840
기획조정관	79	203	630	366	2,620
통계정책국	**699**	**1,959**	**4,027**	**4,512**	**7,355**
통계데이터허브국	-	10,151	9,894	7,785	9,677
통계서비스정책관	**1,121**	**3,327**	**5,462**	**5,305**	**10,527**
경제통계국	4,765	16,510	22,561	18,569	30,399
경제동향통계심의관	778	1,892	3,817	3,323	4,839
사회통계국	1,603	10,979	14,286	12,532	24,317
조사관리국	2.949	5,145	7,337	13,348	31,691
통계인재개발원	1,529	3,902	7,178	6,373	7,258
국가통계연구원	903	1,841	3,712	3,293	3,629
경인지방통계청	-	-	2,342	-	26,613
동북지방통계청	-	-	4,614	-	2,419
호남지방통계청	-	-	25,032	-	15,726
동남지방통계청	3,948	-	10,936	15,787	36,290
충청지방통계청	-	-	-	-	13,306
합 계	16,170	57,982	137,099	98,974	241,141

자료: 국가데이터처

(2) 해외자료 번역 관련 예산 감액 필요 (총괄)

<현 황>

「국가통계정책추진 사업」(1031-301)은 국가통계의 신뢰도와 일관성 제고를 위한 표준분류 등 통계작성 기준을 설정·제공하고 통계의 전반적 과정에 대한 품질진단 및 컨설팅을 수행하는 한편, 통계작성 인프라가 부족한 기관의 통계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경제동향작성 사업」(3031-302)은 서비스업동향조사, 소비자물가조사, 온라인쇼핑동향조사 등 경제동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이며, 「통계정책국 기본경비 사업」(7011-253)은 통계정책국의 기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각종 국가통계 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 국가통계위원회 운영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음.

「국가통계정책추진 사업」의 내역사업인 「통계기준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1억 8,300만원 감소한 28억 300만원이 편성되었고, 「경제동향작성 사업」의 내역사업인 「소비자물가조사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1억 6,400만원 감소한 2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통계정책국 기본경비」의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1,000만원 증가한 3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국가통계정책추진 사업 등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세목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국가통계정책추진 (1031-301)	6,673	6,673	6,790	117	1.8%
-통계기준	2,986	2,986	2,803	△183	△6.1%
경제동향작성 (3031-302)	735	735	611	△124	△16.9%
-소비자물가조사	403	403	239	△164	△40.7%
통계정책국 기본경비 (7011-253)	341	341	351	10	2.9%

자료: 국가데이터처

<검토의견>

국가데이터처는 매년 해외자료 번역을 위해 편성한 예산을 해외자료 번역 외에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거나 불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국가데이터처는 다양한 목적으로 여러 사업에 해외자료 번역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2026년에는 「국가통계정책추진 사업」, 「경제동향작성 사업」, 「통계정책국 기본경비」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1억 543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2024년부터 「국가통계정책추진 사업」의 내역사업인 「통계기준 사업」에 통계기준 설정 관련 외국자료 번역 예산 140만원, 산업분류 관련 외국자료 번역 예산 6,060만원, 사회분류 외국자료 번역예산 3,000만원, 보건분류 해외수집자료 번역 예산 720만원 등 총 9,9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각국의 물가지수 작성방법 등의 번역을 위하여 「경제동향작성 사업」의 내역사업인 「소비자물가조사 사업」에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통계정책국 기본경비 사업」에 통계조정제도 외국자료 번역·인쇄 예산 323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도 해외자료 번역 관련 예산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총 1억 220만원의 예산 중 8,8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이 중 예산의 편성목적에 부합하는 집행은 전무함.

국가데이터처는 2024년 번역을 계획했던 자료의 출간 지연 등을 이유로 「통계기준 사업」 내 해외자료 번역예산 9,920만원 중 5,130만원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224] 개정에 따른 간행물 발간비용으로 활용하였고 2,800만원은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225] 해설서 및 항목분류표의 인쇄비로 집행하였으며, 78만원은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관련 한글자료의 번역비로 사용하여 사실상 해외자료 번역을 수행하지 않았음.

또한, 「소비자물가조사 사업」에 'OECD-PPP 매뉴얼 및 각국 물가지수 작성방법 번역료'로 편성한 300만원의 예산을 집세조사 홍보물품(안내 스티커 등)의 구입비로 집행하였음.[226]

---

224)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비교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국가데이터처는 2024년 1월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을 고시하고 202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225)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직업분야 통계를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하기 위한 분류체계로, 국가데이터처는 2024년 7월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을 고시하고 202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226) 참고로 국가데이터처는 「경제총조사 사업」에 2024년에는 800만원, 2025년에는 750만원의 해외자료 번역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4년에는 392만원을 해외출장 경비로 사용하였고 2025년에는 집행내역이 없음. 위 3개 사업과 동일하게 사실상 해외자료 번역을 수행하지 않았으나, 2026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

[2024년도 사업별 해외자료 번역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만원, %)

연도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		편성	집행 (해외자료 번역 관련)	비고
2024년	국가통계정책 추진 사업 중 통계기준사업	통계기준 설정	140	-	미집행
		산업분류	6,060	5,130 (-)	경제분류 관련 해외자료 출간 지연으로 인쇄비 대체집행
		사회분류	3,000	2,878 (-)	8차 표준직업분류 개정에 따른 해설서 및 항목분류표 인쇄비 및 한글자료 번역 비용으로 대체 집행
		보건분류	720	492 (-)	인쇄비 대체 집행
	경제동향작성 사업 중 소비자물가조사 사업		300	300 (-)	집세조사 홍보 물품(안내 스티커 등) 구입
	계		**10,220**	8,800 (-)	**해외자료 번역 관련 집행률: 0%**

자료: 국가데이터처

한편, 2025년의 경우에는 10월 말 현재까지 3개 사업의 해외자료 번역 관련 예산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억 543만원 중 3,643만원을 연내 집행할 예정이지만 이 중 해외자료 번역과 관련한 비용은 1,623만원에 불과함.

국가데이터처는 2024년과 유사하게 사회분류 해외자료 번역 예산 3,000만원 중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에 따른 간행물 발간비용으로 1,30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200만원은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영문 번역을 위해 집행할 계획임.

또한, 경제분류 해외자료 번역 예산 중 800만원은 유럽표준산업분류 개정판 해설서 번역을 위해 집행할 계획이고, 보건분류 해외수집자료 번역 예산 720만원은 질병사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227] 등의 인쇄비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되어 있지 않아 제외하였음.

227)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의무기록자료, 사망원인통계조사 등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모든 형태의 보건 및 인구동태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질병 및 기타

[2025년도 해외자료 번역 관련 예산 편성액 및 집행계획 현황]

(단위: 만원, %)

연도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		편성액	집행계획 (해외자료 번역 관련)	비고
2025년	국가통계정책 추진 사업 중 통계기준사업	통계기준 설정	140	-	미집행
		산업분류	6,060	800 (800)	경제분류 관련 해외자료 출간 지연으로 일부 집행
		사회분류	3,000	1,500 (-)	8차 표준직업분류 개정에 따른 이용지침서 발간비로 대체 집행
		보건분류	720	720 (-)	질병사인 항목분류표 인쇄비로 대체 집행 예정
	경제동향작성 사업 중 소비자물가조사 사업		300	300 (300)	집행예정(11월)
	통계정책국 기본경비 사업		323	323 (323)	집행예정
	계		**10,543**	3,643 (1,423)	**해외자료 번역 관련 집행률(예정): 15.39%**

주: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에는 각종 표준분류 개정에 따라 대규모 인쇄비용이 필요하여 번역을 위해 편성한 예산을 활용하였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예산의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일 뿐만 아니라 3대 표준분류[228]는 5년 주기로 계속해서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표준분류 개정에 따른 인쇄비 소요는 예산 편성 시부터 고려하여 반영했어야 할 사항으로 보임.

2025년도 해외자료 번역 관련 예산이 3분기 현재까지 전혀 집행되지 않은 점,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2024년도 및 2025년도

보건문제를 분류하는데 이용하고 있음. 국가데이터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2025년 7월 고시하고 적용 준비 과정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228)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 및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와 유사하게 번역 관련 예산이 실제로는 인쇄비용 등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해외자료 번역 관련 예산 역시 예년과 같이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어 보임.

국가데이터처는 매년 해외자료 번역 소요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일반수용비를 편성하고 있고 이를 인쇄비, 홍보비 등 다른 용도로 집행하거나 전액 불용하고 있으므로 2026년에 반드시 번역에 착수할 필요가 있는 산업분류 번역 예산(6,060만원)을 제외한 해외자료 번역 관련 예산(4,483만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음.

(3) 통계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의 이러닝 콘텐츠 개발 필요(통계교육지원, 통계인재개발원)

< 현 황 >

「통계교육지원」은 통계청, 통계작성기관 등 통계인력의 통계전문역량 향상 교육 및 미래세대 통계 소양 강화를 위한 학생 실용 통계교육 등 통계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임. 2026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2억 3,300만원이 증액된 21억 4,800만원임.

「통계교육지원」의 내역사업인 「이러닝 교육」의 2026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2억 5,200만원이 증액된 5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통계교육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통계교육지원(1032-304)	1,915	2,148	233	12.2
- 교육과정 운영	864	800	△64	△7.4
- 이러닝 교육	**294**	**546**	**252**	**85.7**
- 통계교육활성화	343	343	-	-
- 전산시스템 운영	414	459	45	10.9

< 검토의견 >

국가데이터처의 이러닝 콘텐츠는 기존 공공·민간 교육과 중복되는 기초 수준의 내용이 많아 차별성과 통계 전문성과의 연계가 부족하며, 최근 수료 인원의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국가데이터처 고유의 통계 생산·분석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실무 중심의 전문 교육 콘텐츠 개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가데이터처는 그간 통계 및 직무 지침서를 중심으로 한 교육 콘텐츠 개발에 매년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 왔음.

[2022년~2025년 이러닝 콘텐츠 개발]

(단위: 백만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과정수 (차시수)	예산	과정수 (차시수)	예산	과정수 (차시수)	예산	과정수 (차시수)	예산
11(99)	270	11(95)	270	16(127)	270	17(130)	270

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러나, 이러한 콘텐츠 중 일부는 공공 및 민간 교육 플랫폼에서 이미 유사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콘텐츠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차별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음.

[국가데이터처 콘텐츠 개발 현황]

2022년	2023년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가계동향조사 가구표본관리 ◦재미있는 실용통계 ◦데이터 전처리 ◦직장내 소통강화 대화센스 ◦온라인쇼핑동향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활용 ◦R 기초 ◦R을 활용한 통계분석 ◦서비스업동향조사 ◦소비자물가조사 ◦내게 필요한 통계패키지 ◦R을 활용한 시각화	◦국가통계와 정책 ◦e-나라지표 업무관리시스템 담당자 교육 ◦Stata 기본 이해 ◦데이터사이언스 분석 사례 ◦미리 배우는 데이터사이언스 ◦SGIS 플러스 활용 ◦통계업무 필수 지식 ◦농가경제조사 ◦통계기초 및 활용 ◦100세 시대, 평생 직업 만들기 ◦누구나 따라하는 디자인싱킹

2024년	2025년
◦데이터사이언스를 위한 수학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 작성과 활용 ◦통계법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 ◦건설경기동향조사 ◦광업 · 제조업동향조사 ◦기계수주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인구주택총조사의 이해 ◦인구주택총조사의 이해(영문) ◦시계열자료의 분석 ◦MDIS 활용 ◦노코딩으로 배우는 머신러닝 ◦통계 교육용 공학도구 ◦통그라미 활용 ◦챗GPT를 이용한 보고서 쓰기* ◦지역통계와 분석 사례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집세조사 가구표본관리 ◦대한민국 통계시스템 소개(영문) ◦은퇴설계 ◦인구동향조사 및 국내인구이동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 사례집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조사 전문가 되기 ◦통계품질관리 ◦지역정책과 통계활용(경제편) ◦지역정책과 통계활용(사회편) ◦표본이론 기초 ◦표본학습 기초 ◦회귀분석의 이해와 사례 ◦통계패키지 학습을 위한 필수 통계지식 ◦SPSS 초급 통계분석 ◦SPSS 중급 통계분석 ◦파이썬 활용 AI 리터러시 맛보기 ◦인구동향조사 바로알기

자료: 국가데이터처

예를 들어, 2023년 개발된 ‘누구나 따라하는 디자인싱킹’, ‘100세 시대, 평생 직업 만들기’, 2024년의 ‘노코딩으로 배우는 머신러닝’, ‘챗GPT를 이용한 보고서 쓰기’, 2025년 예정된 ‘은퇴설계’, ‘파이썬 활용 AI 리터러시 맛보기’ 등은 공공 부문은 물론, 민간 교육 플랫폼에서도 손쉽게 수강할 수 있는 콘텐츠와 크게 다르지 않음.

이처럼 차별성이 낮고 범용적인 주제를 반복적으로 개발하는 대신, 민간 및 기존 공공 교육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이미 구축된 우수 콘텐츠를 활용하고, 국가데이터처의 실무와 연계된 특화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을 것임.

[최근 3개년 이러닝 수료 현황]

(단위: 명)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과정수	수료 인원	과정당 인원	과정수	수료 인원	과정당 인원	과정수	수료 인원	과정당 인원
실적	161	155,752	967	161	164,204	1,020	129	146,975	1,139

자료: 국가데이터처

한편, 최근 3년간 국가데이터처 이러닝 교육 과정의 수료 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에는 15만 5,572명, 2023년에는 16만 4,204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4년에는 14만

6,975명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대해 국가데이터처는 노후화된 교육 과정의 정비 및 폐지로 인해 전체 과정 수와 수료 인원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으나, 과정당 수료 인원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이 수료 인원에는 실제 통계 업무 전문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직장 내 소통강화 대화센스', '은퇴설계', '스트레스 관리 교육' 등의 일반소양교육은 물론, '폭력예방교육', '성인지교육' 등 법정의무교육 과정까지 포함되어 있어, 통계전문교육의 실질적인 수요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러한 일반소양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을 제외한 실질적인 통계전문교육 수료 인원은 2022년 12만 6,323명, 2023년 11만 9,252명, 2024년 11만 980명으로 매년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통계직무와 관련된 실무 교육 콘텐츠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함.

따라서, 국가데이터처는 이러닝 콘텐츠를 통계 통계전문교육, 법정의무교육, 일반소양교육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통계전문교육 부문의 다양화와 심화 교육 과정 확대를 통해 통계인력의 실무 역량 강화와 미래형 인재 양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의 전면적인 재정비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가데이터처는 학습자가 자가주도적으로 AI 기초 역량 습득을 돕기 위해 2026년에 새로운 이러닝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해당 콘텐츠는 'AI 기초소양', 'AI 활용 방법론', 'AI 프로그래밍',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등 총 4개 영역으로 구성될 예정임.

[AI 이러닝 학습 콘텐츠 신규 개발]

◦ 기초소양(3개): AI 기초개념 이해, AI 학습을 위한 수학 기초, AI 활용을 위한 통계 기초
◦ 활용방법론(3개): AI 알고리즘 이론 기초, AI 머신러닝 기초, AI 딥러닝 기초
◦ 프로그래밍(2개) : AI 프로그래밍 기초, AI 프로그래밍 고급
◦ AI 활용 데이터 분석(2개): 오픈소스 LLM&GPT API 이해 및 사용,
RAG 기술을 통한 행정문서·데이터 연계 분석

주요 교육 항목은 ‘AI 기초개념 이해’, ‘AI 학습을 위한 수학 기초’, ‘AI 활용을 위한 통계 기초’에서부터 ‘머신러닝 및 딥러닝 기초’, ‘LLM 및 GPT API 활용’, ‘RAG 기술을 이용한 통계 데이터 분석’ 등 비교적 폭넓은 주제를 포괄하고 있음.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통계 작성 및 활용 중심의 차별화된 AI 활용 교육으로서, 통계와 데이터를 핵심으로 AI의 기본 개념과 로직을 정확히 학습하고 이를 통계자료의 처리·분석 등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 AI·통계 전문 교육과정을 개발할 예정에 있음.

그러나, 전체적인 콘텐츠 구성은 AI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다루어지는 기초 개념과 기술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실제로 상당수의 주제는 이미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다양한 교육 플랫폼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범용 콘텐츠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음.

정부는 최근 AI 인재 양성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공교육 내 AI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고, 이를 위해 디지털새싹[229], 교사 및 학교 연수, 디지털 배움터, 지방자치단체 주관 정보화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AI 관련 교육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임.

특히,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나라배움터’에는 이미 ‘디지털 트렌드 및 기술’, ‘데이터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등 AI 개념 및 활용 사례를 주제로 한 강좌가 다수 개설되어 있으며,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수강할 수 있음.

또한, K-MOOC[230]와 같은 대규모 공개강좌 플랫폼에서는 ‘AI를 위한 수학 기초’, ‘인공지능 개론’, ‘비전공자를 위한 AI 개념’ 등의 강의가 수년간 운영되고 있어, 기초 수준의 AI 교육 수요는 충분히 대응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데이터처가 개발하려는 이러닝 콘텐츠는 실질적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콘텐츠와의 중복성이 높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국가데이터처 고유의 역할이나 통계교육 전문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내용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

229)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22년부터 학생들이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 교육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디지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새싹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

230)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수강 인원의 제한 없이(Massive) 누구나(Open) 웹 기반(Online)으로 수강할 수 있는 강좌(Course)인 무크(MOOC)의 한국형 모델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지식공유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음.

특히 ‘AI 기초개념 이해’, ‘머신러닝 기초’, ‘AI 프로그래밍 기초’ 등은 국가데이터처 고유의 역할과 연계된 교육 내용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나 민간 교육기관에서 이미 일반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주제에 해당하므로, 국가데이터처가 별도로 제작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더불어, AI 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콘텐츠의 유효기간이 짧고, 그에 따른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시의성과 독창성이 부족한 콘텐츠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정책 효율성과 예산 집행의 측면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무엇보다도, 콘텐츠의 구성에서 국가데이터처 본연의 기능인 ‘공공 통계의 생산 및 활용’과의 명확한 연결 고리가 부족하다는 점인데, 일부 주제인 ‘LLM API 활용’이나 ‘RAG 기술을 통한 통계 데이터 분석’은 비교적 통계 실무와의 연관성이 높은 편이지만, 전체 구성 중 일부에 해당하며, 나머지 대부분은 일반적인 AI 입문 교육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국가데이터처가 제작하는 교육 콘텐츠로서의 정체성과 차별성이 약한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향후 국가데이터처가 개발할 AI 교육 콘텐츠는 단순한 개념 소개나 기술 입문 수준을 넘어서, 실제 통계 생산·분석 과정에 AI 기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 중심의 사례 기반 교육 콘텐츠로 전환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교육 내용은 단순 이해 중심에서 벗어나, 국가데이터처 보유의 행정자료나 공공 오픈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실습 중심의 구성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임.

(4) 기획간행물 발간사업의 체계적 기준 마련 필요(통계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 통계서비스정책관)

< 현 황 >

「통계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은 통계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 사업은 국내외 통계자료를 수집·편집하여 정기·기획 간행물을 발간·배포하고 KOSIS 온라인 서비스 및 위탁판매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며, 영문 간행물과 청소년용 교육 간행물을 발간하여 국민의 통계 이해도 제고와 국제사회 홍보를 강화하는 사업임. 2026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6,800만원이 감액된 6억 9,600만원임.

「통계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의 내역사업인 「통계종합간행물 발간 및 통계자료 DB수록」의 2026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6,800만원이 감액된 6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통계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통계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 (2031-301)	764	696	△68	12.2
- 정기간행물 인쇄	41	41	-	-
- 통계종합간행물 발간 및 통계자료 DB수록	**721**	**653**	**△68**	**△9.4**
- 자료수집 출장	1	1	-	-
- 업무협의	1	1	-	-

< 검토의견 >

기획간행물 발간 사업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통계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대상 선정의 체계성이 부족하고 내용의 중복성과 질적인 한계 등이 있으므로 향후 발간 목적과 대상층에 대한 명확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국가데이터처는 통계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매년 일반 국민, 초·중·고등학생, 외국인 등 다양한 대상층을 고려한 기획간행물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음.

[최근 10년간 기획간행물 발간 현황]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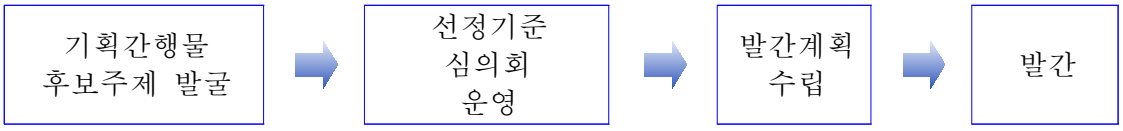
연도	계약일	제목	출판사	대상	목적	예산액	집행액	계약방법
2024	'24.12.05.	궁금하면 통계클릭	한국통계진흥원(티라티피에스)	일반인	통계를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	40,000	40,000	수의
2023	'23.08.16.	Explore Korea through Statistics	예감기획	일반인	통계를 활용한 한국의 경제·사회에 대한 이해도 제고	25,000	25,000	수의
2022	'22.08.25.	통계속의 재미있는 세상이야기(3차개정)	소프트하우스코리아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우리사회의 문제를 통계를 통해 인식하고 이해,·해결	25,000	24,000	수의
2021	'21.06.25.	통계로 떠나는 세계여행	김영사	초·중등학생	세계 여러나라의 통계 활용사례 학습	25,000	25,000	수의
2020	'20.09.30.	Explore Korea through Statistics	예감기획	일반인	통계를 활용한 한국의 경제·사회에 대한 이해도 제고	26,000	25,850	수의
2019	'19.05.24.	역사에 숨은 통계 이야기	김영사	중·고등학생	역사 속 재미있는 통계이야기 소개	25,000	24,786	수의
2018	'18.09.07.	Explore Korea through Statistics	예감기획	일반인	통계를 활용한 한국의 경제·사회에 대한 이해도 제고	31,000	25,960	수의

연도	계약일	제목	출판사	대상	목적	예산액	집행액	계약방법
2017	'17.05.22.	우리는 통계삼총사	주니어 김영사	초등학생	통계를 잘 활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과서	20,000	20,000	수의
2016	'16.08.11.	통계와 함께해요 빅데이터	예감기획	초·중등 학생	빅데이터의 개념과 통계활용성 학습 및 문제해결능력 향상	38,000	37,950	수의
2015	'15.04.02.	통계로 본 광복 70년 한국사회의 변화	이화	일반인	광복 70주년 기념 한국사회의 변화를 통계적으로 구성	45,000	43,714	수의
	'15.01.07.	어린이를 위한 통계란 무엇인가	김영사	초등학생	어린이를 위한 스토리텔링을 통한 통계 이야기	30,000	30,000	수의

자료: 국가데이터처

첫째, 기획간행물은 해마다 주제, 대상, 표현 방식이 반복되고 내용도 기존 간행물의 단순 업데이트 수준에 머물러 질적 향상이 제한적이며, 대상 선정 및 기획 과정 역시 투명성과 체계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기획간행물 발간계획 수립 절차]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매년 대상계층과 주제의 다양성을 고려해 간행물 선정 심의회[231]를 통해 발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해당 심의회는 자체적으로 운영되면서도 회의록이나 선정 기준 등이 별도로 관리되지 않아, 주제가 어떤 기준과 과정을 통해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투명한 확인이 어려움.

특히, 'Explore Korea through Statistics' 간행물의 경우, 2004년부터 격년 주기로 발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발간 간격이 불규칙할 뿐만 아니

231) 해당 심의회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로는 통계서비스기획과와 사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간행물 주제를 선정하고, 이후 내부 회의를 통해 이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라 내용 역시 최신 통계 수치의 반영이나 단순한 디자인 변경에 치우쳐져 있어, 내용의 심층성이나 분석적 가치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또한, 해당 간행물이 국제회의, 세계포럼, 학술대회 등 특정 국제행사를 고려한 발간물이라는 점에서, 일반인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른 기획간행물들과는 목적과 대상이 상이함.[232]

[Explore Korea through Statistics 간행물 사용 행사]

연도	제 목	행 사 명
2023	Explore Korea through Statistics	통계청-ESCAP 공동 국제회의 개최 통계청-ILO 국제노동이동통계 워크숍 개최 저출생 고령화 국제 심포지엄 개최
2020	Explore Korea through Statistics	유엔공조 공식통계 국제세미나 개최 통계청-ILO 국제노동이동통계 작성 워크숍
2018	Explore Korea through Statistics	제6차 OECD 세계포럼 통계청 홍보관 배치 유엔공조 고령화통계 티치필스 시티그룹 회의

자료: 국가데이터처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국가데이터처가 기획간행물 발간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대상계층 선정과 기획 방향에 대한 체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2024년 「궁금하면 통계클릭」 기획간행물[233]의 경우에는 2022년 발간된 「통계 속의 재미있는 세상이야기」와 비교해볼 때, 인문·사회·경제 등의 카테고리를 구분하여 내용을 구성하는 방식과 주제가 유사하며, 발간 비용은 1,500만원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량은 오히려 줄었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차별성이 확인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2024년 이전까지는 기획간행물 발간 사업이 독립된 사업으로 별도로 추진되어 왔으나, 2024년에는 해당 기획간행물이 '통계종합간행물 발간 및 통계자료 DB 수록 사업'의 일부로 포함되어 한국통계진흥원과 수의계약을 통해 집행되었음.[234]

232) 2023년 발간된 「Explore Korea through Statistics」 간행물은 총 1,000부가 제작되었으며, 이 중 500부가 국제회의 및 워크숍에서 활용되기 위해 배부되었음. 이는 대부분의 다른 간행물이 통계전시관 관람객, 어린이 통계교실, 초중고 교육 자료로 주로 활용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활용 목적이라는 점에서 해당 간행물은 특정 국제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33) (2024년) 궁금하면 통계클릭: 인구, 경제, 환경, 복지 부문 통계(p.134)
(2022년) 통계속의 재미있는 세상이야기: 사회, 경제, 인문사회, 환경, 복지 통계(p.188)

234) 2024년 각목명세서상 별도 사업으로 '통계종합간행물 발간 및 통계자료 DB수록' 709,000천원, '기획간행

그러나, 각목명세서상 기획간행물 발간은 통계종합간행물 발간 및 통계자료 DB 수록 사업과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간행물 발간 예산이 통계종합간행물 발간 및 통계자료 DB 수록 사업 예산에 포함하여 집행됨으로써, 발간 전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독립적인 관리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및 집행의 투명성 등에 대한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일부 기획간행물은 민간 출판사 명의로 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데이터처 예산으로 집행되었다는 점에서, 국가 예산의 투명성과 적정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최근 10년간 발간 실적을 보면, 국가데이터처 명의로 직접 발간하는 경우와 민간 출판사의 저작물 형태로 제작하는 경우가 혼재되어 있으며, 특히 후자의 경우 독자는 해당 간행물이 국비로 제작된 것인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구조임.

특히, 시중에 나와 있는 간행물에는 '통계청 추천도서'라는 표기만 있을 뿐, 실제로는 국가데이터처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 및 출판사는 순수한 민간업체로 표기되어 있어, 사실상 특정 민간 저작물에 대해 국가데이터처가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도 해석될 수 있음.

이는 「국가재정법」[235]이 명시한 '국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기본원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향후 민간 저작물에 대한 예산 지원의 효과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종합적으로 볼 때, 국가데이터처가 추진해온 기획간행물 발간 사업은 그 취지와 목적에도 불구하고, 대상 선정의 체계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간행물 내용의 중복성 및 질적인 한계 등이 있으므로 향후 발간 목적과 대상층에 대한 명확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물 발간' 40,000천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음.

235) **「국가재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조사요원 채용업무를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하고 조사요원 인건비를 자치단체 경상보조 비목으로 편성할 필요 (경제총조사, 경제통계국)

<현 황>

「경제총조사」 사업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대한 고용, 생산, 경영실태 등의 구조를 동일시점에 동일기준으로 파악하여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 수립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년 주기로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2026년이 총조사를 실시하는 해임.

「경제총조사」사업의 2026년도 일용임금 예산안은 전년 대비 165억 7,800만원 증가한 168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수용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38억 7,700만원 증가한 348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경제총조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세목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경제총조사 (3033-306)	1,427	1,427	66,256	64,829	4,543.0%
-일용임금	255	255	16,833	16,578	6,501.2%
-일반수용비	1,014	1,014	34,891	33,877	3,340.9%

자료: 국가데이터처

<검토의견>

경제총조사의 효율적인 수행과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하여 경제총조사 조사요원의 모집, 채용, 교육훈련 등을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하는 조사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현행 일용임금 및 일반수용비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비목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가데이터처는 각종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기업의 경영계획, 대학 및 연구기관의 산업 분석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경제총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총조사(1995~2004)와 서비스업총조사(1968~2006)를 통합하여 2011년 제1차 경제총조사, 2016년 제2차 경제총조사, 2021년 제3차 경제총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2026년 5월부터 7월까지 제4차 경제총조사(이하 “2026 경제총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6 경제총조사 수행을 위하여 총 15,286명의 조사요원을 채용할 계획인데, 이 중 총관리자 263명, 스마트조사관리자 263명, 조사관리자[236] 2,022명, 도급조사원 9,797명 등 15,040명(98.4%)의 조사요원은 국가데이터처가 아닌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모집절차를 진행하여 채용이 이루어짐.

2026년도 예산안에는 조사요원 15,286명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위해 총 448억 1,2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중 260억 4,900만원은 일반수용비로, 168억 3,300만원은 일용임금으로, 19억 3,000만원은 고용부담금 비목으로 구분됨.

일반수용비 비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도급조사원 및 예비조사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이고, 일용임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본청 내검요원 등 조사요원(도급조사원, 예비조사원 제외)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임.

236) 입력 및 내검 업무를 겸함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채용계획 및 담당업무]

(단위: 명)

채용주체	구분	담당 업무	인원수
기초 지방자치단체	총관리자	- 총조사 담당 공무원 업무 지원 - 업무분장 및 관리자/조사원 관리 총괄	263
	스마트조사 관리자	- 인터넷, 팩스 조사 관리, 내용 검토 - 업무량 증가에 따른 현장 지원	263
	조사관리자	- 조사원 현장조사 지도 및 지원 - 조사원별 조사 진도 파악/관리 등	2,022
	입력 및 내검원	- 조사자료 시스템에 입력 - 시군구별 오류자료 확인/보완	2,022*
	조사지원담당자	- 조사용품 관리 및 배송 지원 - 조사요원 관리지원 및 행정 지원 등	410
	도급조사원	- 사업체 방문 및 조사표 작성	9,797
	예비조사원	- 조사원 유고시 대체 투입	(980)**
	취약지구 도급조사원	- 사업체 조사가 어려운 취약지구별로 현장 조사 인력 추가로 배정	263
	소계		15,040
국가데이터처	프로파일링 조사원	- 대면조사 수준의 통계 품질 확보 - 상시인력으로 사업체 정보 관리	14
	본청 내검요원	- 본청 종합내검 - 전국단위 오류확인 및 입력자료 보완	140
	본청 업무보조원	- 2026 경제총조사 기획업무보조 - 조사용품 관리 및 배송 지원 등	40
	홈페이지 관리 전문요원	- 2026 경제총조사 홈페이지 관리 - 홈페이지 모니터링 - 홈페이지 내용 수정 및 보완 등	2
	통계 분석요원	- 조사항목간 연관 분석 등을 통한 내검규칙 검토/설정	10
	행정자료 분석요원	- 행정자료 및 전국사업체조사자료 연계 및 집계 분석	6
	행정자료 DB 구축요원	- 각종 행정자료 오류확인(누락, 중복 등), - 행정자료 정합성 및 이상치 확인 - 행정자료간 매칭 가능성 및 방법 검토	5
	조사구 요도 수정 및 확인 요원	- 조사용 지도 업데이트 내용 확인 및 검수 - 조사용 지도 출력내용 오류 확인(전수)	11
	광업제조업 업무보조원(본청)	- 본청 내검인원 근무상황 관리지원 - 본청 담당자 업무지원 등	4
	광업제조업 내검요원(본청)	- 광업제조업 관련 본청단위 내검실시 - 자료 이상치 및 정합성 검증	14
	소계		246
총계			15,286

* '입력 및 내검원'은 조사관리자의 조사표 내검업무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연속으로 채용함
** '예비조사원'은 교육 2일만 받은 후 중도포기 등 유고 발생 시 대체 투입(조사인력 수에 미포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인건비 편성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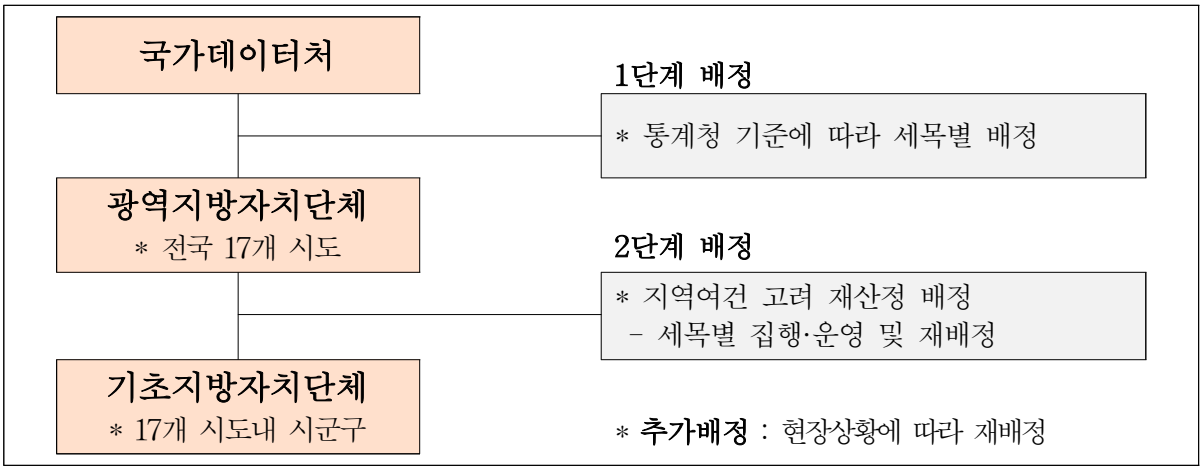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비목	구분	예산
일반수용비(210-01)	도급조사원	25,887
	예비조사원	162
	소계	26,049
일용임금(110-04)	조사요원 (도급조사원, 예비조사원 제외)	16,833
고용부담금(320-09)		1,930
합계	44,812	

자료: 국가데이터처

역대 경제총조사 사업의 인건비 집행방식을 살펴보면, 국가데이터처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에 일용임금 및 일반수용비 예산을 배정하고,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관내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각 지역의 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정된 예산을 재배정하며,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조사요원 모집절차를 거쳐 채용을 진행한 뒤 인건비를 지급하고, 경제총조사 종료 이후 불용액을 교부반납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짐.

[경제총조사 인건비 예산 재배정 방식]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6 경제총조사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고, 2026년 상반기 내로 경제총조사 종합시행계획 및 표본을 확정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별 세부예산 재배정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국가데이터처는 경제총조사 표본 확정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한 이후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일부 조사요원(246명, 1.7%)에 대해서는 국가데이터처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조사요원 인건비 예산을 일용임금 및 일반수용비로 일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조사요원의 모집·채용·교육훈련 등을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계약 및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제총조사 조사요원의 인건비 예산을 일용임금 및 일반수용비가 아닌 자치단체 경상보조 비목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조사요원의 모집·채용·교육훈련 등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이고,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지원은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해당함.

「통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경제총조사 규칙」에 따르면, 통계청장은 총조사의 원활한 작성을 위하여 조사요원의 모집・채용・교육훈련・관리 및 증표 발급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경제총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요원의 모집·채용·교육훈련 등은 국가사무로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고[237], 「지방자치법」에 따라 국가위임사무를 지

---

237) **「통계법」**

제5조의4(총조사의 실시) ① 통계청장은 정책수립과 각종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기본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 주택, 사업체 등에 관한 전수조사(이하 "총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총조사의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통계법 시행령」

제2조의4(총조사의 범위・방법) ①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총조사(이하 "총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1.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인구총조사
2.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주택총조사
3. 사업체의 산업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경제총조사
4. 농가, 임가 및 어가의 농림어업 경영 및 생활의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농림어업총조사

③ 통계청장은 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통계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총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제51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위임・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제2조의4에 따른 총조사 등 각종 통계의 원활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의 설계(조사구, 조사표 및 표본의 설계를 포함한다) 및 개발
2. 통계조사원(통계조사 지도원, 통계조사내용 검토요원을 포함한다)의 모집·채용·교육훈련·관리 및 증표 발급

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경우 이를 위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함.[238]

또한,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2025. 5.)」에 따르면 자치단체보조 사업의 적용대상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둘째, 조사요원 인건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할 경우 국가 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편성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음.

현행 방식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인건비 뿐만 아니라 유류비, 조사용품류 등 구입비, 홍보비 등 다양한 예산을 교부받게 되는데, 교부한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편성목적에 부합한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감

---

3. 통계조사표의 배부·접수·수집 및 제출
4. 통계조사표의 내용검토·확인 및 보완
5. 통계조사자료의 입력·처리 및 제출
6. 통계조사업무의 지도·감독 및 홍보
7. 수집된 자료의 분석이나 그 밖의 통계작성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보급에 관한 권한을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경제총조사 규칙 [2024. 01. 19. 기획재정부령 제1036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총조사"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에서 제3조 각 호의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체의 산업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4. "조사실시기관"이란 제17조에 따라 경제총조사에 관한 통계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조사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경제총조사의 조사표 작성 및 자료수집 업무 등을 수행하는 조사원
나. 조사원을 지도·지원하는 조사관리자
다. 조사원과 조사관리자를 관리·감독하는 총관리자
라. 그 밖에 조사업무를 지원하고 작성된 조사표의 내용을 검토·보완하는 인력

제11조(조사요원) ① 조사실시기관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할 조사요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②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조사요원의 업무를 대신할 사람으로 교체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③ 조사실시기관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사요원에게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해야 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통계청장은 「통계법」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경제총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조사요원의 모집·채용·교육훈련·관리 및 증표 발급
2. 조사표의 배부·접수·수집 및 제출
3. 조사표의 내용 검토·확인 및 보완
4. 조사자료의 입력·처리 및 제출
5. 조사업무의 지도·감독 및 홍보

238) **「지방자치법」**

제158조(경비의 지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다만,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독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조사요원의 채용 및 실제 총조사 수행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업무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음. 국가데이터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시·도 자체 재배정 계획 수립 요청, 불용예상액 및 안전용품 집행내역 파악 요청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관리체계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39]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그 보조사업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보조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자체부담금 등을 구분한 정산보고서 제출의무가 부여되고[240], 중앙관서의 장은 실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보조금을 교부해야 함.[241]

---

23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및 서류를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정산 및 검증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0)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4조 및 [별지 제2호 서식]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양식
24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공고)」**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셋째, 국가데이터처는 대규모 통계조사의 효율적 수행과 투명한 집행을 위해 기획재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집행하고 있는 인건비 예산을 일용임금 또는 일반수용비가 아니라 자치단체 경상보조 비목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따라서 경제총조사의 효율적인 수행과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하여 경제총조사 조사요원의 모집, 채용, 교육훈련 등을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수행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하는 조사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현행 일용임금 및 일반수용비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비목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는「보조금법」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는 그 보조금을 예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기관에 예탁하여 교부되는 보조금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6) ILO 파견에 편성된 예산 감액 필요

(본부인건비·기관운영 기본경비, 기획조정관·운영지원과)

< 현 황 >

국가데이터처의 「본부인건비-총액인건비 사업」(7001-100)은 국가데이터처(본부 및 통계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 보수(봉급 및 수당 등) 지급을 위한 사업이고,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7011-251)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 도서관 및 전시관 운영 등의 예산을 집행·관리하는 사업임.

2026년 「본부인건비-총액인건비 사업」(7001-100) 예산은 623억원 1,300만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7011-251) 예산은 20억원 8,800만원 편성되었음,

[2026년도 본부인건비-총액인건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비목)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부인건비-총액인건비(7001-100)	59,579	62,313	2,734	4.6
- 보수(110-01)	58,591	61,246	2,655	4.5
- 기타직보수(110-02)	621	587	△34	△5.5
- 연가보상비(110-05)	439	480	41	9.3

자료 : 국가데이터처

[2026년도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비목)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기관운영기본경비(7011-251)	2,008	2,088	80	4.0
- 일반수용비(210-01)	491	452	△39	△8.0
- 공공요금및제세(210-02)	88	114	26	30.0
- 임차료(210-07)	195	164	△31	△16.0
- 유류비(210-08)	24	20	△4	△17.0
- 시설장비유지비(210-09)	254	142	△112	△44.0
- 일반용역비(210-14)	268	284	16	6.0
- 관리용역비(210-15)	88	219	131	148.9
- 국내여비(220-01)	276	276	-	-
- 국외업무여비(220-02)	78	82	4	5.0
- 국외교육여비(220-03)	-	-	-	-
- 관서업무추진비(240-02)	140	133	△7	△5.0
- 포상금(310-03)	-	-	-	-
- 기타보전금(310-04)	5	4	△1	△20.0
- 자산취득비(430-01)	104	200	96	92.3

자료 : 국가데이터처

< 검토의견 >

국가데이터처의 국제노동기구(ILO) 파견은 2025년말로 중단될 예정임에도 2026년 예산안에 재외근무자 파견과 관련된 예산(1억 6,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음

국가데이터처는 국제노동기구(ILO)에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국제노동기구(ILO)와 공조하여 DB구축, 국제회의 행사기획, 국제노동이동통계 가이드라인 및 온라인 교육교재 개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행정안전부는 위원회조직으로 자체 채용이 어려운 국제기구[242]에 파견은 허용하되, 국제노동기구(ILO)와 같이 자체 채용이 가능한 국제기구 파견은 중단하도록 하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국제노동기구(ILO) 파견은 2025년말로 중단될 예정임.

국가데이터처는 국제노동기구(ILO) 재외근무자 파견이 2025년말로 중단될 예정임에도 2026년 예산안에 국제노동기구(ILO) 재외근무자 파견과 관련된 예산을 1억 6,200만원 편성하였음.

예산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본부인건비-총액인건비 사업」(7001-100) 보수(110-01)에 재외근무수당 1억 3,400만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7011-251) 임차료(210-07)에 2,400만원, 기타보전금(310-04, 재외근무자 주택임차료)에 400만원 등 총 1억 6,2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예산이므로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음.

[국제노동기구(ILO) 재외근무자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예산	집행	예산	집행(9월말)	예산
재외근무수당*	134	161	147	78	134
주택임차료	55	57	58	48	24
의료보험료	5	2	5	2	4
계	194	220	210	128	162

* 자녀학비보조수당 포함
자료 : 국가데이터처

242) UNESCAP(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등

국세청 소관

가. 개요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26년도 국세청 소관 세입 예산안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46억 500만원(4.9%) 증가한 3,110억 2,500만원임.

2026년도 본예산 대비 경상이전수입은 145억 6,300만원 증액 편성(4.9%)되었고, 가산금은 134억 4,000만원(7.7%), 벌금·몰수금 및 과태료는 40억 4,800만원(△4.5%) 감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국세청 세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일반회계	296,420	296,420	311,025	14,605	4.9

자료: 국세청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26년도 국세청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955억 1,700만원(4.8%) 증가한 2조 995억원임.

이 중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77.8%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2025년도 예산 대비 954억 3,200만원(6.9%) 증액된 1조 4,866억 4,400만원이고, 기본경비는 5억 4,700만원(0.4%) 감액된 1,463억 1,300만원임. 주요사업비는 2025년도 예산 대비 6억 3,200만원(0.1%) 감액된 4,665억원 6,000만원임.

[2026년도 국세청 세출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일반회계	2,004,000	2,004,000	2,099,517	95,517	4.8

자료: 국세청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가) 신규사업

2026년도 국세청 소관 예산안에 신규 반영된 세부사업은 총 2개 사업, 금액은 총 45억 7,300만원 규모임.

[2026년 신규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6년 예산안	주요 내용
< 예산 (2개 사업) >	4,573	
【일반회계(2개)】	4,573	
국제거래 세원관리 지원	1,183	▪ 국제거래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 운영
청사 안전관리 지원	3,390	▪ 세무관서 안전요원 배치를 통한 안정적 청사 환경 조성 및 납세서비스 제고

나) 주요 증액사업

국세청의 2026년도 주요 증액사업[243]은 압류재산공매 사업으로 총 1개임.

'압류재산공매' 사업은 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 매각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여 재정수입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체납자 전수 실태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에 따라 130억 300만원(305.7%)이 증액됨.

[2026년도 국세청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일반회계(1개)】		4,254	4,254	17,257	13,003	305.7
압류재산공매	2232-301	4,254	4,254	17,257	13,003	305.7

243)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된 세부사업

나. 검토의견

(1) 구체적인 요건이나 금액 기준 등이 정해지지 않은 포상금 예산안 편성 부적절(총괄)

< 현 황 >

총액비대상 기본경비는 국세청 각 실국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의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5억 1,700만원 감액(△20.1%)된 20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포상금은 전년 대비 720만원 증액(24.1%)된 3,800만원이 편성되었음.

개인납세국 기본경비의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3억 6,200만원 증액(17.3%)된 22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포상금은 전년 대비 3억 6,200만원 증액(905.0%)된 4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음.

법인납세국 기본경비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5,200만원 증액(13.8%)된 12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포상금 예산안은 2026년에 1억 7,100만원이 신설되었음.

자산과세국 기본경비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2,600만원 증액(17.2%)된 8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포상금 예산안은 2026년에 1억 3,900만원이 신설되었음.

[2026년도 국제조세관리관실·개인납세국·법인납세국·자산과세국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세목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7111-253)	2,576	2,576	2,059	△517	△20.1
- 포상금	29	29	38	7	24.1
개인납세국 기본경비 (7111-255)	1,914	1,914	2,245	331	17.3
- 포상금	40	40	402	362	905.0
법인납세국 기본경비 (7111-256)	1,100	1,100	1,252	152	13.8
- 포상금	-	-	171	171	순증
자산과세국 기본경비 (7111-257)	732	732	858	126	17.2
- 포상금	-	-	139	139	순증

자료: 국세청

< 검토의견 >

포상금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금액 기준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세청은 포상금의 명확한 산출 근거 없이 포상금 예산안을 편성한 문제가 있음.

최근(2025년 3월)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제84조의3[244]이 신설되면서 국세의 부과·징수·송무에 대하여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이하 “국세부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이에 따라 국제조세관리관실, 개인납세국, 법인납세국 및 자산과세국은 2026년 각 기본경비 예산안에 국세부과포상금 예산안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국세청은 이러한 국세부과포상금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금액 기준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산출 근거 없이 예산안을 편성한 문제가 있음.

244)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국세청장은 국세의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한도, 선정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245]은 국세부과포상금의 지급 대상이나 한도만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지급 사유나 지급 금액 등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10월 기준 해당 고시는 제정되지 않은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조세관리관실, 개인납세국, 법인납세국 및 자산과세국은 각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이 동 포상금을 지급받는 것을 가정하고, 단가 72만원을 적용하여 포상금 예산안은 편성하였음.

[2026년도 국세부과포상금 예산안 산출 근거]

구분	산출내역
국제조세관리관실	정원(100명) × 10% × 72만원 = 720만원
개인납세국	정원(5,030명) × 10% × 72만원 = 3억 6,200만원
법인납세국	정원(2,367명) × 10% × 72만원 = 1억 7,100만원
자산과세국	정원(2,503명) × 10% × 72만원 = 1억 3,900만원
합계	6억 7,920만원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이러한 단가 72만원 혹은 80만원은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 금액이나 산정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산출된 문제가 있음.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포상금의 지급 대상을 '국세의 부과·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공로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사유가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정원의 10%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 역시 명확

24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법 제84조의3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 납세자가 위법·부당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세액의 확인 등을 통해 국세의 부과·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
2. 국세에 관한 소송에서 국가 또는 처분청이 승소판결을 받는 데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
② 포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금액: 부과·징수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금액: 소송목적의 값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포상금 지급액은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징수한 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3. 제1항제2호에 따른 소송의 내용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인 경우 등 소송의 성질상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④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기마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한 근거 없이 예산안을 산출한 것이며, 자칫 나눠먹기식 포상금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등 포상금 지급의 적절성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처럼 국세청은 국세부과포상금의 구체적 요건, 금액 등이 정해지지 않아 명확한 산출 근거가 없이 포상금 예산안을 편성한 문제가 있으므로 국세부과포상금에 대한 고시를 우선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음.

(2) 2025년도 예상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감액 필요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고시, 자산과세국)

< 현 황 >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고시」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등의 기준시가와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고시하려는 것임.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2억 1,400만원 증가한 31억원이 편성되었음.

이중 내역사업인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는 상속세,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가액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①전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②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3,000㎡ 또는 100개호 이상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에 대한 거래 시세를 조사하여 기준시가를 고시하려는 것임.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2억 1,400만원 증가한 30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고시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고시 (1133-301)	2,886	2,886	3,100	214	7.4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2,798**	**2,798**	**3,012**	**214**	**7.1**
-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88	88	88	-	-

자료: 국세청

< 검토의견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는 '최근 5년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을 적용하여 예산액을 산출했는데, '2025년도 예상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감액할 필요가 있음.

동 내역사업은 일반연구비(210-01)를 통해 용역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예산액은

‘2025년 예산(27억 9,800만원) × 104.5%(최근 5년간 평균 물량증가율) × 103.3%(최근 5년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로 산출되었음.

그런데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상승률’이 아닌 ‘소비자물가 등락률’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상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별표 5)도 전년도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을 반영함. 예를 들어, 2025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2024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증액됨.

동 사업은 지속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용역계약을 하여 추진되고 있는데,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은 최저임금을 지급받으며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최저임금 상승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따라서, ‘최근 5년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아닌 ‘2025년도 예상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예산액을 증액하는 것이 적절한데,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물가상승률을 2.0%를 예측하고 있으며, 2026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9%로 예측하고 있음.[246] KDI(한국개발연구원)도 2025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0%로 예측하고, 2026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8%로 예측하였음.[247]

[소비자물가 상승률 변동추이]

(단위: %)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상)	2026년 (예상)
소비자물가 상승률	5.1	3.6	2.3	2.0 (국회 예산정책처, KDI)	1.9 (국회예산정책처) 1.8 (KDI)

주) 2025년과 2026년 예상치는 KDI가 전망한 수치임(2025년 8월)
자료: 통계청

2025년도 예상 물가상승률 2.0%를 적용하면 적절한 2026년도 예산액은 29억 8,200만원이므로,[248] 예산액을 3,000만원 감액할 필요가 있음.

246)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2029, 2025년 9월
247) KDI 경제전망(수정), 2025년 8월
248) 예산액 산출식은 ‘2025년 예산(27억 9,800만원) × 104.5%(최근 5년간 평균 물량증가율) × 102.0%(2025년도 예상 물가상승률)’임

(3) 2025년 대리납부 실적을 고려하여 예산안 감액 필요(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개인납세국)

< 현 황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은 B2C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체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에게 대리납부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2억 1,500만원 감액(△15.0%)된 12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1134-300)	1,431	1,431	1,216	△215	△15.0

자료: 국세청

< 검토의견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사업은 2025년 대리납부세액 실적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사업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사에게 그 운영비와 중계비를 보조하는 사업임. 국세청은 2026년 예산안에 신용카드사 운영비 10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24년 대리납부세액 실적에 지급률 90.9%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최근 대리납부세액 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4,800만원을 조정하였음.

[2026년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사업 예산안 산출 근거]

구분	산출내역
카드사 운영비	24년 대리납부세액 1,236억원 × 지급률 0.9% - 예산절감 조정 48백만원 = 1,064백만원
카드사 중계비	16백만원 × 9개 카드사 = 144백만원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2025년 3분기 대리납부 실적을 살펴보면 2025년 3분기 대리납부세액은 총 867억 3,200만원이며 이를 1년으로 환산할 경우 그 금액은 약 1,156억원으로, 2024년 대리납부세액인 1,236억원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대리납부징수액 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3분기	연환산
대리납부세액	437	1,086	1,272	1,236	867.32	1,156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대리납부제도 적용대상인 유흥주점업에 대한 매출이 줄어들었던 2021년부터 2022년까지를 제외하고도 2023년에 비해 2024년에 대리납부세액이 줄어들었으며, 2025년 연환산 징수실적도 2024년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리납부세액 징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볼 여지가 있음. 실제 동 사업은 최근 대리납부세액 징수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2026년 예산안 산출 시 예산절감 조정분 4,800만원이 추가로 감액되었음.

이처럼 최근 3년간 대리납부세액은 감소 추세이며, 2025년의 경우 이미 3분기까지 징수실적이 도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보다 면밀한 예산안 편성을 위해서는 가장 최근 징수실적인 2025년 3분기 징수실적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실제 국세청은 동 사업의 2025년 예산안 편성시에도 당시 기준 가장 최근 실적인 2024년 상반기 대리납부세액 실적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음.

한편, 국세청은 이에 대하여 2025년 3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 최근 수치를 반영하였으므로 예산절감 조정분 4,800만원은 반영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임.

그러나 동 예산절감 조정분은 4,800만원은 최근 대리납부세액 실적의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조정한 것이며, 실제 2025년의 경우 연환산 실적이 2024년에 비해 대리납부세액 실적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26년에 대리납부세액 실적의 감소 추세를 반영할 소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동 사업의 2026년 예산안 중 신용카드사 운영비는 2025년 3분기 대리납부세액 실적인 약 867억 3,200만원을 근거로 산정할 경우 9억 9,300만원[249]이 도출되므로 7,100만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249) 1,156억원 × 지급률 0.9% - 예산절감 조정 48백만원 = 약 993백만원

(4) 과다편성된 금융거래정보 전산조회 이용수수료 감액 필요(조사활동지원, 조사국)

< 현 황 >

「조사활동지원」은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청과 지방청 및 세무서에 분야별 전문조사반을 편성·운영하는데 소요되는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60억 9,200만원 감액(△23.6%)된 196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조사활동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조사활동지원 (2131-302)	25,786	25,786	19,694	△6,092	△23.6

자료: 국세청

< 검토의견 >

금융거래정보 전산조회 이용건수가 실제 집행가능성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되어 이용수수료의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므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음.

금융거래정보 전산조회 이용수수료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융결제원 전용 전산망을 통해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로, '조사활동지원' 사업은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고 금융기관에 그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국세청은 2026년 예산안에 금융거래정보 전산조회 이용수수료로 전년(8,400만원) 대비 2,400만원 감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동 이용수수료의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국세청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전산조회이용 예상건수를 170만건으로 예상하여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조회건수는 2024년 74만건에 불과하여 집행액은 3,700만원으로 집행률이 43.5%에 불과한 등 동 수수료의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문제가 있음.

[최근 3년간 금융거래정보 전산조회 이용 현황]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금융정보 전산조회 이용수수료 관련 예산액(A)	85백만원	85백만원	85백만원
예산편성 시 금융정보 전산조회 이용 예상건수	1,700천건	1,700천건	1,700천건
금융정보 전산조회 실제 이용건수	120천건	500천건	740천건
금융정보 전산조회 이용단가	50원	50원	50원
실제 지급금액 (B)	6백만원	25백만원	37백만원
집행률 (B/A×100)	7.1%	29.4%	43.5%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이처럼 저조한 집행률에 대하여 전산조회를 위한 금융기관의 전산프로그램 개통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예상건수 대비 실제 이용건수가 저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실제 전산조회를 위한 프로그램 개통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2월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개통한 은행이 6개에 불과하였으며, 2023년 10월에 12개 은행이 추가 개통되어 총 18개 은행이 개통하였고, 2024년 11월에 추가로 2개 은행이 동 프로그램을 개통하여 총 20개 은행이 개통한 것으로 나타남.

국세청은 2024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심사 당시 금융기관들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을 개통하는 은행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으나, 2025년 10월 현재에도 동 프로그램을 개통한 은행 수는 20개로 추가적으로 개통한 은행이 없는 상황임.

이처럼 2024년 말부터 2025년 10월 현재까지 전산프로그램을 추가로 개통한 은행이 없으며, 2025년 10월 현재 추가 개통이 예정된 은행도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2026년 금융정보 전산조회 이용건수는 2024년 실적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2024년 동 수수료의 집행 실적이 3,700만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세청이 동 수수료 예산안으로 편성한 2026년 예산안 6,000만원은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2024년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음.

(5)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된 DB 예산의 관리 강화 필요 (국제거래 세원관리 지원, 국제조세관리관실)

< 현 황 >

'국제거래 세원관리 지원' 사업은 기존에 각 세부사업에 분산되어 있던 국제거래분석에 이용되는 데이터베이스(DB) 사용 관련 예산을 이관하여 일원화된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약 내용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안정적 조세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2026년도 예산안에 11억 8,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026년도 국제거래 세원관리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결산	2025		2026 예산안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국제거래 세원관리 지원(2138-300)	-	-	-	1,183	1,183	순증

자료: 국세청

< 질의사항 >

국세청은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된 각 국제거래분석 관련 DB 사용료가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동 세부사업은 기존에 주요사업비(역외탈세대응활동) 및 기본경비(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에 분산되어 있던 국제거래분석에 이용되는 데이터베이스(DB) 사용 관련 예산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이관하여 별도로 편성함으로써 일원화된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약 내용을 철저히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임.

OECD 지침 등 국제규범 및 국내세법은 국제거래 과세기준을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정상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신용평가모형DB, 차입거래DB, 기업데이터, 기업정보서비스를 활용하여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 수준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고검증 등의 세원관리를 하고 있음.

[각 DB별 필요성]

구 분		필요성
신용평가모형 DB		국내기업과 국외 특수관계자 간 지급보증수수료 수취 적정여부 등 검증을 위한 정상가격 산출에 활용
차입거래 DB		국내기업과 국외 특수관계자 간 자금대여에 대해 과세기준이 될 수 있는 정상가격 적정 이자율 결정
기업 데이터	국외기업 DB	내국법인의 해외 관계사 및 국외 제3자 기업 정보를 통한 적절한 비교대상기업 선정
	국내기업 DB	국내상장기업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등 기업공시정보를 통해 기업 분석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
기업정보서비스		국내 제3자 기업의 정보를 통한 적절한 비교대상기업 선정 및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의 분석

자료: 국세청

최근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역외탈세는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한 DB 사용 예산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할 것이나, 기존에 분산된 DB 사용 예산을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DB 사용료가 대폭 증액되었음.

기존 신용평가모형DB, 차입거래DB, 기업데이터, 기업정보서비스 4개 DB 사용료의 2025년도 예산편성액 합은 8억 3,600만원이었으나 이를 통합한 국제거래 세원관리 지원 세부사업의 DB 사용료의 2026년도 예산편성액 합은 기존 대비 3억 4,700만원(41.5% 증)이 증가한 11억 8,300만원임. 최근 3년간 4개 DB 사용료 집행액이 7억 5,400만원~8억 800만원 수준이었음을 고려해 볼 때, 국제거래분석 관련 DB 사용료가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기존 DB 예산 및 2026년도 국제거래 세원관리 지원 세부사업 편성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각 세부사업별 편성내역									⇒	'26년도 국제거래세원관리지원 편성내역(안)		
세부사업명	DB명		'23년도		'24년도		'25년도			DB명		요구액
			편성	집행	편성	집행	편성	집행				
(2132-300) 역외탈세 대응활동	신용평가모형 DB		165	159	104	168	170	157		신용평가모형 DB		353
	차입거래 DB		70	69	-	75	70	70		차입거래 DB		140
(7111-253) 국제조세 관리관실 기본경비	기업 데이터	국외	367	366	367	431	436	421		기업 데이터	국외	530
		국내	77	77	77	-	77	77			국내	77
	기업정보서비스		83	83	83	83	83	83		기업정보서비스		83
합계			762	754	631	757	836	808		합계		1,183

자료: 국세청

국세청에서 제출한 각 DB별 산출근거 및 2025년 대비 증액사유는 아래와 같음.

[각 DB별 산출근거(증액사유)]

(단위: 백만원)

구 분		'25년 편성	2026년도 예산안 산출근거	'26년 요구	증감 (증감률)	2025년 대비 증액사유
신용평가모형 DB		170	단일 단가계약	353	183 (107.6%)	조회수 700건 → 3,000건
차입거래 DB		70	단가 17.5백만원 × 회선(ID) 8개	140	70 (100%)	회선 4개 → 8개 ※ 본청 · 각 지방청 회선 1개씩 배정
기업 데이터	국외기업 DB	436	단가 53백만원 × 회선(ID) 10개	530	94 (21.6%)	회선 8개 → 10개 ※ 본청 · 각 지방청 회선 1개씩 배정, (서울청·중부청 1개씩 추가 배정)
	국내기업 DB	77	단일 단가계약	77	-	(-) ※ 2025년과 동일
기업정보서비스		83	비즈라인 단가 7.4백만원×회선(ID) 10개 + 밸류서치 단가 9백만원×회선(ID) 1개	83	-	
합계		836		1,183	347 (41.5%)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신용평가모형 DB의 경우 2025년 700건이던 조회수를 3,000건으로 4.3배 증가시키기 위하여 1억 8,300만원을 증액(107.6% 증)하여 3억 5,300만원을 편성할 계획임. 그러나 최근 4년간 조회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에 3,000건을 초과한 적이 있긴 하지만, 최근 4년간 조회건수가 연평균 1,801건임을 고려하면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어 보임.[250] 국내기업과 국외 특수관계자 간 지급보증용역 거래를 검증하기 위한 DB 조회수 증대의 필요성은 인정될 것이나, 700건에서 3,000건으로의 대폭적인 상향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신용평가모형DB 계약 대비 조회 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약건수	1,000건	1,000건	900건	800건
실제 조회건수	1,566건	1,313건	3,080건	1,246건

자료: 국세청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계약건수가 많아질수록 건당 단가가 낮아져서[251] 가격협상력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편성하였다는 입장임.

250) 다만, 2024년의 경우 5월에 조회건수 합계가 900건을 넘었고, 이에 대해 DB 제공업체 측으로부터 계약건수 초과 사실을 안내받아 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하였음.(국세청)

251) 업체로부터 제안받은 계약사항이 조회한도 700건(157백만원/건당 224천원), 3,000건(353백만원/건당 118천원), 무제한(525백만원)이었음.(국세청)

(6) 법률 개정을 전제로 편성된 점을 고려하여 심사 필요 (압류재산 공매, 징세법무국)

< 현 황 >

「압류재산 공매」는 체납관리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지출하려는 것임.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130억 300만원 증가한 172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중 내역사업인 「국세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관리단' 조직을 설치·운영하여 체납자 전수 실태확인을 실시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임. 2026년도 예산안에 125억 4,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026년도 압류재산 공매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압류재산 공매 (2232-301)	4,254	4,254	17,257	13,003	305.7
- 공매행정비	2,438	2,438	2,469	31	1.3
- 대위등기비	545	545	514	△31	△5.7
- 은닉재산신고포상금	1,056	1,056	1,088	32	3.0
- 징수포상금	-	-	639	639	순증
- 보호장비	215	215	-	△215	△100.0
- 국세 체납관리단	**-**	**-**	**12,547**	**12,547**	**순증**

자료: 국세청

국세체납관리단은 경기도와 성남시의 지방세 분야 체납관리단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서, 총 3년간('26년~'28년) 모든 체납자('24년 말 기준 133만명)를 1회 이상 방문하여 체납자의 경제상황을 확인하고 유형 분류를 실시할 계획임. 도입 첫해인 내년에는 7개 지방청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국세 체납관리단'을 설치·운영하고, 2·3년차에는 전국 133개 세무서로 확대 운영하여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할 계획임.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 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

하고 생활실태와 납부능력 등을 상세히 확인하여, 체납자를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곤란자, 고의적 납부기피자 등 유형별로 분류함. 그리고 유형에 따라 경제재기 지원, 분납 등 납부안내, 추적조사 등과 같은 후속조치를 실시함.

「국세 체납관리단」은 인건비 86억 5,600만원, 임차료 24억 700만원, 운영비 14억 8,4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국세체납관리단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계정	예산	산출기초
인건비	8,656	500명, 주5일, 1일 6시간, 시간당 최저임금(10,320원), 4대보험 등
임차료	2,407	차량, 사무실, 사무기기 임차료
운영비	1,484	문자발송비용, 홍보비, 소모품비, 근무복, 공과금 등
합계	12,547	

자료: 국세청

< 검토의견 >

「국세 체납관리단」은 「국세징수법」 개정을 전제로 편성된 사업인데, 국세청은 법률 개정을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도록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주의'를 받았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된 국세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12652호, 2025. 9. 3. 제출)의 의결을 전제로 편성된 사업임. 따라서, 동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동 사업은 법적근거가 없어 시행될 수 없으며, 예산액이 전액 불용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52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2(실태조사)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현 행	개 정 안
	아니한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 현황에 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원을 채용하여 그 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에게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사원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국세청은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압류재산 공매」 사업에 대해 ‘국회의 법률 통과를 전제로 한 예산 편성을 지양할 것’이라고 ‘주의’를 받았으며, ‘국세청은 법적근거를 고려하지 못한 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예산을 요구하게 된 과정을 검토한 후 책임자를 주의 조치할 것’이라고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법률 개정을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한 문제가 있음

국세청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압류재산 공매‘ 사업에서 보호장비 구매를 위한 내역사업을 신설하여 바디캠 구입에 6억 2,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바디캠은 몸에 장착하는 개인용 비디오 녹화장치로서 당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한해 규율하고 있어 바디캠 사용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었음. 그리고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 사용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2021. 9. 28. 정부 제출)은 계속 국회에 계류되었고, 결국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의 미비로 국세청은 해당 예산을 전액 불용하였음.

이에 국회에서는 결산 심사 시 시정요구를 의결하였고, 국세청은 ‘2024년(2025년 예산 편성)부터는 법 개정 가능성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법률안 통과를 전제로 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겠다는 조치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였음.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국세청의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11) 법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 지양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지적사항] 국세청은 압류재산공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운영 사업에서 법 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해당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예산이 불용되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함 ○[시정요구사항] 국세청은 향후 국회의 법률 통과를 전제로 한 예산 편성을 지양할 것 ○국세청은 법적근거를 고려하지 못한 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예산을 요구하게 된 과정을 검토한 후 책임자를 주의 조치할 것
시정요구 유 형	주의
조치결과	○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사업 관련 상용근로·인적용역 기타소득 자료 매월 제출 법률안('22.7월 시행)이 상정되어 있어 법률안 통과 시 원할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법률안 미통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24년('25년 예산 편성)부터는 법 개정 가능성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법률안 통과를 전제로 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3년 12월 31일 ○ '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24년예산 편성 - 향후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예산 편성으로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음 ○ 조치완료일 : 2023년 3월 14일
조치상황 ('24.1.31)	조치완료

자료: 정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2024. 2.)

그러나 국세청은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법률 통과를 전제로 한 예산안을 다시 편성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7) 업무조정에 따른 할인율 및 업무개선에 따른 예산 절감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 감액 필요(납부고지서 등 발송, 정보화관리관실)

< 현 황 >

「납부고지서 등 발송」은 납세고지서나 독촉장 등을 등기우편, 일반우편 및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발송하고 그 발송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25억 5,700만원 증액(4.1%)된 647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납부고지서 등 발송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62,147	62,147	64,704	2,557	4.1

자료: 국세청

< 검토의견 >

첫째, 지방청 및 세무서에서 우편물센터로 이관되는 과세유형전환 업무조정 예산안의 경우, 우편물센터로 이관시 할인율이 적용되어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비용 5,200만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2026년 납부고지서 등 발송 사업 예산안 중 등기우편 발송 예산안에는 과세유형전환 안내문 발송주체가 지방청 및 세무서에서 우편물센터로 이관되면서 관련 비용 14억 8,000만원이 지방청 및 세무서에서 우편물센터로 이관되어 편성되었음. 국세청에 따르면, 2026년에 과세유형전환 대상자는 44만 3천명으로 추정되므로 동 비용은 해당 인원에 약 3,340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된 것으로 보임.

[과세유형전환 업무조정 예산안 산출 근거]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과세유형전환 업무조정	443천명 × 3,340원	1,480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국세청은 과세유형전환 업무조정에 있어서 업무이관으로 절감되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금액의 예산안을 지방청 및 세무서에서 우편물센터로 이관한 문제가 있음.

우편물센터에서 우편물을 일괄 발송하는 경우, 지방청 및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것과 달리 우정사업본부가 정한 할인율(등기우편의 경우 최대 3.5%)이 적용되어 그 비용이 더욱 절약될 수 있음.

그러나 국세청은 우편물센터로 업무를 이관하면서 이러한 절감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금액을 우편물센터로 단순 이관한 문제가 있음. 실제 국세청이 추정한 과세유형전환 업무조정 건수 443천명에 우편물센터 등기우편 발송비용의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14억 2,800만원이 산출되므로 약 5,2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임.

[과세유형전환 업무조정으로 인한 절감 예상 비용]

(단위: 백만원)

2026 예산안(a)	절감 단가 및 할인율 적용시(b)	절감분(a-b)
443천명 × 3,340원 = 1,480백만원	1,480백만원 × 96.5% = 1,428백만원	52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국세청은 과세유형전환 업무를 우편물센터로 이관함에 따라 절감되는 비용 5,200만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둘째, 모바일 안내문 발송의 경우 예산 절감을 위해 발송방식이 3단계로 전환되면서 평균 발송단가가 낮아졌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2025년 평균 발송비용 및 발송량을 적용하여 5억 9,100만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납부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구분되며, 우편은 등기우편, 일반우편 및 모바일 안내문 발송으로 구분됨. 국세청은 2026년 예산안에 모바일 안내문 발송을 위한 예산 47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음.

[모바일 안내문 발송 예산안 산출 근거]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모바일 안내문 발송	67,800천건 × 70원	4,746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세청에 따르면, 모바일 발송요금은 카카오페이나 네이버는 발송, 열람, 알림톡의 종류에 따라 11원~77원까지 상이하며, KT 문자 발송은 발송 기준 147.4원으로 상대적으로 그 비용이 높은 상황임.

[모바일 안내문 발송 요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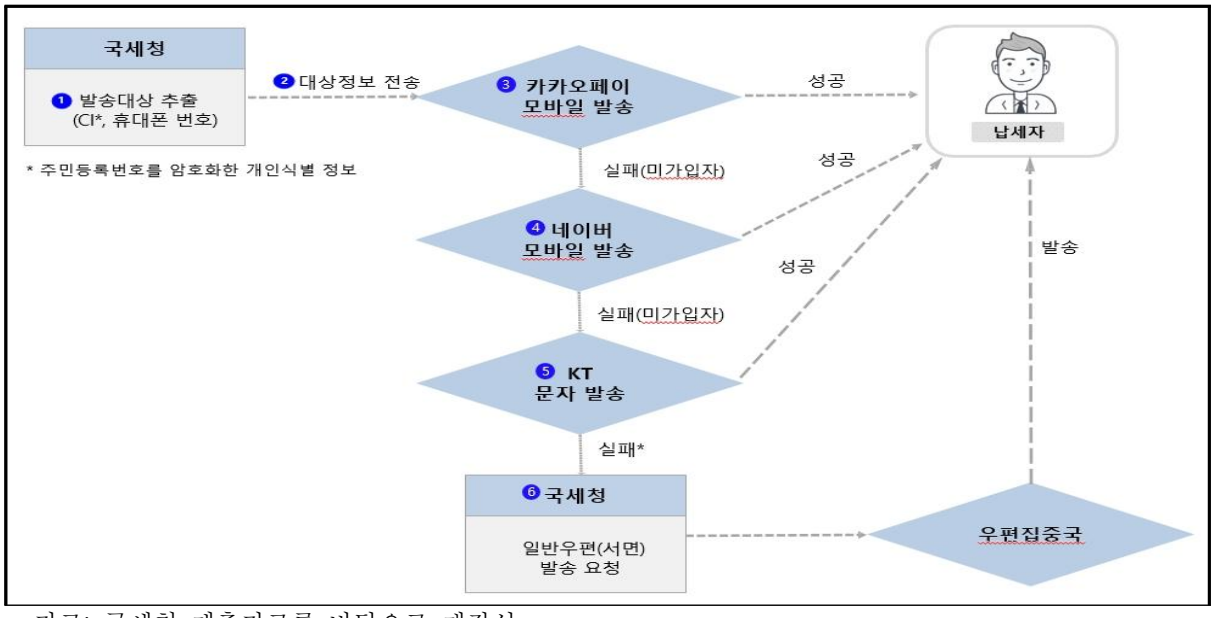
구분			요금				
			2020	2021	2022	2023	2024
카카오페이/네이버	전자문서	발송	110원	22원	16.5원	16.5원	16.5원
		열람		88원	82.5원	77원	77원
	알림톡		-	11원	11원	11원	11원
KT	전자문서	발송	165원	165원	165원	161.26원	147.4원
		열람	-	-	-	-	55원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따라 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문 발송요금을 절감하기 위해 2024년 6월부터 모바일 안내문 발송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하였음. 기존의 2단계 체제에 따르면, 국세청은 카카오페이나 네이버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1단계)한 후 발송이 실패한 건에 대하여 KT 문자를 발송(2단계)하고, 2단계 실패 건에 대하여 일반우편으로 발송함.

이와 달리 개편된 3단계 체제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1단계)한 후, 실패 건에 대하여 네이버를 통해 발송(2단계)하고, 2단계에서도 실패한 건에 대하여 KT 문자를 발송(3단계)함으로써 발송 단가를 절감하도록 하였음.

[모바일 안내문 발송 단계(3단계)]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세청은 이러한 모바일 안내문 발송 체계 개편을 2024년 6월부터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평균 단가가 기존에 비해 크게 절감된 것으로 나타남. 실제 2025년 9월 기준 모바일 안내문 발송 현황에 따르면, 모바일 안내문을 카카오페이 → 네이버 → KT 순으로 발송함에 따라 발송 비용이 크게 절감되었으며, 전체 발송건수 총 약 6,233만건에 대한 발송비용은 30억 9,300만원으로, 건당 평균 발송요금은 약 49.6원인 것으로 나타남.

[2025년 9월 기준 모바일 안내문 발송 현황]

(단위: 천건, 백만원, 원)

구분	카카오페이	네이버	KT	전체
발송성공건수(A)	55,271	3,426	3,632	62,329
집행액(B)	2,330	117	646	3,093
건당 발송요금(B/A)	42.2	34.2	177.9	49.6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2026년 예산안 편성시 이러한 체제 개편에 따른 모바일 안내문 발송비용 절감분을 고려하지 않은채 모바일 안내문의 건당 평균 발송비용을 건당 70원으로 산출하여 예산안을 과다편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2025년의 경우 2024년에 비해 '원클릭 환급서비스'를 새롭게 실시하면서 알림톡이 급증하여 평균단가가 낮게 산정되었다는 입장이며, 이처럼 새롭게 실시한 '원클릭 환급서비스'는 2026년에도 지속되어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함.

실제 2025년의 경우 원클릭 환급서비스를 새롭게 실시함으로 인하여 이미 2025년 9월 발송 건수는 약 62,329천건으로, 2026년 예산안 산출 근거인 67,800천건에 근접한 상황이며 2025년 9월까지의 발송 건수를 근거로 2025년 발송량을 연환산할 경우 약 83,105천건으로 산출됨.

이처럼 모바일 안내문 발송 단계 개선을 고려하여 모바일 안내문 발송 요금을 2025년 평균 요금인 약 50원으로 적용하고, 원클릭 환급서비스 신규 실시로 인한 발송 건수 증가 현황(연환산 약 83,105천건)을 기준으로 모바일 안내문 발송 요금을 재산출하는 경우 모바일 안내문 발송 비용은 약 41억 5,500만원[252]으로 도출되는 바, 과다편성된 예산안 5억 9,100만원은 감액할 필요가 있음.

252) 83,105천건 × 50원 = 4,155백만원

(8) 모범납세자 제도 개선 및 운영 검토 필요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납세자보호관실)

< 현 황 >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사업은 성실납세문화가 확산되도록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납세자보호관의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납세자 권익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 발굴 및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9,700만원이 감액(△15.0%)된 11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음.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의 내역사업인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운영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500만원이 증액(35.7%)된 9,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결산	2025		2026 예산안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3133-300)	1,291	1,312	1,312	1,115	△197	△15.0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운영	71	70	70	95	25	35.7

자료: 국세청

< 질의사항 >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선정 관리 강화·우대혜택의 법제화 등 모범납세자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모범납세자 제도는 1967년에 최초 시행되어 2025년(제59회 납세자의 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서, 매년 세법 등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국가 재정에 기여한 자,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세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건전한 납세의무 이행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를 모범납세자로 선발하여, 철도 운임 할인 및 공항 출입국 우대 등과 같은 사회적 우대 혜택과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상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

구 분	법 인	개 인
일반	• 추천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영위 • 최근 사업연도의 총부담세액 5천만원 이상	• 추천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납세이력 • 최근 과세기간의 결정세액 5백만원 이상
중소·소상공	• 세액기준 없음 • 관계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세액기준 없음 • 관계법령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료: 국세청

2025년의 경우 1,060명을 신규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였으며,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2,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기존에 2개의 세부사업에서 나뉘어 집행되고 있던 모범납세자 관련 예산을 한 개의 세부사업에 통합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동 사업 예산의 증액은 없음.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관련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년	2026년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3133-300)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운영	70	95
납세자보호관 기본경비 (7111-252)	납세자의날 포상기념품* (500명×5만원=2,500만원)	25	-

*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기념품 증정
자료: 국세청

모범납세자 제도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선진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유인하는 제도로서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동 제도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 등 외부기관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우선, 모범납세자 선정 이후 모범납세자 선정이 취소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정 소득을 세금으로 성실하게 납부하는 근로소득자의 선정 비중이 매우 저조하다는 문제가 있음.

매년 1,000여명의 인원이 신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고 있으나 기선정 인원 중 국세체납,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사유로 선정이 취소되는 사례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또한, 근로소득자는 2024년 기준 전체 소득세수 117.4조원 중 61조원(52.0%)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모범납세자 선정인원 중 근로소득자의 비중은 매년 0%~1.6%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상태이므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모범납세자 선정 및 취소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당해연도 신규 선정인원(합계)		1,089	1,106	1,089	1,077	1,065	1,060
구분	법인	544	518	554	559	549	580
	개인	545	588	535	518	516	480
당해연도 우대혜택 받을 수 있는 인원 수		2,830	2,730	2,687	2,655	2,623	2,590
당해연도 선정취소 인원(합계)		**28**	**16**	**15**	**27**	**42**	**35**
취소사유별	국세체납	11	9	3	6	4	4
	수입(소득)금액적출	7	5	6	11	20	13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3	1	1	3	9	8
	신용카드의무 위반	3	0	2	1	3	2
	원천징수 불이행	0	1	1	1	3	5
	조세범처벌	2	0	2	4	-	-
	사회적 물의	0	0	0	-	1	-
	기타	2	0	0	1	2	3

자료: 국세청

[모범납세자 대상자별 선정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당해연도 신규 선정인원(합계)		1,089	1,106	1,089	1,077	1,065	1,060
구분	**근로소득자**	-	**7**	**5**	**5**	**10**	**17**
	개인사업자	545	581	530	513	506	463
	법인사업자	544	518	554	559	549	580
신규 선정인원 중 근로소득자 비중		**0.0%**	**0.6%**	**0.5%**	**0.5%**	**0.9%**	**1.6%**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모범납세자 선정절차]

구분	내용
기본방향	세무서·지방청·본청 등 단계별로 엄격한 내·외부 검증과 공적심의를 거쳐 모범납세자 포상대상자 선정
후보추천	관서추천과 별도로 국민추천제를 운영하여 국민 누구나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상시 추천(본인, 타인) 가능
내부검증	각급 관서에서 선발기준 충족 및 추천제외 여부 검증 등
외부검증	외부기관* 검증과 대국민 사전 공개검증 실시 * 경찰청,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자료: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은 법령에 명확히 사전에 규정되지 않고 매년 모범납세자 추천(선발) 공고 시마다 포상계획에 따라 평정한다[253]라고만 되어 있는데, 국세청은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공개함으로써 모범납세자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세청은 세금과 관련된 데이터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각 분야별, 유형별로 공정성·대표성을 가진 모범납세자를 선정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향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전에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다음으로, 법률에 따라 납세의무를 당연히 이행하는 것에 대해 납세 및 세정과 관련 없는 각종 사회적 혜택이나 금융우대를 제공하는 것이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이러한 우대혜택들이 법적 근거 없이 국세청훈령인 「모범납세자 관리규정」[254]에 따라서 재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특히, 선정일로부터 3년간(지방청장상 이하는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우대혜택

253)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7조(평정)** ① 세무서장은 법인인 후보자를 법인세 부담세액 등 포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정한다.
②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인 후보자를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등 포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정한다.
③ 세무서장은 근로자인 후보자를 근속기간 등 포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정한다.

254)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23조(우대혜택 관리)** ① 모범납세자에게는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우대혜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우대혜택 제공기간'이라 한다) 동안 제공하고 관리한다.
1.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선정일로부터 3년
2. 지방청장 표창 이하 수상자는 선정일로부터 2년

은 오히려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는 동안 조세포탈 행위를 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우려가 있어 보임.

[2025년 기준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구분	혜택 내용
세무조사 유예	○ 선정일로부터 3년간(지방청장상 이하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 * 순환조사 대상자이거나 구체적 탈루행위 등 확인되는 경우 배제
	○ 순환조사 대상 법인인 경우 조사착수 예정연도 내에서 조사시기사전에 선택 가능
관세청 세정지원	○ 최대 1년 이내 납기연장, 담보제공 생략, 관세조사 유예
철도운임 할인	○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 이용할 경우 주중 철도 운임 할인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최소 10%, 최대 30% 할인)
무료주차	○ 지자체 운영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중 지정 주차장 1년간 무료이용
의료비 할인	○ 모범납세자와 소속 임직원이 지정병원 이용 시 10~30% 할인
금융우대	○ (대출금리 우대) 농협 외 9개 은행에서 대출금리 경감 ○ (보증지원 우대) 보증보험료 10%할인, 보증한도 확대 등
적격심사 가점	○ 국방부, 방위사업청 물품·용역 입찰 적격 심사 시 우대

자료: 국세청

따라서 국세청은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는 동안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사항을 강화하는 등 모범납세자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게 될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실효성 있으면서도 공정성 있는 보상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우대혜택 기준을 설정한 후, 이를 보다 상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현재 관련 연구용역[255]을 진행중이며 동 결과를 토대로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마지막으로, 연례적으로 모범납세자 제도에 대한 국회 등 외부기관의 지적이 발생하

255) 「모범납세자 우대혜택의 실효성 검증 연구」(2025.6.~11.)

고 있으며, 주요국에서는 현재 모범납세자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동 제도의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임.

해외 주요국의 모범납세자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 조사 결과, 일본의 일부 유사한 사례[256]를 제외하고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의 OECD 회원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모범납세자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가 확인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국에서는 성실납세는 당연한 국민의 납세의무이므로 별도의 우대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며,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강화를 통해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있다고 함.[257]

현행 모범납세자 제도 운영에 대하여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도 연례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을 통하여 운영을 내실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외주요국과 같이 '세금을 성실히 내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는 사회적 규범 향상을 통하여 자발적인 성실납세 문화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임.

256) 일본의 우량신고법인에 대한 표경은 국내에서 모범납세자 제도로 변경되기 전의 제도인 성실납세자 제도와 유사함

25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모범납세자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2022.6.)

(9)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관련 적정 예산 편성 필요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복지세정관리단실)

< 현 황 >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사업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자료의 제출주기를 기존의 연·반기·분기별에서 매월 수집으로 단축하여 근로복지공단 등 다양한 복지행정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고용보험 확대 등 고용안전망 강화를 지원하려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4,900만원이 감액(△25.3%)된 19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결산	2025		2026 예산안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3137-300)	1,659	2,560	2,560	1,911	△649	△25.3

자료: 국세청

< 질의사항 >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관련 홍보비, 책자발간비 및 인건비 등이 과다하지 않은지 검토하여 동 세부사업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 규모를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일하는 모든 국민을 실업급여로 보호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58]의 후속조치로서,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여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하는 제도임.

2021년 7월부터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고,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8개 인적용역 업종[259] 종사자에게 사업장

258) 2020년 12월 23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 산업구조의 변화로 다양한 고용형태가 급증함에 따라 모든 취업자에게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까지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기준을 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259)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2021년 11월 11일 소득발생분부터 그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2024년부터는 인적용역 기타소득[260]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와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도록 함.

당초 2022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제도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 12월 31일 개정을 통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되었는데, 이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재유예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2025년 7월 발표되었음.

[실시간 소득파악과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대상별 추진일정]

대 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예정)
세법개정 (실시간소득파악)	인적용역, 일용근로 (2021.7월～)	용역제공자 (2021.11월～)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2024.1월～)	상용근로자 (2026.1월 → **2027.1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산재보험 적용 특고 등 (2021.7월～)	플랫폼 종사자 (2022.1월～)	기타 특고 (2022.7월～)	전국민 (2026.1월 → **2027.1월**～)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등 재구성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와 관련하여 2026년도에는 일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4억 6,800만원, 제도 홍보비 11억 1,900만원 등 총 19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최근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운영 세부사업의 집행현황을 보면 타 세부사업으로 전용하거나 불용시키는 규모가 매우 커서 최초 예산 대비 집행률이 44.4%~60.3% 수준이며,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도에도 홍보비 15억 4,900만원 중 14억 2,400만원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2025년도에도 불용 규모가 상당히 클 예정임.

260)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9,640	△308	9,332	△3,103	6,229	5,623	60.3	90.3	606
2023	8,213	-	8,213	-	8,213	3,645	44.4	44.4	4,568
2024	3,390	-	3,390	△1,618	1,772	1,659	48.9	93.6	113
2025.7	2,560	-	2,560	-	2,560	603	23.6	23.6	-

자료: 국세청

동 세부사업은 예산 집행 부진, 사업성과 및 환류 개선 노력 부족 등의 사유로 2023 회계연도 및 2024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미흡>판정을 받아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음. 이와 같이 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한 사유는 당초 2024년 초부터 시행 예정이던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제도가 유예되면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부분도 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2026년도 예산안 편성이 일부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집행 가능성 및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규모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우선, 2026년 제도 홍보비는 11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과거 동 세부사업의 홍보예산 편성 대비 집행률이 20%대로 연례적으로 저조하며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에도 편성 예산의 8.1% 수준으로 집행할 예정임. 매년 집행액이 2026년도 편성액보다 매우 작은 수준임을 고려하면 2026년의 홍보 관련 예산은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어 보임.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관련 홍보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최초 편성액	집행액	주요 홍보내용	집행률	불용액	비고
2022	1,764	392	실시간소득파악제도 시행 1년 성과 및 모바일 서비스 확대	22.2%	142*	* 타 세부사업에 1,230백만원 전용
2023	1,965	394	상용근로소득 매월 제출 시행 대비 홍보 영상 제작	20.1%	1,571	상용근로자 매월 제출 제도 '26.1월 시행으로 유예
2024	1,827	406	기타소득자 및 스포츠 강사 소득자료 매월 제출 시행 조세전문지 등에 홍보	22.2%	-*	* 타 세부사업에 1,421백만원 전용
2025	1,549	125 (예정)	실시간 소득 파악제도 조세 전문지 등에 홍보	8.1% (예정)	1,424 (예정)	상용근로자 매월 제출 제도 '27.1월 시행으로 유예
2026	1,119	-	상용근로소득 매월 제출 시행 대비 홍보	-	-	-

자료: 국세청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2023년 및 2025년은 상용근로자 매월 제출 제도가 유예되면서 집행이 저조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2022년 및 2024년에도 홍보예산 집행실적은 저조한 편이며, 2023년의 경우에도 상용근로소득 매월 제출 시행시기 유예가 결정된 것은 11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심사 및 12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서 결정되었으므로 사실상 연중 집행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저조했음.[261]

그리고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는 2021년부터 시행되어 인적용역, 일용근로자는 2021년 7월부터, 용역제공자는 2021년 11월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에 대하여는 2024년 1월부터 제출제도가 실시되어 오고 있는 바, 상용근로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상당 부분 정착되었으며, 2026년의 경우 재유예된 상용근로자의 시행에 대한 내용 위주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최근 4년간 홍보예산 집행액이 연간 1.3억에서 4억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2026년도 홍보예산 11억 1,900만원은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 가능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규모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261) 실제로 국세청에서 제출한 2023년도 홍보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홍보가 2023년 12월까지 이루어졌음.

또한, 2025년과 동일하게 2026년에도 실시간 소득파악 해설 책자 5,000만원, 업무매뉴얼 4,000만원 등 책자 발간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2025년 해설 책자 및 업무매뉴얼이 11월에 발간 예정인데, 2026년의 경우 상용근로소득 매월 제출 시행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올해 대비 내용상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책자 발간 예산을 올해와 동일하게 9,000만원으로 편성한 것도 과다한 측면이 있어 보임.

[2026년도 책자발간 관련 예산 편성내역]

○ 업무매뉴얼 등 제작 (90,000천원) ・ 실시간 소득파악 해설 책자 : 10,000부×5,000원=50,000천원 ・ 업무매뉴얼 : 8,000부×5,000원=40,000천원

* 2025년도 편성과 동일함
자료: 국세청

그리고 일용임금과 관련하여 기존에 전국 세무서 중 소득파악 제도 관련 업무량이 많은 55개 세무서를 기준으로 필요 인원수(55명)를 산정한 것과 달리 2026년도에는 전국 133개 세무서를 기준으로 133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산정하였음.[262] 그러나 지역별, 시기별로 소득자료 제출이 증가하여 (방문)민원이 증가하거나 지원 업무량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전체 세무서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편성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2025년도 및 2026년도 일용임금 편성내역]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 일용임금 (571,000천원) ・신고창구 일용임금 : 55명×120일×86,610원	○ 일용임금 (420,000천원) ・신고창구 일용임금 : 133명×36일×87,727원

자료: 국세청

그리고 133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일률적으로 1 세무서당 1명씩 3일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실시간 소득파악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62) 다만, 2025년에는 1인당 매월 10일씩 총 120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과 달리, 2026년도에는 1인당 매월 3일씩 총 36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총 일용임금 요구액은 감액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각 세무서의 업무량이 많아 인력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각 지방청·세무서의 사전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적정하게 배분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또한, 국세청 확인 결과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신고 관련 교육은 ①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소개, ②실시간 소득파악 대상자, ③소득자료 법령, ④소득자료 업무흐름, ⑤소득자료 제출 방법, ⑥소득자료 통합안내문 내용으로 해당 세무서 소득자료 업무 총괄팀장이 직접 실시하고 있다고 함.

일용직 근로자는 실시간 소득파악제도와 관련하여 각 세무서의 <제출 도움창구>에서 소득파악 제도를 알지 못하는 영세사업자, 신규사업자 등에게 도움을 주고 정확하게 소득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부가세·소득세·법인세와 관련한 전문성이 필요하고, 소득자료 제출이 집중되는 월말 단기간 동안 방문민원인 응대, 신고서 접수지원 등의 대면 업무를 수행해야 함.

따라서 세무서별 자율적 실시가 아니라 본청 차원에서 전문적인 세법 관련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실제 신고창구에서 마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교육자료를 만드는 등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제출 도움창구> 및 일용도우미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장기적으로는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제출 편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일용임금 예산을 더욱 축소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전자화할 필요가 있음.

(10) 적정 단가 책정을 통한 자산취득비 감액 필요 (기관운영 기본경비, 운영지원과)

< 현 황 >

「기관운영 기본경비」은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하려는 것임.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9,500만원 감소한 130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중 자산취득비의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4억 3,500만원 증가한 17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기관운영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세목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0)	13,150	13,150	13,055	△95	△0.7
- 자산취득비(430-01)	1,265	1,265	1,700	435	34.4

자료: 국세청

< 검토의견 >

국세청은 세무서 등의 노후 의자를 교체하기 위해 단가를 35만원으로 산정하여 6억 3,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의자 구매 단가가 높게 책정된 점과 국세청의 자산취득비 집행관리가 미흡한 점을 고려할 때, 자산취득비를 감액할 필요가 있음.

국세청은 자산취득비 17억원을 편성했는데, 이중 6억 3,800만원은 세무서 등의 노후 의자 1,824개를 단가 35만원의 새로운 의자로 교체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2025년에 동 사업의 자산취득비를 집행한 내역을 살펴보면, 국세청이 구매한 작업용의자의 단가는 28만 3,000원으로 국세청이 편성한 의자 단가 35만원의 80.9% 수준임.[263]

263) 국세청은 2025년 7월 30일에 작업용의자(모델명: 작업용의자, 파트라, GCV_4811P_1, 655×555×1125mm) 15개 구매했음

또한, 동 사업의 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살펴보면, 세무서 등의 노후의자 구매를 위한 예산 외의 경우에는 의자의 단가가 11만 3,520원으로 산정되어 있음.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자산취득비 편성 시, “소관 내 실·국 및 지방조직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동일한 사업 내 편성된 의자 구매 예산의 단가(11만 3,520원)와 세무서 등의 노후의자 구매를 위한 단가(35만원)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2026년도 기관운영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예산안 각목명세서]

(단위: 천원)

[430]유형자산		**1,700,366**
[430-01]자산취득비		**1,700,366**
1. 운영지원과		809,938
가. 전자복사기(노후분) 교체	3,574,400원*20대=	71,488
나. 모사전송기(노후분) 교체	406,150원*20대=	8,123
다. 문서세단기(노후분) 교체	893,000원*15대=	13,395
라. 공기청정기 교체	406,600원*10대=	4,066
마. TV 및 냉장고 교체	570,000원*30대=	17,100
바. 장애인보조공학기기	324,880원*휠체어 등 25개=	8,122
사. 책상 및 의자 구입		49,644
1) 책 상	260,770원*20개=	5,215
2) 의 자	**113,520원*50개=**	**5,676**
3) 캐비넷(7단)	427,500원*14개=	5,985
4) 캐비넷(3단)	213,750원*14개=	2,993
5) 2단 서랍통	164,350원*61개=	10,025
6) 파티션	897,735원*22개=	19,750
아. 노후가구	**638,000,000원=**	**638,000**
2. 대변인실	6,337,000원=	6,337
3. 기획조정관실		136,526
가. 혁신정책담당관실	2,432,000원=	2,432
나. 기획재정담당관실	4,750,000원=	4,750
다. 방독면 구입	22,187,000원=	22,187
라. 예산업무관련 비품 구입	107,157,000원=	107,157
4. 감사관실	776,000원=	776
5. 노후차량 교체		746,789
가. 승용	746,789,000원=	746,789

자료: 국세청

특히,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2025년에 국세청은 7월 말까지 자산취득비 예산 12억 6,500만원 중 1억 7,600만원(집행률 13.9%) 밖에 집행하지 못하여 연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한 집행관리도 다소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세청이 노후관서의 의자교체를 위해 편성한 예산안의 의자 단가를 조달청 나라장터의 판매량 상위 10개 제품의 평균인 28만 5,830원으로 낮추고 이를 반영하여 예산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관세청 소관

가. 개요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26년도 관세청 소관 세입 예산안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보다 512억 5,400만원(△51.1%) 감소한 490억 3,700만원임.

2025년 예산 대비 벌금 및 몰수금은 4억 6,300만원(7.0%) 증가하였으며, 면허료 및 수수료는 540억 1,500만원(△71.6%) 감액 편성되었음.

[2026년 관세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본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 감(B-A)		비 고
			금 액	%	
합 계	100,291	49,037	△51,254	△51.1	
○ 재산수입	401	494	93	23.2	·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 기타 재산이자 수입
○ 경상이전수입	23,315	25,668	2,353	10.1	· 벌금, 몰수금, 과태료 · 징계부과금, 과징금, 위약금 · 가산금, 기타 경상이전 수입
○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76,569	22,589	△53,980	△70.5	· 면허료 및 수수료, 기타 잡수입
○ 관유물매각대	6	286	280	4,666.7	· 기계기구 매각대

자료 : 관세청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26년 관세청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보다 280억 3,100만원(4.3%) 증가한 6,862억 8,200만원임.

이 중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59.6%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2025년도 예산 대비 156억 4,900만원(4.4%) 증액된 3,734억 1,000만원이고, 기본경비는 1억 5,300만원(0.4%) 증액된 354억 8,600만원임. 주요사업비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22억 2,900만원(4.6%) 증액된 2,773억원 8,600만원임.

[2026년 관세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B-A)	
			금 액	%
합 계	658,251	686,282	28,031	4.3
○ 인 건 비	357,761	373,410	15,649	4.4
○ 기 본 경 비	35,333	35,486	153	0.4
○ 주 요 사 업 비	265,157	277,386	12,229	4.6
- 수출입통관	30,686	37,875	7,189	23.4
- 관세심사	6,387	4,792	△1,595	△25.0
- 밀수조사단속	6,850	8,045	1,195	17.4
- 관세행정 지능정보화	107,429	109,432	2,003	1.9
- 국제관세협력	19,867	17,906	△1,961	△9.9
- 관세행정지원	86,594	94,238	7,644	8.8
- 관세인재개발원	7,343	5,098	△2,245	△30.6

자료 : 관세청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026년도 관세청 신규사업은 없고, 2026년도 예산안 중 20억원 이상이면서, 2025년 대비 2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3개 세부사업임.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를 포함한 특송화물 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송화물 통관지원 사업(120억 2,200만원), 관세행정 현장에서 실제 활용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2.0 사업(32억 6,700만원), 관세박물관 건립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청사시설관리 사업(191억 900만원)에서 증가하였음.

[2026년 관세청 주요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B-A)	
			금 액	%
특송화물 통관지원	6,582	12,022	5,440	82.6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2.0(R&D)	2,135	3,267	1,132	53.0
청사시설관리	11,194	19,109	7,915	70.7

자료 : 관세청

나. 검토의견

(1)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 필요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통관국)

< 현 황 >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사업은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세관검사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화주가 부담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수출입화물 세관 검사비용, 검사비용지원 업무용역비 및 사업운영비,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내역사업인 '수출입화물 세관 검사비용'은 수출입통관 과정에서 검사결과 관계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화주가 부담하는 비용을 국가 차원에서 보전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액은 2025년(62억원) 대비 12억원이 감액된 50억원임.

[2026년도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수출입화물 검사지원(1131-304)	6,705	5,495	△1,210	△18.0
- 수출입화물 세관 검사비용	6,200	5,000	△1,200	△19.4
- 검사비용지원 업무용역비	465	465	-	-
- 검사비용지원 사업운영비	10	-	△10	△100.0
-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금	30	30	-	-

< 검토의견 >

관세청은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사업 예산의 적정 편성을 통해 「관세법」 개정 취지에 맞게 중소·중견기업 화주에 대한 지원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수출입통관을 위해 소요되는 일반적인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해물품 반입차단 등 공익 목적상 실시되는 정밀검사 등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 상하차료, 내장물품 적출·입료)에 대하여는 예외

적으로 국가차원에서 화주에게 보전해 줌으로써, 화주의 세관검사에 대한 순응도를 높여 수출입검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264].

2019년 정기회에서 「관세법」 개정을 통해 제173조제3항단서[265]를 신설함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중소기업 화주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내역사업인 '수출입화물 세관 검사비용' 사업의 집행률을 살펴보면 최초 사업을 시작한 2020년에는 예산의 29.3%를 집행하였으나, 이후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확대됨에 따라 양호한 집행율을 보이고 있음.

[수출입화물 세관 검사비용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2020(7월~)	2021	2022	2023	2024	2025.8월
예산액	7,134	8,625	6,800	6,200	6,200	6,200
집행액	2,090	7,411	6,800	6,200	6,068	4,629
집행율	29.3	85.9	100.0	100.0	97.9	74.7

자료: 관세청

그런데, 관세청은 수시로 지원대상 기업 범위를 변경하거나, 검사비용 지급율을 조정하는 등 동 제도를 예산사정에 따라 일관성 없게 운용한 것으로 나타남.

제도 도입 당시에는 중소기업[266] 화주만을 대상으로 검사비용의 100%를 지원하였는데, 2021년 1월부터는 중견기업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였고, 2023년 9월부터는 예산부족을 고려하여 검사비용 전체가 아닌 검사비용의 60%만 지원하였으며, 이후 2024년 3월에는 중견기업을 제외하였다가, 2024년 11월부터는 다시 중견기업을 포함시키는가 하면, 2025년 10월 다시 예산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검사비용 지급비율을 축소하였음.

2026년 수출입화물 세관 검사비용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2025년보다 12억원 감액된

264)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2022206호)에 대한 검토보고 참조

265) **「관세법」**

제173조(세관검사장) 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항에서 "검사비용"이라 한다)은 화주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66) 2020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중소기업만 지원하기로 결정

50억원으로, 관세청에 따르면 예산부족에 따라 2026년부터 중견기업은 지원대상에서 다시 제외하겠다는 설명임.

[수출입화물 세관 검사비용 지원 대상 및 지급비율 변경 연혁]

구분	제도변경 내용	비고
'20년 7월	- 중소 100%	- 제도 도입
'21년 1월	- 중견 100%, 중소 100%	- 지원대상 확대(중견기업 포함)
'23년 9월	- 중견·중소 100% → 중견·중소 60%	- 지급비율 축소(잔여예산 감안)
'24년 3월	- 중소 60%	- 중견기업 제외(예산 감안)
'24년 5월	- 중소 60% → 100%	- 지급비율 확대
'24년 11월	- 중견 60%, 중소 100%	- 중견기업 지원재개
'25년 10월	- 중견 50%, 중소 80%	- 지급비율 축소(잔여예산 감안)
'26년 이후	- 중견기업 제외 예정	

자료: 관세청

이와 같이 예산 사정에 따라 정책 지원대상 기업 범위를 변경하거나, 검사비용 지급율을 조정하게 되면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중소·중견기업 화주의 세관검사에 대한 순응도를 높여 수출입검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정책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 있음.

검사시기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와 지원금 규모가 달라지는 것은 화주의 입장에서 합리적이라 하기 어렵고, 민원으로 이어져 세관공무원의 적극적인 검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임[267].

따라서, 관세청은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사업 예산의 적정 편성을 통해 「관세법」[268] 취지에 맞게 중소·중견기업 화주에 대한 지원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

267)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2022206호)에 대한 검토보고 참조

268) **관세법」**

제173조(세관검사장) 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항에서 "검사비용"이라 한다)은 화주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2) 내용연수 경과 감시정의 적기 교체를 위한 예산 확보 필요 (공항만감시지원, 통관국)

< 현 황 >

「공항만감시지원」 사업은 해외여행자에 대한 서비스 및 환경 개선으로 여행자 통관체계 구축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항만·해상에서 관세법 위반 적발, 총포·도검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 차단으로 국민 생명과 국가안전 보호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내역사업인 '항만감시지원' 사업은 전국 15개 항만 세관에 감시정 30척 운용으로 해상에서 발생하는 관세행정 수요 대응과 C.I.Q기관[269] 지원 및 밀수 예방·차단 등 관세법 위반행위 단속을 위한 해상감시 상시 운용체제 유지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 예산액은 2025년(55억 600만원) 대비 3억원이 감액된 52억 600만원임.

[2026년도 공항만감시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공항만감시지원(1131-305)	14,937	17,722	2,785	18.6
- 여행자통관 감시지원	9,191	12,276	3,085	33.6
- 항만감시지원	**5,506**	**5,206**	**△300**	**△5.4**
- 통관안전강화유공포상금	240	240	-	0.0

< 검토의견 >

관세청은 해상 밀수 차단, 무역선의 입출항 및 검역 작업의 원활한 수행과 감시정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내구연한이 도과한 노후 감시정을 적기에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또는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69) Customs(세관), Immigration(출입국외국인청), Quarantine(검역소)로써, '83년부터 세관·출입국·검역 기관의 선박을 세관으로 통폐합하여 운용

관세청은 해상을 통한 마약·총기류 등 불법물품 반입과 유류 등 밀수 차단, 외국무역선의 입출항수속 및 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시정을 운용하고 있음.

[단계별 감시정 역할]



자료: 관세청

관세청에 따르면, 해마다 증가하는 국제무역선의 입항 수요에 따라 국민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 반입 우려도 증대되는 상황에서 최근 선박을 통한 마약 밀수가 연이어 적발되는 등 감시정을 통한 해상감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설명으로, 실제로 해마다 적지 않은 규모의 적발이 감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감시정 적발 실적 >

(단위 : 건, 천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고발의뢰	2	8,290,020	-	-	-	-	-	-	-	-
과태료처분	17	13,280	15	17,160	14	18,458	2	1,530	5	9,040
유치	-	-	2	-	5	-	-	-	-	-
타기관이첩	-	-	1	12,000	1	-	-	-	-	-
통고처분	16	46,714	25	668,909	23	179,074	22	259,092	15	97,071
행정제재	87	-	69	-	61	-	37	-	35	-
총합계	122	8,350,014	112	698,069	104	197,532	61	260,622	55	106,111

자료: 관세청

그런데, 감시정의 적기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감시정의 노후화가 상당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선령 15년 도과 노후 감시정의 수는 2021년 7척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5년 13척으로 전체 감시정의 43%에 이르고, 노후감시정의 관리와 수리에 매년 적지 않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음.

[연령별 노후 감시정 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감시정 수	32척	30척	30척	30척	30척
노후 감시정 수	7척	8척	10척	11척	13척
비율	21.9%	26.7%	33.3%	36.7%	43.3%

자료: 관세청

[감시정 관리비 및 수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감시정 관리비	713	718	729	728	747
감시정 수리비	821	2,039	975	1,119	1,658

자료: 관세청

2024년 관세청이 노후 감시정 중 선령이 20년을 경과한 감시정 4척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알루미늄선의 구조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체 기준치(강도) 범위 내에 있으나 인장강도[270]가 전반적으로 감쇠(35%~55%)하였고, 항해속력은 건조 당시 대비 77%~84%대로 저하되었으며, 시동 및 충전계통에 빈번한 고장과 일부 현장제어 불량이 발생하고 있고, 워터제트(추진기) 계통[271]에 상당한 노후화가 진행되어 복구에는 고비용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관세청 훈령인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272]'에서는 강화플라스

270) 해상에서 운항 중 파고 등 외력에 의해 선체 및 선체 구조물이 뒤틀리거나 당기는 등의 변형에 대해 견딜 수 있는 최대한의 응력

271) ① (충남303·인천304·전남305호) 트랜솜플랜지, 선미 유압호스 격벽 등 과도한 부식·파공,
② (부산302호) 펌프유닛내 해수혼입으로 계통 전반 부식, 샤프트씰 하우징 부식·파손

272)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424호, 2025-09-23, 일부개정]

틱선 및 알루미늄선은 선령 15년, 강선은 선령 20년으로 내용연수를 명시하고 있고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 새로운 선박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6년도 말 기준[273] 선령 20년이상 감시정 교체 수요는 6척임에도 2026년 예산안에는 신규 감시정 1척 도입을 위한 예산만 반영된 상황으로, 관련 규정상의 교체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노후 감시정은 감항성(안전운항 가능상태)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출항이 불가하고, 취약해진 선체 강도로 인한 파손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며 성능저하 및 수리비 증가 등으로 운용 효율이 낮은 점을 고려한다면, 관세청은 해상 밀수 차단, 무역선의 입출항 및 검역 작업의 원활한 수행과 감시정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내구연한이 도과한 노후 감시정을 적기에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선박재질별·선령별 감시정 현황]

(기준: 2026년 12월)

구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25년 미만	25년 이상
강선	-	-	-	3	-	-
강화플라스틱	-	1	14	-	-	-
알루미늄	1	1	-	4	6	-

자료: 관세청

제69조(감시정의 내용연수) 감시정의 안전운항에 지장 없이 본연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최대 사용연수(이하 "내용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화플라스틱선 및 알루미늄선: 선령 15년
2. 강선: 선령 20년

제70조(감시정의 교체) ① 세관장은 제69조에서 정한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 새로운 선박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감시정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공인 검사기관의 선박검사에 합격하고 운항시 안전에 문제가 없으며 성능이 양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검사의 유효기간까지 계속 운항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감시정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 사고 등으로 선박이 파손되거나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과다하여 수리를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경우
2. 공인 선박검사기관의 안전검사 결과 선체의 경도(硬度), 두께 등이 안전기준에 미달해 계속 운항시 사고의 위험이 높은 경우
3. 그 밖에 감시정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여 계속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책적 목적으로 새로운 선박으로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73) 신규 감시정 건조에는 통상 18개월 가량 소요됨

(3) 적정 수준의 임차 요율을 적용하여 장비도입 예산 재산정 필요 (불법위해물품 안전관리(심사국))

< 현 황 >

「불법위해물품 안전관리」는 불법위해물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 수출입물품·마약류 등에 대한 안전성을 분석하기 위해 분석 장비를 도입하고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억 1,200만원 감액된 22억 1,100만원임.

「불법위해물품 안전관리」의 내역사업인 '임차방식 분석장비'는 수출입물품 및 마약류 분석장비를 임차(리스)방식으로 도입하는 사업으로서 2026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2억2,900만원 감액된 9억 2,500만원임.

[2025년도 불법위해물품 안전관리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불법위해물품 안전관리 (1231-301)	3,623	2,211	△1,412	△39.0
- 분석장비도입 및 교체	1,183	-	△1,183	△100.0
- 임차방식 분석장비	**1,154**	**925**	**△229**	**△19.8**
- 기타일반분석장비	85	85	0	0
- 시험연구 유지비	1,149	1,149	0	0
- 국제관세기구 협력 및 분석기술 연구개발	52	52	0	0

< 검토의견 >

임차요율이 불필요하게 높게 책정됨에 따라 신규 분석 장비 임차비용이 다소 과다 계상되어 있으므로, 리스요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산정함으로써 임차비용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관세청은 2025년까지는 주로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여 일시불 방식으로 분석장비 도입 예산을 집행하여 왔음. 그런데 급증하는 분석수요 및 이에 따른 분석장비 도입 규모의 증가에 대응하고, 대규모의 초기자금 소요를 분산함으로써 특정 기간의 예산 집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분석장비 취득 방식을 자산취득 방식에서 임차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음. 2026년 예산안에 편성된 분석장비의 신규 임차규모는 총 17종 32대이며, 예상 가격은 38억 3,700만원임.

[2026년도 수출입물품·위해물품 분석장비 도입 내역]

(단위: 대, 백만원)

구분	장비명(17종)	수량	단가	예상가	설치세관
해외직구 유해성	X-선 형광분석기(XRF)	3	313	939	서울, 인천, 평택
	X-선 형광분석기(ED-XRF)	1	125	125	중앙
	마이크로웨이브	1	132	132	중앙
마약류 안전성	기체질량분석기(GC/MS)	3	150	450	공항, 부산
	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	2	115	230	중앙, 공항
공산품	X-선 회절분석기(XRD)	1	220	220	서울
	주사전자현미경(SEM)	2	212	424	부산, 인천
	적외선 분광기(FT-IR)	3	110	330	중앙, 서울, 평택
	비중계	2	35	70	중앙, 인천
	회전점도계	2	28	56	중앙, 인천
	표면장력계	2	50	100	중앙, 인천
	석유증류기	1	62	62	부산
농식품	전위차적정기	2	102	204	서울, 평택
	지방추출기	2	56	112	중앙, 인천
	근적외선분광기(FT-NIR)	1	191	191	중앙
	당도계	2	65	130	중앙, 서울
유전자	세포핵산추출기	2	31	62	부산, 인천
합계		32	120	3,837	

자료: 관세청

관세청은 해당 장비들의 도입을 직접구매 형태가 아닌 임차 형태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금 지불도 일시금 납입 방식이 아니라 5년간의 임차 기간동안 3개월 단위로 납부(분기납)하여 총 20회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음. 임차요율을 감안한 분기납 1회당 상환금액은 2억 2,800만원으로 산출되는데, 관세청이 신규 장비 도입시기를 2026년 4분기로 계획하고 있음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분석장비의 임차비용은 1분기 상환금액인 2억 2,800만원임.

[수출입물품·위해물품 분석장비 도입 연도별 임차료 납입 계획]

(단위: 백만원)

임대기간(5년) (2026.11~2031.11)	횟수	회차	분기별 상환 금액				합계
			1/4	2/4	3/4	4/4	
2026년	1	1	-	-	-	228	228
2027년	4	2~5	228	228	228	228	912
2028년	4	6~9	228	228	228	228	912
2029년	4	10~13	228	228	228	228	912
2030년	4	14~17	228	228	228	228	912
2031년	3	18~20	228	228	228		684
총 납입횟수	20		총 상환금액				4,560

자료: 관세청

그런데 관세청은 임차료의 분기별 상환금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임차요율을 7.536%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소 과대계상된 것으로 보임. 조달청의 시설대여계약 일반조건[274]에 따르면 시설대여계약의 임차요율은 '기준금리'와 '조달가산금리'의 합계로 구성되는데, 기준금리는 계약일시 기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3년 만기 무보증회사채(AA-)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함. 관세청은 ① 기준금리를 5.736%로, ② 가산금리를 1.8%로 각각 적용하여 총 7.536%의 예상 임차요율을 책정하고 있는데,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가 모두 과다책정된 것으로 보임.

먼저 '기준금리'에 관해, 관세청은 최근 5년간 회사채(AA-) 최고금리인 5.736%를 기준금리로 책정하고 있는데, ① 해당 금리는 최근 5년 내 최고금리인 2022년 12월 21일의 금리로서, 당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해에만 7차례 인상하여 11월 기준금리가 3.25%에 달하였고,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신용경색이 촉발됨에 따라 회사채 전반의 매수세가 실종되는 등 특수한 상황이었던 점, ② 현재 회사채 금리는 당시의 1/2 수준인 2.99%로[275],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인 점, ③ 한국은행이 2024년 10월부터 점진적인 완화 기조로 통화정책의 방향을 전환한 후, 2025년 2월 및 5월에 기준금리를 각각 0.25%p씩 인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관세청이 책정한 기준금리는 불필요하게 높은 것으로 보임.

274) **시설대여(리스) 계약 일반조건[조달청지침 제1129호, 2018.3.30.] 제9조(리스료):**
- 리스계약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3년 만기 무보증회사채(AA-) 유통수익률로 하며 가산금리는 리스회사가 낙찰받은 투찰금리에서 기준금리를 빼고 산정한다.

275) 2025.10.17.기준

[최근 5년간 무보증 회사채 3년물(AA-) 금리변동 내역]



자료: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www.kofiabond.or.kr)

다음으로 관세청은 '가산금리'를 1.8%로 책정하고 있는데, 관세청이 이와 같이 책정한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중 관련 내용을 준용한 것임. 동 작성지침 중 '정보화사업'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임차료 편성기준은 신규임차에 관해 "임차기간이 5년인 경우 3개월 선납(변동금리)을 기준으로 '월 임차 요율 1.8%'를 적용"하도록 규정된 점[276]을 참고한 것임. 그런데, '가산금리'는 최종 낙찰금리와 기준금리의 차이(금리 스프레드)를 의미하는 반면, '월 임차 요율'은 상환요율과 기준금리 간 금리 차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과정에서 월 납부액을 신속히 추계하기 위한 표준계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전혀 다름.

[월 임차계수를 활용한 월별 납부금 계산 방식]

(장비 전체 가격) ×월 임차계수(5년 기준 1.8%) = 월별 납부금

276)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2025.5)", 기획재정부, p.51

7,정보화사업
2. 세부지침
[항목별 지침]
1 장비구입비 및 임차료
○HW 및 SW 임차료
- 기존 임차분은 기존 계약을 근거로 임차료 편성
■기존 계약서를 예산 요구시 함께 제출
- 신규 임차는 임차기간에 따라 평균 임차료율을 적용하여 산정
■임차기간이 5년인 경우 3개월 선납(변동금리)을 기준으로 월 임차 요율 1.8% 적용
■임차기간이 3년인 경우 3개월 선납(변동금리)을 기준으로 월 임차 요율 2.7% 적용
- 도입기간을 고려하여 9개월 이내로 편성하되, 3개월 미만 임차는 지양
* HW 및 SW 임차료 요구시에는 임차기간, 임차요율 및 연도별 임차료, 임차료총액, 구매시 가격과의 현재가치 비교 등 관련자료 제출

즉 관세청이 ‘가산금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월 임차계수에 관한 수치를 준용하여 적용한 것은 지침의 취지·단위를 혼동하여 지침의 내용을 잘못 적용한 것임. 또한 ② 최근 관세청의 신규 분석장비 도입과정에서 실제 계약(2023.11.28.체결) 당시 조달투찰금리가 1.138%이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가산금리의 책정 또한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관세청이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모두 과대계상함에 따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계로 계산되는 임차요율이 과도하게 책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해당 금리를 적용한 2026년도 신규 분석장비 도입 임차비용 2억 2,800만원도 과대계상된 것으로 보임.

그런데 신규기기 도입절차를 감안할 때, 이러한 예산 과대계상 문제는 당해년도 예산안뿐 아니라 다음연도 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1분기분 장비 구입 예산의 집행시기(신규기기 도입계약 체결시점)는 2026년 11월 이후로 예상되는데[277], 해당 시점은 2027년도 예산안의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는 시기임. 따라서 실제 계약 내용을 반영하여 2027년도 예산안의 신규기기 도입비용을 증감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며, 그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이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2027년도 예산안에도 편성될 가능성이 높음. 즉 2026년 4분기에 집행될 임차료가 과대계상될 경우 이는 최대 5기분(2026년 4분기 집행분, 2027년 1, 2, 3, 4분기 집행분)의 임차료 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2026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임차료를 과대계상함으로 인해 편성오차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 2027년도 예산안에서는 구조적으로 4배의 불용액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관세청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분석장비 임차요율을 재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규모의 예산편성을 자제하고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예산안 집행지침상 정보화사업에 규정된 평균 월 임차요율(1.8%)을 준용해 1차년도(1분기분) 리스료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음[278].

277) 전 차수 임차사업은 2023년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해당 계약은 2023년 11월 28일에 체결됨.

278) 관세청 사업 중 관세행정정보관리(1141-500) 및 통관장비 도입사업(통관감시장비 현대화(1443-300)) 등 임차 방식으로 장비를 도입하는 사업의 경우, 평균 월 임차요율(1.8%)을 적용하여 분기별 임차요율을 산정하고 있음

[산출방식별 장비도입예산(1기분) 산출 내역]

구분	산출방식	산출내역
관세청의 예산안 편성 당시 산출방식 (임차금리 7.536% 적용)	도입가격(3,837백만원)에 임차금리 7.536%(회사채 AA-, 5.736%+조달투찰금리 1.8%)적용하여 분기별 분할 상환액 산출	228백만원
평균 월 임차요율 (1.8%) 적용 시	도입가격(3,837백만원) × 1.8%(평균 월 임차요율) × 임차개월(3개월)	207백만원 **(△21백만원)**

(4) 마약범죄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수사 등의 강화 필요 (공통)

<현 황>

「밀수단속 사업」은 마약류 밀반입, 불법 먹을거리·의약품 등 국민건강 위해물품, 위조상품, 불법 외환거래 및 관세포탈사범 등을 단속하기 위한 관세청 조사직원들의 수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51억 8,500만원)보다 1억 700만원(2%)이 감액된 50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음.

「밀수단속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외수사여비 사업」은 WCO 국제회의, 아태지역 마약 관련회의, 세계자금세탁기구 회의, 관세범 등 위반사법 현지조사, 불법외환 거래 등 해외정보 수집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3,400만원이 감액된 1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밀수단속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밀수단속 (1331-300)	5,185	5,185	5,078	△107	△2
- 밀수단속 포상금	506	506	824	318	62.8
- 사건수사비	1,674	1,674	1,531	△143	△8.5
- 국외수사여비	**165**	**165**	**131**	**△34**	**△20.6**
- 밀수단속 업무지원	1,969	1,969	1,602	△367	△18.6
- 지재권 보호활동	99	99	99	-	-
- 수사장비 도입	214	214	214	-	-
- 디지털 무역범죄 수사지원	320	320	421	101	31.5
- 마약단속 국제공조 지원	119	119	136	17	14.2
- RILO AP 파견 지원	120	120	120	-	-

자료: 관세청

한편,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ODA) 사업」은 개도국 관세행정의 현황 분석

및 컨설팅을 통해 개도국의 통관절차 투명성을 제고하여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85억 2,600만원)보다 11억 9,200만원(14%)이 감액된 73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음.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ODA) 사업」의 내역사업인 「개도국 세관 마약단속 직원역량 강화연수 사업」은 개도국 관세 당국의 마약단속 연수를 통해 양국간 마약밀수 단속공조 강화 및 아(我)국행 마약밀수 단속 지원을 위한 초청여비 및 행사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액 삭감되었음.

[2026년도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ODA)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ODA) (1531-302)	8,526	8,526	7,334	△1,192	△14
-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1,922	1,922	851	△1,071	△55.7
- 개도국 전자통관 시스템 구축	5,952	5,952	6,075	123	2
- WCO RTC 실무 연수	316	316	317	1	0.33
- 양자 관세행정 심화연수	129	129	-	△129	(순감)
- 관세청-다자개발은행 합동워크숍	90	90	91	1	1
- 관세청 ODA 활동평가	30	30	-	△30	(순감)
- 개도국 세관 마약단속 직원역량강화 연수	**87**	**87**	**-**	**△87**	**(순감)**

자료: 관세청

< 검토의견 >

최근 마약범죄가 국경을 초월하여 그 양상이 고도화·국제화되고 있고, 국내의 마약범죄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세청은 마약범죄의 근절을 위해 마약범죄의 수사 및 해외 수사 공조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관세청은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 경로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 통관단계에서 여행자나 화물 등을 검사하고, 마약의 주요 출발국 세관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국내에 밀수된 마약 사건을 수사함으로써 마약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관세법」상 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료물질 및 임시마약류에 대해 수출입이 제한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279] 마약에 대한 해외 유입 및 유통 전반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연도별 마약 단속 현황]

(단위:건, g)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661	412,076	696	148,429	1,054	1,272,474	771	624,451	704	769,363

자료: 관세청

이와 더불어 최근의 마약범죄가 그 수[280] 뿐만 아니라 형태 또한 대형화·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세청은 2022년 태국을 시작으로 마약 출발국 세관 당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마약에 대한 합동단속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임.

279) **「관세법」**
제234조의2(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료물질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는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280) 국내마약사범은 2024 년 9,984명에서 2024년 23,022명으로 10년간 230% 증가하였음.

[관세청의 양자 국가별 작전을 통한 마약 적발 실적 현황]

상대국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태국	35건, 118kg	49건, 722kg	27건, 123kg	45건, 72.7kg	156건, 385.9kg
베트남	x	10건, 374kg	43건, 11.1kg	작전중	53건, 14.84kg
네덜란드	x	9건, 781g	4건, 1954kg	0	13건, 20.32kg
미국	x	x	5건, 238kg	30건, 31.4kg	35건, 33.78kg
말레이시아	x	x	0건, 0kg	작전중	-
독일	x	x	x	최초 수행예정	-
합계	35건, 118kg	68건, 767kg	79건, 1602kg	75건, 104.1kg	257건, 454.84kg

자료: 관세청

마약범죄 수사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마약의 주요 출발국인 해외당국에서 수출물품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출국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마약검사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위한 해외당국의 협조를 구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 특히 우리나라도 수출화물의 검사율은 1% 미만에 불과한 상황으로, 동일한 조치를 마약 소비국 입장에서 상대국에 촉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관세청은 2025년도 예산에「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ODA) 사업」의 내역사업으로「개도국 세관 마약단속 직원역량 강화연수 사업」을 편성하여 우리나라에서 개도국 세관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연수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 출발국 단계에서부터 마약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공조의 기반을 확대하여 왔음. 그러나 2026년도 예산안의 경우 해외 연수사업의 효율적 통합관리를 위해 동 사업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 이관되었으나, 동 사업과 관련된 내용의 예산은 현재 국제협력단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임.

뿐만 아니라, 관세청 내 별도 세부사업인 「밀수단속 사업」의 마약 등 국제공조를 위한 「국외수사여비 사업」은 1억 3,100만원 편성되어 전년(1억 6,500만원) 대비 3,400만원 감액 편성된 상태임. 「국외수사여비 사업」 의 내내역사업인 「밀수단속 국제회의 및 현지수사 사업」은 외국세관에서 마약류 합동단속 작전 수행, 마약단속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 등 마약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그러나 마약 등 국제공조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과 관세외환사범 등 현지수사 조사를 위한 예산은 4,10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9,284만원) 대비 5,184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상기된 바와 같이, 마약 소비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마약 출발국과의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며, 우리나라의 마약 단속망을 마약출발국의 수출국경까지 확대함으로써 폭증하는 마약 범죄의 확산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범죄를 단속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종전 개도국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수 관련 예산 비용이 전액 삭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도국이 아닌 마약출발국과의 합동수사 등 실질적인 국제공조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밀수단속 사업」내 마약수사와 관련된 예산도 감액 편성된 상황임.

이에 동 예산 조치가 마약 수사에 대한 국제공조를 저해하여 국내로 유입될 마약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데 어려움을 유발하고, 관련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저해하지는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밀수단속」사업 내에 마약밀수 국제공조 합동단속 및 수사를 위한 예산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5) 사업 진행 경과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 2.0(R&D), 정보데이터정책관)

<현 황>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 2.0(R&D) 사업」은 세관 공무원·연구자 등이 관세행정 현장 수요 발굴, 기획, 연구개발·적용까지 함께 참여하여 관세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맞춤형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2026년 예산안은 2025년(21억 3,500만원) 대비 11억 3,200만원이 증액된 32억 6,700만원임.

[2026년도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 2.0(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 2.0(R&D) (1442-531)	2,135	2,135	3,267	1132	53.0

자료: 관세청

< 검토의견 >

관세청은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 2.0(R&D) 사업」은 사업단 선정 지연이 원인이 되어 연구단 선정 및 실시협약의 체결 지연 등으로 사업 운영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진행 경과를 고려하여 적정 예산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 2.0(R&D) 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되어 2024년에 종료된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R&D) 사업」의 후속사업 성격을 갖고 있음.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R&D) 사업」은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5의 비율로 예산안을 편성하였고, 이 중 관세청 소관 예산은 총 156억 100만원이 편성되어 집행이 완료 되었음.[281]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 2.0(R&D) 사업」 역시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 신규 편성된 사업임. 2025년 예산에는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3의 비율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2026년 예산안부터는 6:4의 비율로 예산을 편성하였음.[282)]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 2.0(R&D) 사업」의 사업기간은 2025년~2028년이며, 2026년도 예산안은 전략과제인 ①컨테이너 구조공간 은닉물품 적발 기술개발, 일반과제인 ②동시다종 마약 신속 검사키트, ③X-Ray 영상데이터 활용을 위한 표준화 기술개발, ④국경 반입단계 불법 마약류 탐지를 위한 후각지능 기술·시스템 구축 등 총 4개 과제에 대한 연구비 30억 9,100만원과 사업단 운영비 1억7,6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 2.0(R&D)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구분	예산안 세부내역
전략 과제 연구비	**□ 컨테이너 고정공간 은닉물품 적발 기술개발 : 13억 2,000만원** - 예산산출 : 2,400백만원 × 11/12개월 × 60%(관세청·과기정통부 6:4) - 연구내용 : AI를 활용한 컨테이너 불변구조에 집중할 수 있는 고정공간 은닉 적발 기술 개발을 통해 X-ray 판독의 일관성 및 정확성 확보
일반 과제 연구비	**□ 동시다종 마약 신속 검사키트 : 7억 1,500만원** - 예산산출 : 1,300백만원 × 11/12개월 × 60%(관세청·과기정통부 6:4) - 연구내용 : 인체 접촉 가능성이 차단된 패치형 마약검사 키트를 개발하여 현장 직원의 안전보호 및 마약검사 키트의 국산화
	□ X-Ray 영상데이터 활용을 위한 표준화 기술개발 : 5억 2,800만원 - 예산산출 : 960백만원 × 11/12개월 × 60%(관세청·과기정통부 6:4) - 연구내용 : 직원의 역량을 높이고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영상데이터를 체계적 수집, 관리, 활용하는 표준 플랫폼 체계 구축
	□ 국경 반입단계 불법 마약류 탐지를 위한 후각지능 기술·시스템 구축 : 5억 2,800만원 - 예산산출 : 960백만원 × 11/12개월 × 60%(관세청·과기정통부 6:4) - 연구내용 : 밀폐된 공간의 기체를 포집하여 분석하는 후각지능 기술에서 마약류 탐지분야 대응기술을 개발해 탐지견을 대체한 입국장 · 특송화물 감시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사업단 운영비	**□ 사업성과 도출 및 기획·평가·관리 등을 수행할 '커스텀즈랩 사업단' 운영 : 1억 7,600만원** - 예산산출 : 1개 × 320백만원 × 11/12 x 60% = 176백만원

자료: 관세청

281) 2021년 30억원, 2022년 44억 1,700만원, 2023년 45억 8,400만원, 2024년 36억원이 편성되었음.

282) 관세청과 과기부 지출비율 5:5를 기준으로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과기부의 '25년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5:5→7:3으로 비율을 조정하였고, '26년도에는 사업목적 달성 및 예산 여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부처간 협의를 통해 6:4로 재조정함, 관세청 자료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2.0」 추진체계



자료: 관세청

그러나 동 사업의 2025년 예산 집행 실적은 2025년 예산 편성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임. 2025년 예산 편성 당시, 관세청은 연구단 사업기간을 6개월로 가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음.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2.0」 사업 예정 집행 계획 및 실집행 일자

		예산 편성 당시 집행 계획	실집행 일자
추진계획 수립	○ 과기정통부, 관세청 : 추진계획 수립	'25.2.	'25.2.16
▽			
과 제 공 모	○ 과기정통부, 관세청 : 공고(안) 확정 ○ 과제 공고(과기정통부, 관세청, 연구재단 홈페이지)	사업단 : '25.2.~3. 연구단 : '25.5.~6.	사업단 : '25.3.17.~4.16. 연구단 : '25.7.11.~8.11
▽			
과 제 선 정	○ 평가위원회에서 연구과제 선정평가 실시 ○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선정 심의·확정	사업단 : '25.4. 연구단 : '25.7.	사업단 : '25.5.30. 연구단 : '25.8.28.
▽			
협 약	○ 업무대행협약 : 과기정통부, 관세청 ↔ 연구재단 ○ 개별협약 : 연구재단 ↔ 주관기관	'25.7	2025.9.23./24.
▽			
연구비 지급	○ 과기정통부, 관세청 → 연구재단 → 주관기관	'25.8.~9	'25.9.30.~10.15.
▽			
연 차 점 검	○ 연차 점검위원 구성·운영 ○ 연차실적·계획서 제출 등		
▽			
단계·최종 평가	○ 단계·최종 평가 실시		
▽			
연구비 정산 및 기술료 관리	○ 연차별 연구비 정산 및 결과보고 ○ 기술료 징수 및 관리		

[2025년도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 2.0(R&D)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구분	예산안 세부내역
전략 과제 연구비	□ 컨테이너 고정공간 은닉물품 적발 기술개발 : 8억 4,000만원 - 예산산출 : 2,400백만원 × 6/12개월 × 70%(관세청·과기정통부 7:3) - 연구내용 : AI를 활용한 컨테이너 불변구조에 집중할 수 있는 고정공간 은닉 적발 기술 개발을 통해 X-ray 판독의 일관성 및 정확성 확보
일반 과제 연구비	□ 동시다종 마약 신속 검사키트 : 4억 5,500만원 - 예산산출 : 1,300백만원 × 6/12개월 × 70%(관세청·과기정통부 7:3) - 연구내용 : 인체 접촉 가능성이 차단된 패치형 마약검사 키트를 개발하여 현장 직원의 안전보호 및 마약검사 키트의 국산화
	□ X-Ray 영상데이터 활용을 위한 표준화 기술개발 : 3억 3,600만원 - 예산산출 : 960백만원 × 6/12개월 × 70%(관세청·과기정통부 7:3) - 연구내용 : 직원의 역량을 높이고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영상데이터를 체계적 수집, 관리, 활용하는 표준 플랫폼 체계 구축
	□ 국경 반입단계 불법 마약류 탐지를 위한 후각지능 기술·시스템 구축 : 3억 3,600만원 - 예산산출 : 960백만원 × 6/12개월 × 70%(관세청·과기정통부 7:3) - 연구내용 : 밀폐된 공간의 기체를 포집하여 분석하는 후각지능 기술에서 마약류 탐지분야 대응기술을 개발해 탐지견을 대체한 입국장 · 특송화물 감시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사업단 운영비	□ 사업성과 도출 및 기획·평가·관리 등을 수행할 '커스텀즈랩 사업단' 운영 : 1억 6,800만원 - 예산산출 : 1개 × 320백만원 × 9/12 x 70% = 168백만원

자료: 관세청

그런데, 2025년 개별 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단 선정 사업협약은 예산 편성 당시 계획과 달리 2025년 9월 23일[283] 및 9월 24일[284]에 이루어졌음. 이에 따라 사업 전반의 집행이 지연되고 있어, 2025년도 사업 지연으로 인한 예산의 이월분을 고려하여, 2026년도 예산안에는 2개월 이월분이 감액된 만큼의 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관세청은 사업의 선정통보가 2025년 8월 말에 이루어졌으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1조 규정[285]에 따라 선정통보일이 포함된 월의 첫날

283) 동시다종 마약 신속 검사키트, 국경 반입단계 불법 마약류 탐지를 위한 후각지능 기술·시스템 구축
284) 컨테이너 고정공간 은닉물품 적발 기술 개발, X-Ray 영상데이터 활용을 위한 표준화 기술개발
285)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1조(연구개발비 지급 이전의 사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할 때에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을 연구개발기관 선정통보일이 포함된 월의 첫 날부터 협약 체결일까지 중 어느 하루로 정할 수 있다.

을 연구개발 시작일로 정하였고, 2025년 계획 대비 사업단·연구단 선정이 1개월 지연되었다는 점을 반영하여 2026년도 예산은 11개분만을[286] 연구비 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1조는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을 연구개발기관 선정통보일이 포함된 월의 첫 날부터 협약 체결일까지 중 어느 하루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사업의 협약 체결이 9월 말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협약 체결일을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로 볼 경우 그 시작일은 2025년 9월로, 계획 대비 사업단·연구단 선정이 2개월 지연되었다고도 볼 수 있음.

따라서, 관세청은 동 사업의 2025년 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4개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비 1개월 분(2억 8,100만원)을 감액하여 실제 연구에 사용되는 연구비에 비례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286) 35.6억원 → 32.6억원

(6) 사업 추진 일정 지연을 감안한 적정규모 예산 편성 필요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ODA), 정보데이터정책관)

< 현 황 >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ODA)」 사업은 국내 관세행정 시스템을 개발 도상국에게 전파하고, 해당 국가와의 관세행정·무역 원활화 차원에서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억 9,200만원 감액된 73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음.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ODA)」의 내역사업인 '개도국 전자통관시스템 축'은 개발도상국 외국세관을 대상으로 한국 전자통관시스템을 수출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전자통관 국제표준 관련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것으로, 2026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1억 2,300만원 증액된 60억 7,500만원임.

[2026년도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ODA)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ODA) (1531-302)	8,526	7,334	△1,192	△14.0
- 개도국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5,952	6,075	123	2.1

< 검토의견 >

2025년도 신규사업인 탄자니아 원산지관리시스템 사업과 튀니지 원산지관리시스템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관세청은 해당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지연된 부분 및 향후 사업 추진계획 등을 감안하여 예산안 편성 규모를 심사할 필요가 있음.

관세청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 탄자니아 및 튀니지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각 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의 기간에 걸쳐 추진되며 시스템별 연도별 소요예산은 다음과 같음.

[2025년 편성된 신규 사업의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2027	2028	계
탄자니아 싱글윈도우 및 원산지관리시스템	1,285	2,223	1,842	20	5,370
튀니지 원산지관리시스템	550	2,635	2,750	20	5,955

자료:관세청

그런데 2건의 사업 모두 집행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음. 탄자니아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1차년도인 2025년에 전체 사업 예산 대비 다소 높은 비율인 23.9%(12억 8,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2025년 3분기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임[287]. 즉 추진 일정에 따르면 2025년 3분기에 사업관리 측면에서 RD[288] 체결, 프로젝트 집행계획 수립, PMC[289] 기관선정 등이 완료되어야 하고, BPR/ISP[290] 중 환경 및 현황 분석이 완료되어야 하며, 미래모형 정립이 진행되고 있어야 하며, 4분기에는 미래모형 정립과 이행계획 수립이 완료되어야 함.

[탄자니아 싱글윈도우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일정]

활 동	2025				2026				2027				2028			
	Q1	Q2	Q3	Q4	Q1	Q2	Q3	Q4	Q1	Q2	Q3	Q4	Q1	Q2	Q3	Q4
0. 사업관리																
0.1 RD 체결			■													
0.2 프로젝트 집행계획 수립			■													
0.3 PMC 기관선정			■													
0.4 사업관리, 평가, 모니터링			■	■	■	■	■	■	■	■	■	■	■	■	■	■
1. BPR/ISP																
1.1 환경 및 현황 분석			■													
1.2 미래모형 정립			■	■												
1.3 이행계획 수립				■												

287)탄자니아 싱글윈도우(잔지바르) 및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사업(2025-2028) 제안요청서, 2025.7. 관세청

288) RD(Record of Discussions) : 협의 의사록. 한국 측과 상대국 정부·주관기관이 사업의 세부 추진 합의사항을 공식 문서로 확정하는 절차.

289)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ant): 사업 전반을 총괄·관리·감독하는 전문 컨설팅/관리기관

290) 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정보화 전략계획

활 동	2025				2026				2027				2028			
	Q1	Q2	Q3	Q4	Q1	Q2	Q3	Q4	Q1	Q2	Q3	Q4	Q1	Q2	Q3	Q4
0. 사업관리																
2. 시스템 구축(PC)																
2.1 사업착수 및 과업협의				■												
2.2 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				■												
2.3 기본설계					■											
2.4 상세설계						■										
2.5 구현							■	■								
2.6 테스트								■	■							
2.7 이행, 안정화									■	■						
2.8 하자보수									■	■	■	■				
3. 역량 강화																
3.1 시스템 선진사례 벤치마킹 (초청 연수)				■				■								
3.2 개발/운영 교육(현지)					■		■			■						
3.3 현지교육(업무/IT)									■	■						
4. 종료평가																
4.1 종료평가														■		

또한, 튀니지 원산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도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동 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르면 2025년 3분기에 사업관리 측면에서 RD 체결, 프로젝트 집행계획 수립, PMC 기관선정, BPR/ISP 중 환경 및 현황 분석이 완료되어야 하고, 미래모형 정립이 진행되고 있어야 하며, 4분기에는 미래모형 정립과 이행계획 수립이 완료되어야 함[291].

[튀니지 원산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일정]

활 동	2025				2026				2027				2028			
	Q1	Q2	Q3	Q4	Q1	Q2	Q3	Q4	Q1	Q2	Q3	Q4	Q1	Q2	Q3	Q4
0. 사업관리																
0.1 RD 체결			■													
0.2 프로젝트 집행계획 수립			■													
0.3 PMC 기관선정			■													
0.4 사업관리, 평가, 모니터링			■	■	■	■	■	■	■	■	■	■	■	■	■	■

291) 튀니지 원산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2025-2028) 제안요청서, 관세청, 2025.7.

활 동	2025				2026				2027				2028			
	Q1	Q2	Q3	Q4	Q1	Q2	Q3	Q4	Q1	Q2	Q3	Q4	Q1	Q2	Q3	Q4
1. BPR/ISP																
1.1 환경 및 현황 분석			■													
1.2 미래모형 정립			■	■												
1.3 이행계획 수립				■												
2. 시스템 구축(PC)																
2.1 사업착수 및 과업협의				■												
2.2 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				■												
2.3 기본설계					■											
2.4 상세설계						■										
2.5 구현							■	■								
2.6 테스트								■	■							
2.7 이행, 안정화									■	■						
2.8 하자보수									■	■	■					
3. 역량 강화																
3.1 시스템 선진사례 벤치마킹 (초청 연수)				■				■								
3.2 개발/운영 교육(현지)					■		■				■					
3.3 현지교육(업무/IT)									■	■						
4. 종료평가																
4.1 종료평가														■		

그런데 2025년 10월 31일 기준, 현재까지 두 사업 모두 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음에 따라, 추진 일정 계획 중 RD 체결을 제외한 전체 항목이 추진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해 관세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문제가 있어 사업 발주가 늦어졌으며, 12월까지 사업 계약을 완료하고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① 동 사업들은 계획상 3분기(7월 이후)부터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 추진에 착수했어야 하므로, 9월 26일에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감안하더라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이 분명함. 또한 ② 경쟁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입찰공고,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유찰 시 재입찰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어 입찰공고 시점부터 실제 계약 체결까지 최소 1~2개월이 소요됨에도[292], 두 사업 모두 현재까지 입찰공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293] 연내 집행개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임.[294]

따라서 관세청은 국가재정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을 위해, 2025년도 예산편성 당시 마련한 사업 추진계획에 비추어 전체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원국 및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계획대비 지연된 부분 및 향후 사업 추진계획 등을 감안하여 예산안 편성 규모를 심사할 필요가 있음.

292) 2023년도 타지키스탄 위험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2023.10.26.입찰공고, 2023.12.15. 수의계약 개찰)
293) 2025년 11월 6일 기준.
294) 이에 대해 관세청은 현재 사전구매업무 협의 중이며, 긴급발주로 2개 사업을 진행하므로 12월 3주차에 사업자 계약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임.

조달청 소관

가. 개요

(1) 조달특별회계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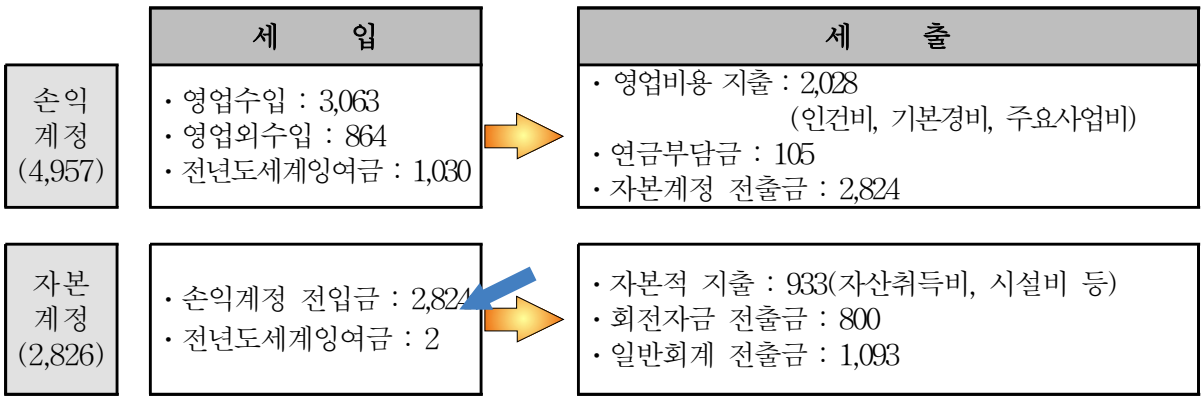
조달특별회계 예산은 손익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되며, 각 계정의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각 계정의 세출을 충당하는 구조임.

손익계정 세입예산은 총 4,957억원으로 영업수입은 내자·외자·시설사업 수행에 따른 수수료 수입 및 비축물자 판매차익 등의 수입 3,063억원, 위약금, 회전자금 예치이자 등 영업외 수입 864억원, 2026년 손익계정의 전년도 세계잉여금 1,030억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음. 손익계정 세출예산은 손익계정 세입 총액 4,957억원을 재원으로 하며, 사업비 2,028억원 및 공무원 연금부담금 105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기타 손익계정 잉여금 2,824억원은 자본계정으로 전출될 예정임.

자본계정 세입예산은 총 2,826억원이며 계정간 전입금, 2026년 자본계정의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계정간 전입금은 손익계정 잉여금이 자본계정 세입으로 전입된 것으로써 2,824억원이 계상됨. 자본계정 세출예산은 자본계정 세입 총액 2,826억원을 재원으로 하며, 기본경비 등 자본적 지출에 관한 예산으로 933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여유자금 운용으로 회전자금 전출금 800억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93억원이 계상되어 있음.

[2026년도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구조]

(단위: 억원)



총 계 : 7,783억원
순 계 : 4,959억원
주: 순계는 총계금액에서 손익계정(세출) 자본계정 전출금에서 자본계정(세입) 계정간 전입금으로 전입되는 2,824억원을 차감한 금액임.

(2) 조달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026년도 조달청 소관 조달특별회계 총계기준 세입예산안 규모는 7,783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5.5%(405억 7,800만원) 증가하였음.

영업수입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3,062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영업외수입은 전년대비 32.6% 증가한 863억 8,9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조달청 소관 조달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2025년 예산대비(B-A)	
			금 액	증감률(%)
총 계	**737,698**	**778,276**	**40,578**	**5.5**
순 계	**473,702**	**495,889**	**22,187**	**4.7**
<손익계정 계>	**459,472**	**495,706**	**36,234**	**7.9**
영업수입	301,217	306,265	5,048	1.7
·내자구매 사업	232,211	236,277	4,066	1.8
·외자구매 사업	5,058	5,782	724	14.3
·시설공사 사업	52,869	53,746	877	1.7
·원자재비축 사업	11,079	10,460	△619	△5.6
영업외수입	65,168	86,389	21,221	32.6
전년도세계잉여금	93,087	103,052	9,965	10.7
<자본계정 계>	**278,226**	**282,570**	**4,344**	**1.6**
계정간전입금	263,996	282,387	18,391	7.0
전년도세계잉여금	5,208	183	△5,025	△96.5
기금전입금	322	-	△322	순감
기타전입금	8,700	-	△8,700	순감

(3) 조달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026년도 조달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7,783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5.5%(405억 7,800만원) 증가하였음. 주요사업비는 전년 대비 33.8% 증가한 1,918억 3,7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조달청 조달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2025년 예산대비(B-A)	
			금 액	증감률(%)
총 계	737,698	778,276	40,578	5.5
사업성 예산안	245,168	296,112	50,944	20.8
· 인건비	87,431	89,672	2,241	2.6
· 기본경비	14,352	14,603	251	1.7
· 주요사업비	143,385	191,837	48,452	33.8
비사업성 예산안	492,530	482,164	△10,366	△2.1
· 자본계정 전출	263,996	282,387	18,391	7.0
· 공무원연금부담금	10,818	10,466	△352	△3.3
· 회전자금 전출	80,000	80,000	-	-
· 일반회계 전출	137,716	109,311	△28,405	△20.6

(4)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026년도 조달청 소관 예산안에 신규 반영된 세부사업은 1개, 조달인프라 구축 사업임.

[2026년 신규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증감 (B-A)	증감률 (%)
	본예산(A)	요구	조정(B)		
조달인프라 구축	-	406	406	406	순증

2025년 예산 대비 20억원 이상 또는 20%이상 증가한 주요 증액사업은 총 5개 세부사업임.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 지원(자본)(827억 600만원),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정보화)(188억 5,400만원),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R&D)(100억원),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ODA)(45억 3,400만원), 공급망 대응 인프라 구축(30억 7,200만원) 총 5개 사업이 2025년 예산 대비 20%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26년 주요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증감 (B-A)	증감률 (%)
	본예산(A)	요구	조정(B)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 지원(자본)	49,706	82,706	82,706	33,000	66.4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정보화)	14,436	18,854	18,854	4,418	30.6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R&D)	2,968	10,000	10,000	7,032	236.9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ODA)	2,644	4,534	4,534	1,890	71.5
공급망 대응 인프라 구축	477	3,072	3,072	2,595	544.0

나. 검토의견

(1) 회전자금 예치이자 수입의 적정 규모 편성 필요 등 (기타영업외잡수익(회전자금 예치이자), 기획조정관)

< 현 황 >

「기타영업외잡수익」 중 회전자금 예치이자는 조달사업 운영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발생되는 여유 회전자금을 「국고금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금융기관(시중은행)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수익임.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196억 1,900만원 증가한 658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기타영업외잡수익(회전자금 예치이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기타영업외잡수익 (회전자금 예치이자) (69-697)	46,265	46,265	65,884	19,619	42.4

자료: 조달청

< 검토의견 >

첫째, 2025년도 회전자금 예치이자 수익률이 3.0%로 전망되고, 이미 국제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하여 수익률을 2.5%로 조정한 점을 감안하였을 때, 조달청은 회전자금 예치이자 수입을 자체적으로 예상한 평균예치액과 수익률을 기준으로 재산출한 766억원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조달청이 제출한 회전자금 예치이자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최근 3년 평균 예치액(2조 2,323억원)[295] 및 예상수익률(2.5%)의 118%인 658억 8,400만원으로 이자수익을 계상하였음. 이는 예상 평균예치액(1조 9,698억원) 및 예상수익률(3.0%)를 감안하여 계상한 2025년도 회전자금 예치이자 462억 6,500만원에 비해 42.4%가 증가한 금액임.

[2026년도 세입예산안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5 본예산	46,265	▪ 예상 평균예치액(19,698억원) × 예상수익률(3.0%) - 국회감액(△12,829)= 46,265 * 최근 3년 평균 예치액 및 예상수익률 감안
2026 예산안	65,884	▪ 예상 평균예치액(22,323억원) × 예상수익률(2.5%) × 118% = 65,884(558억원+100억원) * 최근 3년 평균 예치액 및 예상수익률의 118% 계상

자료: 조달청

조달청은 회전자금 예치이자 수익의 연례적 과소 편성에 대한 국회 지적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시부터 예상 평균예치액의 산정을 과거 5년간 평균예치액을 기준으로 하던 산식에서, 과거 3년 평균예치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음.

또한,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 예산현액(482억원) 대비 199.9% 증가한 963억 8,200만원이 실제 수납됨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과소 편성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18%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예상 평균예치액에 예상수익률을 곱한 금액(558억원)에 100억원을 더한 금액으로 회전자금 예치이자를 편성하였음.

그런데 예치이자 수익에 대한 예산-실적 간 격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지적

295) 2022년~2024년

에 따라, 조달청은 2026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이후 회전자금 예치이자 추계 방식을 재조정하였음.

조달청은 해당 추계 방식에 대해 2023년부터 2025년[296]까지의 평균예치액 증감율은 11.9% 수준이나, 이를 보수적으로 약 11% 증가로 가정하여 산정하였다고 설명함. 이에 따라 2025년도 예상 평균예치액 2조 7,629억원에 3,039억원(11%)을 더한 3조 668억원을 기준으로 2026년도 예치이자 수익을 766억원으로 추계하였으나, 국제금리 인하 추세 등을 고려하여 최종 예산안은 약 659억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최근 3년 평균예치액 대비 약 118% 수준이라는 입장임.

[최근 3년간(2023~2025년도) 평균예치액 증감율 산출내역]

(단위: 억원, %)

회계년도	2023년	2024년	2025년(예상)	평균
총예치액 증감	5,150	6,000	6,336	**5,829**
총예치액 증감율	11.1	11.6	11.0	**11.2**
평균예치액 증감	2,429	2,976	2,512	**2,639**
평균예치액 증감율	12.3	13.4	10.0	**11.9**

자료: 조달청

[회전자금 예치이자 현황 및 전망]

(단위: 억원, %)

회계년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상)	2026년 (추계)
총예치액	50,890	46,450	51,600	57,600	63,936	70,969
평균 예치액(A)	17,240	19,712	22,141	25,117	27,629	30,668
연이자 수입(B)	159	432	820	964	829	766
평균수익률 (B/A)	0.92	2.19	3.71	3.84	3.00	2.50
예산안	127	119	133	482	463	**659**

자료: 조달청

이와 같이 조달청은 총예치액 및 평균예치액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296) 2025년은 예상 평균예치액

음에도 불구하고, 회전자금 예치이자 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과거 평균예치액을 기준으로 이자수익을 추계하였음. 또한 재조정된 산출방식에서도 조달청이 자체적으로 전망한 이자수익 766억원에서 국제금리 인하 추세 등을 고려하여 107억원을 감액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음.

물론 이러한 보수적 추계는 조달특별회계 세입의 주요 항목인 회전자금 예치이자 수익의 과다 추계로 인한 세입 부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3년간 회전자금 예치이자 수익이 지속적으로 과소 추계되어 왔으며, 2025년도에도 예산상 462억원 대비 약 1.8배에 달하는 829억원의 실적이 예상되는 상황임.

[최근 4년간 회전자금 예치이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2022	11,875	11,875	11,875	43,218	43,218	363.9	100
2023	13,284	13,284	13,284	82,044	82,044	617.6	100
2024	48,200	48,200	48,200	96,382	96,382	199.9	100
2025[297]	46,265	46,265	46,265	15,142	15,142	32.7	100

자료: 조달청

또한, 2025년 8월 기준 회전자금 여유자금의 예치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제시한 평균 금리가 3.02%에 이르고 있으므로, 국제금리 인하 추세를 고려하여 정한 2.5%의 수익률에서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할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임.

[2025년 8월 기준 금융기관별 평균 이자율]

(단위: %)

금융기관명	금융기관별 평균 이자율	비고
□□	2.82	
◇◇	2.63	
○○	3.03	
◆◆	2.79	
△△	3.01	
◈◈	3.00	
◉◉	2.40	
●●	3.10	
평균 이자율	3.02	

자료: 조달청

297) 2025년 8월말 기준

따라서 2025년도 회전자금 예치이자 수익률이 3.0%로 전망되고, 이미 국제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하여 수익률을 2.5%로 조정한 점을 감안하였을 때, 조달청은 회전자금 예치이자 수입을 자체적으로 예상한 평균예치액과 수익률을 기준으로 재산출한 766억원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둘째, 조달청은 회전자금 운용계획상 평균예치액 산정방식을 현실화하여, 이를 통해 회전자금 운용계획과 실제 운용규모 간 괴리를 최소화하고 일시 여유자금 운용계획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여, 시재금 운용 및 이자수익 전망의 신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회전자금 운용계획상 회전자금 운용실적을 살펴보면 평균예치액(회전자금 은행예치액)은 실제 결산상 예치 규모가 아니라 선수금, 위약금, 수요물자 자금 등 유입 항목에서 대지급소요액과 지급예비시재액을 단순 가감하여 산출하고 있음. 이러한 방식은 실제 자금 운용 흐름과 괴리가 존재하며, 결과적으로 회전자금 운용계획상 평균예치액이 과소 산정되는 문제가 있음.

[2025년도 회전자금 운용계획상 회전자금 평균예치액 산출방식]

〈수요물자 사업자금 운용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24년 실적(A)	2025년 계획(B)	증감액(B-A)
수 요 물 자 자 금 규 모	1,051	1,051	-
대지급소요액(-)	5,197	5,443	246
선 수 금 평균잔액(+)	26,501	26,764	263
회 전 자 금 은행예치액(-)	21,918	21,981	63
위약금수납액(+)	148	194	46
지 급 예 비 시 재 액(-)	585	585	-

〈 자금 산출내역 〉

❶ 대지급 자금 소요액 5,443억원 : 대지급 소요액(5,249억원) + 위약금(194억원)

► '25년 대지급액(27조 2,968억원) ÷ 대지급회전율(52회) = 5,249억원
► '25년 수요물자사업계획 45조 8,000억원 × 대지급률(59.6%) = 27조 2,968억원
► 365일 ÷ [대지급 대금납입기일(5일)+토,일요일(2일)] ≒ 52회
* 대지급 대금 납입기간 : 고지후 5일(조달사업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❷ 선수금 평균잔액 26,764억원(선수금 잔액 = 선수금 - 선지급금)

► '24년 선수금 평균잔액(26,501억원) × 수요물자사업 증가율(1.0%)

❸ 지급예비시재액(한은 보유잔액)을 `24년 수준(585억원)으로 유지하고, 대지급, 선수금, 위약금 등을 가감하면, 여유 **회전자금 은행예치액은 21,981억원 수준 운용**

► (선수금 잔액+위약금 수납+수요물자 자금)-(대지급소요액+지급예비시재액)

❹ 위약금 수납 194억원으로 최근 3년(`22~`24년) 평균 수준 설정

* ('21년) 100억원 → ('22년) 201억원 → **('23년) 234억원** → **('24년) 148억원**

특히, 대지급 소요액의 경우 전체 대지급액을 대금 납입기일(5일)에 주말(2일)을 더한 7일 단위의 회전율(52회)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기준 일 단위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음.[298] 또한 지급예비시재액 역시 실제 결제 소요 규모(1,000억~2,000억 원)에 비해 낮은 수준(585억 원)으로 계상되어, 회전자금 운용계획상의 평균예치액이 결산내역상 평균예치액보다 약 3,000억 원가량 낮게 산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연도별 여유자금 예치현황(회전자금 운용계획 산출방식)]

(단위 : 억원)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평균예치액		이자		평균예치액		이자		평균예치액		이자		운용계획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14,408	15,593	167	432	16,206	18,210	586	820	18,212	**21,918**	551	964	
총예치액(누계)		이자		총예치액		이자		총예치액		이자		실예치금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	46,450	-	432	-	51,600	-	820	-	57,600	-	964	

* 계획=예산, 실적=결산
자료: 조달청

[연도별 여유자금 예치현황(결산내역)]

(단위 : 억원)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평균예치액		이자		평균예치액		이자		평균예치액		이자		세입결산
계획	실적	계획(예산)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7,943	19,712	119	432	10,141	22,141	133	820	16,061	**25,117**	482	964	
총예치액		이자		총예치액		이자		총예치액		이자		실예치금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	46,450	119	432	-	51,600	133	820	-	57,600	482	964	

* 계획=예산, 실적=결산
자료: 조달청

298) **[2024년 한국은행 대지급금 지급내역(1월)]**

(단위 : 억원)

일자(요일)	한은시재액	일자	한은시재액	일자	한은시재액
1.2.(화)	436	1.11(목)	547	1.24.(수)	634
1.3.(수)	781	1.12.(금)	609	1.25.(목)	699
1.4.(목)	626	1.15.(월)	624	1.26.(금)	662
1.5.(금)	798	1.16.(화)	536	1.29.(월)	699
1.8.(월)	693	1.17.수)	594	1.30.(화)	860
1.9.(화)	493	1.18.(목)	629	1.31.(수)	839
1.10.(수)	630	1.19.(금)	829		
1.22.(월)	472	1.23.(화)	693		

자료: 조달청

반면, 실제 지급일 기준(연 245회)을 적용하고 지급예비시재액을 현실화하여 재산출할 경우, 회전자금 운용계획상 평균예치액은 결산내역상 평균예치액(2조 5,117억 원)과 약 100억 원 수준으로 차이가 축소되어, 현실과의 정합성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됨.

[2024년 회전자금 운용실적 수정내역]

(단위 : 억원)

구분	2024년 회전자금 운용실적		
	기존 실적(A)	기준조정시(B)	B-A
자기자본금	1,501	1,501	-
대지급소요액(-)	5,197	1,144	△4,053
선수금평균잔액(+)	26,501	26,501	-
회전자금은행예치액(-)	21,918	25,006	3,088
위약금수납액(+)	148	148	-
지급예비시재액(-)	585	2,000	1,415

자료: 조달청

이와 같이 기존의 회전자금 운용계획상 평균예치액 실적 및 예상평균예치액 산출방식은 결산내역상 평균예치액과 괴리가 있으며, 이에 따라 동 계획에 포함되는 일시 여유자금 운용 계획 및 이자수익 전망의 정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조달청은 회전자금 운용계획상 평균예치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구성 항목의 산정기준과 수치를 현실화하여, 회전자금 운용계획의 신뢰성과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회전자금 운용계획과 실제 운용규모 간의 괴리를 최소화하고, 일시 여유자금 운용계획 및 이자수익 전망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조달청은 회전자금 운용계획상 평균예치액 산정방식을 현실화하여, 이를 통해 회전자금 운용계획과 실제 운용규모 간 괴리를 최소화하고 일시 여유자금 운용계획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여, 시재금 운용 및 이자수익 전망의 신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 기업) 제도 개선 필요 (정부조달 국제협력체계 구축, 기획조정관)

< 현 황 >

「정부조달 국제협력체계 구축」사업은 해외조달기관·국제기구와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한국형 전자조달 시스템을 해외에 확산·보급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3억 1,000만원 감소한 41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음.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의 내역사업인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지원」의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8억 9,000만원 증가한 32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정부조달 국제협력체계 구축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세목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1233-331)	4,505	4,505	4,195	△310	△6.9
- 정부조달분야 국제협력 및 나라장터 해외확산	199	199	199	-	-
-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지원	**2,409**	**2,409**	**3,299**	**890**	**36.9**
-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	697	697	697	-	-
- 수출연계 혁신제품 해외실증 애로해소	1,200	1,200	-	△1,200	△100

자료: 조달청

< 검토의견 >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 기업) 제도가 본래의 사업목적인 해외조달시장 진출 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과의 연계방안, 해외조달시장 수출실적 관리 방안, 국내조달 입찰 가점 부여 기준 개선 및 G-PASS기업 사후관리 강화방안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지원」사업 중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 기업) 제도는 국내 조달시장에서 기술력, 품질 등을 검증받고 수출경쟁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G-PASS 기업으로 지정하여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임.

G-PASS 기업 지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해외조달시장 진출 노력 및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지정하고, 해외수출실적 또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노력도에 따라 지정등급(A·B·C 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G-PASS기업 지정기간은 5년이며, 최대 2회까지 재지정이 가능함.

[G-PASS기업 지정 절차]

신청서 접수	◦ 대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중견·중소기업
현장역량진단	◦ 대상: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 ◦ G-PASS 지정관리용역 위탁수행기관이 신청기업을 현장 방문하여 수출역량 및 준비 정도 등을 점검
지정심사	◦ 1차 심사: 해외조달시장 진출 노력, 진출의지 및 가능성 심사 ◦ 2차 심사: G-PASS기업으로서의 적합성 등 심사하여 최종 결정
지정	◦ 해외수출실적 및 수출노력도에 따라 A, B, C 등급 부여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G-PASS 기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 8월 기준 1,485개 기업이 지정되어 있음.

[G-PASS기업 지정 현황]

(단위: 개사)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8
487	538	663	832	1,022	1,114	1,263	1,422	1,485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

G-PASS 기업에 지정되면, 조달청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등의 우대를 받으며, 국내조달시장 입찰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G-PASS기업 지정 혜택]

구분	내용	비고
G-Pass 기업 대상 지원사업	◦ 해외조달시장 개척단 파견사업	G-PASS기업 중 B등급[299] 이상 기업에 한함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사업 선정 우대 (가점 부여)	◦ 해외조달시장 맞춤형 종합지원사업(+3점) ◦ 해외조달시장 수출전략기업육성사업(+5점) ◦ 해외전시회 지원사업(+5점)	
국내조달시장 입찰 가점	◦ 우수조달물품 신인도 가점(+1점) ◦ 중소기업자간 계약이행능력심사 가점(+1점) ◦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1점) ◦ 물품·용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평가(최대 7.5점) ◦ 용역 카탈로그 계약 종합평가(최대 5점)	
협력기관의 우대사항	◦ 기술보증기금 보증심사 우대 및 기술보증수수료 인하 ◦ 기업은행 환전 및 해외송금 수수료 감면 ◦ 특허청 ip기반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가점 부여 ◦ 수출입은행 '히든 챔피언 프로그램'(금리 우대, 수출성장자금 대출한도 확대 등) 신청자격	
기타	◦ G-PASS 지정마크 마케팅 활용 가능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

G-PASS 기업 지정제도 운영 관련 2026년 예산안은 2025년과 동일한 6,600만원이 편성되었음.

[G-PASS기업 지정제도 관련 예산편성 내역]

구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G-PASS기업 지정제도 위탁운영	66백만원	66백만원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299) 다음의 수출실적기준 또는 해외조달시장진출 노력 기준 중 하나를 충축하는 경우
- ◦ 수출실적기준: 최근 3년간 수출누계액이 10만불 이상
- ◦ 해외조달시장 진출 노력
  - 미국 연방조달청 다수공급자물품공급계약(MAS) 등록
  - 해외조달시장 공급사 등록 실적이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 해외조달시장 입찰제안서 제출
  - 해외인증 신규 취득
  - 조달청 수출지원사업 참여

G-PASS 기업 지정제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이 필요함.

첫째, G-PASS 기업 지정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정기업의 해외수출실적은 저조한 수준이며, 해외조달시장 진출 실적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조달청은 관세청의 통관실적을 제출받아 G-PASS기업의 해외수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매년 G-PASS기업 중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은 전체 지정기업의 40% 이하로 낮은 수준이며, 2023년부터는 총 수출금액 역시 정체되어 있는 상황임.

[연도별 G-PASS기업 해외수출 현황]

(단위: 개사, 백만달러)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8
지정기업 수(A)		1,022	1,114	1,263	1,422	1,485
해외수출 기업 수(B)		393	434	470	557	541
	비중(B/A)	(38.5%)	(39.0%)	(37.2%)	(39.2%)	(36.4%)
해외수출 금액		1,246	1,507	1,633	1,628	1,085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또한, 조달청은 G-PASS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수출실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본래의 사업목적인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의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조달청은 공공조달 수출상담회,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 지원사업, 해외조달시장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등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과 G-PASS기업 지정제도의 연계 방안 마련 등 해외수출실적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조달시장 수출실적 관리방안[300]을 마련하여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300) 대상기업으로부터 해외조달시장 수출 실적을 제출받고 그 정확성을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해외조달시장 수출실적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음.

둘째, G-PASS 기업에 대한 국내조달 입찰 가점 부여 기준을 재검토하여 수출실적을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업실적과 연동하여 우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동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조달청은 G-PASS 기업 중 B등급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 국내조달 입찰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G-PASS 기업 지정등급 부여기준에 따르면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의 경우에도 해외조달시장 입찰제안서 제출,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사업 참가실적 등 해외조달시장 진출 노력도에 따라 B등급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G-PASS 기업 지정등급 기준]

구분	등급 판단 기준(가, 나 중 유리한 기준 적용)	
	수출 실적(가)	해외조달시장 진출 노력(나)
A등급	- 최근 3년간 수출 누계액 500만불 이상	- 미국조달청(GSA) MAS 계약납품 - 10만불 이상의 해외 조달계약 체결 - 다음 각 호의 수출지원사업 참여 · 해외조달시장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 해외조달시장 시장개척단 ·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지정공고에서 정하는 사업
B등급	- 최근 3년간 수출 누계액 1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	- 미국조달청(GSA) MAS 등록 - 해외조달시장 공급사 등록 실적이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 해외조달시장 입찰제안서 제출 - 해외인증 신규 취득 - 다음 각 호의 수출지원사업 참여 ·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 바이어 상담회 ·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지정공고에서 정하는 사업
C등급	- 최근 3년간 수출 누계액 10만불 미만	

자료: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그러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동 제도의 실질적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해외시장진출 노력도뿐만 아니라 수출실적을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업실적과 연동한 우대 혜택 제공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셋째,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이라는 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G-PASS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은 G-PASS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정 직전 3년간 수출실적이 없거나 C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조달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계기관이 주관하는 해외조달시장 또는 수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기업이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에도 조달청 주관 수출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뿐 G-PASS기업 지정 자격에 대한 재검토는 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또한, G-PASS기업 지정기간 동안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의 경우에도 해외조달시장 입찰 참가실적, 조달청 해외진출지원사업 참여실적에 따라 재지정이 가능하여, 해외시장 진출이라는 정책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지 못한 기업이 국내조달 입찰 우대 등의 혜택 획득 수단으로 G-PASS기업 지정제도를 이용하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음.

[G-PASS 기업 재지정 1차심사 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계량 (70점)	해외조달시장 참가실적 (50)	입찰제안서 제출	10
		해외조달시장 공급사 등록	5
		수출컨소시엄, 해외전시회 등 참가	10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참가	10
		수출전력기업 육성사업 참가	15
	수출실적(20)	최근 5년간의 수출실적 합계	20
비계량 (30점)	재지정 필요성		30
가점 (택 1)	벤처창업조달기업(+5), 정부조달문화상품 지정기업(+5) 혁신제품기업(+5), 최근 1년간 해외조달시장 또는 수출 관련 교육 등 참가이력(최대+5점)		

주) 각 심사위원이 부여한 총점의 산술평균이 60점 이상인 경우 1차심사 통과
자료: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따라서, 조달청은 관련 규정에 따른 교육을 장기간 이수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정 자격을 재검토하고, 재지정 시 수출실적 또는 수출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등 G-PASS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3) 안전관리물자 품질점검 관련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 (조달물자 품질검사 및 관리, 조달품질원)

< 현 황 >

「조달물자 품질검사 및 관리」는 조달물자의 품질점검, 직접생산 확인, 납품검사 등 사전·사후 품질관리를 통해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국민안전을 보장하려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2억 3,100만원 증액된 16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조달물자 품질검사 및 관리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조달물자 품질검사 및 관리 (1235-335)	1,397	1,397	1,628	231	16.5
- 품질점검 및 직접생산확인	1,094	1,094	1,300	206	18.8

자료: 조달청

< 검토의견 >

안전물자 품질점검 기간 단축 및 품질점검 누락 방지를 위하여 면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내역사업인 '품질점검 및 직접생산확인'은 품질점검, 직접생산 확인, 납품검사 등 조달물자의 사전·사후 품질관리를 통해 조달물자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13억원이 편성되었음.

안전관리물자란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로서 조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물자로, 2025년 현재 총 275개 세부품명(Ⅰ등급 113개, Ⅱ등급 162개)의 안전관리물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Ⅰ등급 안전관리물자 계약업체는 총 7,357개임.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지정 현황]

분야	등급	세부품명(개)	예시
어린이안전	Ⅰ등급	4	조합놀이대, 기타놀이기구
	Ⅱ등급	12	그네, 구름다리
보건위생안전	Ⅰ등급	9	살균제, 공기살균기
	Ⅱ등급	12	우물소독약, 일반마스크
도로안전	Ⅰ등급	13	스틸그레이팅, 주철맨홀뚜껑
	Ⅱ등급	39	플라스틱그레이팅, 강판맨홀뚜껑
소방안전	Ⅰ등급	15	실내벽체마감패널, 벽천장용흡음재
	Ⅱ등급	15	실내공간분할패널, 압출성형시멘트판
공공안전	Ⅰ등급	16	드론, LED투광등기구
	Ⅱ등급	33	해상부유구조물, 투광등기구
수질안전	Ⅰ등급	18	활성탄, 물탱크
	Ⅱ등급	12	가성소다, 빗물저장탱크
생활안전	Ⅰ등급	27	승객용엘리베이터, 합성목재
	Ⅱ등급	17	인조잔디충전재, 석제단열패널
수해안전	Ⅰ등급	8	레미콘, 아스팔트콘크리트
	Ⅱ등급	17	흙콘크리트, 직포매트
동절기안전	Ⅰ등급	3	난로, 전기히터
	Ⅱ등급	4	난방용필름, 난방용시트
서비스안전	Ⅱ등급	1	헬기서비스

자료: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별표]

그간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품질점검 주기 단축 요청에 따라, 조달청은 2025년부터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품질점검을 5~7년 주기에서 3년 주기로 단축하고 품질점검 건수를 확대할 계획으로, 해당 계획에 따라 2026년 동 내역사업 예산을 2억 600만원 증액하였음.

다만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에 관한 현행 규정을 살펴보면,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에는 조달품질원장이 Ⅰ등급 안전관리물자에 대하여 매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에 점검주기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점검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Ⅱ등급 안전관리물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점검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제6조(품질관리) ① 조달품질원장은 안전관리물자(Ⅰ등급)의 품질관리를 위해 매년 직접생산확인, 품질점검 등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등에 따라 품질관리를 시행한다. 다만, 계약상황 변동이나 사회적 문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대상, 점검주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안전관리물자(Ⅱ등급) 관련 사회적 문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점검대상에 안전관리물자(Ⅱ등급)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점검은 안전관리물자의 수요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실시 한다. 다만, 수요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등 사전에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점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조달청은 세부품목을 기준으로 연간품질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있어, 세부품목 중 어떠한 물자를 점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달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황임.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Ⅰ등급 3년 주기 점검 계획]

(단위: 개)

분야	1년차	2년차	3년차
어린이안전	95	67	99
보건위생안전	104	72	230
도로안전	442	542	689
소방안전	120	154	128
공공안전	40	496	478
수질안전	475	76	96
생활안전	1,009	762	443
수해안전	164	292	284
합계	2,449	2,461	2,447

자료: 조달청

따라서 조달청은 안전관리물자 품질점검에 누락되는 물자가 없도록 사전계획을 면밀히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품질관리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점검주기를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혁신제품 시범구매 확대에 따른 사업추진 점검·평가 필요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신성장조달기획관)

< 현 황 >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사업은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품질검사 시험장비를 구입하고,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공공기관에서 시범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혁신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330억원 증가한 827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1237-433)	49,706	49,706	82,706	33,000	66.4
- 품질검사 시험장비구입	306	306	306	-	-
- 공공혁신조달사업(국내실증)	**35,400**	**35,400**	**62,400**	**27,000**	**76.3**
- 공공혁신조달사업(해외실증)	**14,000**	**14,000**	**20,000**	**6,000**	**42.9**

자료: 조달청

< 검토의견 >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목적인 혁신제품 상용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평가할 필요가 있음.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사업의 내역사업인 공공혁신조달사업은 조달청 예산으로 혁신제품을 구매하여 수요기관[301]에 제공하고 이를 시범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혁신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하려는 사업임.

2019년 사업이 최초 도입된 이후 동 사업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6년 예산안은 2025년 494억원 대비 330억원(66.8%) 증가한 824억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2019년 예산 24억원 대비 3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단기간 동안 사업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2026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안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국내 시범구매	35,400	62,400	27,000	76.3
국외 시범구매	14,000	20,000	6,000	42.9
계	49,400	82,400	33,000	66.8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30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수요기관"이란 조달물자, 공사 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이하 "국가기관"이라 한다)
나.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요기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관(이하 "국가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기관
2. 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소속 기관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한 기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기관이 수요기관의 지정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
② 조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연도별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안)
2,400	29,300	44,500	46,500	48,300	53,000	49,400	82,400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동 사업의 추진절차를 보면, 혁신제품 지정기업으로부터 시범사용계획 신청을 받고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조달청이 수요를 매칭하여 그 결과에 따라 혁신제품 구매하여 수요기관이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수요기관의 피드백 과정을 거치게 됨.

이후 시범사용 결과평가에서 성공 판정을 받은 혁신제품은 우수조달물품 지정시 심사 특례를 적용받게 되어[302] 상용화를 위한 판로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 즉, 시범구매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달청이 상용화 이전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여 혁신조달기업의 초기판로를 창출하고 혁신제품의 상용화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런데, 혁신제품 시범구매 후 후속구매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조달청은 총 907종류의 혁신제품을 시범구매하였으나, 이 중 66.6%인 604종류 제품만 시범구매와 별도로 각 수요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후속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투입된 예산에 비해 혁신제품의 상용화 정도는 아직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보임.

[혁신제품 시범구매 이후 후속구매 실적이 있는 제품 현황]

(2024. 12. 31. 기준, 단위: 개)

구분		혁신제품 지정 제품 수	시범구매 제품 수	시범구매 후 후속구매 제품 수
유형 Ⅰ (각 부처 지정)		1,512	428	288 (67.3%)
유형 Ⅱ (조달청 지정)	공급자 제안형	578	369	257 (69.6%)
	수요자 제안형	94	61	41 (67.2%)
	스카우터 추천	96	49	18 (36.7%)
계		2,280	907	604 (66.6%)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302) 「우수조달물품 지정 관리 규정」 제9조에 따라 1차 심시시 평가점수(70점이상)가 아닌 적부판정(위원 2/3이상 적합판정)으로 심사하게 됨.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혁신을 목표로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2024년 1조원에서 2030년까지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국정과제에 포함됨에 따라 공공구매 확산의 마중물 효과가 있는 시범구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시범구매 확대 계획]

(단위: 억원, 개)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시범구매	금액	354	624	900	1,200	1,500	1,800
	제품수	118	208	300	400	500	600
혁신제품 지정 수 (누적)		2,630	3,040	3,510	4,040	4,630	5,230

주: 시범구매 금액은 해외 시범구매 예산은 제외된 금액임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규모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동 사업의 성과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조달청은 사업목적인 혁신제품의 상용화를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평가하여 시범구매 사업의 정책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겠음.

(5) 교육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편성 부적절 (조달전문교육운영, 공공조달역량개발원)

< 현 황 >

「조달전문교육운영」은 조달업무의 전문화·다양화 및 조달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조달전문교육을 통해 수요기관 및 민간업체의 조달업무능력과 자질향상을 도모하려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3억 8,900만원 감액된 15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조달전문교육운영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세목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조달전문교육운영 (7134-371)	1,984	1,984	1,595	△389	△19.6
- 계약직운영	1,164	1,164	1,289	125	10.7
- 조달전문교육운영	820	820	306	△514	△62.7
- 포상금 (310-03)	8	8	8	-	-

자료: 조달청

< 검토의견 >

포상금(310-03)으로 교육우수자에 대한 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감액할 필요가 있음.

「조달전문교육운영」은 공공조달교육 및 공공조달관리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임. 공공조달교육은 수요기관, 조달업체, 조달청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대면·온라인 교육임.

한편, 포상금(310-03)은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한 공무원 및 민간인을

격려·포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상금 및 격려금과 예산절약 상여금을 말함.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포상금은 ①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 ② 과기정통부장관이 우체국 직원 또는 관서에 지급하는 예금 및 보험보상금과 경영평가보상금, ③ 표창부상금, ④ 공무원제안규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하며, 표창부상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일괄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중앙관서의 장 이외의 산하관서장의 포상금 및 기관포상금은 별도로 계상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관서별 업무추진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포상금의 지급근거 및 한도를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은 조달전문교육 교육우수자에 대한 표창을 위하여 2026년도 예산안에 포상금 84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침상 포상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법령에 관련 근거도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감액할 필요가 있음.

(6) 회전자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국회 통제 강화 필요 (회전자금, 공공물자국)

< 현 황 >

「회전자금 전출금」은 조달특별회계의 잉여금 일부를 회전자금으로 적립하여 조달물자대금대지급 및 원자재 비축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과 동일한 80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회전자금 전출금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회전자금 전출금 (9701-971)	80,000	80,000	80,000	-	-

자료: 조달청

< 검토의견 >

회전자금은 비축물자 구입 등을 위한 정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국회 심사과정에서 추가 필요자금 확보를 위한 전출금 규모의 산출근거와 운용성과를 명확히 검증하기 어려우므로, 조달청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취지를 반영해 회전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전출금 규모의 적정성 및 핵심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연차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

조달청은 2025년 비축사업계획에서 6대 비철금속의 평균 목표재고(안전재고[303]+운영재고[304])일수를 60일로 설정하고, 2027년까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고일수를 2024년 말 53일에서 2025년 말까지 55일로 달성하기로 당초 계획하였음.

[2025년 비축사업계획상 비축물자 목표재고일수]

(단위: 일)

구분	2025년		
	안전재고	운영재고	목표
알루미늄	60	13	73
구리	40	20	60
납	20	5	25
아연	20	35	55
주석	60	20	80
니켈	60	10	70
평균	43	17	60

자료: 조달청

그런데, 회전자금 중 비축물자 사업자금 내 지급예비시재액이 매년 계획 대비 과다하게 보유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지적에 따라, 조달청은 2025년에 지급예비시재액 965억원을 비철금속 구입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여 재고일수를 58일까지로 상향하고, 목표재고일수를 2026년까지 60일로 조기 달성하겠다는 계획임.

303) 전쟁, 대규모 재난, 국내 경제위기와 국제 자원파동 등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긴급시 이외에는 시중 가격에 상관없이 일정량을 유지하는 재고

304) 원자재 수급관리와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동향, 수급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 가능한 재고

이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에는 이를 위해 추가 확보가 필요한 자금인 회전자금 전출금 8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비축소요자금[305] 및 비축금속 운용자금[306]에서 미지급액[307] 및 희소금속 수납액을 차감한 금액임.

[2026년도 회전자금 전출금 산출내역]

(단위: 억원)

비축소요자금 (A)	비축금속 운용자금 (B)	총소요자금 (C=A+B)	미지급액 (D)	희소금속 수납액 (E)	추가 필요자금 (F = C-D-E)
2,006	377	2,383	1,500	83	800

자료: 조달청

그런데 조달청이 제출한 사업설명자료에는 비축자금 소요 규모는 기재되어 있으나, 회전자금 전출금 산출내역의 세부 산정 근거가 불명확하여 비철금속별 단가, 국제시세 변동 전망, 재고 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며, 회전자금 전출금의 집행률 및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여, 회전자금 전출금이 실제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 집행되었는지, 미집행 사유가 무엇인지 등을 검증하기 어려움.

또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한 비축 필요성은 제시되었으나, 장단기 수급 안정과 물가안정, 국가 비상대비 등 비축 목적을 충족하기 위한 적정 비축 규모 및 추가 비축 필요량에 대한 분석 없이 비축 확대만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회전자금 전출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안 제출 시 비철금속에 대한 가격 전망, 비축·방출계획, 집행실적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여 비축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한 비축물자별 적정 비축 규모 등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회전자금 운용실적은 은행예치액, 지급예비시재액, 위약금 규모에 대한 계획-실적 비교 및 수요물자·비축물자 사업자금의 계획-실적 비교에 그치고 있어, 자금 운용의 효율성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물가안정 기

305) 2025년 7월 재고 기준 추가로 비축해야 하는 금속(26,830톤)을 사들이는 데 필요한 직접 매입자금으로 추가 비축목표량×단가로 산출

306) 2026년까지 비축·방출의 원활한 순환에 필요한 운용자금으로, 선물 운용자금 147억 및 비축물자 운용자금230억) 소요

307) 2025년 7월 기준 비축 필요 물량 26,830톤 중, 2025년도 예산 및 지급예비시재액을 활용하여 구매할 14,076톤에 대한 지급액

여도, 공급망 위기 대응 속도 등 정책·성과 지표를 포함한 핵심성과지표(KPI)를 설정하고, 이를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회전자금은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308]에 따라 세입·세출 외로 운용되고 있으나, 그 재원이 정부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고 비축물자 구입 등 정책적 지출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정부 재정자금의 성격을 가지는 자금임. 회전자금 전출금 규모는 조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포함되어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만, 회전자금 전체에 대한 운용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국회의 사후적 통제는 제한적인 실정임.

따라서, 「국가재정법」상 규정하고 있는 예산총계주의 원칙[309]의 취지를 반영하여, 회전자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성과평가 체계 마련을 통해 국회 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대안)을 의결하였는데,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기금의 재원 조성 현황, 지원실적, 평가결과 등을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310]하고 있는바, 이와 유사하게 조달청도 회전자금 운용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평가하고 국회에 보고하기 위한 연차보고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이 회전자금은 비축물자 구입 등을 위한 정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

308)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외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회전자금"이라 한다)을 보유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가 회전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전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국고금관리법」 제3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09)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310)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43조의2(연차보고)**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지원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재원조성 현황
2. 기금의 지원실적
3. 제2호의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추가 필요자금 확보를 위한 전출금 규모의 산출근거와 운용성과를 명확히 검증하기 어려우므로, 조달청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취지를 반영해 회전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전출금 산출내역 및 집행현황을 명백히 공개하며, 전출금 규모의 적정성 및 핵심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연차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

(7) 마스크 시재액의 일반회계 반납 및 연간 구매계획에 따른 적정 자금의 회전자금 전출 필요(회전자금, 공공물자국)

< 현 황 >

조달청은 코로나-19 비상위기 대응을 위해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비축용 마스크(1억 5,000만장, 회전자금 1,050억원)를 구매하였음. 조달청은 마스크 생산업체로부터 비축물량을 구매하여 보관·관리하면서, 이를 공공기관에 유상 방출하고, 비축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시 구매하여 보충하고 있음.

마스크 비축목표량은 초기 비축 당시의 1억 5,000만장에서 2023년 5,300만장으로 한 차례 하향 조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마스크 비축을 위한 회전자금 1,050억원 중 마스크 5,300만장 구입 비용 133억원(5,300만장×단가 250원)을 제외한 873억원을 2024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반납하였음.

< 검토의견 >

조달청은 여유 마스크 시재액을 일반회계로 반납하고, 마스크 비축량에 대한 체계적 계획에 따라 연간 마스크 구매물량을 산정하여 이에 필요한 자금을 회전자금으로 전출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선언 이후 공공기관의 마스크 수요가 급감함에 따른 재고순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5월 비축전문위원회에서 '마스크 비축 사업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여 마스크 비축량을 상시 비축해야 하는 안전재고와 감염병 유행 예상 시 추가 필요 수량인 탄력재고로 구분해 운영하기로 함.

조달청에 따르면 2025년 8월말 기준으로 조달청이 비축하고 있는 마스크 수량은 약 3,700만장이며, 구매계약을 완료하여 2025년 내 공급받는 수량 1,200만장 및 안전재고 유지를 위한 마스크 추가 구매 물량을 고려할 경우, 약 3,700만장 수준의 비축량을 유지할 계획임. 이를 위해 조달청은 약 600만장 정도의 마스크 추가 구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조달청은 2026년 2월까지 유통기한이 경과하는 마스크 1,900만장을 폐기할 예정이며, 2026년 10월부터 2027년 1월 사이 유통기한이 도래하는 마스크 물량이 1,800만장으로, 해당 물량(3,700만장)에 대한 재구매에 소요되는 자금은 약 41억원으로 추산[311] 하고 있음.

이 경우 마스크 시재액은 2025년 말 기준 99억원[312]에서, 2026년 말 58억원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마스크 시재액은 조달청이 마스크 구매를 위해 회전자금 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2026년까지의 마스크 구매량[313]을 고려하여도 시재액 규모는 과다한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해 조달청은 위기 시 5,300만장(안전재고+탄력재고)을 일시에 확보해야 하므로 마스크 1,600만장의 구매를 위한 자금 32억원[314]을 시재액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311) 평균 재고단가를 92원으로 보고, 입찰절차를 감안해 120% 수준인 110원을 적용하고 있음.
312) 2025년말 기준
313) 약 3,700만장
314) 조달청 종합쇼핑몰 단가 200원 적용

그러나 마스크 비축의 목적은 시장 가격 폭등과 사재기를 방지하고 공공기관 및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데 있으므로, 위기 발생 시에도 전량을 일시에 확보할 필요성은 높지 않아 보임.

또한, 조달청 계획에 따르면 안전재고 수준까지 마스크 비축량을 유지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 사이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구매할 예정인데, 이미 2023년 말과 2024년 초에 대량 구매한 물량이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예정임. 2024년부터 마스크 방출 수량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단기간의 대량 구매는 재고순환을 어렵게 하고, 유통기한 도래에 따른 대규모 폐기 문제가 재발할 우려가 있음.

[연도별 마스크 판매 실적]

(단위: 원, 만장,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구입	평균 단가	101	73	-	-
	수량	7,676	2,000	-	-
	총 금액	7,739	1,470	-	-
방출	평균 단가	216	238	161	33
	수량	12,741	1,817	628	957
	총 금액	27,516	4,322	1,013	314

자료: 조달청

이에 따라 조달청은 마스크 비축량에 대한 체계적 계획을 수립하여,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대량 폐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연간 구매량과 구매 시기를 사전에 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마스크 비축에 필요한 소요자금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므로, 조달청이 마스크 시재액을 보유하기보다는 매년 마스크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회전자금 전출금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조달청은 마스크 시재액 중 2026년까지의 마스크 구매자금을 제외한 여유 시재액 58억원 또는 탄력재고 구매비용을 감안한 여유 시재액 26억원을 일반회계로 반납하며, 마스크 비축량에 대한 체계적 계획 수립을 통해 연간 구매물량을 산정하여 이에 필요한 자금을 매년 예산안 편성 시 반영할 필요가 있음.

(8) 민관 공동 비축사업 운영 수입의 현실화 필요(회전자금, 공공물자국)

< 현 황 >

민관 공동 비축제도는 정부 비축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내 보유 원자재 실물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민간사업자가 구매한 원자재를 조달청 비축창고에 보관하고 정부는 비축시설 사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조달청은 2011년부터 민관공동비축사업 공개 모집 공고를 통해 □□□□자산운용과 협약을 체결하여 구리를 조달청 비축창고에 입고하고, 조달청이 발급한 창고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구리 실물 ETF를 거래소에 상장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산운용은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이하 “창고사용비”라 함)를 조달청에 지급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자산운용의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징수액			감면액		
	시설사용료	보관관리비	소계	시설사용료	보관관리비	소계
2022년	23	8	31	-	-	-
2023년	23	9	32	-	-	-
2024년	25	10	35	-	-	-
2025년(상반기)	15	6	21			
계	86	33	119	-	-	-

자료: 조달청

< 검토의견 >

조달청은 민관 공동 비축 사업으로 운영하는 실물 ETF 대응자산인 구리의 조달청 창고보관에 따른 창고사용비를 현실화하여 조달특별회계상 토지대여료 및 건물대여료 수입을 증대하고, 민간 창고 비용 수준을 반영하여 특정 운용사 및 ETF 투자자에게 금전적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조달청은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에 따라 실물 ETF 대응자산인 구리의 조달청 창고 보관에 따른 창고사용비를 계산하고 있음.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315)]

○ 보관관리비: 1일·1㎡당 77원(일·㎡)
○ 시설사용료
- 창고: 1일·1㎡당 184원(일·㎡)
- 야적장: 1일·1㎡당 118원(일·㎡)

(단위 : ㎡/톤)

구 분	알루미늄	구 리	납	아 연	주 석	니 켈
톤당 면적 (3단 적재 시)	0.344	0.206	0.168	0.252	0.207	0.321

※ 적재단수 변경 시 추가 적용[1단(×3배), 2단(×1.5배), 4단(×0.75배)]하고 그 외 품목 비축시 별도 산정

○ 시설사용료 감면율

구분	지표(기간 및 물량)	보관관리비	시설사용료
비축 물자	비축기간(2개월 이상)+우선구매권적용물량(10%이상) +연평균 비축물량(0.5일분이상) 모두 충족 시	30%	30%
	비축기간(2개월 이상)+우선구매권적용물량(15%이상)+ 연평균 비축물량(0.5일분이상) 모두 충족 시	40%	40%
	비축기간(2개월 이상)+우선구매권적용물량(20%이상)+ 연평균 비축물량(0.5일분이상) 모두 충족 시	50%	50%

자료: 조달청

먼저 보관관리비는 직접경비인 부산비축기지 관리인원 9명에 대한 인건비와, 간접경비인 비축물자 보험료 및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에 기타경비인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등과, 이윤316)을 더한 연간 부산비축기지 총비용을 1일·1㎡당 비용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임. 조달청은 보관관리비를 실비 성격의 비용으로 보고 있으며, 임금상승률·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함에 따라 변동이 발생한다는 입장임.

315) 동 고시는 시행일 보관 분부터 적용하며, 기존 보관 분의 경우 이 고시 시행일 전까지는 변경 전의 기준을, 시행일 이후부터는 고시 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
316)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비축사업 이익률(4.2%) 적용

[2024년 및 2025년 보관관리비 산출내역]

(단위: 원)

구분		보관관리비		비고
		2024년	2025년	
경비(A)	직접	454,022,570	467,390,660	공무직 근로자 및 공무원 인건비
	간접	9,064,300	10,700,100	화재 및 도난보험료, 특허수수료
	기타	99,773,690	105,380,010	공공요금, 관리용역비, 유지보수비 등
이 윤(B)		23,077,280	24,505,770	A×4.2%
부가가치세(C)		58,593,780	60,797,650	(A+B)×10%
총 비용(원)		644,531,620	668,774,190	A+B+C
산출액(원/일·㎡)		77	77	

자료: 조달청

다음으로, 시설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료 규정[317]을 준용하여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을 요율로 산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달청의 시설사용료 요율은 법령상 하한선에 맞춘 수준에 불과하며, 시장 여건이나 민간 창고 비용 수준을 반영한 현실화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토지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 시가표준액]

- **(토지 개별공시지가) 782,600원/㎡**
  *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지가 기준으로 지자체가 개별공시지가 산정·고시(4~5월말)
- **(건축물(비축창고) 시가표준액) 439,000원/㎡**
  * 행안부 시가표준액 고시에 의거 지자체 개별 표준액 산정

자료: 조달청

실제로 조달청 창고에 구리를 보관할 경우 톤당 1일 사용비는 약 53원으로, 국내 LME(London Metal Exchange) 창고 상한(696원)의 7.6%에 불과함. 창고사용비가 매일 구리 실물 ETF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체계에서 민간 창고 대비 현저하게 낮은 창고사용비는 ETF 투자자에게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특정 운용사 및 투자자에게 사실상 특혜로 비칠 소지가 있음.

317)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제6호 단서의 경우에는 총괄청이 해당 요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국내 LME 창고사용비 현황[318]]

(2025. 6. 기준. 단위: cent/1일·톤)

구분	품목				
	알루미늄	구리	니켈	주석	납
톤당 가격	55	51	59	56	51
원화 환산 가격[319]	750	696	805	764	696

자료: 조달청

민관 공동 비축 사업은 본래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위기 시 활용 가능한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물 ETF 운용을 위한 대응 자산으로 편입된 구리는 신탁재산의 일부로, 자산운용사가 명의상 보유하더라도 실질 소유권은 ETF 투자자에게 귀속되어 있으므로 조달청의 우선 매각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창고사용비가 과소 책정되어 있어 제도의 취지와 괴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특히 조달청은 비축공간 부족으로 야적하고 있는 알루미늄의 창고 보관 등을 위해 추가적인 비축공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민간 대비 낮은 보관료(약 7.6%)로 특정 ETF 자산을 장기간 보관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조달청은 민관 공동 비축 사업으로 운영하는 실물 ETF 대응자산인 구리의 조달청 창고보관에 따른 창고사용비를 현실화하여 조달특별회계상 토지대여료 및 건물 대여료 수입을 증대하고, 민간 창고 비용 수준을 반영하여 특정 운용사 및 ETF 투자자에게 금전적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318) LME 창고료 상한제 도입(2016.12.28.)으로 2017년 4월 ~ 2027년 3월(10년)까지 위 보관료 내로 운영하며, 보관기간, 업체에 따라 일정 할인율을 적용함.

319) 1cent = 13.64원[2024년 평균 환율(=1,364.4원/달러) 적용]